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551-01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유동철 · 김명연 · 박숙경 · 김정하 · 임소연 · 박영희 · 이윤경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2014)

2014년 11월 20일 초판 발행.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펴냈습니다.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발주하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수행한 ‘장애인인권교육교재 개발’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집필은 유동철(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명연(상지대학교 법학부), 박숙경(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박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윤경(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이 하였습니다. 이 책은 교육 교재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지 및 본문 디자인은 (주)지엔퍼링크, 인쇄는 영프린팅에서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10층이고, 담당부서는 인권교육기획과이며 연락처는 02-2125-9856입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551-01

ISBN 978-89-6114-368-4 93330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책을 펴내며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고, 노력해야할 부분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관련 분야는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는 장애인관련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시설관련 사건들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재조명되었던 ‘도가니 사건’이 장애인시설의 인권과 관련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2, 제3의 유사한 사건들이 연이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사건들로 인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거주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간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인권교육의 질을 담보한 표준화된 인권교육 교재 개발이 시급함을 인식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인권교육이 의무화된 장애인시설 종사자와 이용인(거주자)에 대한 교재와 함께 교육기관, 강사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우선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현장 사례를 통해 시설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되짚어보고 장애인 인권 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이 교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

여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 상황 사례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인권 가이드라인을 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 교재를 통해 조금이라도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이 싹트고, 인권을 실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 교재가 장애인복지시설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증진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연구를 해 주신 연구진에게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종사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책을 펴내며 4

I. 장애인과 인권

1. 이론적 근거 12
 - 가. 인권에 대한 이해 12
 - 나. 인권의 내용 18
2. 소수자와 장애인 인권 28
 - 가.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28
 - 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34
3.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45
 - 가. 인권에 대한 오해들 45
 - 나.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과제 47
 - 다. 딜레마 상황에서의 실천 원칙 54
 - 라.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점검 60

II.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법제

1.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원칙 64
2. 장애 및 장애인 관련 법제의 체계 93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운영과 이용에 관한 법적 규율 126



Ⅲ.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

1.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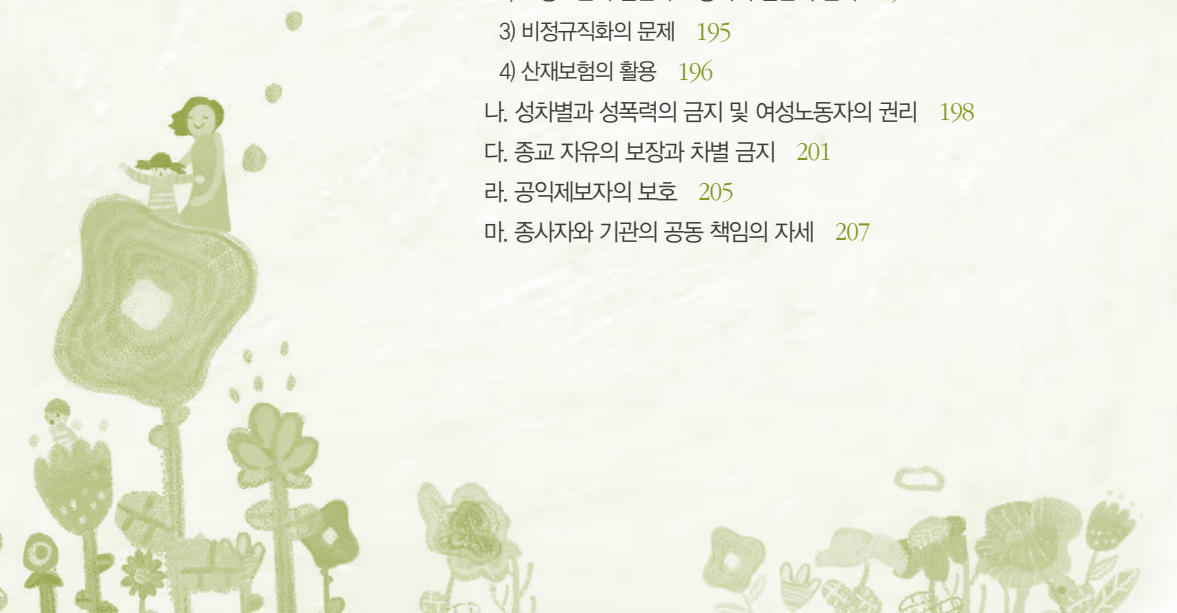
-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역할 162
-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역사 164
- 다. 탈시설의 필요성 170

2.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및 지역사회 연계 174

- 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 탈시설 174
- 나. 지역사회 자립 지원 현황 178
 - 1) 주거 공간 178
 - 2) 자립정착금 181
 - 3) 활동보조 182
 - 4) 소득 183
 - 5)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기관 184
 - 6) 중앙정부 지원 현황 185
- 다.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186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188

- 가.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의 권리 189
 - 1) 근로기준법 준수 190
 - 2) 노동 3권의 실현과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 191
 - 3) 비정규직화의 문제 195
 - 4) 산재보험의 활용 196
- 나. 성차별과 성폭력의 금지 및 여성노동자의 권리 198
- 다. 종교 자유의 보장과 차별 금지 201
- 라. 공익제보자의 보호 205
- 마. 종사자와 기관의 공동 책임의 자세 207



IV.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구제

1.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 210
2. 장애인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권리옹호 제도의 필요성 214
3. 개별 권리구제 수단의 내용과 절차 216

V.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1. 시설 선택 및 입소 과정에서 권리 256
 - 입소결정권 256
 - 서비스 정보접근권 262
 - 계약체결권 267
2.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271
 - 다양한 식생활을 위한 권리 271
 - 자유로운 의복 선택을 위한 권리 276
 - 이·미용 등을 통해 개성을 표현할 권리 280
 -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284
 -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의 권리 292
 - 참여의 권리 296
 - 적절한 주거 환경에 대한 권리 301
3.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306
 - 위생적인 생활과 환경을 누릴 권리 306
 -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309
 - 학대·방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314

4.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325

- 하대 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325
- 성적 존재로 인정받으며 성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329
- 연애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을 존중받을 권리 335
-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 340

5. 사상·양심·종교·정치의 자유 346

- 정치적 권리 346
- 종교의 자유 350

6. 교육·노동·경제·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 346

- 교육권 354
- 시설 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 360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366
- 사회보장수급권 374
- 지역사회 접근 및 외부와 소통할 권리 379
- 강제노동 금지 및 직업선택권 386
-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393
-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 398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403

7. 시설 퇴소 과정에서 권리 409

- 자립을 지원받을 권리 409
- 퇴소결정권 413



VI.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1. 장애인 거주시설 참여형 인권교육 소개 420
2.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예시 424
 - 가. 몸풀기·마음열기 프로그램 예시 424
 - 나. 인권의 원칙을 짚어보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431
 - 다. 이용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441
 - 라. 종사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456

참고문헌 466

부록

1. 세계인권선언 473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477
3. 당신의 인권: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 497
4. 입소자를 위한 기관안내지 512
5. 서비스 계약서 및 안내지 520



I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장애인과 인권



for a New Beginning



장애인과 인권

1. 이론적 근거

가. 인권에 대한 이해¹⁾

1) 인권의 역사

인권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진술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에게 비극일 뿐 아니라 사회적·국제적 차원에서도 폭력과 갈등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사회적·정치적 혼란과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유엔인권센터, 2005;27).

그러나 인권이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인류는 험난한 여정을 겪었다. 노예제와 신분제가 존재하던 고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개념은 꿈같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이처럼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인권을 보편적 권

1 이 원고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장애인 거주시설이용권과정 인권의 개념(박숙경, 2012) 강의용으로 작성된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2 프랑스 인권선언 : 정식 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이며,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였다. 전문(前文) 및 17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조에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선언하였다. 그밖에 입제에 대한 저항권(2조), 주권재민(3조), 사상·언론의 자유(11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17조) 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 이념을 표현하였다.

리로 인정하게 된 것은 인류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문화사의 대가 린헌트(Lynn Hunt)는 <인권의 발명>이란 책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자명한 사실로 요구하고 받아들인 인류의 변화는 인권의 발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사상은 오래전부터 싹터왔지만 인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된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의 사상, 로마의 법과 권리,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지만 이때까지 이야기되던 인간의 존엄성은 왕과 귀족, 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었으며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왕과 신하, 남성과 여성, 신분과 연령 등에 따라 존엄함과 권리가 다르므로 차별은 당연한 것이었다.

인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된 역사는 18세기 말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시민’은 일정한 재산을 갖고 세금을 납부하는 남성에게 한정되었다. 프랑스혁명의 성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²⁾이 ‘인간’과 ‘시민’을 따로 언급한 이유는 ‘모든 인간’이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과 장애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닌 그저 ‘인간’이었다. 이들에게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투표권과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사진 1〉 세계인권선언을 보고 있는 초대 유엔인권위원장 루스벨트 여사

인권이 한층 구체적인 보편적 권리로 격상된 시기는 제1,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였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유럽에서 500만 명의 무고한 희생을,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은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5500만 명의 무고한 희생을 가져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등 홀로코스트³⁾와 인종청소(제노사이드⁴⁾)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한 끔찍하고 잔인한 만행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전쟁의 참상과 끔찍한 인권침해를 목격한 인류는 1945년 국제연합(UN)을 결성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인류 공통의 가치로 채택하기로 했다. 그 결과 1948년 인류가 맺은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이 같은 인류의 자각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작성된 국제 인권 문서와 규약, 그 정신을 수용한 각국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인권의 기초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역시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인권은 부당한 현실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확장되었다. 노예제, 신분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새로운 평등한 세상을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꿈꿀 때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실의 한계에 갇혀서는 인권의 확장이 이뤄질 수 없다. 시설의 종사자들 역시 인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실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3 홀로코스트(holocaust) :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한다(안경환, 2004)

4 제노사이드(genocide) : 특정 집단을 절멸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량학살을 의미한다. 인종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genos'와 살인을 나타내는 'cide'를 합친 것으로 '집단학살'을 뜻한다.

둘째, 인권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당시엔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결국은 이뤄졌다. 단기적으로는 지는 듯해도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보장받으려는 진실의 힘이 이긴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시민혁명, 노예제 폐지, 여성 차별 철폐 등 인권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현실적 한계와 기득권의 저항에 막혀 수없이 좌절했지만 결국엔 긍정적 변화를 일궈냈다. 탈시설화, 이용인과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일도 결국엔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인권의 역사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대한 희망과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려는 우리 한 사람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권의 역사는 누군가 대단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이 써나간 이야기이며, 나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2) 인권의 의미와 원칙

인권은 수많은 사람이 존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인류가 힘겹게 싸워서 얻어낸 열매다.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류 모두가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연대와 같은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현대 인권의 근간을 이루는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단순한 기본적 권리를 넘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넘겨줄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양한 사람의 권리가 부딪치는 현실에서 인권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혼란과 긴장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려면 나침반 역할을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이러한 나침반 역할을 할 인권의 원칙이 잘 드러나 있다(박숙경 외, 2011). 다음의 인권 원칙은 현장에서 시설 종사

자들이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실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보편성의 원칙 |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주인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라고 말한다.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각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인종,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배제 또는 차별해서는 안 되며, 연령에 따른 차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기본성의 원칙 |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고 결코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인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를 제한하고 유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행동을 한 경우 체벌을 받기'로 시설 이용인과 사전 동의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체벌이 이뤄졌다고 해도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대우할 권리는 개인이 양도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상호 불가분성의 원칙 |

세계인권선언은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열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자유와 빵, 즉 자유권과 사회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적 자유권을 억압하거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에 입소한 이용인의 종교선택권을 박탈하거나 외출과 퇴소를 제한하면 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소득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기도 어렵다.

| 법 우선성의 원칙 |

인권은 법률 및 관습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인권에 위배되는 법률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 법률에 의한 권력의 횡포를 막고 독

립성을 유지해 모든 인류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준을 높이려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속성이다. 나치 시절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은 전쟁이 끝난 후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나는 국가의 법과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성실한 공무원이었을 뿐 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아이히만은 무죄였을까? 그렇지 않다. 인류 역사에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 부당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집행된 예는 수없이 많다.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은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아이히만과 같이 인권의 가치에 위배되는 법률과 상부의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경우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 악을 행할 수 있다. 이용인의 자유로운 외출을 제한하고, 종교를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시설 규정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상호 의존성의 원칙 |

인간은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관계는 한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연결되어 있다.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기에 당연히 여러 권리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권리가 무너질 때 침묵해서도 안 된다.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표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침묵한다면 다른 집단을 겨누었던 화살은 결국 나를 향해 돌아오게 된다. 동료 종사자와 이용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독일의 반 나치 신학자인 마르틴 니뮐러의 ‘그들이 처음 왔을 때’라는 다음의 시는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잘 보여준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나치가 공산당원에게 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에게 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순간에 이르자, 항의해줄 누구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펠러 (Martin Niemöller)⁵⁾

나. 인권의 내용

인권은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갖는 것으로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은 관련법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을 살펴보지 않은 채 막연히 추상적 또는 감성적으로 인권을 추측하는 것은 인권에 대해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그러므로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및 헌법과 법률로 정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국제인권장전과 인권 목록

실천 현장과 실생활에서 인권을 구현하려면 인권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역사적으로 구축되어 온 인권 관련 문서와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 목록이다.

5 마르틴 니펠러(Martin Niemöller, 1892-1984) 독일의 반나치 신학자로 그의 시 '그들이 처음 왔을 때는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권 관련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



- 마그나카르타(1215)
- 권리청원(1628)
- 인신보호법(1679)
- 미국의 독립선언(1776)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인권선언, 1789)
- 바이마르헌법(1919)⁶⁾
- 유엔헌장(1945)
- 세계인권선언(1948)
-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48)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 유엔장애인권리협약(2006)

이 중 현대 인권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문서는 「국제인권장전」이다. 국제인권장전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48개 국제인권장전 초안」을 근거로 탄생한 「세계인권선언」⁷⁾과 이를 구체화한 두 개의 규약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⁸⁾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국제인권장전을 토대로 여성, 아동, 이주민, 장애인

6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공화국의 헌법으로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헌법이 제정된 데서 유래한다. 19세기적 자유주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 국가의 이념이 가미된 법률. 근대 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등의 권리를 담은 국제권리협약이 계속 만들어져 왔다. 예를 들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인권장전에 담긴 권리 목록을 장애인의 상황에 맞도록 더 구체화하고 상세화한 것이다.

2) 인권의 내용 : 자유 · 평등 · 연대

이 장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인권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 인권의 근간을 이루는 세계인권선언의 권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인권선언의 권리 〉

| 구분 | 권리내용 | 조문 |
|-----|-------------------|----------------------------|
| 자유권 | 차별 금지· 자기결정 | 1~2조(인간의 존엄· 차별 금지· 민족자결) |
| | 생명· 신체 보존 | 3~5조(생명· 신체 안전· 노예· 고문 금지) |
| | 시민· 정치적 권리 | 6~21조(법· 재판· 사생활· 자유· 정치) |
| 사회권 | 경제· 사회적 권리 | 22~26조(사회보장· 노동· 의식주· 교육) |
| | 문화적 권리 | 27조(문화생활· 예술· 과학) |
| 연대권 | 공동체, 인권 실현을 위한 질서 | 28~30조 |



7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 선언으로 국제인권규약을 비롯한 인권 관계 제 조약의 모체가 되었다. 선언은 전문과 30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1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유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갖는다는 근본이념, 2조는 선언이 정한 인권을 기본적 자유를 모든 사람이 무차별 평등하게 향유한다는 원칙, 3조에서 21조는 신체와 사상의 자유 등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열거하고, 22조에서 27조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28조, 29조, 30조는 실현 가능한 질서로서의 권리 및 그것에 따른 의무 제약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의 채택일인 12월 10일은 유엔에 의해 '세계인권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8 시민· 정치권리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제21회 유엔총회에서 1966년 12월 16일 채택, 1976년 3월 23일 발효, 한국에서는 1990년 7월 10일 발효되었다.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제 권리의 국제적 보장을 정한 국제규약이다. B규약으로 약칭되며 또한 자유권규약이라고도 한다. 규약에 정해진 제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유권 또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18세기 이후의 인권 선언에 거의 언급되어

〈 세계인권선언 조문 〉

1. 천부인권, 인간 존엄의 동등성
2. 차별 금지, 민족자결권
3.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4. 노예나 예속 상태의 금지
5. 고문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
6.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7. 법 앞의 평등
8. 인권침해 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9. 자의적인 체포, 구금, 추방의 금지
10. 공정한 재판의 권리
11. 무죄추정원칙
12. 프라이버시 존중
13. 이동과 거주지 자유
14. 망명의 권리
15. 국적을 가질 권리
16. 혼인의 자유,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
17. 단독 및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
18.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9.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21. 정치에 참여할 권리
22. 사회보장권
23. 노동권
24.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적절한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25.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기아로부터의 해방, 건강권
26. 교육권
27. 과학 진보의 혜택을 누리고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28. 인권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29. 공동체에 대한 의무
30.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활동의 제한 및 금지

있으며, 문명 제국에서는 헌법 기타의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B규약은 그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이 규약에 정해져 있는 제 권리를 존중, 보장할 책임을 지고 즉시 그것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양 규약의 공통 조항인 민족자결권(1조)의 규정 외에 생명의 존중,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사형과 임신부에 대한 사형 집행의 금지(6조), 고문·비인도적 처우와 형벌의 금지(7조), 노예, 강제 노동의 금지(8조), 자의적 체포구금의 금지(9조), 억류자의 인도적 처우(10조),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구류의 금지(11조), 이주·출국·귀국의 자유(12조), 외국인 추방의 조건과 심사(13조), 공정한 재판의 보장(14조), 형사법 불소급(15조), 법 앞의 사람으로서의 승인(16조), 사적 생활에 대한 개입 금지(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조), 표현·정보 입수의 자유(19조), 적의 선동의 금지(20조), 평화적 집회의 권리(21조), 결사의 자유(22조), 가정·결혼의 보호(23조), 이동 보호(24조), 정치에 관여할 권리(25조), 법 앞의 평등(26조), 소수자의 보호(27조) 등이다.

9 경제사회문화적권리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1966년 12월 16일 국제연합 제21회 총회에서 채택, 1976

이와 같은 선언의 내용은 자유권협약과 사회권협약, 다양한 권리협약 등에 의해 구체화되어왔다. 선언과 국제규약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의 내용은 프랑스혁명으로부터 유래한 ‘자유·평등·연대(우애)’의 가치에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으로 범주화된다. 자유·평등·연대는 인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가치란 의미에서 ‘인권의 트라이앵글’로 지칭된다.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 있게 양립할 때 인권이 보장되고 인류 사회는 지속가능하다. 프랑스 인권학자이자 유네스코의 인권부장이던 바삭(Karel Vasak)은 인권의 발달 과정에 따라 자유권을 1세대 인권, 사회권을 2세대 인권, 연대권을 3세대 인권으로 정리하였다.

| 자유권(1세대 인권) |

자유권은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려는 권리 항목으로 세계인권선언 제2조부터 제21조에 걸쳐 규정된 시민적·정치적 권리 항목이 주로 해당된다. 예를 들어 신체, 사상,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 사생활 보호 및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포함된다.

| 사회권(2세대 인권) |

사회권은 평등을 실현하려는 권리 항목으로 세계인권선언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항목이 주로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하고 행동할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문화를 향유하고 추구할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등이 포함된다.

| 연대권(3세대 인권) |

연대권은 개인과 국가가 함께 연대하지 않고서는 지켜낼 수 없는 집합적 권리 항목으로

년 1월 3일 발효. 한국에서는 1990년 7월 10일 발효되었다.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한 조약이다. A규약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도 불리며, 사회국가의 이념에 기초해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개인의 생존을 확보해 행복한 생활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과는 달리 A규약은 규약 가입국에 그 인권의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국내적 사정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양 규약의 공통 조항 민족자결권(1조) 외에 A규약이 정하고 있는 제 권리는 노동할 권리, 기술적·직업적 지도·훈련계획,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6조), 공정·안전·건강한 노동조건, 승진기회의 부여, 휴식·유급휴일의 보장(7조), 노동조합 및 그 연합체의 결성, 그것으로의 가입, 파업권(8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9조), 가정의 존중,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기아에서의 해방(11조), 신체적·정신적 건강, 의료의 보장(12조), 교육을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 구체적 실시계획을 2년 이내에 작성 채택한다는 약속(14조), 과학문화의 보존·발전·보급, 과학연구·창작활동의 자유의 존중,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창작품에서 발생한 이익의 보호, 과학적·문화적 국제협력(15조) 등이다.

로 현재 형성 단계에 있는 권리 항목이다. 제3세계 국가들과 중심부 국가들 간에 양극화하고 있는 국가 간 빈부격차, 국제 무기 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생태 위기 등은 일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간과 지구 공동체 간의 관계 안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다. 발전의 권리, 평화적 생존권, 선주민¹⁰⁾의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인류의 공동 유산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3) 인권 실현을 위한 의무와 책임

인권이 실현되려면 인권을 존중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의무 주체가 없는 인권은 단순한 권리의 나열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인권 실현의 1차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다. 더불어 인권을 가진 모든 개인 역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을 지켜낼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국가가 각 권리의 구성 요소를 입법적으로 인정하고 정책으로 드러내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런 국가의 의무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최소한의 핵심 의무’와 ‘존중 · 보호 · 실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최소 핵심 의무 |

최소 핵심 의무는 국가의 가용 자원의 양 혹은 다른 어떤 요소와 어려움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이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식량, 기초의료, 기본적인 주거와 초 등교육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물에 대한 권리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물 공급을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주거권의 경우에는 강제 철거로부터의 보호 등이 해당된다 (류은숙, 2012).



10 선주민은 원주민을 의미한다. 원주민이란 말이 언어의 사회화 과정에서 덧붙여진 미개성과 원시성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된 용어다.

| 존중의 의무 |

국가가 직접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인권을 누리는 데 방해 요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사상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고문을 행하는 등 직접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확대를 꾀하는 법을 만들어 노동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는 데 방해 요소를 만드는 행위 등도 고의적으로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한다.

| 보호의 의무 |

국가가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 고리대금업자가 폭력과 위협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는 일, 기업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내버려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입법·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 제도와 장애인인권센터 구축 등은 이러한 의무 이행 방법 중 하나다.

| 실현의 의무 |

국가가 인권의 실현과 향상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급여와 보험 제도를 통해 필수적인 기초 건강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 주거 취약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를 제공하는 등 입법, 행정, 사법 조치를 통해 인권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인권 실현을 위한 개인의 책임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 모든 개인은 학습, 인권감수성 증진, 실천의 책임을 갖는다.

| 학습의 책임 |

자신의 인권을 보장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흔히 인권은 그저 느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학습이 필요하다. 인권의 의미와 속성, 인간의 고유성과 평등함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의 폐해, 피해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 대안적인 접근들에 대한 탐구 없이 자기 식대로 이해하면 인권을 오해할 소지가 높다.

| 인권감수성을 증진할 책임 |

인권감수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인간관계와 관행, 제도 등을 인권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감성을 의미한다. 일상과 내가 속한 사회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상대적 약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슴으로 느끼려고 노력해야 한다.

| 실천의 책임 |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인간관계와 관행, 제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인권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권은 그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과 실천의 결과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워 얻어낸 역사적 성과이다. 예를 들어 나의 일상에서 상대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악의적 편견이 담긴 언론 보도에 항의하고 시정하는 것, 특정인(들)을 배제하는 법과 제도에 반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 종사자가 실천 현장에서 기관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이용인을 옹호하는 것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시민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다.

4) 인권 딜레마와 인권 제한의 원칙

다양한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속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동시에 존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 시설장과 시설 종사자,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식의 인권이 부딪히는 경우 양자의 인권을 동시에 존중하기란 어렵다. 또한 죄를 저지를 경우 등 사회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의 인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듯 인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 다음의 원칙들을 유념해야 한다.

(1) 약자 우선의 원칙

‘인권을 제한할 경우 약자의 관점에서 강자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약자 우선의 원칙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게 되는 권력의 속성에서 비롯한다. 인권침해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 강자가 약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노동자를, 교사가 학생을, 남성이 여성을, 어른이 아이를, 내국인이 이주민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진다.

모든 인간관계는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힘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어떠한 관계에서도 미묘한 힘의 차이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러한 힘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게 된다. 부당한 힘의 사용은 위계적 관계, 억압과 폭력, 차별과 무시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그런데 인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공존의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해결하고 줄이려면 약자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려면 약자의 인권을 우선해 강자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자 우선의 원칙을 인식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나 인권 제한의 대상자는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외출하길 원하는 시설 이용인과 효율적인 관리를 원하는 시설 종사자의 입장이 부딪칠 때, 대개 종사자의 입장에서 규칙이 정해지고 이용인은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약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적 약자인 이용인의 관점에서 외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2) 최소 제한의 원칙

인권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할 때에도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최소로 제한해야 하며, 타인과 그 자신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부득이하게 격리해야 할 경우 시행 시간과 정도도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 최소 제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인권 제한이 최대한 이뤄진다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고문과 연좌제 등 인류가 실행해왔던 공포정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최소 제한의 원칙은 시설 보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거주 서비스 지원 방식을 결정할 때 집단생활로 인한 제약을 받는 시설 입소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자립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3) 공공 이익에 따른 제한 원칙

인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 한해야 한다. 사인의 이익을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에 기반을 둔 제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

인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 법률에 의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강자의 마음대로 약자의 인권 제한이 수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법에 의한 법률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여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설에서 이용인에게 격리강박을 하거나 외출 제한 등을 할 때도 법률과 명시적 규칙에 의해야 한다. 간혹 권력의 입맛에 따라 부당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명시화된 법률은 인간의 재량적 판단에 비해 합리성과 정당성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2. 소수자와 장애인 인권

가.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¹¹⁾

1) 소수자의 개념과 특성

(1) 소수자의 개념

장애인의 인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소수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소수자는 단순히 ‘소수(少數)의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수자는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수가 적지 않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은 소수자다.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 인구가 적은 정복민이 아닌 토착민(선주민)이 소수자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구의 3/4이 흑인인데도 흑인이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을 받는 소수자다. 그러므로 소수자는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힘을 갖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위치와 힘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사회에 사람들의 위치와 힘을 가늠하는 ‘사회적 척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누가 소수자인가?’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권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소수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수자인지?’를 결정짓는 사회적 척도인 ‘가치관’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은 손상과 질병 없는 완벽한 신체를 정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소수자로 규정되어 무력해지고 위치가 낮아진 사람들이다. 손상과 질병 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손상과 질병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고 배제하는 사회에 의해 장애 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11 소수자의 인권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 발간한 『인권 일반에 기초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안내서』(장애인인권교육매뉴얼)(2010)을 주로 참조, 인용하였다.

(2) 소수자의 특성¹²⁾

소수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 차별 |

사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들로 치부되어 차별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인과 장애인, 보편적 가치 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동성애자가 차별을 받는다.

| 권력 배제 |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권력인지 모르지만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권력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 여성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정규직 역시 자신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먼저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여성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주인의식이 부족하거나 핵심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그들을 차별하거나 해고한다.

그러나 주류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소수자들은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사회로부터 참고 견딜 것을 요구받는다. 어느 순간 소수자에게 지워진 이미지를 스스로 내면화해 여성 스스로 여성노동자를 비하하거나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된다.

| 집단정체성 |

한 개인의 불리한 조건만으로 소수자로 규정할 수 없다. 차별받고 권력에서 배제되는 개개인의 상황이 특정 집단의 형태로 규정될 때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집단정체성의 인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소수자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12 <장애인인권교육매뉴얼>(2010)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 정치성 |

소수자의 개인적인 일을 비롯한 사소한 문제들은 사회적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이성애자에게 결혼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성소수자에게 결혼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또한 비장애인에게 외출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외출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장애인의 외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동, 활동보조, 예산 등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하므로 소수자의 사소한 일상은 정치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의 결과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소수자와 차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르고 모두가 차이를 갖는다. 그런데 어떤 차이는 차별로 이어진다. 왜 그럴까?

(1) 어떤 차이가 차별로 이어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차이에 대한 사회적 구분은 '운명'에 의한 선천적 차이(장애, 성, 인종 등)와 '노력(선택)'에 의한 후천적 차이(학력, 성정체성, 전과, 가족 형태 등)로 나눈다. 그러고선 선천적 차이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후천적 차이는 본인 책임 또는 일탈 행위이므로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이런 구분은 선천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차이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차별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또한 차이를 차별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잘못, 무능함, 부도덕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돼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배려 받아야 할 소수자와 배려가 필요 없는 소수자를 구별하며 차별을 위계화하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인권은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며 어떠한 사람에 대한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행위에 따른 제재를 받기는 해도 특성을 공유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해를 입힌 범죄자는 범죄의 대가로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지만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권에서 문제되는 차이는 장애, 인종, 성별, 신분과 같이 소수자의 특성이 표적으로 구별, 구분되어 동일한 것으로 묶인 것들이다. 이런 걸 범주화라고 하는데 특정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목적이 잘 대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기 위한 것일 때 문제가 된다. 배제하는 범주화는 그 틀 안에 든 사람(들)의 고유성을 부정하고 외부에서 강요한 틀에 꿰맞추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적이 된 사람(들)의 자존감 해체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날씬한 사람을 선호하는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뚱뚱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이어트를 강요당하는 상황, 장애를 자책해 스스로 집안 행사에서 빠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결과 차이의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사회구조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지 못하여 사회적 배제가 강화된다(류은숙, 2011).

(2) 차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차이가 차별로 전환하는 데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 구체적 개인들과 집단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차별로 전환되는 것은 그 차이가 위계성을 띠게 될 때이다(조순경 외, 2002) 차이가 자동적으로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성된다. 역사학자 거다 러니(2006)는 <Why History Matters: Life and Thoughts>(1997)라는 책에서 차이가 차별로 전환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차이가 차별로 전환되는 공식 >

임의로 겨누는 표적

어떤 '차이'가 선택된다. 그것은 기준(일반적으로 규정을 받는 집단)과의 차이를 명시하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특징이나 범주일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여성이고, 어떤 사람은 검은 피부를 지녔으며, 어떤 사람은 탈북인으로 불리는 집단에 속하며, 어떤 사람은 지능이 낮다.



집단정체성 강요

부정적인 특징들이 임의로 선택되어 그 집단에 첨부된다. 예를 들어 '의존적이며 공사 구분을 못한다'와 같은 부정적 특징들이 '여성 집단'에 첨부된다. 다음에는 이런 부정적인 특징들이 그 집단의 성원 각자에게 해당된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대구지하철 사건 범인이 정신질환자다. 정신질환자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은 위험하다'와 같은 개인정체성이 집단정체성으로 굳어진다.



제도화된 차별

표적으로 설정된 집단은 차별적인 법률과 관행으로 인해 권력과 자원, 특권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는 그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열등성을 둘러싼 관념을 심화시킨다.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장애 차별 등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인위적으로 창조된 '일탈'을 강화한다.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

'일탈자'로 지정되고 제도화된 차별에 의해 희생당한 집단의 성원들은 지배 집단과는 다른 역사적 현실을 경험한다. 그들은 모든 집단적 사건들을 피억압자의 관점에서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분리된 경험은 한편으로 그들이 생존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다음의 일정한 공식에 의해 표적화한 차이는 차별로 전환되지만 이러한 과정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이'가 필연적으로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구성하게 되고,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는 구조를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구획된 '차이'를 서로가 그저 인정하는 것(이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정도에서 반차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면 기존의 지배 규범에는 아무런 균열을 내지 못한 채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시혜'의 관점에 머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소수자의 반차별 투쟁은 지배 규범과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문제 제기이며 대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별이 양산되는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소수자 관점에서 소수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주체가 되어 사회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한다.

(3) 차별이 유지, 강화되는 이유

문제투성이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사회의 경우 위계가 강한 유교문화 속의 성, 연령별 위계 구조는 충, 효, 장유유서와 같은 도덕과 선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것을 마치 예의도 모르거나 조화와 화합을 해치

는 행위로 간주해왔다(조순경외, 2002). 이렇듯 차별이 사회질서 혹은 관습으로 굳어져 온 상황에서는 차별로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한 사회 내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차별의 벽은 소수자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감, 무기력감을 내면화함으로써 저항의 싹이 트는 것 자체를 억제하기도 한다. 소수자들이 권력과 자원에 접근하는 것 역시 어렵다. 또한 차별에 대한 대처 방식도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 화장실을 여성과 남성의 구분 없이 하나만 만들거나 여성화장실에만 유아용 받침대를 만드는 경우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며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다.

(4) 소수자는 차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소수자들이 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수용’과 ‘저항’ 두 가지로 구분된다.

‘수용’은 오랜 억압의 역사에서 저항의 대가가 가혹했다는 경험을 통해 현 차별 기제에 순응하며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태도이다. 살기 힘든 사람일수록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되면 더 살 수 없다고 느껴져서 기존 질서에 더욱 충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복지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노인들이 옹호하고 지지하는 현상은 이 같은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데 대한 심리적 불안감으로부터 유래한다. 오랜 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억압감을 느끼면서도 시설 종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도 같다.

‘저항’은 기존 질서가 규정하는 소수자의 지위를 거부하고 나를 차별하는 질서를 문제 삼고 이 질서를 해체하려는 행동이다. 2009년 6월 시설에서 살고 있던 8인의 장애인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 투쟁을 했다. 지내던 시설에서 나온 그들은 자립대책을 요구하며 기존 질서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당시 서울시와 일부 시민들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나온 그들을 탓하며 비난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차별 현실을 폭로하며 대책을 요구한 결과, 서울시에 공적 전달 체계로서 탈시설 전환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탈시설정착금 지원 확대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급기야는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련의 변화를 일궈내게 되었다.

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은 특수 집단의 인권이면서도 세계 보편적 인권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지시적 경험이며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이다. 장애는 인권을 비취주는 역사의 거울이며 장애인의 인권은 인권의 완성을 위해 인류에게 던져진 본질적 질문이다(김민아 · 이익섭, 2007).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이를 위해 역사적으로 장애인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올바른 장애 관점과 개념은 무엇인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유형은 어떠한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외 노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장애인 차별의 역사

장애인은 소수자 중에서도 인권침해와 차별을 가장 심하게 받아온 집단이다. 역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편견과 차별을 받아왔다. 그러한 부당한 대우는 장애에 대한 무지, 잘못된 이해와 함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구조 탓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은 그가 속한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흔히들 ‘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겨난 육체의 손상이며 장애인은 손상에 따른 불운과 비극적 사건을 겪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장애를 개인의 불운, 전생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유기’와 ‘살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원시시대 장애인은 악마가 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미신과 편견에 바탕을 둔 유기, 학대 등은 원시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통적 처우였으며 이는 고대사회에서도 계속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추하고 쓸모없다고 하여 장애인을 유기함으로써 굶어죽게 했고 특히 미와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존중한 스파르타에서 장애인은 추한 인간의 표본으로 간주되었다. 스파르타 법전은 강건한 국민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아와 허약아를 유기할 것을 규정하였다. 아테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감각론에서 모든 능력 중 동물의 생존에 가



장 중요한 것은 시력이지만 지적 성장에서는 청력이 중요하다고 하여 듣는 것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여겼다. 따라서 청각·언어 장애인은 사상의 그릇인 언어를 소유하지 않고 있어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해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플라톤

역시 그의 저서 <이상국가>에서 인구와 재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산아의 수를 통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허약아나 불구 아동은 살해하거나 유기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심한 편견과 학대를 받았는지는 정신지체·정신박약의 어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백치라는 의미인 ‘idiot’은 그리스어의 ‘idiotas’에서 나온 것으로 ‘추방된 자’, ‘악마가 붙은 자’ 등을 의미한다(이정환·변보기·노병일, 2002). 우생학¹³⁾이 강조되던 나치 정권 아래에서 장애인은 가장 먼저 끔찍한 학살을 당한 피해자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센인 등을 학살한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안락사에 대한 나치 프로그램 이외에도 스칸디나비아와 북아메리카, 우리나라 등 전 세계에서 이뤄져온 강제 불임수술, 생활시설에서 일상의 학대 등이 있어왔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처럼 노골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장애인 인권침해’는 줄어들었지만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은 형태를 달리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 올바른 장애 관점과 장애 개념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한 결과, 장애에 대한 정의는 점차 개별적 손상과 질병에 의한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사회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개념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장애의 개념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개인

13 우생학은 1883년 영국의 F.골턴이 처음으로 창시한 학문이다. 유전학·의학·통계학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진 사람의 발생에 관한 모든 조건과 인자가 연구의 중심이 된다. 이것을 기초로 악성유전성 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유전성 정신병(정신분열증·조울증 등), 백치 등의 정신박약, 유전성 기형, 혈우병 등의 환자를 강제 또는 임의 단종시키는 우생법만이 제안되어 부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운용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단종법(斷種法)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자나 알코올중독 환자까지 그 범위 내에 포함하고 있으며, 또 강제법으로 하고 있는 주(州)도 있다. 독일의 나치스 때 시행했던 극단적인 우생 정책은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전 소질의 개혁보다도 환경과 교육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인류를 개량해야 한다는 과학이 있는데, 이를 우경학(優境學; euthenics)이라고 한다(출처: 두산백과사전).

의 손상과 의료적 접근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개인·의료 모델로 분류된다. 이 관점은 개인의 신체적 손상을 장애로 보기 때문에 장애는 개인적 비극의 산물로 간주된다. 한 사람의 기능적 제한(impairment)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불이익의 근원으로 이 모델에서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없앤다는 것은 손상을 없애거나 극복하는 것인데 이는 ‘치료’ 또는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개인·의료 모델에서 ‘장애인은 주류 사회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치료되고, 다뤄지고, 변화되고, 개선되어 정상화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분리된 환경에서 치료받는 것을 정당화해왔다(김용득·김진우·유동철, 2007).

두 번째 관점은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이다. 사회적 모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는 장애인이 사회적 억압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갖추지 못한 데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적 모델에서 장애는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적 실패를 의미하며 따라서 장애에 대한 책임 역시 사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모델은 영국의 UPIAS(분리에 반대하는 지체장애인협회·Union of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1976)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핀켈스타인(1980), 올리버(1983) 등의 학자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다음은 UPIAS가 정의한 ‘장애 개념’인데, 장애인 당사자 집단이 ‘장애인’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스스로 해체하고 재해석한 후 정의한 것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의 관점에서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이다. 장애는 사회의 완전한 참여에서 불필요하게 고립되고 배제됨으로써 우리의 신체적 손상에 덧붙여 부과되는 것이다. (중략) ‘장애는 신체적 손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거의 또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사회 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시키는 당대의 사회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한’을 말한다.

– 분리에 저항하는 신체장애인 연합,
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ies –
(김도현, 2009)

장애에 대한 인권적 관점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역사 속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유기하거나 심지어는 살해하게 된 근간에는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만 바라보고 그를 둘러싼 사회의 책임을 바라보지 못한 관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든 사회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의 특성만이 아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범위, 즉 사회 안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애’ 역시 어떤 개인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손상’이 그녀 또는 그가 속한 사회와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애’는 장애인이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 체계인 경제·사회·문화·정치 구조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장애인 인권의 핵심과 발달 과정¹⁴⁾

장애 개념의 변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장애에 대한 관점은 자선적인 접근에서 권리에 기초한 접근으로 변화해왔다. 1981년 유엔총회에서는 회원국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촉구하며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이듬해인 1982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했으며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정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세계장애인 10년’이 끝나가던 199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는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과 세계장애인 10년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라 ‘세계장애인 10년’을 계승, 발전하려는 취지의 ‘아태장애인 10년’을 선포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2가지 행동 강령을 채택했으며 각국의 장애 시책 진전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위해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회의를 격년으로 소집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은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사회에

14 박숙경, 『장애와 인권』(인권법)(2005)에 게재된 원고를 참조 보완하였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장애인이 연령과 성별 등의 사회적 조건에 맞는 보편적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장애인을 위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거나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작업장 등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하고 고용하는 기존 장애인 정책은 반인권적인 것이다. 시설 보호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과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요구의 바탕엔 이 같은 국제사회의 고려와 운동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이 시작된 것은 1980년 중반부터다. 본격적인 계기는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최소한의 장애인 복지제도도 갖추지 않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사회에서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올림픽 거부 및 장애자생존권보장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다. 88올림픽 거부 투쟁과 생존권 확보 운동을 주도했던 장애인 인권운동의 주체들은 장애 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풀어가기 위해 조직적 운동의 토대를 세워나갔다. 이후 1993년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왔던 시민운동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사회권 확보로 관심이 옮겨오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토대 위에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고 장애인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8년 12월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선포하며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장애인인권헌장은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룬다는 추상적 의미만 있을 뿐 법적 실효성이 없는 선언에 불과했고, 장애인복지법제 역시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아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유엔이 8번째로 채택한 인권협약으로 2006년 9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가입 당사국이 장애에 대한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인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의 당사국 상당수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

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혹은 기회평등법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핵심 내용 〉



-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위의 인권을 향유해야 함
- 차별 금지와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함
- 사회적 장벽 제거를 위한 편의 제공과 적극적 조치 결여는 차별임
- 영양, 수질, 공중위생, 빈곤 완화, 사회보장, 교육, 고용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실현해야 함
- 장애의 종류와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막론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함
- 모든 정책 형성 과정과 평가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함

우리나라 역시 2007년 4월 수년간의 투쟁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4)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1) 인권침해와 차별의 개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크게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된다. 인권침해와 차별은 어떻게 다를까? ‘인권침해’의 사전적 의미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로 영어로는 ‘human rights abuse(violation)’로 표현된다. abuse는 남용과 학대 등의 괴롭힘을 의미하며 violation은 침해를 의미한다.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또는 여럿 사이의 차등을 두어 구별함’으로 영어로는 ‘discrimination’으로 표현된다. 사전적 의미를 해석하면 인권침해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차별 유무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따로 구분해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의해 행해진 경우’만 진정 사건으로 다룬다. 반면 차별 사건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인·단체·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도 진정 사건으로 다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외 다양한 국민을 대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가 아닌 사건도 다루게 된다. 차별 사건의 경우 일반 인권침해 사건과 달리 사인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는 이유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진정 사건 기준을 보면 ‘인권침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를, 차별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등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인권침해는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차별은 특정 집단을 다르게(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특정 집단의 불리한 여건을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결과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차별 금지에 초점을 두어 발달해 왔다. 발생 원인인 장애인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인권침해를 막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유엔 고등판무관에서도 ‘장애인의 권리 논쟁은 특별한 권리 향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제라드퀸, 테레지아 데게너 외, 2005)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 논의는 차별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장애인 차별 양상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하고 뿌리 깊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차별은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장애인이 폐쇄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거의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¹⁵⁾

일상에서의 장애 차별은 어떤 양상으로 발생할까? 중요한 권리 영역별 차별 양상을 살펴보자.

첫째, ‘참정권’의 경우 선거 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거나 투표소를 2층에 설치해 접근을 차단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서는 것을 제한하거나 비하하는 사회적 장벽 등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

둘째, ‘자유권’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미비 또는 적절한 이동수단과 활동보조인 지원 등 사회적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데 따른 심각한 이동의 제한이다. 또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신고시설에 수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있어 ‘자의에 의해 구금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재가(在家) 장애인의 경우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사회적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 장애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되고 있지 않다.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지체인의 경우 보조인의 참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 또는 결여, 즉 ‘합리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셋째, 사회권의 경우 대부분의 장애인은 노동을 통한 수입을 갖지 못하고 빈곤과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는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¹⁶⁾ 또 교육에서도 장애로 인한 교육기회의 차단, 적절한 교육 환경의 부재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상으로 권리 영역별 장애인 차별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장애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침해가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5 즉 강제 입소와 퇴소 금지가 이뤄질 경우 이동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문제 시설에서 감금과 폭행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신체의 자유 침해, 종교 선택 및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 참정권,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와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의·식·주와 건강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권리가 심각한 수준에서 상충의존적으로 침해받게 된다.

16 장애인의 수급률은 전체 인구 대비 수급률의 3배를 넘고 있으며 장애인실업률은 평균 실업률의 약 10배에 달하는 2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업률은 70%를 넘으며 그나마 취업이 된 경우도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가 있는 여성 또는 아동, 노인, 이주민, 동성애자 등 다중적 차별 구조에 놓인 사람들의 차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가부장제로 인한 여성 차별이 더해져 교육과 노동 등 각종 여건에서 남성 장애인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편견에 의해 무성(無性)적 존재로 치부당하거나 모성을 박탈당하는 등 이중적 차별 구조도 심각하다. 장애아동과 장애인노인의 경우는 그나마 문제 제기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최근 지적장애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기 노령화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3) 장애인 차별 유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에서 차별 유형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6가지 차별 유형 〉

| 주요내용 | |
|------------------------|--|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 광고를 통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
| 장애인 대리·동행자에 대한 차별 |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행위 |

이상의 장애 차별은 크게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범주화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을 장애를 문제 삼아 차별하는 경우다. 장애를 이유로 강제 불임 시술을 행하거나 강제로 감금 또는 유기하는 행위, 회사나 대학의 모집 요강에서 장애인을 제외하거나, 식당과 목욕탕 등에서 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전신마비 장애인이 직접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카드 발급을 거부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간접차별은 직접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거나 장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채용 시험 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편의 제공(충분한 시간, 확대경이나 노트북 등 보조기기 사용 지원 및 허용, 보조인 지원과 허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또는 수화 통역 등)을 하지 않아 장애인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사례, 형사 조사 과정에서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형을 받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상 여섯 가지 차별 유형 이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32조에서 ‘괴롭힘과 학대’를 따로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학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이자 신체의 자유와 존엄할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괴롭힘과 학대를 따로 규정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학대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데 있다.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괴롭힘과 학대에 해당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 영화 <도가니>에서 드러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폭행 및 착취 등을 전형적 예로 들 수 있다.

(4) 장애 차별 발생 이유

이러한 장애 차별은 왜 발생할까? 장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 차별 발생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한다(두산백과사전). 차별을 생성하는 자의적 기준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로 만들어져 문화와 제도를 통해 학습되고 전승되는 것이다. 장애인을 ‘비정상’이라 판단하고 차별하는 ‘정상성’도 사회적으로 생성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¹⁷⁾

장애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나가는가는 정책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실천에도 깊이 영향을 준다. 장애를 개인의 손상으로 보는 개인·의료 모델 관점에서 장애인은 정상 범주를 벗어난 사람으로 치료와 재활, 훈련 등을 통해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깝게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다.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에게 닥친 불운으로 받아들여 나 또는 우리가 함께 책임질 사회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경쟁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공동체의 효율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며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효율성만을 추구해 주위 사람들을 배제하기 십상이다. 경쟁과 효율이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지속·강화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온정주의에 기반을 둔 자선적인 장애인 정책과 분리주의 역시 장애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시설 보호는 자선적이고 분리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예다. 서구 국가들이 1970년대 이후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시설 보호가 자선적이고 분리주의적인 반인권성을 갖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리주의 정책은 그것이 아무리 인도주의적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이다.



17 차이가 차별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글 앞 '소수자 인권'의 내용 참조

3.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가. 인권에 대한 오해들

인권교육에서 사회복지실천가(practitioner)¹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주로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사회복지 실천 현실을 모르고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문제 제기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인권의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사회복지 현실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인권침해를 행하는 사회복지실천가와 시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한다.”

둘째, ‘이용인 최선의 이익 추구하고 자기결정권 보장의 딜레마’에 관한 문제 제기다. “당뇨가 있는 지적장애인 A씨가 사탕을 계속 먹고 싶어 한다고 사탕을 계속 주란 말인가? 현실을 잘 모르고 인권에 대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다. 무한정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은 엉망이 될 것이다.”

셋째, 이용인 인권만 강조한다는 문제 제기다. “사회복지실천가들도 사람이고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데 왜 이용인들의 인권만 강조하는가?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 제기는 학생 인권과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제기된다.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¹⁹⁾ 현장에서 제기되는 이 질문들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들이 제기하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오해와 거부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풀어가야 한다.

18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전문직의 활동이다(1974,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인권 기반 장애인 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인권감수성과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에 기반을 둔 주체적인 실천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종사자(從事者)’는 ‘어떤 일을 직업으로서 하는 사람’으로 가치중립적이고 다소 순응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고려에서 ‘인권 기반 장애인복지 실천을 다루는 이장에서는 ‘시설 종사자대신’ 사회복지실천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 학생과 시설 이용인 모두 사회적 약자란 점, 학교와 시설 모두 규율과 집단생활이 강조된다는 점, 교사와 학생도 종사자와 이용인과 같이 위계적 관계란 점 등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학생 인권과 이용인 인권 이슈는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교육 촉진자²⁰⁾는 ‘사회복지사들이 인권을 학습하고 구현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만은 아님’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인권을 자유권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이 글 앞 ‘인권에 대한 이해’에서 다뤘듯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사회복지 실천은 인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한편 사회복지란 그 자체가 사회권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인권은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인권 옹호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부 시설에서 발생해온 인권침해 사건들로 인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이나 강제노동, 악의적 착취와 같은 심각한 자유권 침해만이 인권침해인 것은 아니다. 심각한 인권침해는 단 1건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며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 특히 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은 인권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교육 촉진자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핵심이지만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자기 결정, 예를 들어 자신을 해치는 행위(자살 충동 등)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보장이 아닌 방임에 가깝다’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글 앞 ‘인권의 속성’에서 살펴보았듯 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자기 결정 존중을 방임과 혼동하는 현실’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현실은 사회복지실천가 스스로 한계를 직시하고 좀 더 진취적으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 모색’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다양한 딜레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²¹⁾ ‘자기결정권 보장’은 이용인과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최선의

20 인권교육에서 교육자의 역할은 위계적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교육 참여자가 스스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실천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런 취지로 이 글에서는 인권교육자를 ‘촉진자’로 표현한다.

21 자기결정권 보장은 매우 조심스럽고 예민한 주제로 적용 원칙을 단순화할 경우 ‘자기결정권 내용의 도덕적 정당성과 최선의 이익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또는 사람에 의해 재량적 판단이 이뤄지고 그 결과 상대적 약자인 시설 이용인의 자기결정권 대부분이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결정 과정을 이용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교육 촉진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인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이유는 이용인의 인권 상황이 사회복지실천가들보다 열악하고, 사회복지실천가와와의 관계에서도 이용인이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직업적으로 이용인 인권을 보장할 윤리적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 배제, 학대, 강제, 차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다보면 '강자로부터 약자에게 인권침해가 행해지는 공통적 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인권침해는 '어른이 아이를, 교사가 학생을, 사업주가 노동자를, 내국인이 이주노동자를'과 같이 상대적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유인력(萬有引力)의 법칙과 같이 인권침해도 강자로부터 약자에게 인권침해가 이뤄지는 일정한 힘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른바 만유인권(萬有人權)의 법칙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 관점은 사회복지실천가와 이용인과의 관계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이용인의 인권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고용주인 시설장과 종사자와의 관계 등 사회복지실천가가 상대적 약자인 경우는 사회복지실천가의 인권 보장을 강조한다.

나.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과제



1) 인권 학습 제대로 하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인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인들이 인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권은 상호관계 속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학습하고 요구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 학습은 검증된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사회복지실천가와 이용인 양자가 참여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권교육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의제와 과제를 도출하며 합의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인권교육은 인권 학습을 도울 촉진자, 인권 학습의 내용, 인권 학습의 방법 세 가지가 모두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권이 강조되면서 인권교육 요구가 폭주하고 있지만 사실 인권과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제대로 학습하도록 도울 사람은 많지 않다. 제대로 된 커리큘럼과 내용 등 인권과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학습 자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친인권적인 인권교육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적다. 그 결과 현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행해지는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인권교육이 일회성 또는 외부 전문가에만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실천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지속적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은 1년에 4시간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는 최소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1회 교육으로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인권 개념을 소개하거나 인권감수성을 가볍게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실천가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모색이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 전문가에만 의존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과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인권이 실천 현장에 적용되려면 실천가들이 주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현장의 이슈들을 바탕으로 인권을 기반으로 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교육의 핵심인 사회체제와 인간관계 안에 내재된 권력관계와 갈등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위계적 관계와 체제 유지를 위한 순응적 태도를 정당화하는 교육이 아닌,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도 문제지만 인권을 어설피게 또는 잘못 이해하는 것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침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인권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인권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쟁 발발의 명분이 되기도 한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 주된 명분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였다. 인권을 빌미로 한 전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공동체와

문화가 파괴되고, 폭력과 살상이 난무하고,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지양해야 할 인권교육의 예를 들자면, △ 외부 전문가를 통해 2~4시간의 1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 △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하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해 질서유지와 시민의 순응을 강조하는 교육 △ 인권을 유행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하나로 해석해 이념과 철학이 간과된 기능적 방법론으로 다루는 경우 △ 상급자가 하급자를, 사회복지실천가가 이용인을 교육하는 등 위계적 상하관계에서 전달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돈보다 사람이 우선된 가치

효율성과 비용 문제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그러자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탈시설화를 할 경우 가족들의 고통도 늘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주장에는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내재한다.

인권에 기반을 둔 실천의 가장 큰 전제는 지금 내 옆의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다수의 이익, 시간 대비 효과성을 따지게 될 경우 한 사람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게 된다. 한 사람의 인권을 소홀히 다룰 경우 인권은 늘 추상적 원칙에 머물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

3) 평등한 관계 맺기

사회복지실천가는 이용인과 평등하고 상호 참여가 보장된 ‘파트너십’을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사회복지실천가와 이용인 간의 권력 배분과 공유가 이뤄지는 관계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기획·제공·평가 전 과정에서 이용인의 참여와 상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양자 관계에 내재한 권력의 불평등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가는 이용인에 비해 사회적 권위, 자원 배분 권한, 정보의 양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스스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평등한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다. 모든 인간관계는 개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미 파워게임이 이뤄지는 힘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권력관계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자신이 가진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나아가 상대가 부당하게 힘을 사용하는 것에 저항할 수도 있게 된다.

4) 사회적책임과 구조적 한계 직시

이용인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한계와 책임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구조의 한계와 책임을 간과한 채 이용인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바라보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이용인을 대상화하고 이용인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소진감이 커지게 된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비폭력 지향과도 연결된 과제다. 폭력과 억압적 현실을 양산하는 폭력적 구조를 보지 못하고 폭력적 구조의 피해자인 개인만을 바라보는 실천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인권 기반 실천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한계를 직시하고 분석하며 거시적인 사회구조 개선과 미시적인 개인의 변화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있으나 활동보조인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재로 죽어간 중증장애인의 죽음,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11살짜리 손자를 돌보던 할아버지가 더 이상 손주를 돌볼 방법이 없어 동반 자살한 사례는 24시간 활동보조인 제도화 등의 거시적 정책의 변화 없이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례다. 직업 생활을 하기 어려운 성인 장애인의 가족에게 부양 의무 책임을 물어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한 폭력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5) 권리 관점에서 이용인 욕구 사정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은 실천가가 이용인 스스로 욕구를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용인의 욕구 이면에 숨겨진 권리 실현을 돕는 것이다(짐 아이프, 2001).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실천가들은 이용인의 욕구를 대신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천가는 이용인의 욕구를 정의하는 사람이 아닌, 이용인 스스로 욕구를 인식하고 정의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사회복지실천가가 타인의 욕구를 정의할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권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짐아

이프, 2001).

욕구를 스스로 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일 뿐 아니라 능력 고취 (empowerment)의 과정이다. 그렇다고 실천가들이 이용인의 욕구와 관련해 아무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실천가는 이용인이 스스로의 욕구를 인식하여 두려움 없이 표출하고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제공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이용인의 욕구 정의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이용인이 정의한 욕구가 어떤 권리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러한 권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6) 이용인 참여 보장

인권 기반 실천의 핵심은 장애인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고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 과정에서 이용인의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박숙경, 2009).

첫째, 서비스 실천 전 과정에 이용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용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용인의 불만과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공식 절차를 구축, 이용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셋째, 이용인의 참여권은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배려 차원이 아닌, 이용인들이 당연히 갖는 민주적 권리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용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이 실천가들에게 번거롭고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서비스 이용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관계의 상대방인 장애인이 권력을 갖고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절차가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져 속도가 느려지고 피곤해지며 실천가의 주도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혁신 초기에 나타나는 시행착오와 불편함을 미리 예측하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7) 대화적 실천

짐 아이프 교수는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권에 기반을 둔 실천은 사회복지실천가가 이용인과 대화하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대화적 프랙시스(dialogical praxis)²²⁾를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거주시설 현장에서 제기되는 인권 이슈들은 개인적인 이슈들로 하나하나가 다를 수밖에 없다.²³⁾ 따라서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제기되는 인권 이슈에 대한 인권 기반 실천은 하나의 원칙으로 풀어가기 어렵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실천 과정에서 대화가 중요한 이유다.

예를 들어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 절차를 인권을 고려해 개선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조율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은 제기된 이슈에 대해 해당 이용인의 생각은 어떤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제기된 내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떤 강점과 단점이 있는지? 넘어야 하는 장벽은 무엇인지? 실천가로서 나는 무엇을 고민하는지?

여유를 갖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용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용인과 실천가가 대화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함께 풀어가갈 수밖에 없다. 우선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인권 원칙을 통해 함께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대화를 시작하고 평등한 대화 과정에 대한 학습과 성찰이 필요하다.

만약 대화조차 쉽지 않은 자폐성 중증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매우 강하게 자기주장만을 반복하거나 끊임없이 이익을 제기하는 이용인을 지원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한 추론적 과정을 담보하

22) 프랙시스는 이론과 실천 혹은 알고 행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으며 이론과 실천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우리가 실천/행동을 개발해내는 것은 이론/반성을 통해서이며 동시에 이론/반성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실천/행동을 통해서이다.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배우게 되고 배움으로써 행하게 된다. 따라서 프랙시스에서 지식과 행동 양자에 대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쓸모없고 근거 없는 부적절한 것이며, 지식 없는 행동은 반지성적이고 무익하며 위험한 것이다(짐아이프, 2001, p231).

23) 사적인 이슈는 사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II장에서 설명한 '소수자의 사적인 욕구가 정치적인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설명 참조.

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용인에게 최대한 의견을 물어 이용인 스스로 의사를 표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

자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두렵고 막상 시설을 나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이용인 00씨'에 대해 생각해보자.

실천가가 이용인의 욕구를 직접 정의하고 판단하는 관점에서 '이용인은 자립생활을 선망하지만 서비스와 자원 부족, 가족들의 반대 등 장벽이 높고 이용인 역시 자립생활과 가족의 반대에 대한 두려움이 커 자립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반면 권리 관점에서 욕구 사정을 하면 실천가는 '00씨의 바람은 무엇인지? 바람을 표출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통해 00씨 스스로 욕구를 정의하도록 돕는다. 동시에 00씨가 정의한 욕구 이면의 권리를 살펴보고 00씨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00씨의 욕구 이면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자립생활을 원하는 00씨가 주변에 미안해 하지 않고 스스로의 바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자립생활의 바탕에 깔린 '거주지 이전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의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가족들을 설득하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00씨는 '가족들의 반대와 자립생활에 대해 두려워하는 감정'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다 능동적으로 자립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된다.



다. 딜레마 상황에서의 실천 원칙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은 딜레마(dilemma)에 봉착한다. 특히 의사 표현과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을 지원해야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실천가들은 더 많은 딜레마를 매순간 경험하게 된다. 거주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가들이 인권과 관련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상황에서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룬다. 여기서 다룬 원칙은 이 책 뒤 IV.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 보장에서 권리 영역별로 제시된 사례의 실천 원칙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딜레마는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딜레마는 이용인과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이용인의 욕구가 사회적 윤리 또는 실천가의 윤리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와 이용인 욕구 이면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이용인의 바람이 사회적 윤리 또는 실천가의 윤리적 견해와 부딪히는 경우'다. '성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 장애인이 자위행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경우', '원치 않는 임신한 지적장애여성이 낙태를 원하거나 또는 아이 양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길 원할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후자는 '이용인의 욕구 이면에 담긴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헤어지길 원치 않는 지적장애여성의 경우 신체 안전의 권리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 가정을 이룰 권리' 등이 충돌하게 된다. 또 '비만과 당뇨병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인스턴트식품을 계속 먹으려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 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천가들은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지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 같은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해 실천가는 '인권 기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딜레마를 검토하는 과정'과 '딜레마로 규정된 권리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

정'과 '인권 제한의 원칙'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1) 인권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딜레마 재정의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결정인가?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실천가의 가치 즉 실천가의 윤리적 판단 기준은 이용인을 비롯해 문제에 관련된 모든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효선, 2010). 이때 실천가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딜레마를 규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천가 자신의 종교, 도덕관, 자라온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가치판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 기반 실천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현장에서 딜레마로 제시된 상황 중 상당수는 딜레마가 아닌 경우가 많다. 절대적 윤리 기준 또는 자신의 견해에 간혀 상대 의중을 잘못 읽었거나,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주변의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딜레마를 규정하기에 앞서 실천가는 자신의 의사결정을 성찰하여 딜레마가 인권원칙과 가치를 고려해 명료하게 규명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용인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보호, 이용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효율성과 효과성, 정의의 원리' 등 다양한 가치의 충돌들 속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나 인권 기반 의사결정을 시행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 성장의 과정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 약자의 관점에서 실천가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 차분한 대화와 공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상당수의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은 흥미진진하고 신비로울 수 있다. 다음의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의사결정 과정'은 실천가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딜레마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인권 기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01. 이용인의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에 앞서 사회복지실천가와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식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운다.
02. 이용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용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용인이 욕구를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03.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장벽에 우선하여 이용인의 강점과 권리를 먼저 확인한다.
04. 가능한 여러 관점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문제 혹은 딜레마를 규정한다.
05. 이용인이 정의한 욕구 이면에 내재한 권리 항목을 살펴본다.
06. 관련된 윤리 강령과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제가 있는지 검토한다.
07. 동료, 슈퍼바이저 혹은 인권 기관 및 권리 옹호 단체에 자문을 구한다.
08. 가능성 있는 행동 노선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다.
09.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른 선택이 미칠 영향의 경중을 판단해 이용인에게 설명하고 이용인과 함께 특정 행동 노선을 결정하도록 돕는다.
10. 모든 과정에서 이용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용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 윤리적 원칙의 우선순위 결정

이상의 인권 기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천가는 이용인의 욕구가 사회적 윤리 원칙 또는 실천가의 윤리 원칙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와 맞닥뜨릴 수 있다. 이때 실천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이용인이 아이를 낙태하려고 하거나 또는 아이를 낳기 어려운 건강 상태에서 아이 낳기를 원할 때 실천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다.

아래 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윤리 원칙 우선순위’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제안을 정리한 것이다. 학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생명 보호가 가장 상위에, 다음으로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양옥경과 이효



선이 제시한 우선순위는 리머와 로웬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내용을 참조해 재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자기결정권이 점차 더 강조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본 뒤 나라면 어떤 우선순위를 적용할 것인지? 스스로 정리해보자.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실천가들이 이용인 욕구 이면의 권리 항목과 윤리 원칙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대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도울 것이다.

〈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의 우선순위 〉

| 구분 | 리머(1995) | 로웬버그와 돌고프(2005) | 양옥경 2004 | 이효선 2010 | 나 |
|---------|-------------------|-------------------------|-------------|-------------|---|
| | | 윤리적 사정 ↓ 윤리 강령 적용 | | | |
| 윤리 원칙 1 | 기본 재화 우선 원칙 (의식주) | 생명 보호의 원칙 | 생명 보호의 원칙 | 생명 보호의 원칙 | |
| 윤리 원칙 2 | 개인의 행복추구권 |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자기 결정권 | 자기 결정권 | |
| 윤리 원칙 3 | 개인의 자기결정권 |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 비밀 보장과 알 권리 | 사회 정의 | |
| 윤리 원칙 4 | 규칙준수 | 최소한 해악의 원칙 | 균등한 기회 제공 | 비밀 보장과 알 권리 | |
| 윤리 원칙 5 | 공익 우선의 원칙 | 삶의 질의 원칙 | 규칙 준수 | 공익 우선의 원칙 | |
| 윤리 원칙 6 | |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밀 보장 원칙 | | | |
| 윤리 원칙 7 | |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 | | | |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무들 사이의 갈등 상황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참고로 제시하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Reamer, 1995: 60-64)²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무들 사이의 갈등 상황에 대한 적용

01. 인간 행동의 필수적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평정)에 대한 기본적인 해악을 막는 규정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거나, 여가,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적인 물품에 대한 위협과 같은 해악을 막는 규정보다 우선한다.
02. 인간 행동에 필수적인 재화를 포함해 기본적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
03.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04.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상충하는 방식에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관계할 수 있는 권리에 우선한다.
05.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가 자발적인 협회의 법률, 규칙, 규정, 협정과 상충될 때 개인의 복지권이 우선한다.
06. 기아와 같은 기본적인 해악을 방지하며, 주거, 교육, 공적 보조와 같은 공공재화를 조성하기 위한 의무가 재산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권리에 우선한다.

로웬버그와 돌고프는 윤리적 원칙의 우선순위를 개인적으로 정하기에 앞서 윤리적 사정 과정을 거친 후 윤리 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따를 것을 강조한다. 개인적 가치판단에 앞서 관련 규정 적용을 우선하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윤리강령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인권보장지침과 같은 규정들은 관련 법규범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합리성과 인권보장성이 높을 것이란 점에서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딜레마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딜레마 사례에서 적용할 만한 규정이 결여된 경

24 이호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이해>(학지사, 2010) 170p 재인용 / Reamer, Frederic G. 1995. Social work Values & Eth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우가 많다) 때때로 규정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권의 속성 중 범우선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천가 개인 차원의 윤리 원칙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유연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윤리 원칙의 우선순위를 정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관련 기관, 전문가, 동료들, 이용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교육 촉진자는 인권교육 과정에서 다음의 표를 제시하고,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교육 참여자가 살펴본 뒤 스스로 윤리 원칙의 우선순위를 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순위를 재정립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촉진자는 관련된 내용에 담긴 인권 이론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천가들의 인권과 윤리에 관한 쟁점을 이해하고 학습을 통해 우선순위를 체계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3) 인권 제한 원칙 적용

인권 기반 의사결정, 윤리적 원칙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치판단이 이뤄진 후 최종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권리가 제한되어야 할 경우엔 II장에서 다룬 ‘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 인권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약자 우선의 원칙에 입각해 권리 제한이 강자의 이해를 반영해 약자에 대한 억압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고 강자의 이해가 반영된 경우 약자의 권리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실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최소 제한의 원칙에 입각해 권리 제한의 정도를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 이익에 의한 제한 원칙에 입각해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제한인지 돌아보고 사익에 의한 제한인 경우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에 입각해 권리 제한의 내용이 기존 법률 또는 관련 지침,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권리 제한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라.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점검

실천가는 인권 기반 실천을 위해 인권에 관한 이해, 권리적 관점, 이용인과의 관계, 이용인 참여와 관련한 다음 항목에 대해 자신을 점검하고 인권 학습과 감수성 훈련, 실천 유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아래에서 제시된 내용은 II부 <1. 인권에 대한 이해>, <2.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3. 인권 기반 장애인복지 실천> 등에서 다룬 내용이다. 인권교육 촉진자는 인권교육 과정에서 다음의 점검표를 제시하고 II장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며 실천가 스스로 점검하도록 도울 수 있다.

<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점검 목록 >

인권에 대한 이해

01. 나는 인권의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02. 나는 인권의 원칙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03. 나는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04. 나는 딜레마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을 둔 실천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 적용 원칙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05. 나는 인권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세계인권선언, 관련 규약, 헌법, 사회복지윤리강령,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항목과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06. 현재 실천 현장에서 제기되는 인권 쟁점은 국제인권규약과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견주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07. 나는 나와 이용인의 인권이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권리적 관점

01. 나는 이용인의 욕구를 이용인이 스스로 정의하도록 돕는가?
02. 나는 이용인이 정의한 욕구 이면의 권리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03. 나는 이용인의 욕구를 권리로 인정하는가?
04. 나는 이용인이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구조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가?
05. 나는 공식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권리와 절차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용인과의 관계

01. 나는 이용인을 파트너로 인정하는가?
02. 나는 이용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있는가?
03. 나는 이용인이 권한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04. 나는 이용인이 처한 상황에서 이용인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지 (예를 들어 성적 소수자 등)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05. 이용인의 욕구를 사정²⁵⁾하는 과정에서 이용인의 강점을 얼마나 파악하는가?
06. 나는 이용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가?

²⁵ 욕구 사정은 욕구 정의와는 다르다. 욕구 사정은 욕구가 실현되기 위한 관련 정보와 지원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욕구 정의는 욕구의 당사자가 해야 하지만 욕구 사정은 실천가가 하게 된다. 그러나 욕구 사정 과정에서도 이용인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이용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인 참여

- 우리 기관은 이용인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 우리 기관은 이용인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 절차를 보장하는가?
- 이용인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공식적 절차를 알고 있는가?
- 나는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는가?
- 나는 이용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가?



II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법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법제

1.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원칙

가.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원칙의 실천적 의의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정의된다.²⁶⁾ 이러한 정의에 따를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 역시 인간이라는 것에 이론(異論)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도 어떠한 유보 없이 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위적 요청일뿐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격리되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자유로운 개인이 탄생한 근대국가에서 장애인은 오히려 사회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되어, 사회통합과 질서유지를 위한 수용과 격리가 하나의 코드로 작동했으며(최

26 인권을(헌법적인 의미에서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인권은 정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담은 실정법 이전의 권리로서 실정법의 인권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 윤리에 의해 인정되는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basic moral right)'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권은 개인이 모든 인간과 조직·사회·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필수불가결한 전제 요건이 되는 권리들이다. 필수불가결한 전제 요건이라고 함은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인간 존엄성의 핵심 영역이 심각하게 훼손됨을 의미한다. 헌법상 기본권 목록은 이러한 인권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편입된 것에 불과하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실정법 이전에 존재하고 실정법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 인권을 의미하며,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는 이를 확인해 실현할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은 헌법을 포함한 실정법에 우선해 실정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

정기, 2005: 19) 자유주의와 결합한 자본주의(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발달은 장애인을 생산성과 효율성의 결여 그 자체로 상징화함으로써 배제와 격리는 더욱 강고한 정당성을 확보해왔다(박형진, 2012: 61~63).

이에 대한 규범적 반성의 표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며 최근 한국의 장애인 정책 역시 장애 개념의 재구성(사회적 모델), 보편적 인권의 보장, 자립생활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분리 정책은 여전히 강고하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의 획기적 전환에 지연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인권 개선, 보호 등을 명목으로한 사회적 통제와 관리 기제로서의 시설화가 강화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도상 명목적인 존재 이유를 넘어 그것이 지닌 은폐된 의미와 역할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의 초래를 방지하고 장애인 정책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법제가 추구해야 하는 이념과 원칙이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나 근로자는 사회 봉사자가 아니다. 이들에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원칙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장애인법제가 추구하는 이념과 원칙을 확인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이들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다.

나. 장애인법제의 이념

장애인법제의 이념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언급될 수 있지만, 장애인법제를 지배하는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보장해 자주적인 인격체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통합사회)하는 것에 있다.²⁷⁾ 이러한 장애인법제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 관련 법제와 정책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적합성과 타당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존중이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국법 체계상 불가침의 핵심적 가치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동법 제 10조 제1항).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자의 수단일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품위(human dignity)로서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 요소이며 모든 인간에게 인간 본성의 실체적 핵심으로 존재한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서 또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인 것이다. 국가권력과 모든 인간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경될 수 없는 헌법의 핵심이며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목적 그 자체다. 인간의 존엄성은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것으로 토론과 설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공리주의적 형량이 금지되며 상대화될 수 없다(Flix Welti, 749).²⁸⁾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이것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헌재 1998. 5. 28. 96헌가 5; 2000. 4. 27. 98헌가16) “공동체 및 그 구성원과 단절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자연인인 인간으로서 고유한 인격과 가치를 유

27 '사회통합'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따라 포섭과 분리를 동시에 상정하는 개념으로 국가는 사회의 비정상성에 대해 끊임 없는 관리와 통제를 기본 과제로 한다. 장애인 정책의 이념으로서 제시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장애인복지법 제3조 등)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 '장애'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개념화되고 장애인은 타자화되며,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끊임없는 적응주의적 재화와 훈련이 강조되고 정상적인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정당화된다.

이는 결국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화의 축소 및 왜곡을 가져온다. 장애인은 인간의 다양한 한 부분으로서 이해되고 그 고유성이 수용되고 존중되어야 한다(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d, 제17조). 따라서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서 '사회통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문화와 특징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병렬사회(paralled society)'로서 장애인의 사회 성원권(成員權)을 인정하는 '통합사회'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하고, 사회 공동체와 연관을 가지면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다(인격주의적 인간상)(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장애인의 인간존엄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존중되고 보장되는지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결정적 기초가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은 그 전문에서 “전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을 규정하고, 나아가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을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1조, 제3조 (a)·(e)).

또한 한국의 장애인인권현장 전문도 첫 문장에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장애인 인권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존중과 구현을 그 목적과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동법 제3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2)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권의 의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자주적 인격체를 전제로 한다. 자립은 자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기결정권을 핵심적 요소로 하며, 기초적인 권리가 된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

28 근·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은 사회 구성에 있어 정상과 비정상,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고 비정상과 비주류를 사회 구성에서 배제하는 인격상대주의에 기초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정상인, 주류민도 배제에 대한 공포로 이러한 배제와 분리에 자발적 동의를 재생산한다.

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비롯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된다(민병로, 2012: 149~156. 헌재 1990. 9. 10. 89헌마82; 1991. 9. 16. 89헌마165; 2005. 7. 21. 2003헌마282 등). 인간은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만 인격적 가치의 존중과 고유한 개성의 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은 또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전제가 되며, 양자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정한 대로 행동할 수 없다면 그 결정은 공허한 것이 될 것이고, 자율적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닌 행동이라면 그 행동 또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결정권은 결정의 측면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동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성낙인, 2012: 426).

광의의 자기결정권은 우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의 보장은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 보장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별 자유권은 각각 자유 영역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명·양심·종교·직업 등의 선택과 관련한 자기결정은 생명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사생활에 관련된 영역도 대부분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 규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은 개별 자유권과 상호 중첩적일 수 있는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비롯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은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자유권에 포섭되지 않는 사항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자기결정권은 ㉠결혼·이혼·출산·피임 등 인생의 전반에 걸친 설계에 관한 사항 ㉡머리 모양·복장·음주 등 개인의 생활방식(life style)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 ㉢혼전 성교·혼외 성교·동성애 등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동 ㉣생명 연장 장치 치료의 거부, 존엄사, 장기이식 등 삶과 죽음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다.

(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장애인 역시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기 운명의 형성자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되고 발휘될 수 있어야 장애인도 풍부한 개성과 인격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존중 역시 장애인법제의 기본 이념의 하나이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그 전문에서 당사국이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해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을 규정하며, 나아가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을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동 협약 제3조(a)). 사회복지사업법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동법 제1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4항).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장애인 당사자에게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7조 제3항·제4항, 제60조의4 제2항).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1항).²⁹⁾

(3)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특수성

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이 보충적 기본권이라고 하여 기본권 보장의 정도가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보다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자기결정권 역시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헌법 제37조 제2항), 타인의 권리침해(harm principle), 도덕률의 침해(legal moralism), 자해 금지의 원리(legal paternalism) 등은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로서 제한의 중요한 정당화 사유가 된다(김주현,

²⁹⁾ 한국의 장애인권협약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헌장 제12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존중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1996: 61~89; 민병로, 2012: 156~167).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가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그 한계는 비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일반 법리에 따르면 될 것이고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보호와 ‘최선의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장애인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도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후견적 대행 결정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자기신장과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결정권은 잘못된 판단을 할 자유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결정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결정과 선택 그 자체가기 때문에 존중되는 것이다.³⁰⁾ 또한 자기결정의 내용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최선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본인이 할 수밖에 없으며 대행 결정은 언제나 ‘차선의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최선의 판단자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 목적의 대행 결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³¹⁾

한편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을 전제로 한다(자기 책임의 원리). 즉 자기결정권은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에서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임과 구별되어야 한다.³²⁾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은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자기 결정에 따른 생활이 실제 가



30 장애인에 대한 최선의 보호를 위한 후견적 대행 결정은 장애인이 잘못된 결정과 실패를 통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패 역시 중요한 경험으로 자기 발전의 기초가 된다.

31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오혜경, 2006: 220~246, 참조.

능하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자기 결정의 실현을 위한 조건의 정비를 요구하는 사회권에 의한 보증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회복지제도를 해체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수사에 불과하게 된다.

②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부장적 후견주의(legal paternalism)에 따라 제3자의 객관적 배려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구도였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도 결정과 선택에서 타인 의존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독립적 인격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며 자기결정권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지 권리 옹호는 대리권 행사(대행결정)의 행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장애인의 시설선택권(동법 제57조 제3항)과 서비스 이용 조건, 시설 이용의 비용과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동법 제60조의2 제5항·제6항 등) 지적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60조의4 제2항). 그러나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결합하면 기속적 의무로 전환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동법 제7조제2항), 장애인차별금지의 수범자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동법 제6조). 따라서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

32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장애인에 대한 방임 역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동법 제2조 제3항, 제59조의4, 제59조의7)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등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동법 제3조 제20호, 제32조).

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침해의 원리와 달리 본인의 결정과 선택 능력을 전제로 하여 약한 후견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결정과 선택을 지원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사결정에서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그 결정권은 장애인에게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의사결정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기결정권을 축소하거나 자기결정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판단 대행(대리권 행사)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지원을 다해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자기결정권은 고유한 주관적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성이 중요하며 개별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배려해서도 안된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급부에 있어 평등권 내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의 결정에는 적극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결정과 선택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배려에 대한 거부의 표현도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럼에도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현저히 제한되거나 결정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견주의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적극적인 후견주의의 확립이 요구된다.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당사자 본인이 지정하거나 가장 신뢰하는 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2012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인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지원센터나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과의 협의에 의한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민법상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이 선임된 신뢰관계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장애인 본인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것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③ 판단 대행의 정당화 근거

장애인의 판단 대행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판단 대행의 정당화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후견주의에 의한 판단 대행의 정당화 근거에는 공리주의 원리, 임의성 원리(심사숙고에 근거한 임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합리적 인간의 동의 원리(합리적 인간이라면 해당 개입에 동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개입은 정당화된다는 것), 의사 원리 등이 있다. 공리주의적 원리는 객관적인 효율성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본인의 주관적 인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이라는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원리들은 내용적으로 중복되며, 본인이 어떠한 형태의 동의를 정당화 이유로 하는 의사 원리가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平田厚, 2003: 60; 민병로, 2012: 160).



의사 원리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결여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의사에 해당 개입이 적합한 경우에 정당화된다고 본다. 의사 원리는 본인의 동의의 관념을 매개로 하여 정당화 근거를 찾는 바, 본인의 의사를 대신하는 가정적 의사의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의사 원리에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합리적 인간의 의사를 상정해 이른바 ‘평균인’의 관념을 설정한다. 즉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평균인이라면 그와 같이 판단할 것이라는 추정이 본인 동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사 원리는 자기결정권이 비합리적 자기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생활양식과 취미, 기호 등을 포함한 매우 주관적인 결정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인간을 상정한 평균인 모델은 본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이른바 건강한 정상인을 전제로 하는 개인 모델로서 합리적 인간의 동의 원리와 같은 내용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 평균인의 합리적 의사가 아니다. 원리적으로는 우선 본인의 특유한 개성을 고려해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개별·구체적 의사에 의거한 개입이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것을 전제로 한 같은 부류의 인간상을 기초로 본인 자신의 판단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만이 대행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개입자 자신의 선호와 행복한 생활에 대한 전체적 장기적 구상에 입각해 본인의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판정 내지 추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타인을 해하지 않고 본인의 자율적 인격으로서의 전체적인 통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기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과 선택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또한 용인해야 한다(田中成明, 1994: 148쪽).

따라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판단 대행을 정당화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후견적 개입을 받는 자의 인격적 통합(personal integrity)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있다. 결국 후견주의적 판단 대행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몇몇 개입의 형태가 선택 가능한 경우에는 자유의 제약이 가장 적으며 본인의 전체적 장기적인 인생 구상의 촉진과 인격적 통합·유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치가 선택되어야 한다.

3) 자유와 평등

존엄한 인간은 정부나 그 누구의 개입 또는 강제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각할 수 있어야 한다(자유). 그리고 삶의 자유로운 조각을 위한 기본 조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평등).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이며, 장애인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장애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1) 자유

인간의 존엄은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체를 의미하는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이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로서의 자유이다. 이와 같이 개인이 '자유롭다'는 것은 행위 선택지들 사이에서 어느 행위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이 국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강

제력과 간섭 행위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는 외부 간섭이나 강제 의 부재, 즉 ‘내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 행위 선택지의 범위 안에서 타인의 의도적인 간섭’이 없는 상태이다(이상영·김도균, 2011: 310~331).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호).

장애인의 존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치료·재활·교육 등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장애인의 자유가 자의적으로 제한되거나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자의적인 제한과 박탈’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³³⁾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구금,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 정신질환 혹은 지적 장애, 부랑, 약물중독, 교육적 목적 혹은 사회통제의 목적 등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의 자유의 제한과 박탈을 의미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a)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b) 장애인의 자유가 불법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안되며, 모든 자유의 박탈은 법률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로 자유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합리적 편의제공을 포함한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선언 제14조). 나아가 장애인의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선언 제15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선언 제16조) 및 개인의 고유의 보호(제17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에서 구성원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이동 및 거주 자유의 제한·

33 장애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법률은 합헌적 법률이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것이어서 위헌적인 법률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자유의 제한과 박탈의 조치 역시 자의적인 것이다.

박탈·구속 및 배제를 금지하고(동법 제30조 제3항), 장애인의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동법 제32조 제1항), 장애아동의 자유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동법 제36조 제1항)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자유는 포괄적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유는 예시적인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1항의 국민의 자유는 열거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다. 헌법상 자유권의 분류와 체계는 완결적일 수 없지만, ① 인신의 안전과 자유(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② 정신의 안전과 자유(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③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④ 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성낙인, 2012: 462).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보호권, 자유롭게 외부와 소통할 권리, 입·퇴소의 자유,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이 중요하다(보건복지부, 2013: 317).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이 단체생활이라는 점에서 단체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규율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자의적인 자유의 제한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 개인의 사적 자유 영역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되도록 하여 규율의 필요성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의 자유나 의복의 선택, 이·미용 등과 같이 단체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규율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규율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거주 장애인에게 자기 규율의 성격을 갖도록 거주 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조직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규율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고 원칙과 예외를 동시에 규율함과 함께 이의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시설 입소 단계에서 고지해야 한다. 거주 장애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 조치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한 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시설 입소 단계에서 고지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4조의2 제6항 제2호).

(2) 평등과 차별의 금지

평등권은 법에 있어 정의 그 자체이며, 장애인의 권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⁴⁾ 헌법재판소도 평등권을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헌법상 평등권은 자의적 차별 금지라는 법적 평등을 의미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모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다. 평등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따라서 장애인 역시 평등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기회 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사회적 장벽(barriers)으로 인한 소외·배제·격리과 같은 암묵적인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왔다. 따라서 장애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별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장애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장애인법제의 기본 이념이다.

장애인권력협약은 일반 원칙으로 차별 금지를 선언하고(협약 제3조(e)) 장애인의 평등과 차별 금지를 독립된 조항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으며(협약 제5조), 장애인인권헌장 역시 제1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선언하고(동법 제3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를 구체화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권익에 관한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34) 헌법상 차별 금지 사유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차별 금지 사유로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후천적 신분설)하며, 장애인 역시 이러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고유성에 대해 차별 없이 존중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뿌리 깊은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항·제25조).

장애인의 평등과 차별 금지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전광석 등, 2004: 29~36쪽).

첫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법 앞에 평등하며 장애라는 사실 자체가 차별취급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 취급은 장애를 명시적인 이유로 하는 차별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역시 차별로서 금지된다(간접차별).

둘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차별의 금지는 자의적 차별의 금지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극복하려는 전반적인 법체계가 형성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 확고히 정립된 기본 질서’이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당화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심사 기준은 자의적 금지라는 완화된 심사 기준(차별 목적의 합리성 심사)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엄격한 심사 기준(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 준수 심사)이 적용된다(김명연, 2011: 155).³⁵⁾

셋째, 장애로 인한 차별의 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간, 남성과 여성 장애인 간의 차별을 금지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므로 장애의 정도를 유형화하여 유형화한 보호를 하기 보다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대한 면밀한 사정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은 유형·무형의 성적 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을 받아온바, 여성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보호 역시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 질서로서(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여성 장애인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11조 제1항·제34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7조·제9조

35 자의 심사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 목적(차별 목적)의 발견·확인에 그치는 반면, 엄격한 비례 심사는 단순한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 대상 간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 목적(차별 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대한 적절한 균형 관계(법익균형성)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심사한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제2항·제37조·제55조). 또한 장애인권리협약도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협약 전문 (s)) 남성과 여성의 평등의 일반 원칙과 함께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3조(g))·제6조(차선자, 2005: 133). 따라서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간의 차별은 자의금지라는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간의 차별은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넷째, 장애인의 평등권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생활환경 자체가 장애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맥락의 국가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이 장애 개념의 이해이다. 즉 이 부분과 관련해 종래와 같은 의료적 모델은 한계가 있으며,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다.³⁶⁾



³⁶ 물론 장애인 정책에서 의료적 모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장애 발생의 예방과 의료·재활 등에서는 사회적 모델보다는 의료적 모델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17조·제18조·제34조 등). 이런 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에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종합적으로 구성한 복합 모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협약 전문 (e), 제1조 2문 참고). 박숙경, 2013: 47~48.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동조 제2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동조 제6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적 급부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구성한다. 장애인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인간’이며, 사회보장수급권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수용을 보장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장애인복지의 직접적 이념적 근거가 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규정하고(협약 28조), 장애인인권헌장 역시 소득·주거·의료·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선언 2호·6호·12호 참고).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사회보장의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조), 장애인복지법 역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이에 필요한 기본 시책의 강구와 복지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근거와 보장의 수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본적 인권 내지 기본권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이를 기본적 인권 내지 기본권이라고 할 때 어느 수준의 보장까지를 기본

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³⁷⁾ 이 문제는 특히 장애인복지에 관한 입법이 불비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청구 가능성과 보장 범위와 관련된다. 또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평가와 장애인복지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자유권적 인권 이론

자유권적 인권 이론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의 이론적 근거를 자유 또는 평등에서 구한다.³⁸⁾

| 실질적 자유와 평등 |

자유는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적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것이 된다. 평등 역시 결과에서 평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현실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자유가 현실적인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 조건, 즉 자기 결정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유가 사회정의와 연결되는 경우 자유권은 단순히 국가에 대한 방어권과 형식적인 자유 영역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사회적 법치국가란 이러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서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며(헌재 2002. 12. 18, 2002헌마5; 2004. 10. 28, 2002헌마328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헌재 1997.5.29, 94헌마33).

한편 법적 평등이 기회의 평등이라면 실질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평등은 단순한

3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수급권이 사회적 재화의 배분 문제로서 정의의 문제이며, 따라서 각자의 정의관에 따라 다른 해답이 도출되는 것이다. 인권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이론은 자유권적 인권 이론과 사회권적 인권 이론으로 대별된다. 자유권적 인권 이론은 다시 사회권 배제 이론과 최소사회권 포용 이론, 사회권적 인권 이론은 기본적 필요보장 이론과 기본능력보장 이론으로 각각 구분된다. 여기서 자유권은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권 전체를 말하며, 사회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을 포함해 개인의 생존과 행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화(돈과 직업, 식량, 의료, 주거, 교육 등)를 내용으로 하는 인권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도균, 2008: 160~173쪽; 이상영·김도균, 2012, 283~303쪽.

38 실질적 자유에서 도출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성낙인, 2012: 727; 권영성, 2008: 650; 이준일, 2010: 14. 헌법재판소도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의 이론적 근거를 실질적 자유에서 구하고 있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2004. 10. 28, 2002헌마328).

기회의 평등을 넘어 실제적인 결과의 평등까지도 그 내용으로 포괄해야만 한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도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주체들이 처한 '현실적 여건'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평등은 불완전하고, 결국은 사이비 평등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실질적 자유에서 문제가 된 현실적 여건과 마찬가지로 사실적 평등에서 문제가 되는 현실적 여건에서도 본질적 요소는 물질적·재정적 여건이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여건, 특히 물질적·재정적 여건이 문제 될 때 사실적 자유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적 평등으로도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 평등의 관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포함한 사회권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³⁹⁾

다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의 근거를 실질적 평등에서 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주관적 권리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반면에 실질적 평등은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또한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의 부담을 지게 된다(이준일, 2007: 40~44).⁴⁰⁾

| 최소보장론 |

자유권적 인권론은 자유와 평등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이해해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조건(실질적 자유, 사회적 평등)을 마련해주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본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사회국가 원리도 국가의 목표 규정으로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평등의 실질적 조건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도출은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는 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로 연결되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전통에서 재산권은 생명권·신체권과 같은 지위에 있다.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생명권 또는 신체 소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라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자유주의에서는 조세를 통한 사회복지보다 봉사과 기부를

39 실질적 평등은 자유의 조건을 현실적으로 평등하게 조성하는 적극적 평등 조치의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실질적 평등 내지 사회적 평등과 실질적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광석, 2013: 10~14.

40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입증책임의 배분에 있어 장애로 인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즉 장애로 인한 차별을 주장하는 장애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7조 제1항). 다만 정당한 편의 제공이나 적극적인 조치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입법 정책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

선호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의할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은 타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계희열, 2004: 68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주된 자유권과 종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서열화하게 되고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매우 협소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며, 자유와 평등의 향유에 필수적인 것에 한정되어 보장의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⁴¹⁾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 적 복지국가가 아니라 잔여적 또는 선별적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②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사회보장수급권

사회권적 인권 이론은 사회권은 자유권과 별개의 기초를 가지며 인권으로서 독자적 고유성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독자적인 성격으로서 사회권을 인권으로 인정하지만, 사회권의 범위와 내용을 어느 정도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 필요보장 이론’과 ‘기본능력보장 이론’으로 구분된다. 사회권을 자유권이나 평등권에서 구하는 논리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간접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법의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에서도 간접적으로 사회권을 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권과 사회권은 각각 별개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또 각기 별개의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유권은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시민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 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하고, 사회국가·복지국가를 전제로 한다(권영성, 2008: 648). 또한 한국 헌법은 헌법 자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각종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권을 포용하기 위해 자유권적 인권 이론과 같은 논리 과정이 불필요하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첫 조항인 제10조에서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근본규범성)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에

⁴¹⁾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에 필요한 조치’까지를 구체적 기본권으로 보면서도 최소한의 조치 역시 국가의 재정 규모와 정책 등을 고려한 입법 재량이고, 국가가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한 경우, 즉 사회보장입법이 없는 것과 같은 명목적인 수준인 경우에 한하여 위헌이라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을 기본권에서 배제하고 법률상 권리로 본다(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2003. 7. 24. 2002헌바51).

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구체화해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의무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내지 제5항). 이들 규정으로부터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사회보장수급권이 독자적으로 도출된다. 적어도 우리 헌법상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자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보완적·보충적 기본권으로서 서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들 각각에 대해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수준

권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학설과 판례가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에 주저하는 이론적 논거 중의 하나가 사회보장수급권이 ‘권리 내용의 명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써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 내용은 헌법의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지는 않다.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도는 현대 인권 이론의 기본이며, 기본권 보장의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 해석의 최고 기준인 ‘인간 존엄의 동등성’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인간 존엄의 동등성은 모든 국민이 민주적 시민이라는 ‘反-이등국민화 원리(the Anticaste Principle)’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규범력이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 권리 내용은 기본적 필요(basic needs)보장 이론에서⁴²⁾ 말하는 동등한 자주적 인격체로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내용으로 하는 재화에 대한 청구권이며, 국가는 이와 같은 기본적 필요에 상응하는 재화를 급부할 구체적 의무에 대응한다.⁴³⁾

사회보장수급권이 헌법재판으로 청구되었을 때 이 기본적 필요의 충족 여부가

42 기본적 필요보장 이론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사유하고 자발적이고도 목적적으로 행동하는 자주적 인격체로 인간을 전제한다. 그리고 기본적 필요(basic needs)란 자주적 인격체로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내용으로 하는 재화의 필요를 말한다. 즉 자주적 인격체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 기본적 필요이며, 이들 기본적 필요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으로 이해한다. 이는 또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인격이 실현될 때 인간은 행복(well-being)할 수 있는바, 기본적 필요의 보장은 행복 추구의 기본 요건을 의미한다.

43 기본적 능력의 관점에서 인권에 접근하는 기본능력보장 이론은 기존 인권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통찰력과 이론적 도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지만, 권리 이론의 차원에서 과연 권리로 포섭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상영·김도균, 2011: 293. 기본능력보장 이론은 역량 이론(capabilities theory)이라고 하기도 한다. 조효제, 2007: 124~127.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⁴⁴⁾ ‘기본적 필요’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①인간은 신체를 가진 존재이다(물리적-생명 보존 욕구). ②인간은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을 활용해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인식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 계획을 설정해 실현하는 존재이다(자율 욕구). ③인간은 사회적 협동 작업을 통해서만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사회적 욕구). 이러한 기본 전제에서 각각의 요건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들이 기본적 필요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회의 재정 배분권은 절대적·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기본적 필요에 필수적인 조건들은 다수결(법률)에 의한 보장-비보장의 입법 재량을 능가하는 인간의 존엄에 있어 근본적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는 기본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Robert Alexy, 2008: 593~595).

(3) 장애인의 사회복지수급권과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복지의 이념적 근거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구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와 평등은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보완 관계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인 정당한 편의 제공(동법 제4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와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⁴⁵⁾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이 충실하게 수행되는 국가에서는 장애인 평등(차별금지)정책의 여지는 축소된다. 독일이 이러한 예에 속하며 이들 국가에서 장애인 평등법은 장애인 차별에 특유한 일반적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중심적 규율 사항으로 한다.⁴⁶⁾ 이에 비해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제의 발전이 불충실한 국가

44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범력을 이행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행위규범적 측면과 통제규범(재판규범)적 측면으로 구분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기본권성과 보장 범위를 축소(형식적 권리설에 입각한 사실상 사실상 배제론)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2헌마328). 그러나 행위규범의 위반이 곧 위헌·위법의 통제규범(재판규범)이 되는 것이며, 이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기본적 필요의 충족에 대한 사회복지수급권의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갖는 근본적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재정 배분 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 전도된 논리다.

45 장애인권리협약상 합리적 편의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 조정이나 변경으로 특정한 시간에서 요구되는 부담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협약 제2조).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강화하고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되는 적극적 조치 역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 협약 제5조 제4항).

46 독일의 장애인평등법은 제1절 총칙, 제2절 평등 보장 및 접근권 보장의 과제, 제3절 권리구제, 제4절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부업무부담 등 전체 15

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평등을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율함으로써 규율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방대하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당한 편의의 형식으로 사법 관계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⁴⁷⁾ 미국의 장애인법(ADA)이 이러한 입법례에 속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간접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한도에 한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든 기준에 있어 평등하게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전광석, 2005: 505).⁴⁸⁾



다. 장애인법제의 지도 원칙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장애인복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애인법제를 지도하는 기본 원칙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편성의 원칙

장애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생활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은 차별 없이 보호받는 상태가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인 정책의 보편성의 원칙과 관련해 헌법상 보호되는 장애인의 범위가 문제된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적 보호를 받는 장애인의 범위와 관련해 장애인이 생활 무능력자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생활 능력이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47 201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주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2%인데 견주어 사회적으로는 66.5%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간접차별 내지 편의 제공과 관련해 의미가 있는 ‘장애를 고려해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65.1%, 비장애인도 똑 같이 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7%,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4.1%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과 비교하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세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배려의 필요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통계청, ‘2013년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3. 12. 4, <http://kostat.go.kr>. 검색일: 2013. 12. 15.

48 간접차별이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의 심사 기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동법

없는 자가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생활 무능력자에 포함된 것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⁴⁹⁾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 장애인은 생활 능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장애인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반면에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 장애로 인해 생활 능력이 없는 장애인만이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장애는 질병과 노령 및 그 밖의 사유와 함께 생활 능력이 없게 만드는 하나의 사유로 해석되는 것이다.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전광석, 2005: 504; 이준일, 2010, 183) 이러한 해석에 의한 경우 헌법상 장애인 정책의 내용과 목표는 극도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 정책 대부분이 입법 정책에 위임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근거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 확고히 정립된 기본 질서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헌법 제34조 제5항은 ‘생활 능력이 없는 빈곤한 장애인’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아니라 생활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 전체의 헌법적 보호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⁵⁰⁾ 즉 헌법이 보호하는 장애인에 관한 정책은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생활 보장을 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생활 능력의 정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보장, 급여 비용의 징수 등에 차등을 둘 수 있겠지만, 생활 능력과 무관하게 장애라는 특성에 의한 특수한 수요를 보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장애인법제는 공공부조법과 분리해 독립적인 법체제로 구축될 것이 헌법적 요청이며, 장애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서비스 급여의 신청도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정책의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협약 제1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도록 하고(동법 제25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보장

제 4조 제3항) 직접차별과 달리 자의의 금지라는 완화된 심사 기준에 의한다.

49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시 규정으로 신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보아야 한다.

50 헌법 제34조 제5항은 “첫째,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해석해야 한다.

하며(동법 제33조의2), 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해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그리고 직업생활 등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접근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이 생활 능력과 관계없이 복지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 능력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동법 제79조·제80조 참고).⁵¹⁾

2) 개별성의 원칙과 구체적 수요 충족의 원칙

개별적인 장애 상황은 유형화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추상적으로 수요가 의제되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장애의 여부와 정도가 현실에 충실한 상태로 인식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급여의 수준 결정이 모두 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복지에서 개별성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복지 실시 기관은 장애인의 수요를 개별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객관적 개별성의 원칙으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의 원칙을 구체화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장애인의 욕구와 선택권은 개별성 원칙의 주관적 부분으로 장애인복지 실시 기관은 장애인의 참여 제한적 요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급부를 할 때 당사자인 장애인의 의견과 욕구를 청취하고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의 욕구와 선호는 모든 절차 단계에서 경청되고 확인되어야 하며, 개인별 장애인복지서비스 계획 과정에서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보호대상자별 보호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있어 수급권자의 의견 청취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급권자의 의견을 단지 고려 사유

51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8조제3항·제4항).

로만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33조의5 제1항) 개별성의 원칙과 구체적 수요 충족의 원칙에 따라 이는 의무적 청구로 해석해야 하며, 설사 재량적 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인바, 장애인의 욕구를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욕구(berechtigen Wünschen)는 수용되어야 한다. 정당한 욕구라 함은 욕구에 따른 급부 비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급여 비용이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비례 원칙에 따라 급여 비용이 해당 보호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지에 대한 심사, 즉 합리적 비용 심사를 의미한다.⁵²⁾ 이런 점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률상의 재정 유보는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김명연, 2011: 171~173).⁵³⁾

한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개인의 욕구와 선택이 포함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이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른 요구의 사정과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와 같은 개별성의 원칙과 구체적 수요 충족의 원칙은 그대로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권장기준 기준6, 기준7).

3) 참여 보장의 원칙

장애인 역시 기본권의 주체이며 이러한 이념이 장애인 정책의 구상에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서 장애인 자신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의 개념과 장애의 정도에 대한 결정이 인위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장애인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에서 장애인은 당사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해 이러한 정

52 이는 사회복지기본법상 비용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사회복지기본법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8조제3항·제4항).

5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할 책임과 사회복지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장 재정주체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할 의무가 있다(사회복지기본법 제5조 제3항·제4항).

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고(협약 전문 - 부록 참조), 장애인인권현장 역시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선언 제13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으며(동법 제4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5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

특히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와 장애인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보호 관계로 형성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조직과 절차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여전히 기본권의 주체이며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과정에서 기본권 행사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논리로 장애인의 참여가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시설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동법 제30조 제1항). 거주인은 시설 생활 및 운영, 제공되는 서비스 과정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서비스 최소기준 역시 이용자의 참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기준 9).

4) 통합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으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적 주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마련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는 소득 보장,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시설 보호 및 지역사회 보호, 특수교육 서비스 등 급여별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별도의 전달 체계나 조직에 의해 단편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장애인이 서비스에 접

근하거나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 접근성, 전문성,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통합적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⁵⁴⁾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며(행정절차법 제7조)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은 관할하는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이의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고 이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기관의 지위에 있는바, 복지사무 전담기구 또는 장애인복지상담원(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14조,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을 통해 상담과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일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애인이 신청한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이나 제공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사 의무의 범위는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직근 상급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신청인이 원거리 사회복지서비스라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직근 상급 지방자치단체 너머로 확장된다(서울행정법원 2011. 1. 28. 2010 구합28434). 장애인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법정 관할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하며, 법정 관할은 비용 보상의 기준이 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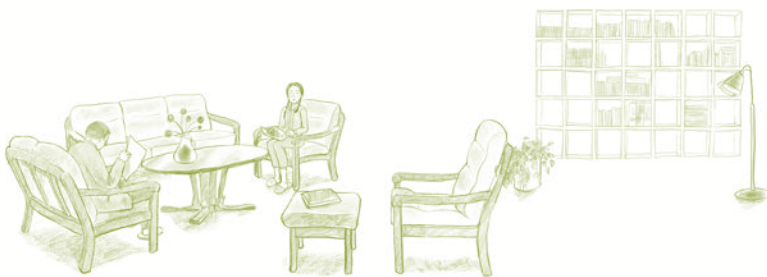


54 통합적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해서는 김문근 등, 2011. 참고.

5) 시설 보호 보충성 원칙

장애인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해서는 안 되며,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가족·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의 구성원 등이 장애를 이유로 거주자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으므로(장애인복지법 제3조) 비시설적 보호가 시설적 보호에 우선하며,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설 보호가 제공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도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해 지역사회 보호 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동법 제4조 제8항)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앞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제2항),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5조·제53조).

한편 개별성의 원칙과 구체적 수요 충족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의 정당한 욕구는 충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설 보호에 대한 장애인의 복지 욕구는 다른 급부에 의해서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충분하게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거주시설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바(동법 제60조의2),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한 보충성의 원칙은 이 적격성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장애 및 장애인 관련 법제의 체계

가. 다원적 법제화를 통한 장애인 정책의 실현

장애인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가 아닌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다. 장애인은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정책은 차별 금지와 함께 적극적인 장애인복지를 통해 사회의 성원(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고유한 목적을 가진 제도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사회보장법제 전반을 통한 다원적인 법제를 통해 실현된다.

건강보험은 질병에 대한 단기적인 치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애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 넓히면 질병 자체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질병의 예방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사전적 보호 제도의 기능을 한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에 다양한 예방 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질병과 장애를 확연히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질병 치료에 따르는 재활 급여를 건강보험 급여에 대폭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법적 지위도 향상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급여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는 개인이 법적 청구권을 갖기 때문이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산재보험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정책은 산재보험의 일환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장애인을 의료적·직업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종래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 재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되면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써 장애

인복지법의 과제를 경감시키고 장애인복지법의 목표 설정과 집행이 한결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인식·실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연금보험법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보호하고 있다. 연금보험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개인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의 생활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개인 혹은 유족들에게 현금 형태의 연금 급여를 제공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에 관한 한 연금 급여의 목표는 재활 조치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재활 조치는 장애를 당한 수급권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정책이 1차적으로 해당 사회보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사회보험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 급여로서 재산권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전광석, 2005: 505~507).

한편 이와 같은 사회보장법제 외에도 장애인의 복지와 평등 실현을 위한 다수의 법률이 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국가정보화기본법」(동법 제32조), 「전기통신사업법」(동법 제4조의2), 장애인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동법 제13조 등), 장애인의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과 관련해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39호, 2012.2.22., 제정) 등이 있다. 그 밖에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방송법」 「영유아보육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장애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장애인법제의 현황

장애인 정책은 다원적 법제화를 통해 수행되지만, 장애와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직접적인 보호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의해 기본적으로 수행된다. 한국의 장애인법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제에서 부분적으로 규율되어왔다.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최초의 법률은 「특수교육진흥법」이며,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법제는 19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인권 의식의 발전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그동안 장애인계의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2012년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70호, 2012.2.22, 제정)을 비롯해 12개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합하면 법령이 28개에 달한다.⁵⁵⁾ 한편 사회복지 관련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가 보장될 때 이들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도 증진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1호, 2011.3.30, 제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⁵⁶⁾ 또한 이들 장애인법령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 내부의 활동 기준 등을 정한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형식으로 다수의 행정규칙이 발령되어 있다.

다. 장애인법제의 체계

1) 장애인법제의 구분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정책의 이념적 목표에 따라 복지적 과제와 평등 실현적 과제를 중첩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장애와 장애인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그 목적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와 평등실현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제와 평등실현법제는 이념적으로 구분된다. 장애인복지법제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가 아니라 장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그 목표로 한다. 이에 견주어 장애인평등실현법제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제와 장애인평등실현법제가 이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도 하다. 장애

5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검색에 의한 것이다(검색일: 2013. 12. 15).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외하였다.

56 장애인법제의 법제화 과정에 대해서는 박숙경, 2013: 50~5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0: 5~7; 우주형, 2011: 126~131; 박병식 등, 2008: 119~120.

인 복지 조치가 충분히 실현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여지도 축소되어 장애인의 평등 실현이 그만큼 촉진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 실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든 기준에서 평등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그 상태가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복지 조치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 장애인법제의 체계 〉

| 장애인복지법제 | | 장애인평등실현법제 |
|--------------------|-----------------------------|--|
| 기본법 일반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
| 집행법 |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 고용·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연금법 |
| | 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 | 주거보급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 장애아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간접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2) 장애인복지법 체계

(1)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법률의 적용과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법과 특별법, 기본법과 집행법(구체화법)의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⁵⁷⁾ 장애인복지에서 상위의 기본법·일반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임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제의 평가와 운영 그리고 해석과 적용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이들 원칙과 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비용 부담, 전달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5조·제28조·제29조).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제의 운영, 비용 부담 및 전달 체계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들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일반법과 기본법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즉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는 개별 사회복지사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고 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항).⁵⁸⁾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5·제33조의6)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바(동조 제2항),

57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 일반법이고 보다 특별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 특별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효력의 면에서 '특별법은 일반법을 가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해 적용된다. 그러나 기본법과 집행법의 관계는 이와 다르다. 기본법은 법률의 제정이 '기본법'인 실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 내용이 다수의 관련 법률이 있을 때 전체 법체계의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된 원리와 목적 내지 이념, 기본 정책과 그 방향, 정책의 실시를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조직과 재정 등을 규정하는 일종의 계획법 또는 프로그램법을 말한다. 기본법상 기본 정책을 실시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 집행법 내지 구체화법이 제정된다. 기본법과 집행법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내용상 모순이 없으면 안 되고, 집행법은 기본법의 구체화법으로서 기본법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상의 상충이 있는 경우 기본법인 내용 면에서 집행법에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같은 법률의 형식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국세기본법 제3조 등)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법률 상호간의 효력을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2) 장애인 복지법과 관련 법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법이다.⁵⁹⁾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이기에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장애인의 권리 등을 선언하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의료와 재활, 교육, 직업 등의 기본 정책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정책의 시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의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동법 제16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 정책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고용·직업재활 및 소득보장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물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 보급과 관련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과 이들 관련 장애인복지법제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라 기본법과 집행법 내지 구체화법의 관계에 있다.⁶⁰⁾ 따라서 이들 장애인복지법제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기본 정책에 부합해야 하고, 만약 내용상 상충이 있는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아니라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조). 따라서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복지법은 특별법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며,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

58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장애인복지법 등 25개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 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59 다만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3조).

60 일부의 견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과 이들 장애인복지법제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독자적인 입법 체계로 이해하는 것은 이들 법제 상호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법의 적용이나 효력 범위에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우주형, 2011, 135~136; 박병식 등, 2008: 121~123쪽;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2010: 14.

지사업법을 따른다(동법 제3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위와 같이 다수의 장애인 복지법제가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은 기본 정책에 따른 장애인 등록, 의료비 지급,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자기완결적인 복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 내지 52조). 복지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 정책의 강구와 같이 국가 등에 추상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신청에 대해 복지 조치(행정 조치)를 할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다.⁶¹⁾ 즉 장애인은 복지 조치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을 갖는 것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따라서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는 보호자는 장애인복지법상 복지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복지 실시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동법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장애인 평등 실현 법제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의 원칙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미 선언되어 있다(동법 제8조).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개념에서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물리적·심리적 환경의 장벽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동법 제7조·제55조 제2항), 정보 접근(동법 제22조), 편의시설(동법 제23조), 안전대책 강구(동법 제24조), 사회적 인식개선사업(동법 제25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동법 제26조), 문화적 환경 정비(동법 제28조) 등에 관한 기본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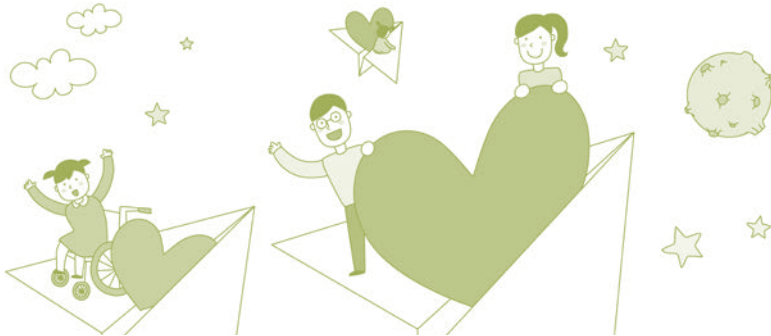
61 장애인복지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복지 조치를 일괄하여 구체적인 복지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사법적 관철이 가능한 구체적인 복지 조치인지의 여부는 장애인의 복지신청권의 존부, 행정청의 복지 조치 의무 여부 등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과 이에 관한 하위 법령 등의 구체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법률에서는 복지 조치를 재량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 등에서 대부분의 복지 조치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구체적 복지 조치로 규율하고 있다.

62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차별 금지에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복지법부의 성격에 갖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로서 기능할 수 없고 따라서 장애인 평등 실현 법제의 모범 내지 기본법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전광석, 2004: 55; 우주형, 2011: 135).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차별 금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강구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장애인 평등 실현 법제의 기본법 지위에 있다고 본다. 장애인법제의 체계 정비를 위해 장애인법 내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순수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규율하는 경우 이러한 체계 정합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강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은 그 법률명이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의 기본법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지만 규율 내용, 장애인복지와 평등 실현의 보완 관계, 장애인법제의 정합성 관점에서 장애인의 평등실현 법제에 대해서도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⁶²⁾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차별 금지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평등 실현을 위한 일반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6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더 특별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율하고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법 제9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은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에 있어 편의시설 증진과 안전대책의 강구를 규정하고(동법 제23조·제24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물과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제19조). 이와 같이 시설물과 이동·교통수단 등에서의 편의 증진과 차별 금지를 구체화하는 법률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다. 이들 법률은 시설물과 이동·교통수단에 있어 차별 금지와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평등실현 법제에 속한다.



라. 장애인법제의 규율 내용

1) 장애인복지법제

(1) 장애인복지법

①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개정한 것이다(법률 제4179호, 1989.12.30, 전부개정). 이 법률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장애인복지법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9장 9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517호와 2012년 10월 22일 법률 제11521호에 의해 대폭 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동법 제16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으며(동법 제3조)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동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5조·제8조).

②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장애(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또는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동법 제2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장애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이다(장애인등록제). 장애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동법 제32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장애인복지법은 특별히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시책의 강구와 여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제7조).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이의 수립 등을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내지 제11조). 행정 체계와 관련해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제13조).

④ 기본 정책의 강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 과제로서 장애 발생의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직업,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강구, 사회적 인식 개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주택 보급, 문화환경 정비,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조 내지 제30조). 기본 정책은 국가가 장애인복지를 위해 강구해야 하는

과제이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기본 정책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기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추상적인 법적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은 기본정책을 구체화해줄 것에 대한 추상적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 기본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다수의 실시법이 제정되어 있다.

⑤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은 기본정책에 따른 다수의 구체적인 복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우선 장애인복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1조). 그리고 재활 상담,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급, 산 후조리 도우미 지원, (장애인이 부양하거나 또는 장애인인)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자금 대여, 생업 지원, 자립지원비 지급, 생산품 구매 및 생산품 인증, 고용촉진,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등의 복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 내지 52조). 장애인은 기본정책의 강구와 달리 복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복지 실시기관은 복지조치(행정조치)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

⑥ 자립생활의 지원 및 복지시설 등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지원 및 장애 동료 간 상담 기회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 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동법 제57조 내지 제5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시설 운영자의 인권 실태 등을 지도·감독해야 한다(동법 제57조 제2항·제61조). 장애인복지법은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해당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학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고(동법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개시 의무, 거주시설 이용 절차,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 및 폐쇄 등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동법 제60조 내지 제62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보조기구(동법 제65조 내지 제70조), 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동법 제71조 내지 제78조)을 각각 규율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도 복지조치의 성격을 갖는다(동법 제66조).

⑦ 재정 분담 등

복지조치와 관련한 의료비 지급, 자녀교육비 지급, 자립훈련비 지급,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79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과 재활 상담 후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에 의뢰해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한 경우(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동법 제80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가 금지되며,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동법 제82조·제83조).

(2) 기타 장애인복지법제

기타 장애인복지법제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기타 장애인복지법제 개관 〉

| 분야 | 법률명 | 제정 일자 / 관할 | 주요 내용 |
|----------------------|---------------------------|----------------------|---|
| 고용 직업 재활 소득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 1990. 1. 13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고용, 취업알선, 취업알선기관 연계,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 근로자 직업 생활자금 지원, 취업 후 지도, 사업주 고용지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 응자 등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장애인 관련 정보·자료 제공,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촉진·직업재활기금 |
| 보장 |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법 | 2005. 7. 29 중소기업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창업·기업 활동 촉진 차별적 관행 시정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위원회 장애인 창업 지원 특례, 자금 지원 우대, 공공기관 구매 촉진, 경영능력 향상 지원, 세제지원,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한국 장애인 경제연합회,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센터 |
|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 2008. 3. 22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 장애인 고용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을 통한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계획 수립,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촉진 위원회 설치 우선 구매지원, 공공기관 구매 촉진, 중증 장애인 생산품 품질인정, 생산시설·업무수행기관 지정 세제지원, 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

| 분야 | 법률명 | 제정 일자 / 관할 | 주요 내용 |
|-------|------------------|----------------------|--|
| 보장 | 장애인 연금법 | 2010. 4. 12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장애인 장애인 연금 지급 • 수급권자 : 18세 이상 제1급·제2급 장애인, 제3급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인 사람 • 연금의 종류: 기초급여, 부가급여 •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산정기준, 장애인 연금의 신청과 지급결정 |
|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2007. 5. 25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 2007년 본법으로 법률명 개정 •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적 교육환경 제공,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동법 제15조) • 의무교육·무상교육(동법 제3조) →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초·중·고등학교과정 의무 교육 -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외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교육 무상 • 배치: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동법 제17조)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운영센터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
| 활동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11. 1. 4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 신청자격: 6세 이상 1급·2급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동법 제5조) • 급여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동법 16조) • 활동 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심의, 활동 지원등급 변경 등 |

| 분야 | 법률명 | 제정 일자 / 관할 | 주요 내용 |
|--------|----------------------------|----------------------|--|
| 활동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2011. 1. 4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지원급여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 활동 보조지원급여 제한·정지 •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
| 주거 지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2012. 2. 22 국토해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 • 주거약자용 주택 정의, 주거지원계획과 시·도주거지원계획, 주거실태조사 • 주거약자용 주택 최저주거기준·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건설과 건설기준, 임대사업자의 지원, 임대조건, 임대현황신고 •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거지원센터 |
| 장애 아동 |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 | 2011. 8. 4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통합적 지원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과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 6세 미만 아동 • 장애아동 복지에 관한 특별법 (동법 제5조) • 장애 아동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임무 • 중앙 장애 아동 지원센터, 지역 장애 아동 지원센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복지지원 제공 절차 • 복지지원의 내용: 의료비, 보조기구, 발달재활서비스, 보육, 가족,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지역사회 전환,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 제공 • 복지지원 제공기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
| 종사자 처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2011. 3. 30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우개선·신분보장의 강화를 통한 지위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 처우개선·신분보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보수, 신분상 불이익 금지, 근무조건 차별 금지, 실태조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2) 장애인 평등실현 법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① 입법의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정되어(법률 제8341호, 2007.4.10.)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동법 부칙 제1조), 전체 6장 5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 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 차별 내용의 가이드라인과 차별 판단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법은 ①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②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③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④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② 장애인 차별의 금지

㉠ 장애인 차별의 종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동법 제6조). 금지되는 차별행위에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직접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간접차별)도 금지된다(동법 제4조 제1호·제2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도 차별에 해당한다(동조 제3호). 그 밖에 광고에 의한 장애인 차별행위(동조 제4호)와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행위(동조 제5호) 및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이나 보조기구에 대한 방해 행위도 차별로 간주한다(동조 제6호).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로 간주되며,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동법 제5조).

㉔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동법 제4조 제2항).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본질적으로 평등실현적 국가 과제에 속하지만 사회복지적 국가 과제와 중첩되는 면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동등한 참여를 실현하는 참여의 정도(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그 범위와 정도는 가능한 한 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제공되는 편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편의 제공의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성별·정도·특성 등 장애와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과 같은 모든 인적·물적 수단과 조치 등 유형적 편의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 등 무형적인 편의도 포함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금지되는 고용(동법 제11조), 교육(동법 제14조), 시설물(동법 제1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⁶³⁾ 이동 및 교통수단(동법 제19조 제8항, 동법시행령 제13조),⁶⁴⁾ 정보통신·의사소통(동법 제21조), 문화·예술활동(동법 제24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체육활동(동법 제25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동법 제26조 제8항, 동법시행령 제17조),⁶⁵⁾ 참정권(동법 제27조 제2항), 장애여성(동법 제33조 제3항·제6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 등의 구체적인 영역과 관련한 편의 제공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3 시설물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동법시행령 제12조).

64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65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인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에 따른다(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정당한 편의 제공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정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장애인차별법에서 규정하는 편의 제공의 내용과 기준은 예시적인 것이며 일응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문제되는 것이 간접차별과의 관계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간접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간접차별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간접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간접차별을 차별행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차별 영역에서 간접차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을 한정해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당한 편의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판단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⁶⁶⁾ 실제 실무적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간접차별이 의제된 것으로 보아 차별로 판단한다(조형석, 2009: 33).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서도 간접차별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간접차별로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 조치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구제 절차를 통해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동법 제43조 제2항·제4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괴롭힘 등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하며(동법 제3조 제20호)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은 금지된다.⁶⁷⁾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①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

66 간접차별이 보다 포괄적이고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별도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 한 논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곤란하며, 현재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조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간접차별이 갖는 의의가 반감되고 사문화된 조항, 형식적 조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다. 김진우, 2008: 176~178.

67 괴롭힘 등은 개념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보다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일치한다(동법 제2조 제3항).

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②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③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은 금지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와 같은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동법 제32조).

③ 장애인 차별 금지 영역

①고용(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 ②교육(제13조·제14조),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동법 제15조 내지 제25조), ④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동법 제26조·제27조), ⑤모·부성권, 성 등(제28조·제29조), ⑥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동법 제30조·제31조) 등 6가지 영역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임신·출산·가사 등에서 차별이 금지되며(동법 제33조·제34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장애아동에 대해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및 의무교육 등에서 차별이 금지된다(동법 제35조·제36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동법 제37조). 장애인 차별 금지 영역을 조문을 중심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차별 금지 영역 〉

| 장 | 절 | 조 문 |
|---------------|----------------------------------|---|
| 제 2장 차별 금지 | 제 1절 고용 | 제10조(차별 금지) 제11조(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
| | 제 2절 교육 | 제13조(차별 금지) 제14조(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 | 제 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 접근에서의 차별 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2조(개인정보 보호) 제23조(정보 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 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 금지) |
| | 제 4절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제26조(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제27조(참정권) |
| | 제 5절 모·부성권, 성 등 |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 금지) 제29조(성에서의 차별 금지) |
| | 제 6절 가족·건강· 복지시설, 건강권 등 |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 금지)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 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 장 | 절 | 조 문 |
|---------------------------|---|--|
| 제 3장 장애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

④ 장애인 차별의 예외

모든 차별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만이 차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차별행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장애인 차별이 없는 것이 진정한 직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진정직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 차별행위는 차별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장애인 차별을 허용하면서 ①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②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4조 제3항).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⑤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장애인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장관 및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동법 제42조 내지 동법 제45조),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의 분배(동법 제46조·제47조), 법원의 구제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8조 내지 제50조).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① 입법의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편의증진법은 총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특유한 목적을 갖는다.

② 장애인 등의 접근권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 접근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등에서의 장애인과 비교해 매우 광범위하며 정형화되지 않고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 접근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모든 자가 장애인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 그리고 접근권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동법 제4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은 사회에서 장애의 벽을 허물고 무장애 공간(Barrier Free)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③ 편의시설의 설치와 편의제공

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으로 최단거리 이동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최단거리 이동의 원칙이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동법 제3조).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자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시설주’이다(동법 제9조).⁶⁸⁾ 대상 시설별

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8조). 편의시설의 종류와 세부기준은 최소기준으로 편의증진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동법 제5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설물에 대한 편의 제공의 내용과 기준이 된다(동법시행령 제12조). 세부 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 주관 기관의 승인을 얻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 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해 장애인 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실비로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장애인은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동법 제16조의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동법 제17조).

이와 같이 편의증진법은 민간의 시설주에게도 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개인의 수인한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과 개인이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동법 제13조).

68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동법 제7조).

④ 실효성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동법 제6조),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한다(동법 제10조·제11조). 시설 주관 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소관 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의증진심의회를 둔다(동법 제12조·제12조의2). 시설주가 편의시설 제공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시설 주관 기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동법 제23조),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행정벌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동법 제25조·제28조).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① 입법 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6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편의증진법이 편의시설 대상 시설로 교통수단을 포함하고 있었으나(구법 제7조 제5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여객시설·교통수단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차별 없는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동법 제10조 제3항)⁶⁹⁾. 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해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을 통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이동약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동 편의시설에 관하여 이동편의증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편의증진법 등

69 편의증진법의 한계와 이동편의증진법의 입법 과정은 배용호, 2010: 274~283 참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10조 제3항).

편의증진법이 시설·설비의 동등한 이용과 정보에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접근권 보장법인 것에 대하여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권 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주형, 2011: 150)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에 따라 편의증진법에 규정되었던 교통수단의 편의 시설은 삭제되었다(법률 제7382호, 2005.1.27, 타법개정).

② 교통약자의 이동권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3조). 이동권은 광의의 접근권에 포함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동법 제4조), 교통사업자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 역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동법 제5조).

③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은 ①교통수단, ②여객시설, ③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다(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참고). 대상 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규모·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교통사업자 또는 대상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설치 기준에 맞게 이동편

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동법 제11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는지, 기준 적합성을 심사해야 한다(동법 제12조). 노선버스는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일정 대수 이상의 저상버스를 운행하면 사업면허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또한 도시철도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해야 한다(동법 제15조).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동법 제16조)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행우선구역 안에서의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위한 보행시설물의 설치, 도로점용물의 이설, 불법시설물의 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동법 제18조 이하).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자가 운전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지원해야 한다(동법 제27조).

④ 실효성 확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동법 제6조 내지 제8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며(동법 제25조)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 보고·검사를 하며(동법 제28조),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행정형벌의 제재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동법 제31조·제34조).



마. 장애인 관련 행정규칙

장애인법령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활동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 예규 등의 형식으로 다수의 행정규칙이 발령되어 있다. 이들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청의 행정 기준에 관하여 개괄적(일반조항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해 법령을 보충 내지 구체화하기 위한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도 있을 수 있다(법률보충적 행정규칙). 특히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 즉,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2008.11.27, 2005헌마161; 1998. 4. 30, 97헌마141).

〈 장애인 관련 주요 행정규칙 〉

| 번호 | 행정규칙명 | 종 류 | 발령일자 |
|----|---|----------|-------------|
| 1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 고용노동부 고시 | 2012. 12.14 |
| 2 |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 국토해양부 공고 | 2011. 5. 27 |
| 3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목표 비율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2013. 6. 19 |
| 4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 보건복지부 고시 | 2008. 7. 15 |
| 5 | 국립재활원 인지·보조기기사 보수교육 훈련규정 | 국립재활원 예규 | 2012. 6. 15 |
| 6 |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 국립재활원 예규 | 2012. 6. 15 |
| 7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 국립재활원 예규 | 2012. 8. 31 |
| 8 |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 | 국립재활원 예규 | 2012. 6. 15 |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 보건복지부 고시 | 2013. 7. 31 |

| 번호 | 행정규칙명 | 종 류 | 발령일자 |
|----|---|-------------|--------------|
| 10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 2013. 6. 19 |
| 11 |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 2013. 7. 23 |
| 12 | 시·청각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 | 방송통신위원회 매뉴얼 | 2012. 6. 1 |
| 13 |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 2013. 2. 22 |
| 14 |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보건복지부 고시 | 2012. 12. 27 |
| 15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 2013. 10. 14 |
| 16 | 장애등급심사규정 | 보건복지부 고시 | 2011. 3. 30 |
| 17 | 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2013. 11. 27 |
| 18 | 장애물관리업무 매뉴얼 | 국토해양부 공고 | 2012. 5. 31 |
| 19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 국토해양부 공고 | 2008. 7. 15 |
| 20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 시기 및 명판도안에 관한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 2010. 10. 1 |
| 21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2013. 8. 19 |
| 22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 고용노동부 고시 | 2012. 12. 14 |
| 23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 2012. 9. 24 |

| 번호 | 행정규칙명 | 종 류 | 발령일자 |
|----|--------------------------------|------------|--------------|
| 24 |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 행정안전부 고시 | 2009. 8. 25 |
| 25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2011. 12. 26 |
| 26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 2013. 10. 1 |
| 27 | 장애인보조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2000. 3. 22 |
| 28 |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부 고시 | 2013.2.15. |
| 29 |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2012.9.6. |
| 30 | 장애인생산물 인증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2013.11.20. |
| 31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 2012.12.31. |
| 32 |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 2013.12.4. |
| 33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 2013.6.24. |
| 34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 2013.3.11. |
| 35 |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 노동부 고시 | 2009.12.7. |
| 36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 2012.9.24. |
| 37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 2012.3.21. |
| 38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 2011.2.28. |
| 39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 2013.7.31. |

| 번호 | 행정규칙명 | 종 류 | 발령일자 |
|----|--|------------|--------------|
| 40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 2011.9.8. |
| 41 |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시 기한 연장에 관한 고시 | 특허청 고시 | 2012.8.23. |
| 42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 중소기업청 고시 | 2013.6.19. |
| 43 |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2013. 11. 20 |
| 44 |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 하는 경우의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2009. 8. 24 |
| 45 | 특수교육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 2012. 12. 14 |
| 46 |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2012. 12. 28 |
| 47 |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 2013. 6. 25 |
| 48 |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2012. 9. 25 |

바. 장애인법제 체계 정비 방안

1) 체계적합성의 원리

법규범은 ‘하나의 잘 정돈된 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양한 규범은 서로 관련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하나의 체계’로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규범에 대한 체계적 연관성의 요청을 체계적합성(Systemgemäßheit)이라고 한다. 서로 체계적 연관성을 갖추지 못한 법규범들이 현실에 적용되면 큰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규범의 체계적합성의 요구는 법규범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적용을 받는 수범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체계적합성은 내용적으로 서로 모순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무모순성·일관성). 무모순성 내지 일관성은 다양한 규범이 잘 정돈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잘 정돈된 법규범의 체계는 각각의 규범들이 다른 규범들의 목적과 내용을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상호논증 가능성)⁷⁰). 이러한 체계적합성의 원리에 따라 장애인법제 역시 우선 헌법합치성의 수직적 체계적합성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인법제를 구성하는 각 규범들 간에 서로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논증할 수 있는 수평적 체계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법제의 체계적합성 확보의 필요성

장애인법제의 체계적합성과 관련해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필요에 의하여 그때그때 제정되어왔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효율적인 실천을 위하여 이들 각 법률 간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고 상호간에 조정·연계될 수 있도록 법체제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우주형, 2011: 157쪽).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관련법의 중심법,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체계상에서는 책임 있는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역시 법체계상으로 볼 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법제의 체계화가 요구되며 장애인종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0: 14).

또한 최근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권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권리와 인권에 기반을 둔 법률로 전면 개정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장애인법제를 체계화할 것이 주장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등급제의 폐지와 장애정의 전환, 탈시설화와 전환 서비스 체계의 구축, 장애인 중심 복지 전달 체계

⁷⁰ 체계적합성의 원리는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리라고도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헌재 2005. 6. 30. 2004헌바40 등). 체계적합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홍완식, 2005: 459~482.

개편과 개인별 지원 체계의 구축, 직접소득 보장의 확보와 예산 확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권리 옹호 체계의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박경석, 2013: 5~22; 박숙경, 2013: 59~62).

3) 장애인법제 체계적합성 확보를 위한 입법 방안

장애인종합법 제정 방안은 현재 장애인법제를 통합해 독일과 같이 법전화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입법 체계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이후의 과제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법이 다수 있는 경우 이들 법률 간 수평적 체계적합성을 확보하는 입법 기술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함에 있어 유의할 것은 이 법이 장애인법제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의 분석을 통해 정합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⁷¹⁾ 오늘날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권리 보장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은 앞서서와 같이 장애인복지와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과 복지 조치 형식의 복지서비스 급부를 규율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총칙에 규정된 장애인의 정의, 기본 이념과 원칙 등 기본 정책, 장애인 정책을 실시할 행정기관과 계획(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종합 계획),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의 원칙, 국가의 재정 배분 의무, 권리 옹호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 내지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서비스법으로 체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규율을 모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의 형식으로 권리보장법에 통합해 규율하는 것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혼란을 야기하고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갖는 문제를 존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 방안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서비스법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권리보장

71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특별히 인정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장애인기본권 개념을 도입하고, 의료보장청구권, 교육보장청구권, 소득보장청구권, 복지서비스청구권, 자기관철의 권리(절차적 권리)로 유형화해 장애인법제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형, 2011: 137~141; 박병식 등, 2008: 150~153. 다만 장애인 기본권 개념의 도입은 장애인인 모든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내지 기본적인 인권의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법의 집행법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애의 개념과 관련해 장애의 개념을 곧바로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장애와 장애인의 규율 목적에 따라 의료적 모델도 필요하며 따라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모두를 고려한 개념을 재구성해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 또는 장애인의 규율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⁷²⁾ 한편 기본정책과 관련해 강제력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를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이 권리의 문장 형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사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의 권리장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본정책을 권리의 문장 형식으로 전환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국가의 조치와 정책 추진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장애인의 권리 주장과 정책 요구에 대한 보다 강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기본적으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바, 자유권과 평등권이 아닌 사회보장수급권(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정당한 배려나 적극적 조치 포함)의 경우 장애인권리보장법상의 추상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집행법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로 전환될 수 있다.⁷³⁾ 물론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질과 보장 수준에서 본 것과 같이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필요의 충족에 관한 이는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이다.



7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장애와 장애인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를 열거적 제한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

73 탈시설화와 전환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나 직접소득 보장 등의 내용도 기본 원칙이나 기본적 권리를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규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장애인연금법과 같은 소득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을 규율하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될 성질의 것이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운영과 이용에 관한 법적 근원

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재정립과 인권 보호 강화

장애인 생활시설이 대규모화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 기능과 함께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교육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시설 이용자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어려우며,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 10517호(시행 2012. 3. 31)와 2012년 10월 22일 법률 제11521호(시행 2013. 4. 23)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피학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 장애인 학대 사건을 심리할 때 보조인 선임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피학대 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 장애인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의의

1)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시설은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목적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는 종래 생활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편한 것이다. 생활시설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을 위한 상담·치료·훈련 등’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시설이었으나, 주거시설은 일정 기간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지원과 (중증장애인의) 요양 및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그 역할이 한정되었다(동법 제5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6조).⁷⁴⁾ 따라서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동법 제60조의4 제2항).

〈 생활시설과 거주시설의 비교 〉

| 생활시설 | 거주시설 |
|---|--|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거주 공간을 활용해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주거시설은 입소 대상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동법시행규칙 제41조).

⁷⁴ 종래의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위 ‘일반’인들과 살기 위해 상담·치료·훈련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또한 상담·치료·훈련을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을 사람만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해악’을 끼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내에서 기약 없이 머물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래 생활시설의 목적과 기능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현진 2012: 56.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개념과 기능을 재편한다면 장애인 탈시설의 함의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와 기능 〉

| 종류 | 기능 |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⁷⁵⁾ | 장애 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주거 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일상생활 지원·지역사회 생활 지원·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 지원·지역사회 생활 지원·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⁷⁶⁾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2) 장애인 거주시설의 범위

거주시설의 범위와 관련해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기도원 등의 종교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다. 이는 특히 미신고시설과 관련해 종래 보건복지부는 이를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않았다(보건복지부, 2006: 3). 그러나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다수인보호시설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만을 의미

75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은 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구분된다.

76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별도의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며 미신고시설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국가인권위원회, 2005: 26; 국가인권위원회, 2005: 119) 따라서 미신고시설 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일괄적으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률 해석의 오류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다수인보호시설은 신고나 허가 여부와 무관한 다수인보호시설이다(김명연, 2006: 116~117). 운영자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①가족이 의뢰한 경우를 포함해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②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 요청에 의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③외부 간판·소식지·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장애인의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장애인을 모집하고, 거주인을 위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 명칭이나 운영 주체에 상관없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3: 9).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4호).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 거주시설의 설치

(1) 신고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시설 명칭,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⁷⁷⁾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동법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는 신고제이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의 신고는 형식상의 신고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행정절차법상 자기

완결적 신고(동법 제40조)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동법 제6조 제2항)하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된 허가제로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다(보건복지부, 2013: 70).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개시해야 한다(동법 제60조 제1항).

(2) 거주시설의 정원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종래 300명 이하였으나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거주시설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부칙(법률 제10517호, 2011.3.30.) 제2조 제2항],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동법 제59조 제3항).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볼 때 거주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할 특수한 서비스가 무엇을 예정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이에 관한 시행령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3)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지역 특성과 시설 분포의 실태를 고려해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해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해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해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력 역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의 필요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통합설치·운영은 복지타운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이 대형화할

77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4항).

우려가 없지 않고,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서도 정원 축소를 통한 소규모화의 의미가 상실될 수도 있다. 또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설비와 인력의 공동 사용과 겸직 허용으로 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위험도 없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통합 설치의 필요성과 시설 기준 및 인력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와 적용이 요청된다.

(4) 중단·재개·폐지의 신고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60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해야 한다(동법 제60조 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87조 제5호).⁷⁸⁾ 또한 시설 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향후 안정적 운영 계획의 수립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동법 제60조 제4항).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등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

⁷⁸⁾ 사회복지시설의 중단·폐지 시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 위반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54조 제4호) 장애인복지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6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2) 시설의 운영

(1) 보험 가입과 시설의 안전점검

| 보험 가입 의무 |

장애인 거주시설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34조의3, 동법시행령 제18조의3). 현재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2014년 6월부터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법률 제11856호, 2013.6.4, 시행 2014.6.5.).

| 시설의 안전점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해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通報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24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반기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의 장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에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

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동법시행령 제18조의4).

(2)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자격에 관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제외(동법 제59조의3)하고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른다.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⁷⁹⁾ 사회복지법인의 임원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회복지 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동법 제35조).⁸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동법 제35조의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했을 때 이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79. 1. 미성년자 2.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10년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은 취업 제한이 되는 성범죄 경력자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59조의3 제1항).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이 보건복지부의 관할 법률이고 종사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39호(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와 법률 제11240호(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에 의해 각각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이러한 취지라면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적어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신설한 입법 이유에서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특별히 완화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며 입법 과오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결격사유도 없어야 할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10년의 경과와 무관하게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⁸¹⁾ 이에 관한 입법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며 또한 이러한 성범죄 경력자의 결격사유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0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의 취업 제한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주된 실시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소속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을 시설의 장 취업 제한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도 그가 속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 취업 제한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시설의 장의 결격 사유로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시설운영위원회

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거주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심의기구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3개 이내의 시설이고 같은 시·군·구에 있으며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거주시설일 경우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이용자 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분야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제3항·제4항).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다(동조 제1항). 그리고 시설의 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동조 제3항).

81 보건복지부 역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인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서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이라고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3: 18.

시설운영위원회는 시설 거주자나 종사자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시설 운영과정에 참여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또한 상당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시설운영위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이용자·보호자 및 근로자들이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위원들이 지역위원이나 전문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설운영위원회에 거주인의 인권 보호 등의 이유로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시설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보고 사항도 심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 예산·결산 심의 사항은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나 시설운영위원회는 대표권 및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이를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시설 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관할청의 보고와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재무회계규칙과 모순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운영위원회는 관련자들의 참여에 의한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의 유무와는 무관하고 또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관할청의 보고 및 감사와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그 기능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원금의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시설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역시 심의 사항으로 해야 한다.





(4) 장애인 대상 성범죄 · 학대 및 실종아동 신고 의무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 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 의무로 확대하고, 종사자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었다. 즉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⁸²⁾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59조의2 제1항·제2항).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3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당해 시설의 종사자에게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성폭력 관련 법령,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동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동법 제59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82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동법 제59조의2 제1항).

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 경력자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4항 내지 제6항,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36조의3).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와 응급조치 |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하며,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장애인 학대행위의 종류로 규정하고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항, 제59조의7).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동법 제59조의4).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해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동법 제59조의5).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조사와 재판에서 보조인이 될 수 있으며,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거나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59조의6).

| 실종아동·장애인 신고 의무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하며,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연령의 제한 없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 환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제2호).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구축해 운영하는 신고 체계(경찰 신고 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동법 제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여기서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하는바(동법 제2조 제4호) 장애인 거주시설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에 해당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 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신상카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5) 서비스 최저기준

| 서비스 최저기준의 의의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제도적·실천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2011년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도가 도입되었다(동법 제60조의3). 그리고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법률 제11239호, 2012.1.26.)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서비스 최저기준 제도가 도입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제정안)」이 행정고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77호, 2013. 2. 6).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서비스 최저기준 적용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동법 시행규칙 27조 제2항),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새로 규정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최저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공고안 부

칙 제2조).

장애인 거주시설에 적용될 서비스 최저기준은 시설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거주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제도적·실천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는 제정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김용득 등, 2009: 6~7).

첫째, 최근 장애 관련 법령의 변화와 거주 서비스에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요건과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거주 서비스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되는 최저한의 서비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시설 신고 절차를 집행하거나 새로이 시설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시설 신고와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 공적요양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 체계로 재편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서 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인증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기준은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최소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이용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문제, 각종 안전사고 등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이나 장애인 공적요양제도의 시행계획에 의하면 정부의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이 기존의 시설별 지원 방식이 아닌 개인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비스 최저기준은 거주 서비스의 합리적 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서비스 최저기준의 법적 성질 |

서비스 최저기준은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발령된다(동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 형식이다. 고시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지만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 즉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

에 해당한다.⁸³⁾ 특히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행정기준에 관해 개괄적(일반조항적)으로 규정하고 고시로 이를 구체화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 경우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게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대판 1987. 9. 29. 선고 86누484; 헌재 2004.10.28. 99헌바91).

서비스 최저기준은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거주 서비스 일반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될 내용으로 서비스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 지원, 환경, 직원관리, 시설 운영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 조항적으로 규정한 후 고시의 형식으로 구체화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동법 제63조 제1항·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3). 시설 운영자는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동조 제2항),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62조 제2항).

따라서 서비스 최저기준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 최저기준을 하회하는 내용의 시설이용계약(동법 제60조의2 제5항)은 무효이며 장애인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손해를 받은 때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⁸⁴⁾

| 서비스 최저기준(안)의 내용 |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안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

⁸³ 헌법재판소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제32조에 근거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의 법적 성질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5헌마161·189(병합).

⁸⁴ 서비스 최저기준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적정기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고 또한 이 기준은 엄격한 최소 기준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적정 서비스 기준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김용득 등, 2009: 265~266). 그러나 적어도 법적 의미에서는 최 저기준일 뿐이며, 적정기준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적정기준의 의미를 갖게 되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이 기준을 하회하는 내용의 서비스 제공도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최저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시설 신고의 수리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시설 운영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한 '권장'기준으로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 개발, 일상생활, 개별 지원, 환경, 직원 관리, 시설 운영 등 9개의 영역에 40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⁸⁵⁾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개요 및 영역 〉

| 개 요 | 영역 |
|----------------|---|
|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 기준 1 서비스 이용자 안내 / 기준 2 이용 상담 기준 3 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검토 기준 4 예비 방문 기준 5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조건 및 퇴소 |
|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 기준 6 욕구 사정 / 기준 7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 |
|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기준 8 의사결정 / 기준 9 참여 기준 10 위험관리 / 기준 11 비밀 보장 기준 12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 기준 13 이의 제기 |
| 4. 능력개발 | 기준 21 개별 지원 / 기준 22 건강관리 기준 23 약물관리 / 기준 24 노화와 사망 |
| 5. 일상생활 | 기준 17 여가 / 기준 18 관계 기준 19 사생활 / 기준 20 식사 |
| 6. 개별지원 | 기준 21 개별 지원 / 기준 22 건강관리 기준 23 약물관리 / 기준 24 노화와 사망 |

85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인권 영역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보다는 서비스 최저기준으로 규율해 규범력을 강화하고(인권 보호 영역의 내용이 광범위한 경우 '인권보호 최소기준'과 같은 독립적인 고시의 규율 형식으로 발령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연계 영역 역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점에서(기준 16: 지역사회 연계와 네트워크)에서 원칙적인 규정보다는 독립된 영역으로 보다 자세하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 준 | 기준 적용의 원칙 |
|---------|--|
| 7. 환경 | 기준 25 시설과 설비 / 기준 26 개인 침실 : 공간 요구 기준 27 개인 침실 : 가구와 시설물 기준 28 화장실과 욕실 / 기준 29 공용 공간 |
| 8. 직원관리 | 기준 32 역할 / 기준 33 자격과 자질 기준 34 직원 구성 / 기준 35 훈련과 개발 기준 36 지도감독과 지지 |
| 9. 시설운영 | 기준 37 질 관리 / 기준 38 정책과 절차 기준 39 기록 유지 / 기준 40 안전의 실천 |

그리고 영역별 기준에 관한 원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영역별 기준에 관한 원칙 >

| 기 준 | 기준 적용의 원칙 |
|------------------------------|--|
| 가. 서비스 안내 및 상담 (안 기준1-5) | 1)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함 2) 시설은 시설 예비 이용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 3) 예비 이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방문의 기회를 가짐 |
| 나. 개인의 욕구와 선택 (안 기준6-7) | 1) 이용자의 욕구는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2)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
| 다.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안 기준8-13) | 1) 이용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 2) 일반적인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3)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4) 이용자는 학대와 방임 등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 5) 이용자는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 기 준 | 기준 적용의 원칙 |
|---------------------------------|--|
| <p>라. 능력개발 (안 기준14-16)</p> | <p>1) 이용자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가지며, 적절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받음</p> <p>2) 이용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음</p> |
| <p>마. 일상생활 (안 기준17-20)</p> | <p>1)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음</p> <p>2) 이용자는 가족 및 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모든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존중받음</p> <p>3) 이용자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단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p> |
| <p>바. 개별 지원 (안 기준21-24)</p> | <p>1)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음</p> <p>2) 이용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약물을 보유·관리하며, 약물을 다루는 시설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음</p> |
| <p>사. 환경 (안 기준25-31)</p> | <p>1) 이용자는 가정과 유사한 설비를 통해서 개별 욕구를 충족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음</p> <p>2) 이용자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함</p> <p>3) 이용자는 개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와 설비</p> |
| <p>아. 직원관리 (안 기준32-36)</p> | <p>1) 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며, 직원의 업무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배정됨</p> <p>2)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짐</p> <p>3) 직원은 이용자 욕구 충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음</p> |
| <p>자. 시설 운영 (안 기준37-40)</p> | <p>1) 시설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적극 참여시킴</p> <p>2) 이용자는 시설의 문서화된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음</p> |

(6)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시설평가제도는 1997년 종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1999년 평가 결과에 따른 전원조치가 도입되고 2003년 임의평가에서 정기평가로 변경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시설 평가의 기준은 위에서 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평가의 결과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평가 결과에 따라 전원조치를 하는 때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때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동법 제38조 제3항)를 해야 한다(동법 제43조의2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해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시행령 44조 제2항).

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



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제도의 의의

(1) 사회복지서비스 급부에 관한 법적 행위 형식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동법 제60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제도의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급부에 관한 법적 행위 형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급부의 법적 행위 형식은 조치제도와 계약제도로 구분된다.

| 조치제도 |

조치제도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행정청에 서비스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 상담·복지욕구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을 결정(조치)하면 그에 따라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급부 형식을 말한다.

조치제도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법적 구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행정청에 사회복지 서비스 급부 신청을 한다. ②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인이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③ 신청인이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복지욕구조사 등을 통해 급부 내용을 결정하고 자신의 사무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행정청이 스스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서비스 이용자·부양의무자의 비용부담의 여부와 부담액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청이 결정하고 이용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행정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비로 지불한다(清正寬·良永彌太郎, 2003: 246).

| 계약제도 |

사회복지서비스의 급부에 관한 계약 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법적 형식이다.

사회복지서비스 급부 계약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지원비 지급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의 법적 구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서비스 내용과 이용 조건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설을 선택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는 이와 함께 관할 행정청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비의 지급을 신청한다. ③ 관할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 자격 요건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비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과 서비스 기관에 통지한다. ④ 지원비는 신청인이 선택한 서비스 이용료의 전체 금액 가운데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액(應能)주의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⑤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원비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⑥ 서비스 제공기관은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⑦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사회복지

지 서비스 기관에 본인부담금액을 지불한다. ⑧관할 행정청은 이용자별로 결정된 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비의 지급은 직불 방식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대리 수령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이승기 등, 2012: 114).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의 성격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본 전제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선택해 구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액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체 서비스 비용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비도 직불 방식이든 대리 수령의 방식이든 국가의 사정 체계에 따라서 개인별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동법 제79조 제2항, 제81조).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 및 국가의 시설운영비보조 등을 고려해 산정한 본인부담금액의 통보만을 규정하고, 개별 서비스 가액의 산정 기준이나 지원비의 지급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은 장애인이 선택한 서비스 이용료의 전체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장애인 개인에게 지원비를 지급(대리 수령 포함)하는 지원비 지급 방식의 이용계약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종래와 같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비 보조 방식의 이용계약제도로 이해된다(동법 제79조 제2항, 제81조, 동법시행령 제44조 참고).⁸⁶⁾

86 본인부담금제도는 장애인복지의 보편주의에 따라 거주시설 이용자의 입소 자격을 완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제도의 도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비제도를 활용함으로써도 가능한 것이다. 한편 조치제도에 의한 경우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서비스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조치제도를 오해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조치라는 행정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일방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조치의 결정 과정에서는 구체적 수요 충족의 원칙에 따른 개별적 사정 체계에 의해 당사자의 복지 욕구와 선택이 반영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개선이 요구된다(동법 제33조의6 참고). 한편 장애인의 시설선택권과 관련해서도 조치제도에 의한 경우 행정청의 위탁에 대해 시설 운영자의 수탁의 공법적 의무가 부과함으로써 시설선택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계약제도 하에서는 중증장애인이거나 충분한 자산이 없는 장애인이 이용을 신청한 시설이 이용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시설선택권과 관련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보조의 충

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1) 시설선택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해 기능 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선택할 때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장애인의 시설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동법 제57조).

(2) 이용 절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 및 결정, 이용계약 체결, 이용자의 시설 이용 중단에 따른 조치와 불이익 금지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거주시설 이용 절차는 일반 이용 절차와 긴급 이용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반 이용 절차

| 시설 이용의 신청 |

장애인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상태 및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제1항, 동법시행규칙 44조의2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직권에 의한 신청도 시설 이용 신청에 해당

실, 선택을 위한 시설 다양성과 특성화, 시설 운영자와의 대등한 관계성의 확보 등 계약제도의 실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현재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이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사업비 보조 방식의 이용계약제도에 의해서는 이용자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사법상 계약인 이용계약제도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민권적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마저 없지 않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기재로 작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다(동법 33조의2 제2항).

| 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와 통보 |

거주시설 이용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적격성 심사는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정도·등급,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이루어진다(동법 제60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 적격성 심사에서는 무엇보다 앞에서 본 시설 보호 보충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시설 이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시설 이용에 관한 적격성 여부 및 본인부담금액을 결정해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통보할 수 있다(동법 제60조의2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 제3항).

| 본인부담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79조 제2항).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와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 등을 고려해 정하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내지 제5항).

| 이용계약의 체결 |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 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설이용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

람이 계약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항할 수 있다(동법 제60조의2 제5항·제6항, 동법시행령 제36조의4).

시설이용계약에는 동법 제60조의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 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 절차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 중단 절차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계약에 관한 계약서 건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조 제6항·제7항).

| 시설 이용의 중단과 퇴소 |

시설 이용은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 동안 이용한다. 시설 운영자가 계약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이 경우 이용 중단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해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60조의2 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 제8항).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이용의 중단 외에 퇴소 사유 및 퇴소 절차 등에 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② 긴급 이용 절차

긴급 이용 절차는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조치를 받아야 할 이용자,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인 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이다(보건복지부, 2013: 17).

시설 운영자는 긴급 이용자가 있는 경우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 사항, 시설 이용 개시일, 일반 이용 절차에 따라 시설 서비스 이용의 신청과 이용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장

에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서비스 신청, 이용적격성 심사 등)를 안내해 긴급 이용자가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동법 제60조의2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 제4항).

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동법 제60조의4). 그리고 이와 같은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설 이용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 제6조 제1호).

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급부절차



(1) 문제의 소재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가 개별·구체적으로 사정되어 이에 근거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이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한 유형일 뿐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급부 체계는 기본적으로 조치제도에 의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도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그 기본은 조치제도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의 운영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급부 절차가 적용되는지가 현실적으로 문제된다.

(2) 공적 사정 체계와 개인별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절차로서 이용 계약제도는 동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조치제도에 대한 특별 규정이고, 적격성

심사 역시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한 거주시설 서비스 제공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며 거주시설 이용을 신청한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사정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에게 거주시설 이용자의 욕구 사정과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위임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공적 책임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며 이를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되는 사정 체계 역시 공적 체계로 구축될 성질의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시설 운영자의 사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사정 체계와 이에 근거한 개인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과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절차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급부 절차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는 장애인복지서비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이용계약제도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가운데 거주시설 서비스와 관련한 특별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 이용 절차에서 규율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급부 절차가 적용된다.⁸⁷⁾

(3) 거주시설 이용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급부 절차의 적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이 있으며, 복지욕구조사를 거쳐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 기간, 제공할 기관과 단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연계 방법이 포함된 보호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87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를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급부 절차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상의 혼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보장에도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법 적용의 정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론적 준비가 요청된다.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33조의2 내지 33조의6).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의 신청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적격성 심사와 거주시설 이용의 결정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서비스 유형 결정의 하나이며 거주시설에서의 요양과 지원 등의 서비스는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인 것이다.⁸⁸⁾ 결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상 제33조의3에 의한 전반적인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른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서 거주시설 이용을 결정해야 한다.⁸⁹⁾

(5) 거주시설 퇴소와 탈시설 정책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거주시설 이용의 적격성 심사와 결정은 거주시설 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 이용 절차는 시설 이용자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소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0조의2 제7항). 그러나 거주시설의 이용을 사회복지법상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한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시설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당초의 서비스 목표가 달성되어 시설 이용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해 비자발적 퇴소 조치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88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보호대상자의 경제 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수급권자의 욕구, 필요한 서비스, 장·단기 서비스 목표, 서비스 유형, 서비스 방법(내용), 보호대상자별 사정 자료, 서비스 기간 및 횟수(회/1주당), 서비스 제공 참여 기관 등이 수록된다(동법 제33조의5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4).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에 의해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요양과 지원 서비스도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한 서비스를 구체화한 것이며,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의한 욕구의 사정과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기준 6, 기준 7) 역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하여 이용계약으로 체결된 서비스에 관한 거주시설 내에서의 욕구와 서비스 이용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89 거주시설 이용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시설 이용에 관한 적격성 여부 및 본인부담금액을 결정하고,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거주시설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의 적격성 심사를 예정하고 있으나, 시설 보호의 적격성 심사는 입소 단계에서 1회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설 이용의 적격성을 심사해 더 이상 시설 이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이용의 부적격 결정을 하여 퇴소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특히 장애인이 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른 복지서비스의 급부에 의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충분하게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설 보호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되는 것으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 이용 절차를 독자적인 절차로 이해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급부 절차와 연계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 이용계약제도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정당화하는 법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5)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



(1) 거주시설 운영자의 인권 보장 의무

장애인의 인권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침해 못지않게 사인 간의 관계에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거주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되는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에 대해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시설 이용자의 인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객관적 규범 내지 가치 질서로서의 기본권은 단체 또는 개인과 같은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에 의하여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헌법적 의무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

획의 수립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이해된다(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 제3항). 입법론적으로 이와 같은 단기의 적격성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잠정적 긴급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인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설 운영자의 의무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동법 제60조의4 제1항).

(2) 거주시설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과 시설 내 인권옹호기구의 중요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동법 제57조 제2항).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은 이용계약의 필요적 내용이다(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조 제6항). 한편 계약제도의 도입에 의해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불만과 이의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의 계약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사법에 의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해결 방법은 오랜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들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시설 안에서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점검 기준을 제시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시설 이용자의 고충과 불만을 접수해 해결하는 제도로서 시설 내 고충해결기구(시설옴부즈맨)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거주시설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서비스 질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데에도 유효한 수단이 된다.

(3)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과 인권지킴이단 운영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목적의 하나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과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보장 세부 가이드라인 및 점검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⁹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운영자 및 직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권장기준은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선언, 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의 이념에 기초해 시설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시설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19개의 행동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를 위한 인권 옹호 조직으로 시설별 직원과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조직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의 인권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며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계획·실시하고 이용자에게 대한 인권 옹호 활동을 그 업무로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안) 참고).⁹¹⁾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을 구체화하는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보장 세부 가이드라인 및 점검기준’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시설 선택 및 입소 단계, 시설 거주 단계, 시설 퇴소 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단계에서 보장되어야 할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이의 보장을 위한 기관·직원 및 이용자의 역할 및 점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⁹²⁾

지침으로 규정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과 인권지킴이단의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평가와 재정 지원의 기준에 반영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를 위한 신고의 수리 요건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 요청된다.

90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3: 315 이하 참고.

91 인권지킴이단의 기능 및 사업 내용(동규정안 제4조 참고)으로 볼 때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생활과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관한 고충이나 이의 제기 및 이의 해결을 위한 고충해결기구(시설운영부즈맨)로서의 기능은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지킴이단 내에 고충해결기구를 두도록 하거나 인권지킴이단과는 별도의 고충해결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충해결기구(시설운영부즈맨)는 장애인의 시설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92 (*)는 핵심 지표를 의미한다. 단계별로 규정된 권리의 내용은 장애인에게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에서 핵심 지표와 비핵심 지표를 구분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상대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 모든 권리가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 이용자 인권보장 세부 내용 및 분류 〉

| 단계(지표 수) | 인권보장 내용 |
|--------------------|---|
| 시설 선택 및 입소 단계 (3개) | 1. 정보수급권 2. 예비방문권 3. 계약체결권(*) |
| 시설 거주 단계 (25개) | 4. 의복선택권 5. 이·미용권 6. 화장실접근권 7. 목욕권 8. 식생활권 (*) 9. 간식선택권 10. 주거환경권(*) 11. 건강보장권(*) 12. 개인위생보장권 13. 학대안전보장권(*) 14. 호칭권 15. 금품처분 및 신분증소지권 16. 서비스보장권(*) 17. 종교생활보장권 18. 지역사회접근권(*) 19. 성생활보장권 20. 가족생활보장권 21. 자립생활지원권 22. 사회보장수급권(*) 23. 교육보장권 24. 직업선택권 25. 적정보수권 26. 정치권 27. 문화권 28. 절차적 권리(*) |
| 시설퇴소 단계 (2개) | 29. 퇴소결정권(*) 30. 시설변경권 |

마. 감독과 시설의 개선·정지 및 폐쇄 명령

1) 지도·감독

(1) 지도·감독권자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 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이 이와 같은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이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해서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도·감독 등에 관해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도·감독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제3항).

(2) 지도·감독을 위한 촉탁

지도·감독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고받은 사항이나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제공과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촉탁할 수 있다. 촉탁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해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동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24조의3).

(3) 감독 처분 결과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거나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했거나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해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때 또는 시설에서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했거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해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처분 사유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그 결과를 고려해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처분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공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처분의 사유와 근거 법령, 처분의 내용, 처분일이며, 공표 방법은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게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동법 제51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2)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및 장애인복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62조).⁹³⁾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등에 관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미신고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았을 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및 1년 이상 시설이 휴지 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은 때에도 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⁹³⁾ 사회복지사업법은 서비스 최저기준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법은 이와 달리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역시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적용된다(동법 제40조 제1항).⁹⁴⁾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자진해 시설을 휴지·폐지하는 경우(동법 제38조 제3항)와 동일하게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동법 제40조 제2항). 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해 시설 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1차 위반만으로 시설 폐쇄를 명한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참고).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동법 제83조의 2 제1호).



94 장애인복지법이 시설폐쇄명령 등의 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달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규정은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해 특별히 완화해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특별한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율로 볼 수 없다.

III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

1.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역할



1) 개념

2011년 3월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상(제58조 제1호)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었다. 시설의 기능을 거주 기능 이외에 사회재활, 직업훈련, 재활치료 등의 모든 서비스를 시설 내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거주시설은 거주를 지원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다른 활동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일반인과 분리시키지 않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상화 논리와 배치된다(김용득, 2008: 12).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거주 공간을 활용해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생활 지원의 성격을 강화하였다(유동철 외, 2013: 408).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김용득(2008)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연령과 관계 없이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개별적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개인적으로 거주시설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숙박시설 또는 개별적 보호와 숙박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기능

거주시설은 특수한 욕구 또는 가정상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정을 대신해 생활의 장을 제공해주며, 자활·재활 서비스를 통해 거주자의 사회 복귀를 최대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변용찬, 2005).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으로는 첫째 생활 서비스 제공 기능, 둘째 기술(치료·훈련) 서비스 제공 기능, 셋째 원조 서비스 제공 기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생활 서비스 제공 기능은 거주자의 가정에 대한 대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환경과 유사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인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 서비스 제공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장애인의 기능 회복이나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 각종 재활 서비스 제공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각종 치료 및 훈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서비스 제공 기능 수행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제3의 서비스 기능으로 장애인을 둘러싼 인간관계나 사회와의 관계성 조정, 권리의 확보, 지역사회 자원 동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적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박태영, 2000).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세 번째 기능이다.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 번째 기능은 자칫하면 잊히기 쉬운 기능이기 때문이다.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최대한 돕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역사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설화는 두 가지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장애인을 분리하고 격리해 장애인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슷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한 장소에 머물면서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운동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설화는 장애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끼리끼리의 동종 의식을 심어준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시설화가 장애인을 능력 없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여기서는 시설화와 탈시설화의 역사적인 경험을 먼저 조명해보도록 한다(여기에 대해서는 유동철, 2013에서 재인용).

1) 서구의 역사

(1) 시설화의 역사

장애인에 대한 시설화가 시작된 것은 동정과 연민의 관점이 대두된 중세시대부터다. 특히 중세의 종교적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연민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인본주의를 주창한 르네상스 이후에는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본주의 시기에 해부학과 생리학이 발달하면서 장애의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비로소 장애인은 악마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치료받고 교정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시각이 나타났다.

16세기에 들어서야 교정을 위해 장애인의 수용과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은 장애인과 같이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구빈원에서 수용하기에 이르러 장애인 시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비롯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최초의 구빈원이 들어선 것은 1662년 보스턴이다.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구빈원처럼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급격히 증대했다(Braddock and Parish, 2001). 하지만 구빈원의 역사가 보호가 아닌 처벌의 역사였음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한 축에서 구빈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17~18세기를 풍미했던 계몽주의 사상은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된다. 베이컨, 뉴턴, 로크 등이 주도한 계몽주의 사상은 자연과학과 심리학의 발달을 기반으로 사람은 발전 가능한 존재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지적 장애(intellectual disability)와 정신병(mental illness)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18세기 들어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비로소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1752년 최초의 정신병원이 들어섰다(Braddock and Parish, 2001). 그리고 이 시기에 장애인(주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19세기에는 급격하게 팽창했다. 19세기에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거주·교육시설을 비롯해 지적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도 나타났다. 이로써 장애인 시설 시대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애인 시설에 너무 많은 장애인이 몰려들었다. 특히 정신병원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위험한 사람들로 인식되던 정신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던 사람이나 기관은 앞 다투어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정신병원은 치료를 포기하고 단순한 수용 서비스밖에는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치료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기에 이르렀다(Scull, 1991). 19세기말에 이르러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18세기의 낙관론, 즉 정신장애인을 치유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신념은 19세기에 이르러 완전히 붕괴되어버렸다. 정신병원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자 시설 종사자들은 이를 시설 이용인을 통제하는 기회로 삼고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극도의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 두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말 그대로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시설 거주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적장애인의 주거시설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강제노역이나 구타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정신병원에서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처우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났다. 1860년대 스코틀랜드, 그리고 1885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서 가정 보호 프로그램이 생겨난 것이다. 가정 보호 프로그램은 친인척이 아닌 다른 가정에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Braddock and Parish, 2001).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개척자적 프로그램일 뿐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시도가 본격화한 것은 겨우 수십 년 전부터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시설의 확장은 계속되었고 강제노역과 불임시술 등 비인간적인 처우도 계속되었다.



(2) 탈시설화의 역사

1940년대를 지나면서 탈시설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46년 국가정신보건법(National Mental Health Act)이 제정되고 국가정신보건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가 설립되어 이후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갔다. 이에 힘입어 1957년에는 미국의 모든 주가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Felix, 1957).

이러한 탈시설화의 바람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한 약물치료의 효과성으로 인해 보다 더 강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또한 1935년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연금 생활이 가능해진 장애인들(특히, 노령장애인)이 시설을 떠나기 시작했다.

한편 1950년대 이후의 장애 사회에서는 장애를 개인적인 비극으로 보지 않고 장애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문제점에 주목하는 소위, 사회적 모델이 등장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1960년 대통령에 당선된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는 이듬해 지적장애인을 위한 국가 단위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천명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장애대통령위원회(President's Panel on Mental Retardation)’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시설은 소규모화 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관련법을 개정해 재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을 두 배로 증액했으며, 모든 주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경우 1955년에 약 55만 9000명이던 정신병원의 장애인이 1975년에는 약 20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시설에 거주



하던 지적장애인도 196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962년의 경우 지적장애 생활시설 1개소당 평균 주거 인원이 1422명이나 되었었다(Braddock and Parish, 2001).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탈시설화의 바람이 1970년대에 들어 관련법이 전면 개정·제정되면서 더 강한 기류로 이어졌다. 1971년에는 사회보장법을 개정해 지적장애인을 위한 중간보호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ies/Mental Retardation)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처우와 공간에 대한 연방 기준이 제정되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은 연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보조금은 시설 운영비의 50~7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1967년 약 19만 4000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시설 거주 장애인은 1998년의 경우 5만 2801명으로 감소했다(Braddock and Parish, 2001).

그리고 마침내 1973년 미국에서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이 제정되어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리고 ‘중대한 지장(undue hardship)’이 있지 않은 한 장애인에 대해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1975년에는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s Act, 현재의 IDEA)이 제정되어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1995~1996년에는 장애아동의 46%가 완전히 통합된 일반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각장애아동들도 분리된 거주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1998년 8%로 급감했다(Braddock and Parish, 2001).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겠다는 1970년대의 흐름은 1980년대 초부터 장애인 시설도 지역사회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흐름으로 변했다. 1980년대 초에 주 정부는 상당한 수의 장애인 시설을 폐쇄시켰다. 1991년 뉴햄프셔 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지역사회와 격리된 시설이 없는 주가 되었으며, 1998년까지 36개의 주에서 118개의 시설이 폐쇄됐다. 그 결과 뉴햄프셔 주를 비롯해 알래스카, 하

와이,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컬럼비아 등의 격리된 시설이 모두 사라졌다.

대규모 격리 수용시설이 사라지는 대신 1~6명 정도의 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소규모 시설이 생겨났다. 1977년 2만 409명에 불과하던 지역 사회 거주 장애인은 1998년에 23만 779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Braddock and Parish, 2001).

이러한 흐름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1980년에 4만 4400명이던 대규모 시설 생활자들이 1996년에는 7400명으로 격감했다(Emerson et al, 2000).

2)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회복지의 시작은 6.25전쟁 이후 ‘고아원’으로 대표되는 거주시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단체들에 의한 구호사업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시기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용 보호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고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의 ‘조치위탁’을 받아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본격적인 공급자로 나서게 되었다(양난주, 2011: 54). 지금도 사회복지 거주시설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으며(2004년 942개에서 2009년에는 3770개로 증대)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의 대표적 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로 ‘거주시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종래 심신장애아동과 성인 심신장애자 업무를 분리·담당해오던 것을 재활과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게 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시설의 종류에 대해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시각장애자 재활시설, 청각언어기능장애자 재활시설, 정신박약자 재활시설, 심신장애자 요양시설, 심신장애자 근로시설 등으로 나열하고 법인으로 허가받은 자만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설은 1985년에는 90개소, 1990년에는 118개소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는 타시설로부터의 전환, 신축 등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추이와 현황은 <표 23>과 같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이며, 한 시설당 평균 이용인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3항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모가 3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 거주시설은 아직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추이 >

| 연도 | 1990 | 2001 | 2010 |
|------------|--------|--------|--------|
| 시설 수 | 118 | 203 | 452 |
| 현원 | 12,759 | 17,720 | 24,395 |
| 시설당 평균 이용인 | 108.12 | 87.29 | 53.97 |

출처: 보건복지부(2007, 2011).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주: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2012년부터 거주시설로 분류되어 비교의 명확성을 위해 2010년까지의 자료만 인용했음.

한편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운동은 초기 시설 내 인권침해와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 시작되었다. 즉, 2003년 11월 조 건부정신요양시설인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사건을 계기로 개별 시설에 대한 대응을 넘어선 탈시설 운동이 시작되었다(박숙경, 2007).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소개된 자립생활운동 및 철학이 2005년을 기점으로 확산되면서 탈시설화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다. 즉, 탈시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이루고자 하는 삶이 바로 ‘자립생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의 전국적 확산은 탈시설화 운동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토대로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탈시설정책위원회’가 활동을 본격화하는 한편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연구(김정열, 2003; 유동철, 2003; 이태수, 2003; 김명연, 2011)와 함께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연구 논문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김동기, 2009; 김진우, 2010; 노금호, 2011; 조규필, 2011). 이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집단적 생활이

라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에 필요한 편의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시설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는 서비스 변경 신청이라는 양상으로도 드러났다. 탈시설을 주장하는 장애계에서는 탈시설정책위원회의 주도로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관련 기획소송을 준비했으며, 2009년 12월 16일 국내 최초로 15년 이상 시설 생활을 해온 3명의 장애청년이 ‘자립생활을 지원해 달라’며 이를 위해 ‘주거 지원, 활동보조, 생계 지원, 직업재활 등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러나 당시 음성군청과 양천구청은 거부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세 명의 장애청년은 해당 시군구청인 음성군청과 양천구청을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9월 30일 청주지방법원은 윤국진, 박현 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0구합 691). 당시 판결은 음성군수의 거부처분이 절차법상, 실체법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월 28일 선고 2010구합23434 판결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양천구청장의 거부처분은 적법한 복지요구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나아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았다(유동철, 2011: 59-60).

다. 탈시설의 필요성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이 인권친화적으로 변하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거주시설 운영자나 종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토대 위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인권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의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시설에 대한 주장이 설득을 얻는 것이다. 우리나라 거주시설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 특성은 크게 4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비선택성이다. 가족에 의한 세습적 운영 형

태도 비판받고 있지만 이것은 운영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1) 집단성

우리나라 거주시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복지권 침해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집단성에 기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당 평균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은 기본적으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조직 유지를 위한 기준이기도 하며 공동생활을 위한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거주시설같이 집단이 대규모인 경우 공동생활을 위한 기준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거주시설 대부분은 하루 일과 시간 및 취침 시간, 외출 시간, 외부인 접촉 방법, 용돈 관리 방법, 종교 활동 등 다양한 생활에서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다양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명연(2011)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집단적 생활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거의 모든 기본권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p.150). 실제로 신고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외출(40.1%)이나 외부와의 전화 통화 부자유(14.2%), 이성 교제 및 결혼의 부자유(40.7%) 등 여전히 이용인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백은령·임성만, 2006).

2) 격리성

우리나라의 시설 보호는 집단성과 함께 격리성, 폐쇄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변용찬·이성영·이상현, 1996). 격리성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물리적 격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격리이다. 물리적 격리는 주거시설이 지역사회와 거리상으로 격리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격리는 사회적 자원과의 교류에서 격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시설의 폐쇄성은 사회적 격리에 해당한다.

물리적 격리는 거주시설의 대규모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에 대규모의 거주시설이 안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주시설이 먼저 정착한 주위가 개발되면서 자연히 지역사회와 가까워지는 경우는 있지만 주거지역에 대규모의 시설이 들어선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격리는 모든 아동, 장애인, 노인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시설 노인의 경우 평소 절망감, 상실, 고독감,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데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격리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곽병은, 2006:7).

이와 관련해 김명연(2006)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이러한 인권유린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이 시설생활인 인권침해의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노연희·이용표·박경수(2006)는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가족 중심의 운영으로 시설을 사유화하고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장이 형식적으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관과의 유착 관계 등을 통해 조직을 보전해나가는 맥락’에서 찾고 있다.

3) 권력불평등성

사회복지 거주시설은 돌봄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장이다. 사실 돌봄은 돌봄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상호 배려, 관심을 바탕으로 하며 관계에 내포된 가치의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 실천이다(Held, 2006). 실제로 거주시설 운영자들과 종사자들은 이러한 가치에 토대한 사회복지 실천의 장으로서 거주시설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자와 돌봄을 제공받는 자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권력불평등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의 행위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Kittay, 1999: 35).

이로 인해 거주시설 서비스 과정에서도 시설 이용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대화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며, 심한 경우는 폭력과 학대의 대상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실제 조건부 미신고시설(장애인)의 경우 제대로

된 식기를 갖추지 않은 채 ‘한 그릇 식사’가 제공되는 사례나, 휠체어 등 보장구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거주시설 내에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38.2%였으며, 직업활동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73.2%였고, 아무런 문화여가활동 없이 시설에서 낮 동안 가만히 있다(31.8%) 등 열악한 인권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남구현·박숙경·김명연 외, 2005:49)

4) 비선택성

거주시설의 비선택성 또한 우리나라 거주시설 정책의 큰 특징이다. 거주시설의 비선택성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설 입소의 자발성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거주시설에 대한 선택권 문제이다.

사실 거주시설 문제의 출발점은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입소가 많다는 것이다.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한 사람은 22.1%에 불과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시설에 들어오거나(18.0%), 본인은 들어오고 싶지 않았으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강요로 들어온 경우(35.0%), 본인 스스로 결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설득과 권유가 있어서(24.9%) 등 응답자 중 77.8%는 사실상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 퇴소를 원하는 경우가 50.7%, 원하지 않는 경우 43.0%, 잘 모르겠다가 6.3%로 나타났다(남구현·박숙경·김명연 외, 2005).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전체 입원 환자 중 비자발적 입원 환자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미경 외: 2008).

다양한 거주시설에 대한 선택권의 문제는 우리나라 거주시설 서비스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비롯된다. 거주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보장 수급자이거나 무연고자를 중심으로 입소자가 결정되며, 시설 입소 희망자가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러한 주거시설은 노인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노숙인시설로 존재한다. 그러나 거주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능을 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전통적인 거주시설과 다른 입소 절차를 거친다.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 조건이 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자신이 요양시설을 선택해 입소할 수 있다(양난주, 2011: 58-59).

2.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및 지역사회 연계

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 탈시설



시설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시설에서 잠자고 먹을 수 있지만, 삶의 자유를 찾기 위해 지역사회로 나가고 있다. 버겁고 힘들더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다. 실제로 시설 밖으로 나오니, 소소한 일상부터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에 부딪혀, 때때로 다시 시설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 시설 안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밥 주고, 목욕시켜주고, 잠잘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 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30~4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 곤혹스럽다.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활동보조인 구하는 문제도 녹록지 않다.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아야 한다. 혹시 활동보조인 신청 자격을 잃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살 곳을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편의시설 문제는 기본이고, 장애인이 살 집이라고 하면 집 주인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것도 하늘에서 별 따기이다. 가족들이 시설에 보낼 때는 이미 가족관계의 인연을 다한 것 같은데, 그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다. 자립생활을 하기까지 나를 지지하고 지원한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눈길을 끄는 멋진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의 프리포즈를 하고 싶지

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면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나 차별이 없어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집단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적인 모든 생활이 노출되는데다,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 집단생활 그 자체다.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하고 잠자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등의 획일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 혼자만은 아니라고 한다면, 집단생활 자체를 파괴하게 된다. 그럴 때, 시설 안의 눈총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 앞선다.

시설 이용인의 탈시설 권리 실현 움직임은 7~8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슬픔슬픔’ 나타났다. 지역사회 장애 인권 단체들의 노력으로 시설 사람들이 꾸준히 탈시설을 감행하고 있다. 중증의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발달장애인도 용기를 내어 탈시설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다. ‘탈시설 권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될 때, 사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냉랭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대적으로 반응했다. 시설 해체를 꿈꾸는 것인가, 시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무조건 모든 사람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인가, 또한 시설에 살고 있는 모든 이가 불행할 것으로 치부하는가 같은 반응을 하며 격분하는 모습이였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노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의미 없는 노동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인가 등의 반응이였다. 7~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탈시설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많다. 심지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학자들도 조금 부담스럽다는 마음을 감추지 않을 정도였다.

정부 역시 탈시설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탈시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산’이 문제라고 했다. 시설보다 지역사회에 살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들겠냐는 질문에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지, 계산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했다.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 정부의 의지가 아닌 민간의 의지로 법률이 개정돼 미미하나마 탈시설 권리가 명시되었

다. 이제 정부의 예산 반영 추이를 지켜볼 때다. 정부는 탈시설의 첫 단계로 소규모화를 선언하고 2011년에는 장애인복지법도 개정했으나 아직 소규모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일단 소규모화를 지향하는바 정부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시설 소규모화, 그리고 더 나아가 탈시설에 관한 실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들의 반응 역시 안타까움을 빙자한 냉소에 가까웠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을 곳이지 않으나, 잠재워주고, 먹여주는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사회적 역할을 할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등의 말을 했다. 이러한 말 속에서 장애인이 내 곁에만 있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가족들은 정말 화들짝 놀랐다.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워 가족 간의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하며 시설에 보냈는데, 이 무슨 일이나며 응대하지 않으려 했다. 함께 살기 힘들어서 시설로 억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니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 당사자 반응은 사뭇 달랐다. 자신이 나와서 살 수만 있다면 나오고 싶다고 말했다. 죽을힘을 다해 살아보겠노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세상에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렵고, 버거울 것 같으니, 포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사자와 당사자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아닐까 한다.

탈시설(Deinstitution)은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 재활, 사회복귀, 자립생활을 위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개념이다. 시설 유형별로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시설 중심의 획일적인 수용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공간을 당사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술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권리의 개념은 장애인 당사자의 존엄한 삶을 대변하는 인권 항목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탈시설 권리가 이슈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다. 그전까지는 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나 비리에 대해서 인권 단체와 장애

인 단체 등이 공대위를 꾸려 사건별로 대응해왔다. 이어서 진행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인권실태조사’ 과정을 통해, 성폭력 및 감금 등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아니라도, 집단생활 그 자체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자기선택권이 제한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시설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다.

집단생활의 대표적인 곳은 학교, 군대, 감옥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곳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졸업, 제대, 출소가 있고 당사자 스스로가 그 권한을 갖는다. 시설에도 퇴소가 있지만 쉽지 않다. 가족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10년 이상 시설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많다. 당연한 문제의식이 생겼다. 군대, 감옥, 학교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 입소하고, 그리고 평생 시설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집단생활 그 자체로 일상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었다.

시설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만난 시설 장애인들은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 집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지역에 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보호자와 시설장이 동의해주지 않아서 나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꽤 많았다. 시설이 집단생활 그 자체로 인권침해와 차별의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하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탈시설을 요청하는 상황이 탈시설 권리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탈시설 권리가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2011년 도가니 사건이 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또는 나타나는 실제 상황임을 사회가 알아버리게 된 것이다. 이제 탈시설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의 원리, 거주 이전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는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을 해석할 경우 장애인의 시설 보호는 강제구금의 성격을 갖는 매우 엄중한 조치로서 최후의 보루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이 지역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인 시설 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적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탈시설 권리는 시설 이용인이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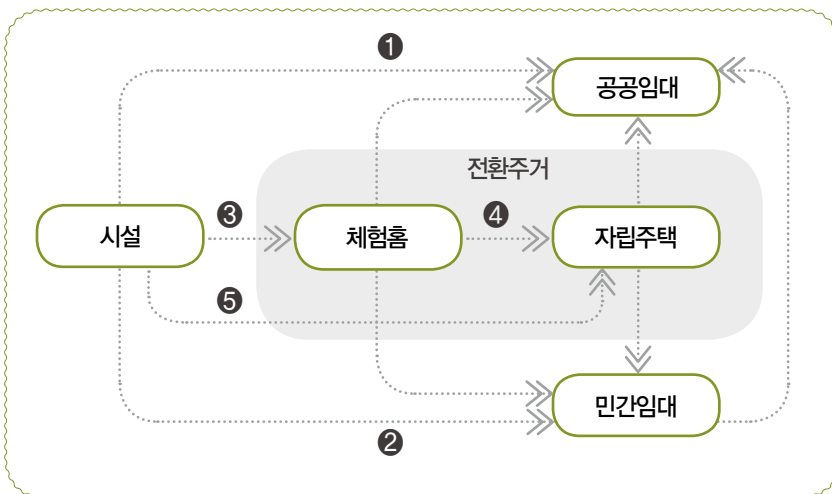
로, 국가가 재정상의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나. 지역사회 자립 지원 현황 ⁹⁵⁾

1) 주거 공간

2009년 이후 서울시(2009), 부산시(2009), 광주시(2010)에서 실시한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설 이용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 소득, 활동보조 등 3가지를 꼽았다. 또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자립욕구조사에서도 자립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집, 생활비, 일자리, 활동보조를 꼽아 앞선 지자체 조사에서 나타난 필요한 지원과 별반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 중 주거 공간은 시설에서 나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일차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시설에서 나오기가 어렵다.

〈그림 2〉 시설 이용인의 주거 공간



95 시설이용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조한진 외, 2012) 중 '주거공간', '자립정착금', '달시설-자립생활 지원기관' 일부 발췌

〈그림 2〉에서 ①과 같이 시설에서 곧장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 우선 주민등록상 세대주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시설 이용인은 시설장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시설 거주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금 마련도 녹록지 않다. 하지만 시설 이용인이 시설 주소로 세대주 독립을 해 근처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등 시설 안에서부터 준비할 필요는 있다. 물론 우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자립하는 시설 이용인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②와 같이 민간임대로 가는 경우는 최소한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설 내에서 몇 백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모으기 어렵고 편의시설을 고려할 경우, 일반 주택가에서 거의 집을 구할 수 없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하게 되면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시설 이용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집을 구해 지역사회로 자립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체험홈이나 자립주택과 같은 ‘전환주거⁹⁶⁾’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태껏 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는 것을 주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와서 자립해서 살 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체험홈은 임시 주거 공간의 형태로, 오랜 시설 생활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괴리감을 줄이고 초기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수 있다. 자립주택은 좀 더 독립적인 주거 형태로, 체험홈이 1년 이내 등 비교적 짧은 거주 기간을 갖는다면, 자립주택은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가기 전까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최소 보증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동안 제공하는 주택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전환주거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하려는 시설 이용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체험홈, 자립홈, 자립생활가정, 자립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2012년

96 시설에서 사회로 자립 전환을 위해 필요한 주거 공간이라는 의미로 전환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체험홈, 자립홈, 자립주택, 자립생활가정 등 지역마다 그 형태와 의미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경우, 체험홈은 최장 2년, 자립생활가정은 최장 5년 거주.

12월 현재 광역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충북, 전남, 경남 등 8군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구에서는 경북 경주시·경산시, 경기도 성남시 3군데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공모사업을 통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택 구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운영 주체의 예산에 사업의 한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산, 인천, 전남, 경북 경주시·경산시에서는 주택 구입비와 운영비 모두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택 구입비와 운영비 둘 중 하나만 지원하는 형태다.

체험홈·자립홈의 거주 기간은 대부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인데, 시설 퇴소 장애인은 주거 공간과 함께 각종 서비스와 권리 옹호 활동을 하며 오랫동안 시설 생활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었던 삶에서 전환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초기 기간으로 삼고 있다. 체험홈이나 자립홈 이후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체험홈 이후 자립생활가정이라는 주거 공간을 지원하며 최장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 퇴소 장애인은 체험홈이나 자립홈 거주 기간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 이전하거나 일정 금액의 돈을 마련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역사회 정착 2년 내에 돈을 모으거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쉽지는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시 자립생활가정과 같이 단계적으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제공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 이외 경남, 대구, 광주, 인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면적인 주거 서비스 제공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껏 장애인에게 주거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했다면, 이젠 개인의 선택과 개별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접목해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체험홈·자립홈과 같은 탈시설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적 토대가 되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2)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은 시설 퇴소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2012년 12월 현재 7개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는 성남시만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행했고, 2010년에 대구·전북·경남·충북, 2011년에 광주, 2012년에 강원도와 경기도 성남시가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자립정착금 지원을 하는 8개 시·도 중 5군데에서 500만 원, 충북은 300만 원, 서울은 600만 원, 전북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시행하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대부분 처음부터 500만 원을 지원했고, 서울시는 처음 100만 원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800만 원으로 꾸준히 증액하고 있으며, 2013년 장애인인권증진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15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돈을 적립하기 어렵고 마땅한 주거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작 몇 백만 원으로는 자립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립 시 목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 지원과 함께 자립정착금액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과 지원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 자격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다가 퇴소한 장애인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거주시설 최소 거주 기간, 만 18세 이상 성인 등 구체적인 신청 자격을 내부 지침으로 두고 있기도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있었고,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 유형에서 퇴소한 장애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부랑인시설 거주자 상당수가 장애인이고, 정신요양시설 또한 마찬가지로 고려할 때,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가 아니라 시설 퇴소자로 그 신청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청 방법과 지급 형태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신청하면 개인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개인 신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하면 시설로 자립정착금이 입금되고 시설에서 퇴소 장애인에게 입금하는 형태로

지급하기도 했으며, 시설에서 신청은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형태로 지급하기도 한다. 대부분 현금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자립 시 필요한 현물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형태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한다.

3) 활동보조

시설에서 생활할 때는 생활재활교사 등을 통해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받았으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면서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해 일대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급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2006년 서울, 대구, 인천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제도화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1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전국에 확대되었다.

전체 장애인 중 13.9%가 일상생활에 대부분 혹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실과, 전체 장애인의 4.9%가 1년에 10회 미만으로 외출을 하는 현실(보건복지부, 2011)에 비하면, 현재 서비스의 대상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등급 1급으로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제한해 오다가 2013년부터 2급 장애인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하지만 등급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도 장애인등급 재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 즉 장애인 개인의 환경과 요구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등급으로 제한하는 현 활동보조 서비스는 한계가 많다. 결국 이 한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별 서비스 확대 등 전면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편을 통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수급자는 전체 장애인의 2%에 불과한 약 5만 명이며, 그 중 실제 이용인은 4만 명이 채 되지 않는데(2012년 7월, 보건복지부), 거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수급 자격을 갖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최대 15%, 월 최대 20만 원가량의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서비스 급여는 신체 거동 정도를 묻는 인정조사표 점수에 따른 '기본급여'와 독거·취약가구·학교·직장 등 생활 환경에 따른 '추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까지 기본급여는 월 최대 100시

간에 불과하며,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인 최종증장애인이 독거인 경우 추가급여는 월 최대 80시간에 불과했다. 아무리 장애가 중한 사람이라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월 100시간이 상한 시간이었다. 2012년 고(故) 김주영 활동가와 파주 장애 남매 등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인 최종증장애인이 독거나 취약가구 등인 경우 추가급여를 월 최대 260시간으로 확대하여, 현재 월 최대 시간은 기본급여 100시간과 부가급여 260시간을 합한 360시간으로 확대되었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월급여액이 최대 81만 정도이고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현실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시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을 시행 중에 있다. 추가지원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지원에 추가하는 형태로 제공하며, 경상남도, 대전시, 울산시 등에서는 정부 제도에서 배제된 3급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도 하고 있다. 전남은 현재, 정부 지원에 지자체 추가지원을 합쳐 월 최대 720시간, 즉 하루 24시간 제공 중이며,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월 최대 660시간, 하루 2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등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660시간을 제공하며 2014년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할 예정이다.

4) 소득

지역사회 자립 시, 장애인 소득은 노동을 통한 임금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진정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장애인 노동은 자립하는 데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 소득보장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개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 일정 소득 이하인 국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고 있다. 부양의무기준은 자립의 최대 걸림돌이다. 특히 시설 이용인 자립 시, 가족 소득으로 수급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서 기존 시설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수급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다. 부양의무기준 폐지 또한 탈시설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장애인

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소득 보장과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었다. 장애인연금은 2013년 현재, 연령·소득 수준(본인 및 배우자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라 최대 17만 4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등급 1~2급과 3급의 중복장애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 시행 전에는 중증장애수당과 경증장애수당으로 구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을 지급하였다.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통합되면서, 경증장애수당만 시행 중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인 경우 3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연금과 통합 이후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전에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기도 한다.



5)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기관

미국 일리노이 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탈시설전환국(transition bureau)을 두고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 탈시설전환국은 시설 장애인을 연 1회 1번 이상 면담하고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해 자립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주거 제공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각종 자원을 연결해주고 있다. 2007년 11월부터 시작된 부서인데, 1년 동안 150여 명의 탈시설을 목표로 지원, 2008년 180여 명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게 되었다. 즉 주정부의 공식적인 행정 시스템 내 탈시설지원부서를 설치해 구체적인 책임과 계획 아래 지원하고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부서나 별도 기관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장애인 부서 내 자립 관련 팀 또는 시설 관련 팀에서 정착금, 체험홈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정도이고, 아직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독립적인 부서나 기관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시 출연 기관 중 하나인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준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2009년 10월에 개소하였다. 현재 체험홈은 2013년 25개소 운영 중이고 2017년까지 3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립생활가정은 2013년 27개소 운영 중이고 2017년까지 5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의 약 3200여 명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입·퇴소 장애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운영, 운영기관 모니터링·지원, 코디네이터 교육, 시설 거주 장애인 인권 향상 지원 서비스 등의 업무를 근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 중앙정부 지원 현황

현재 중앙정부는 탈시설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전환기관도 설립되어 있지 않고 전국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정착금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중앙정부 차원의 자립정착금 예산 확보가 거론되기는 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번번이 막히거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전국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해 기본적인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 이용인의 욕구·실태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다. 또한 2011년부터 국고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중점 사업으로 탈시설 지원 업무를 추가했지만,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마땅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탈시설 직후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의존적이며 우선순위에 밀려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인프라만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복지의 지방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다. 하루바삐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집행 계획 수립, 지원 체계 구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전통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을 보호하며 시설 내에서의 안녕을 꾀해 왔다면, 최근 자립생활 패러다임 확대는 시설의 공공성 확대, 시설 소규모화, 탈시설,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시설 이용인 또한 시설에서 한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자립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당사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시설이 수용 보호 위주로 시설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밖으로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었다. 또한 이는 시설 이용인 개개인의 욕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도 함께 요구한다.

우선 시설 내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자유로워야 한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 사는 시설 경험 장애인 대부분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즉 적어도 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자 동의라는 명목으로 외부 만남이나 외출을 꺼리고, 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자립할 수 있는냐고 우려하는 시설보다, 시설 자체에서 자립 목표를 세워 외부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곳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가족은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시설을 나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가족 등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탈시설 자립생활에 많이 뛰어 들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TV나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습득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탈시설 자립생활에 많이 도전했고, 시설 내에서 스스로 조금이나마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립생활이 용이했다. 돈을 관리하게 되면 휴대전화도 장만하고 물건을 구입하려 시설 근처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와 소통하고 자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립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았거나 일정 기간 체험해본 사람들이 자립생활을

시도해 이어나갔다. 전화나 만남을 통해 소통은 계속했으나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어서 결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먼저 자립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집에서 얼마큼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 경우 며칠이라도 지역사회에서 체험을 해보면서 결심을 굳히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화와 같은 소통 도구로 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자립에 대한 지지를 받고, 외출 등을 통해 시설 밖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립생활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설에서부터 외부와 교류하면서 정보도 얻고 자신감을 갖으며 자연스럽게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과정은 개인적으로 시설 이용인의 의지나 결심을 통해 해결될 수 없고 우선 시설 내부에서 개별 외출, 소통 도구, 외부 교육 등 이런 과제를 풀어나가는 정책이 마련되어 외부 소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의 다른 단체와 연계를 통해 시설 이용인 자립 관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게 다양한 자립 지원과 정보 제공, 권익 옹호를 하는 단체로는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꼽을 수 있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복지 전달 체계로 수십 년 동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자립과 권리 옹호를 목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이동권, 활동보조, 탈시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기준 폐지 등 운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시설,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몇 년간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반목의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현재 시설에 있는 사람이 자립해 더 이상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설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2011년 도가니 이후 시설 내에서 인권교육과 자립생활 교육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결국 시설 내 인권의 귀결점은 시설 이용인에 대한 다양한 개별 서비스 제공과 시설 이용인의 자립이라는 것에 대해 더는 간과하기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영화 <도가니> 이후에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용인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인권지킴이단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바꾸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의 논란은 있지만, 복지 현장에서 인권의 화두가 전면 대두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종사자들에게는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니기도 하다. 이용인들의 인권이 부각되면서 종사자들이 예비 가해자로 취급당하거나, 과중한 업무 후에 의무 교육을 이유로 자리를 채워야 한다거나, 인권지킴이단 활동이 과외 활동으로 기존 업무에 부과되거나, 누구에게나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 든다거나, 이용인들과 대립적 관계가 되어 버렸다거나... 중증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한 종사자는 “이용인이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찍힐까 봐 이용인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둔다”고 말한 바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풍토가 오히려 종사자들로 하여금 소극적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낳게 되기도 한다. 인권을 강조했으나 어떻게 이용인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인권적인지에 대한 내부 토론이 없고, 내부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 인권을 하나의 고정된 규율 정도로 이해한다면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 인권은 때로 가변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며,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직원들의 인권도 그러하다. 이용인의 인권을 우선한다는 명분으로 종사자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그 공간은 인권적인 공간이 될 수 없다. 물론 이용인과 종사자의 인권 사이에서 약자 우선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한다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 종사자로 불리는 어떤 누구라도 결국 이 사회를 사는 한 명의 노동자요, 인간으로서 인권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존재다.

가.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의 권리

유독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원’이란 용어보다는 ‘종사자’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종사(從事)한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하다’로 직업이란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까지 유독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종사자로 표기하고 있다. 본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종사자라고 표기했는데, 직원보다 종사자라는 표현이 가진 어휘의 느낌, 맥락에서 느껴지는 뜻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헌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듯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한다는 것이 특별한 사명감을 요구하기는 하나, 헌신성을 강조하는 이면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직의 노동 현실이 열악하다는 점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 없이 헌신성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과거의 장애인거주시설의 노동 현실은 인권을 언급하기가 무색할 정도였다. 주4~5일을 24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후 24시간을 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그 이후엔 24시간씩 교대근무로 운영되기도 했으며, 그 후엔 일 12시간 2교대로 운영되었고, 최근에는 3교대가 일반적이거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사회복지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당한 노동시간과 그에 대한 합당한 임금, 노동조건(공정한 노동조건,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휴식 및 여가의 권리)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봉사 정신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때로는 종사자 스스로도 노동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차별적 현실을 수긍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복지 현장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퇴보시킬 가능성이 높다. 근로조건이 열악할수록 이직률이 높으며, 이직률이 높을수록 전문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는 복지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권리 중 극히 일부분만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 휴가, 징계, 해고 급여, 퇴직급여 등 수많은 권리를 알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관련 기관의 정보를 활용해 본인 스스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1) 근로기준법 준수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직원들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지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특성상 공익성이 강조되지만, 엄연히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분야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분야별 운영지침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 대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면책되지 않는다.⁹⁷⁾

사회복지시설의 주된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사항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2.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12시간) 초과
3. 연월차휴가근로수당(휴가보상비) 미지급
4. 생리휴가 미부여
5.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
6.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노사협의회 규정 미신고
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2008년) p.35 참조 -

또한 지난 2013년 1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급여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243만 원, 통계청 통계 기준)의 약 80%인 196만 원 수준으로 낮은 임금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중 특히 민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이 다른 보건복지 인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현장, 특히 민간시설 중 거주시설의 경우는 더욱 열악함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정부가 관

97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2008년)

리·감독해야 함은 물론이요, 일하는 종사자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등에 의뢰해 교육을 받는다거나 노동관계법을 이해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받아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는 <노동자권리찾기수첩>을 배포하고 있다. 뒷장에 노무 관련 문의할 곳을 참조하면 된다.



사례 1 - 시간외 근무수당의 정당한 청구권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S재단의 시설 종사자들은 2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업무 시스템이었다. 이들은 하루 24시간을 일하는데도 하루 8시간 임금만을 받으면서 일해야 했다. 이에 종사자 300명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하기로 했다. 300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3년 동안 추가로 근무한 시간 16시간(연장근로 8시간+야간근로 8시간)을 합쳐 미 지급된 수당을 계산하니 70억 원에 달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종사자들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금액이 너무 많아, 이를 청구하는 것이 시설과 이용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사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S법인에서는 종사자들을 '자신들의 체불임금만 챙기려는 파렴치한'으로 악선전했다. 결국 종사자들의 선의는 왜곡되고, 종사자들은 법이 정한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이 일을 그대로 덮어두지만은 않았다. 그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문제 제기했고, 이 결과 복지부는 2003년 당시 근무외 수당에 대해 20시간을 인정하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현재는 근무외 수당을 40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다. 즉 40시간을 초과로 근무할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은 해당 법인과 시설에서 지급해야 한다.

2) 노동 3권의 실현과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

노동 관련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조용히 가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해결된다면야 좋겠지만, 사실상 그런 곳은 드물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⁹⁸⁾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

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에게 주어진 방패지만 그걸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활용해 비리 사회복지시설과 비민주적인 재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단지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복지 현장을 만드는 데도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빛마을노조에서는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리감독기관인 순천시에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노동자의 단결권은 노동자 스스로의 권익 신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비리나 인권침해에 대한 ‘내부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더욱 필요할지 모른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업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평직원회회를 조직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종사자이면서 노동자인 나와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사업주(시설운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시선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사 전체 종사자 대비 조직률은 0.01%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의 규모는 26개 사업장에 500명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노조의 필요성(84.5%)과 가입 의향(72.6%)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마음은 있어도 가입하거나 결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부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조합을 결성했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꼭 노동조합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나, 노동자의 권익이 높은 나라일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국제적 지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2013. 7. 5. 기사) 비리 사회복지시설을 감싸는 000에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경고하는 00마을노조, 민주노총 000지부와 00마을 노동조합은 00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사회복지시설을 비호하는 000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경고하고 있다.



사례 2 -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구제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S재단 00정신병원의 노동조합원들은 재단 측이 노조 가입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한 데 대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S재단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시간의 업무를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조합원에 비해 조합원들이 임금의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청에서는 이를 인정했고,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차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또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비조합원에 비해 받지 못한 근무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근로계약서는 같은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해 본인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한다. 본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입사하면 취업규칙을 안내하고, 취업규칙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곳도 많다. 앞서 소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16.1%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11.2%에 달하며,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9.5%가 충분히 이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규칙의 내용 중 10% 내외는 노동시간, 임금, 휴가, 근로자 참여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데 법령이 보장하는 최저기준선마저 침해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자의적 공제는 30.5%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권리들을 지키려면 본인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료를 읽고, 교육을 받고, 상담할 곳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본 교재에서 노동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노무 상담을 해주는 곳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해당 지역의 관련 노동조합에서는 교육을 요청하면 노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하는 것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옆의 동료들과 신청해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사회복지 노무 관련 문의할 곳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전국 상담전화
2. 고용노동부 각 해당 지역 노동청 홈페이지 민원상담
3. 서울시 노동옹부즈맨 무료상담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및 서울시 경제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 :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서울시 민인 자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5. 공공운수노조 (<http://www.kptu.net>) : 사회복지노조는 여기에 속한다.

3) 비정규직화의 문제

사회 전반적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 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근속자가 늘어감에 따라 기존의 근무자들을 연봉제로 바꾼다든지, 계약직으로 바꾸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 2006년 5월 26일자 <매일 노동 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 노동자 10명 중에 3명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주된 요인으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 운영자 측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서(37%)’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2006년에 발표된 기사이지만 비정규직화가 심화된 지금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때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존의 정규직 근무자들을 불러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바꾸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지만, 정부가 이를 감독하지 않았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시설 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시 업무자가 55.3%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렇게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 대우를 받는 2006년의 노동 실태가 지금에 와서 더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눈 깜짝할 사이에 코 베어 간다는 속담이 있다. 사무실에 불러 들어간 종사자들이 향후에 어떤 불이익을 줄지 모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강요된 서명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또한 최근에는 신규 근로자를 아예 계약직으로 뽑는 추세이다.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의 비정규직화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비정규직화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3년에 서울시가 청소·시설경비 업무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화제가 됐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6000여 명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도 비판을 받아 삼성카드 콜센터 직원 13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사회복지처럼 공익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직이야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당하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종사자도 부당한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할 때,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



사례 3 - 불법적인 비정규직 전환의 문제

장애인 시설에 근무한 지 7년차가 되어간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생활재활교사를 한 사람씩 불렀다. 사무실에 불려갈 일이 좋은 일인 경우는 별로 없다. 한 사람씩 모두 부르자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무실에 가보니, 뭔가 바뀌어서 근로계약을 다시 써야 한다고 했다. 시책이 바뀌었고, 모든 시설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다. 시설 이용인들 식사시간도 되어가고 해서 마음이 급했다. 원장이 하는 말에 토를 달수도 없었다.

‘다 그렇게 한다는데 뭐...’ 근로계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한 후 사무실을 나왔다. 걱정했었는데 별일 아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며칠이 지났는데, 평소에 원장님이 못마땅해 하던 한 직원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평소에 내부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던 직원이었다. 그 직원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그 일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계약직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쉽다는 것이었다.

그냥 계약 해지 통보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나도 얼마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며칠 전 사무실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때문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4) 산재보험의 활용

사회복지직에서 일하다보면 크고 작게 다치거나 사고가 일어난다. 이용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거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용인과 야외회를 가서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을 이용해 치료비와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시설 운영자에게 말하기가 꺼려져 신청하지 않는 경우, 말했지만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종사자 스스로가 꺼리는 경우가 있다. 잠자는 자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잘 알고 꼼꼼히 따져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청구자는 재해자(또는 유족)이므로, 시설 운영자가 알아서 신청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사 처리가 되거나 폐업이 된 경우라도 계속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합의해 합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신

청해 회사에게 받은 합의금을 제외한 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등이 있으니 평소에 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들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 목, 허리, 어깨 등이 쭈시고 저리거나 아픈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질환이 노동조건과 환경에 연관성이 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례 4 - 돌봄노동으로 인한 산재

김 씨는 00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와 자립생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다보니,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차에 싣거나 내리고 장애인들을 차에 태우거나 휠체어에 옮겨 앉히기 등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손목에서 열이 나고 계속 어깨가 걸렸다. 참다보니 나중에는 손이 떨려 젓가락질을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김 씨는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는 평소에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물었고, 김 씨는 자신의 업무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 이후에 생긴 변화라고 했다. 김 씨는 근막통증후군과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런 증상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물었다. 의사는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씨가 이용한 병원은 종합병원이었어서 산재업무 담당자와 상담도 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고 산재공단에서도 산재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업무시간에 주 3~4회의 물리치료를 받았고, 치료시간으로 인해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 3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추가로 더 신청해 2개월을 더 치료받았다.

산업재해 관련 상담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http://www.kcomwel.or.kr>)

나. 성차별과 성폭력의 금지 및 여성노동자의 권리

사회복지 분야는 여성노동자가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혜택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나라는 남녀 간 성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200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 격차 지수는 92위, 2013년에는 111위였다. 전체적인 격차가 이러한데, 사회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임금 격차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승진 및 처우에서는 차별이 예상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 영역에서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제 절차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차별 금지를 폭넓게 규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집행권한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에 의한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방법이다.

일상에서 많은 차별적 언행이 오고가지만, 이런 상황을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오히려 임신 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해고나 부당한 징계 등의 처우를 받았을 때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언행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3년 5월 26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발표한 〈서울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신 및 출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응답자의 29.8%에 달한다. 출산휴가 반납, 승진 불이익, 언어적 비하, 사직 압력, 부서 이동, 이직 압력 등의 부당 대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다수인 사업장에서조차 이러한 차별이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더욱이 인간의 생로병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사업장에서 이러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힘들겠지만 부당 처우를 받은 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로가 지지적인 노동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4 -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직원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임신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은 미리 임신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상급자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사람에게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면박을 주었다.”

“시설에서 4명이 임신한 적이 있다. 상급자들은 아무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원장은 불려서 ‘언제 그럴 시간이 있었느냐’며 못마땅해 했다.”

“한 명이 임신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옆방의 종사자가 12명을 봐야 한다. 미안해서 병원 간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혈이나 유산한 사람도 있다.”

여성노동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이야기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여성 사회복지사가 66.7%였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경우 여성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설 이용인과 종사자 간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이성 간 목욕 서비스, 이성 간 서비스 지원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해결책은 전혀 제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은 폭언, 폭행, 성희롱처럼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생활시설의 경우만 보면, 폭언, 폭행, 성희롱 경험이 동료로부터 6.3%, 상급관리자로부터 8.9%, 클라이언트로부터 25.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도 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참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순간, 타인으로부터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는 한 명의 가해자가 여러 명에게 가해를 하거나, 피해자가 침묵할수록 가해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늘어가고 피해 상황은 심각해져간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계기관에 상담하고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상담기관에서 비밀을 보장해 상담하며 지원하니, 안심하고 상담 기관부터 찾자.



사례 6 -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직원 회식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법인 사무처장이 옆에 앉아서 "술은 여자가 따르는 게 맞"이라며 나에게 계속 술을 따르라고 했다.

그러고는 술이 취했는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내 허벅지 위에 자기 손을 올리고 쓰다듬는 게 아닌가? 자리를 옮기려 하자, 어디 가냐며 붙잡는 통에 술자리 내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성차별 및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기관

1.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전화 국번+1366
2.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상담 02-338-5801~2 (월~금10:00~17:00)
3.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센터 상담전화 0505-515-5050
4. 전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 서울 02-3141-9090 안산 031-494-4362 인천 032-524-8830
 - 부천 032-324-5815 수원 031-246-2080 광주 062-361-3028
 - 전북 063-286-1633 마산창원 055-264-5049 부산 051-506-2590



다. 종교 자유의 보장과 차별 금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종교단체 또는 종교적 배경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다수인 상황에서 종사자와 이용인이 종교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앞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발표한 <서울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7.9%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직장 내 종교 활동 참여 강요, 특정 종교 강요, 종료로 인한 승진 누락, 시설후원금이나 헌금 강요 등이었다.



사례 7 - 불법적인 종교 행위 강요 및 헌금 강제 납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어간다. 아는 분의 소개로 들어온 터라, 열심히 일했다. 이런 일을 해본 것이 처음이라 생소하고 쉽지 않았지만 어렵게 구한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서도 속상한 일이 있다.

내 월급에서 십일조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10%를 떼고 준다. 이 시설은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애초부터 종교적 색채가 강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헌금을 떼고 월급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처음 입사할 때 비슷한 위양스의 말을 하긴 했지만 애초에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온 터라, 정확하게 물어보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갔다.

하지만 동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교회 재정과 시설 재정을 함께 운영하니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겠다. 결국 나는 약속한 임금의 90%만을 받는 셈이다.

내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월급에서 10%씩 떼고 받아야 하다니... 안 그래도 적은 월급으로 가족들과 한 달을 살려면 빠듯한데, 답답하기만 하다. 이 사실을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고, 원장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하나? 그럼 원장이 어떻게 나올까?

종교·사상·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특정 종교 행위를 강요하거나 차별행위를 하기도 한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기사화되었다. 기독교 구호 단체라 하더라도 종교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사례 7참조]. 이 사건의 진정한인은 결국 퇴사하게 됐지만, 이러한 용기 있는 움직임이 결국 종교법인들의 종교 강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도 막을 수 있다.



사례 8 - 종교행위 강요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구호단체라도 직원들의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며 A구호단체에 차별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 40대 남성은 올해 1월 “2011년 입사한 기독교 기반의 A구호단체에서 채용공고에 없던 예배·성경공부 모임 참석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줬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 “예배는 통상의 조회 개념과 같은 것으로 종교 문제로 차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A구호단체는 업무 메일을 통해 찬양·예배가 포함된 종교 행사인 월요조회에 전 직원이 참석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구호단체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됐지만,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며 “진정인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해 퇴사에 이르게 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A구호단체는 소속 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13.8.2일자) 민경락 기자

비영리단체의 종교행사 불참을 이유로 한 퇴사강요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

(2013. 6. 13) 중 일부

나. 피진정인 측은 ○○○○가 국제구호단체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종교와 직원들의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른 한편, 피진정인 단체가 종교법인 또는 종교기관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다만 기독교 구호단체라는 면에서 종교적인 목적의 활동을 주로 하는 일종의 ‘경향사업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라도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참석수당을 지급하며 운영하는 종교행사 불참을 구호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진정인의 업무수행에 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진정인의 업무가 신앙과 직접 관련되는 종교적 업무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직원에게 종교의식 또는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비기독교 신자 또는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예배와 찬양 등 자기의 종교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종교적 신앙을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교회 출석 강요, 예배 및 QT, 부흥회 참석 등을 교육의 명목으로 강요하고 불리하게 대우하여 퇴사에 이르게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종교의 자유 보장만큼 중요한 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당할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H시설에서는 생활재활교사의 정년을 사무직에 비해 5년 빠른 55세로 규정해 나이 차별을 했다. H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부당한 차별에 맞섰다. 만약 [사례 8]과 같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퇴사를 당했을 것이다. 종사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설 이용인만을 위한 기관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종사자로서도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면 진정할 수 있다.



사례 9 - 시설 내 나이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 사례

나는 올해로 만 55세가 된다. 일한 지 20년이 넘었고, 나는 곧 정년퇴임을 한다. 아직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지만, 우리 시설에서 사무직은 61세가 정년이고 나와 같은 생활재활교사는 55세가 정년이다. 사무직은 일할 수 있지만, 이용인들을 대면하는 생활재활교사는 건강과 체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년이 빠르다는 게 우리 시설의 입장이다.

그런데 며칠 전 나와 같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동료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일반직이나 기능직 직원과 다르게 생활재활교사만 6년이나 정년이 빠르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시설에는 나 말고도 곧 정년퇴임할 사람들이 많아서 다들 억울해하고 있었다.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지만 걱정도 되었다. 국가기관에 원가를 떠든다는 것이 그리 쉽게만 여겨지지 않았다. 시설에서 눈치도 보였다. 그렇지만 내친김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이렇게 된 바에야 모 아니면 도였다. 오늘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날이다. 내 생애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큰 것으로, 생활인을 돌볼 때 육체적 돌봄이 특별히 많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또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업무숙련도와 생활인과의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보육직의 나이와 생활인의 안전 여부를 직접 연결해 도식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보
 육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설비나 보조기구의 확충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육직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상 어려움을 보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이에 위원회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복지회 회장에게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
 침」에 준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재활교사의 정년을 상향 조정할 것
 을 권고하였다.

-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 보고서> 중에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국가인권위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31 (휴대전화 02+1331, 평일 9:00~18:00)
2. 인터넷 진정 및 방문 상담 가능



라. 공익제보자의 보호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와 인화원의 경우, 일반 시민들은 의아해했다. ‘왜 그토록 끔찍한 문제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곳의 직원들은 침묵했을까?’ 그리고선 그곳의 직원들이나 교사들이 비양심적이다, 비겁하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침묵해야 했던 속사정이 있었다. 그 속사정은 개인의 문제로만 탓하기엔 너무 근본적인 문제들이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메커니즘(운영 구조)을 잘 이해해야만 한다.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경우에는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와 기숙사 겸 생활시설인 인화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학교와 시설 안에서 광범위한 폭력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핵심 가해자는 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었고, 법인과 시설은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사건이 폭로된 2005년, 학생들과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그로부터 1년 후에야 인화학교 교사 13명은 “성폭행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못한 교사로서 사죄드린다.”며 뒤늦은 양심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후 13명의 교사는 해임됐고, 교사들은 부당해고에 맞서서 승소하기까지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교단에 서지 못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양심선언에 가족들의 생계와 자신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걸어야 했다. 일시적으로 가해자는 처벌하더라도 운영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쫓길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운영, 사유 구조화, 비민주적 운영 등의 구조적 모순이 사회복지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문제가 생긴 시설을 양심 있는 사람이 제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사회복지시설이야말로 ‘내부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인데 양심 있는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너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률과 시스템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있으나 사회복지기관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공익침해 행위 대상을 [별표 1]의 12항⁹⁹⁾을 적용해 폭넓게 해석한다면 가능할지 모른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복지부정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복지 분야의 부패비리 문제가 심각함을 방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 보호는 물론 이에 대한 포상까지 하고 있다(최고 20억). 또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함은 물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시스템이 정비되는 중이다. 복지의 투명성은 복지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자’의 용기와 양심이 중요하다.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징계 등을 당했다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기관과 상담해 자기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한다.

공익제보 관련 기관

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정신고센터 국번 없이 110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접수 가능
2.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02-2133-4800 또는 국번 없이 120
3. 호루라기재단 <http://www.horuragi.or.kr>
4. 한국투명성 기구 <http://ti.or.kr>

99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1]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다. 종사자와 기관의 공동 책임의 자세



사례 10 - 이용인과 종사자 간의 딜레마 사례

“지적장애인인 A씨는 냉장고 앞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이미 비만으로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못 먹게 하려면 A씨를 강하게 제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권적인가요?”

“지체장애인인 B씨는 매일 술을 마십니다. 여기는 성인요양원이기 때문에 술을 전혀 못 먹게 하거나 외출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간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강제로나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외출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 작업장에 C씨와 D씨는 연애 중이에요. 연애는 다 좋은데, D씨네 가족들은 연애도 결혼도 반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성관계에서 어떤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더욱이 D씨는 이전에도 다른 사람과 여러 번 사건 적이 있고, 그때마다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두 사람을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E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를 벽에 계속 박거나 자기 머리를 양손으로 힘껏 때립니다. 어쩔 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는데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벽에 머리를 박을 때면 저 또한 정신이 없고 말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습니다. 한번은 자기 머리를 너무 심하게 때리기에 직원들이 양손을 붙잡아 묶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E씨만 돌본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해야 될 이용인이 5명인데 모두 중증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위행위를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야 하나요? 성인 발달장애인이 아무 곳에서나 바지에 손을 넣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무엇이 자기결정이고, 무엇이 타인에 의한 결정인가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F씨가 내 휴대전화를 던져서 액정이 박살났어요. 이에 대해서 원장은 자기 휴대전화를 관리 못한 내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종사자들은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성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용인의 어떤 성적 행동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특히 발달장애인의 성 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많은 물음이 혼란스럽게 한다. 또한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가지게 된다. 인권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종사자들의 질문은 이

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인권적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마다 늘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최소한의 인권 원칙에 대해서 토론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막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 시설 운영자는 항상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종사자는 '자기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종사자가 때리거나 돌봄 서비스를 소홀히 해서 이용인이 다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일지를 쓰고, 그 상황을 목격한 다른 종사자에게 확인까지 받는다. 종사자들은 이 과정에서 시설 이용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을 오직 종사자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인 서비스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은 종사자 개인의 책임일 때도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생기는 일도 있다. 때로는 운영 시스템에 변화를 줌으로써 어떤 문제들이 개선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사자 개인의 책임으로 따지고 시
말서를 받는 취조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긍정적 대안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대인 서비스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종사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른 시설의 긍정적 사례를 탐구하고, 대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종사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기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IV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구제



New Beginning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구제

1.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

가. 정보의 권리

장애인은 먼저 이용인으로서 어디에 어떠한 시설이 있으며 상담은 어디에서 받고 서비스의 비용 부담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단계에서 장애인은 서비스 이용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시장·군수·구청장과 거주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시설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제공과 동의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의의 효력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시설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는 시설 이용 계약 자체에서 그 근거를 구할 수 있다. 계약의 전제는 그 계약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¹⁰⁰⁾ 따라서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을 위한 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시설 이용을 위한 상담 단계에서 시설 운영자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에 근거

한 이용 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장애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시설 이용 적격성 결정

다음 단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시설 이용의 신청과 적격성 심사 단계로 이행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장애인의 권리다. 시설 이용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 이용의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 단계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의견과 희망을 표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장애인은 결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을 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동법 제84조). 또한 장애인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선택(동의)의 권리

시설 이용의 적격성 결정이 있게 되면 시설 이용 계약 체결의 단계로 이행한다. 본인의 동의에 근거하지 않은 시설 이용 계약은 무효이다. 장애인의 거주시설 입소는 당사자의 이용 신청에 의한 입소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직권 신청에 의한 입소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행정청의 직권신청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제2항). 따라서 본인이 동의 능력이 있고 또

100 거주시설 이용계약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계약과 관련한 정보제공, 계약 체결 절차, 계약의 효력 등에 관해 법적 규율이 요청된다.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적 감금으로 위법한 인신 구속이다. 이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적절한 서비스를 청구할 권리

장애인이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단계가 되면 이용인은 그 계약을 근거로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수준과 질의 서비스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적절한 수준과 질의 서비스는 최소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은 최저기준으로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와 시설 운영자는 계약으로 이를 하회하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이다. 한편 이를 상회하는 기준을 계약으로 합의한 때에는 그 계약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체결된 내용의 서비스 수준을 하회하는 서비스의 제공은 계약 위반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구속·학대로부터의 자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는 거주시설에서 신체의 구속과 학대를 받지 않을 신체의 자유를 당연히 갖는다. 이 당연한 권리가 본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명목상의 이유로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방지와 시설의 질서유지라는 이유로 종종 무시되고 체벌과 억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 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조 제6항 제2호). 따라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와 방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구속

하는 것은 위법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간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속, 폭행, 협박을 받는 때에는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청은 거주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태만히 해 학대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바. 프라이버시의 권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는 거주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존엄에 있어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사생활을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을 공간의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고 정보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 정보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기록한 파일은 엄중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서비스기관 상호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수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권리 옹호 제도의 필요성

가. 사법적 구제의 한계

거주시설 이용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시설 이용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민법상 시설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서 민사소송에서 그 책임을 다투게 된다. 물론 법정 시설이나 설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의 신고를 수리했거나 법정의 인원 배치를 하지 않은 것을 행정청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제기하는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을 요하며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크다. 장애인거주시설 적격성 여부와 본인부담금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가 되지 않아 빠른 시간 안에 구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급부의 청구와 관련해 가구제제도¹⁰¹로서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인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01 가구제(假救濟) 제도는 분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두산백과).

나. 고충 해결 및 권리 옹호 제도의 필요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주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의 존엄을 존중할 것이 우선 요구된다. 소송과 같은 사법적 구제는 절차, 시간, 비용 면에서 장애인에게 부담이 상당히 큰 제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방법으로 고충 해결과 이의 신청 제도의 도입과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권리 옹호 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 이것이 요구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이용자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신체 구속, 방치, 학대를 받거나 권리 침해와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정이 있다. 둘째, 판단 능력이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라도 장기간 거주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 등에 대해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또는 달리 대체 시설과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나아가 종사자 등의 보복을 두려워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사정이 있다. 셋째, 거주시설 이용의 방식이 종래 처분(조치 방식)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거주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 옹호라고 함은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①필요한 정보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본인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때에 상담·조언을 행하는 것 ②급부의 신청, 이용 계약서의 작성 등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에 기초해 대행하는 것 ③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단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대변하고 본인의 고충을 대변·옹호하는 것 ④금전관리에 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지불을 대행하는 등 기타 본인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지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의사 능력이 불충분한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무능력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추론해 이를 원조해야 한다. 즉 권리 옹호는 기본적으로 대리권을 행사(대행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3. 개별 권리구제 수단의 내용과 절차

가. 상담

상담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가장 초기적인 대응 방법으로 종사자나 이용인이 혼자 힘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인권 상황에 대해 상담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자원과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시설 안에서의 전반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가장 쉽게 접근해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법행정 절차 등의 진행 시 종사자나 이용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장애인차별상담전화 | T. 1577-1330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운영하는 부설기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를 포함한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침해 사항에 대응한다. 현재 전국에 60여 개의 단체에서 네트워크 형태로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1577-1330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소로 연결된다.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가 있어 상담 내용에 따라 법률자문 및 형사사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T. 1577-5364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인권상담전화로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 및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등 장애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의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지소에서 지역별 상담 전화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 및 법률위원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상담을 지원한다.

3)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T. 02-3013-1367

장애여성 인권운동단체인 장애여성공감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는 장애여

성이 장애라는 신체적 정신적 제한으로 인해 겪는 폭력의 피해에 대해 장애감수성을 갖고 대응하는 전문 상담소이다.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위기 개입을 통해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기본 사업으로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연계와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성교육도 진행한다.

4)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상담소

T. 02-3675-4465~6 / F. 02-3675-4467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는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지소가 있어 가까운 지역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전국의 상담소 연락처는 홈페이지(<http://www.kdawu.org>)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화 상담시간은 월~금요일(공휴일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성폭력상담소 외에도 장애여성의 권리 신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 | T. 1331 / F. 02-2125-98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권 상담 전화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동인권, 이주인권, 여성인권, 성희롱, 다수인보호시설 인권 등 인권에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변호사, 노무사, 여성단체 활동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상담위원이 요일별로 주제별 특화 상담을 진행하며, 수화 상담과 영어 상담도 지원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¹⁰²⁾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

10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 조치를 주요 업무로 한 국가기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시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조사·구제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등이 업무 등과 관련해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설 이용인이나 종사자는 자신이 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그 진정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진정 신청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누구나 가능하다.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2) 진정 방법

- 방문 : 직접 방문해 전문상담원과의 대면 상담을 통한 접수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
- 방문 상담 시간 : 평일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 우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701호(을지로 1가 16번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팩스접수 : 02-2125-9812
- 홈페이지 접수 : www.humanright.go.kr
- 이메일 접수 : hoso@humanright.go.kr
- 면전진정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가 위원회 조사관의 면전에서 진정을 원한다고 해당 시설의 직원에게 요구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진정접수

3) 조사 대상

-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규정된 기관
 - 구금·보호시설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해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
 - 외국인보호소
 - 다수인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의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 각급학교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각급학교
- 사인 : 법인, 단체, 사인

4) 조사 내용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

- 대상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업무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기관에 부여된 업무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관련)

- 차별 사유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 대상 : 합리적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고용관계,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훈련이나 그 배움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행위
- 예외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내 차별 행위

- 영역 : 고용/교육/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모부성권, 성 등/가족 · 가정 ·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 대상 :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
- 유형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고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 예외 : 정당한 사유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서정 그리고 특정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해당 의무자의 성격, 재정 능력 등과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특성, 차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본권의 침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됨

5) 조사와 구제절차

- **인권상담** -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상담
- **진정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면전진정
- **사건조사** - 서면, 출석, 실지조사, 전문가 자문(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들의 간담회), 법률 해석, 해외 사례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의결** - 권고, 기각, 각하 등
- **당사자 통보** -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송부

6) 사건 처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각하, 기각결정 또는 구제조치 권고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인권침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1) 합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사건의 공정한 해결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2) 구제 조치 및 제도 개선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 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이행 또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3) 고발 및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4) 수사 의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5)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6)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급식·피복 등의 제공,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시설 수용소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공무원 등의 직무로부터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7) 조정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 회부 직전의 조사 또는 심의 절차로 돌아가 진정사건처리를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규정

-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시행령 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 의무, 용지·필기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 시 설치 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이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각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 없이 위원회로 송부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 금지(동법시행령 제8조)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시행령 제9조)
 - 진정서 작성 의사 표명 시 방해 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이용자 징벌 중(징벌조사 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 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 시 시설직원 및 시설 이용자와의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 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 시설 이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 이용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 이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할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수
 - 진정인과 위원 또는 소속직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 직원 등은 시설 이용인이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 유엔장애인권리협약(2006)

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¹⁰³⁾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 절차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법원의 구제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은 피해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총 2건이다. 관할 부서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전화: 02-2110-3213~4, 팩스: 02-2110-0351)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1) 시정명령 요건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등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시정명령 신청

-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시정명령

3) 시정명령 내용

- 차별행위의 중지
- 피해의 원상회복
- 차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차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시정명령 위반 시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0만 원

103 <http://www.hr.go.k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차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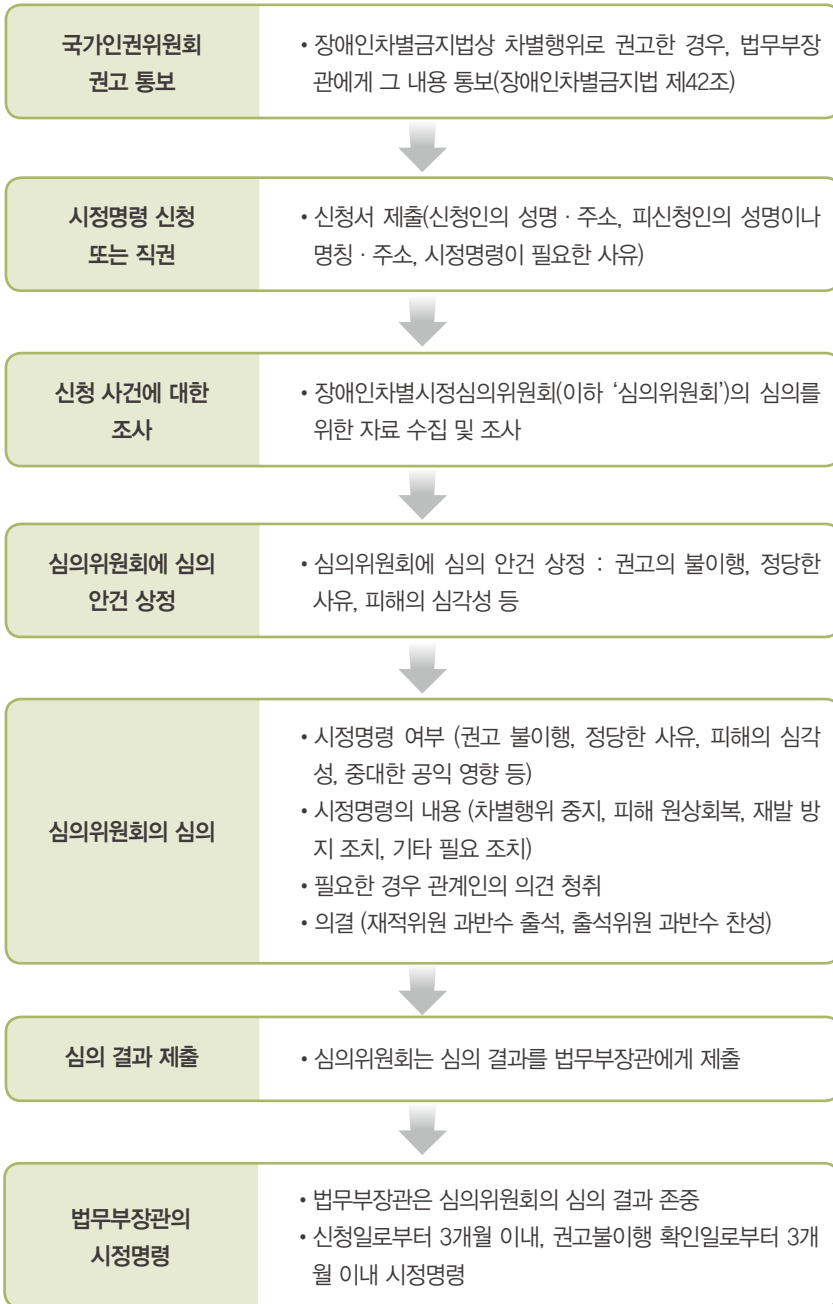
제50조(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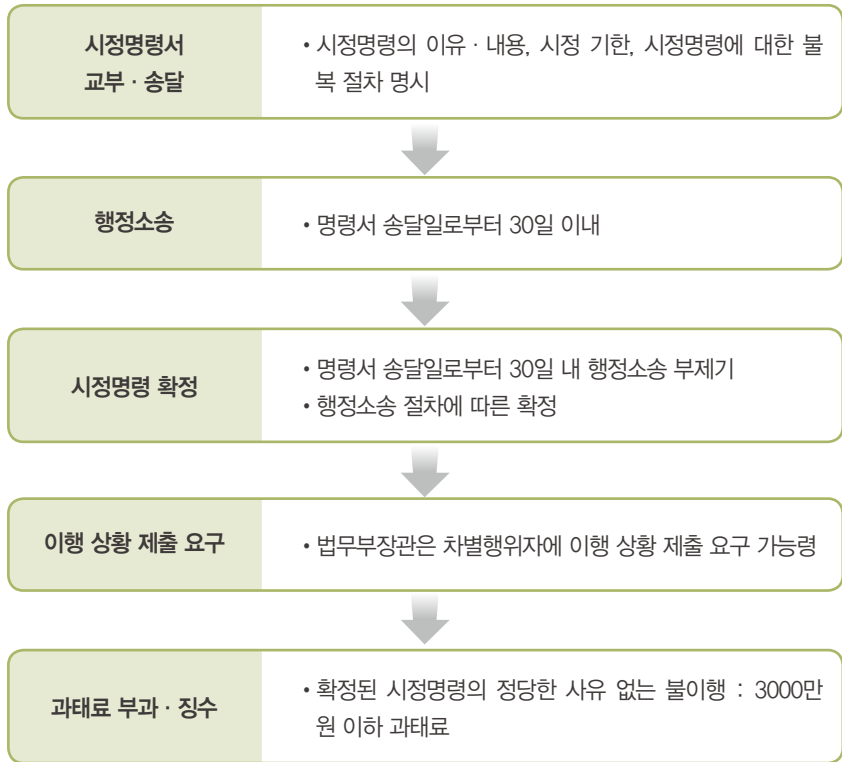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위원회는 필요 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 시 시설직원 및 시설 이용자와의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 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5)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업무 흐름도





6) 시정명령 사례

첫 번째
시정명령



2010. 4. 28.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피해자를 복직하고 인권교육 받도록 시정명령 (피해자의 신청)

S씨는 000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던 중 2004년 4월 8일 대뇌출혈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었다. S씨는 2007년 8월 1일 휴직한 후 2008년 8월 1일 복직했는데 이때 S씨는 일반 사무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000시설관리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25일 000시설관리공단은 장애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S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8월 18일 장애인 차별로 인정, 000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S씨를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000시설관리공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S씨는 2010년 1월 4일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S씨의 시정명령 신청을 심의한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사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000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S씨를 복직시키고 인권교육을 받으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드 번째
시정명령



2012. 9. 27. 수원역 앞 지하도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토록
시정명령 (법무부 직권)

진정인 L씨와 K씨는 수원역 앞 지하도 상가에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도상가에 접근할 수 없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원역 앞 지하도 및 지하상가로 접근하는 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2010년 8월 9일 권고했다. 수원시장은 2010년 7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전에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계획을 변경해 권고 이행을 지연한 바 있으며, 2013년 상반기 지하도 개보수 기간에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히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권고 확정 후 약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해 관계인과의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시정심사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한 결과 이상과 같은 수원시장의 권고불이행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원시장은 180일 이내에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라. 법원의 구제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 절차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법원의 구제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 법원은 차별행위에 대해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이행 기간을 정하고,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해 금전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의 구제조치는 일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사안마다 시간이 차이가 나지만 임시조치의 경우 한 달 이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임시조치를 통해 빨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을 통한 구제는 강제력을 가지므로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1) 법원의 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에 대한 신청은 피해자가 하고, 신청 기간은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도 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을 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 대한 신청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이고 대부분 한 달 이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례 - 수능시험에서의 축소 문제지 제공 임시조치

사건) 신청인 D는 저소득 시각장애인으로 확대독서기를 활용해 공부하는 학생이다. D는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확대독서기를 활용해 시험을 볼 예정이었는데 수능시험에서 제공하는 A3용지 크기의 문제지가 확대독서기의 확대판에 비해 커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A4용지 크기로 재짜낸 문제지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소송이 시작되자 축소 문제지를 제공하겠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과 00명이원이 수신한 서울시 교육청 공문에서 축소 문제지 제공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취하였다. 이 사건은 법원이 임시조치를 명령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신청해 본안 소송이 들어가기 전 가해자 측이 구제 요구를 받아들인 사례로 의미가 있다.

2) 법원에 구제청구 소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차별행위에 대한 소송이 들어가면 손해보상 청구 이상을 할 수 없었다. 즉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시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는 차별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구제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구제받은 사례는 없으나 조정을 통해 차별이 시정된 사례는 있다.



사례 - 시각장애인 체육센터 이용 시 편의 제공 요구 사건

사건) 원고(시각장애인)는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를 방문해서 요가 프로그램 또는 헬스 프로그램의 이용을 문의했다. 그런데 피고(00구 도시관리공단)는 원고가 스스로 보조인을 동반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조인의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피고 스스로 보조인을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체육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실시(프로그램 이용 시 인력제공, 웹접근성 확보, 점자정보지 등)하라고 구제조치를 청구했다.

결과) 변론이 계속되면서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판결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정에 의한 구제였지만, 법원이 구제청구에 대한 의미를 제고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가. 시각장애인 원고가 00스포츠클럽에서 요가 프로그램 내지 헬스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이에 수반해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필요한 여성보조인력을 제공하되, 그 제공의무를 2014년 1월 1일까지 이행하고,

나. 시각장애인에게 00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점자 자료와 표준텍스트파일의 형태로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공하되, 점자 자료와 표준텍스트파일 형태의 제공 의무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한 제공 의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이행한다.

마. 국민권익위원회¹⁰⁴⁾를 통한 권리구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이다. 주요 하는 일은 ①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②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구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 확립, ③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이다. 근거 법률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청의 부당함에 대한 민원 등을 처리하는 곳으로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고충 민원 처리

(1) 고충 민원이란?

‘고충 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 민원을 포함)을 말한다.

(2) 고충 민원 신청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우편 신청, 전화 신청,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 고충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3) 고충 민원 처리 절차

①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하나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하다.

104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www.acrc.go.kr)하여 재편집.

② 민원 조사

접수된 고충 민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자료 요구, 신청인·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의견 진술 요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질 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 의뢰 등을 통해 민원 사안을 조사한다.

③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된다.

(4) 처리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게 된다. 행정기관 등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2) 부패행위 처리

(1) 부패행위 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부패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해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주며,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부패행위 신고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출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3)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2) 온라인 행정심판이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3) 행정심판 대상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해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이 중 취소심판이 가장 대표적인 행정심판이다.

(5) 행정심판 절차

•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신관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 중 운전면허, 보호·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 관련 등 일부 사건인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 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단, 처분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으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해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사건 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한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한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한다.

바. 형사사법 절차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법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형사사법 절차이다. 형사사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 사건 관계자의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접수
- 경찰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건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와 함께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검찰로 송치
-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불기소, 약식기소, 벌금형, 등 판결
- 검찰의 판단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

1) 경찰¹⁰⁵⁾

(1) 사건 의뢰

①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②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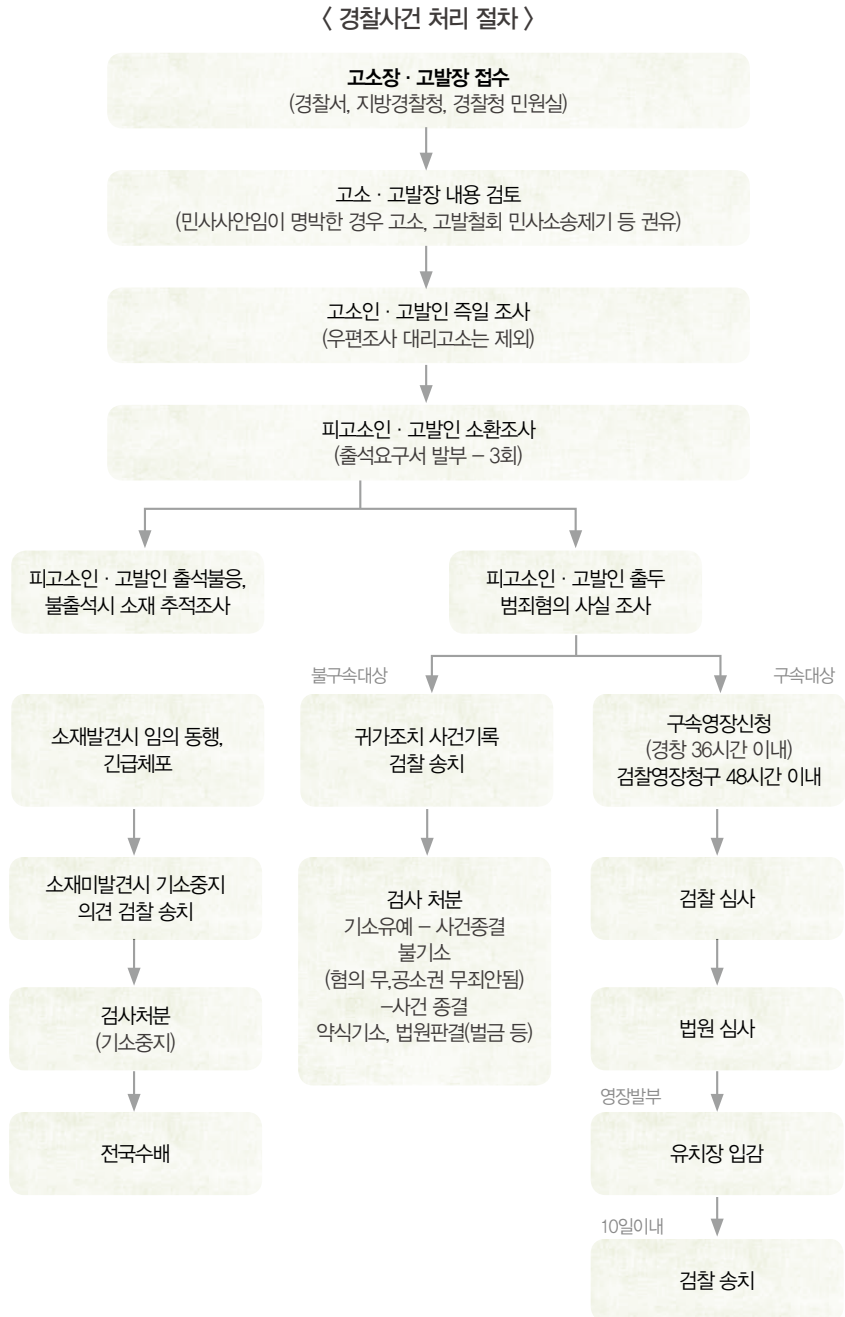
③ 진정 및 탄원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정을 진술해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정을 진술해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④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해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경찰사건 처리 절차 (그림 3. 참조)



2) 검찰¹⁰⁶⁾

(1) 검사의 역할

① 범죄 수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한국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범죄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수사 착수에서부터 사건의 종결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가 법률 및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수사는 검사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보고된다. 검사는 경찰이 충실하게 사건을 조사했는지,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해 문제점을 보정하기도 한다. 또한 검사는 주요한 경제적 부패사건, 증·수뢰사건, 마약·조직범죄사건 등 사회의 공정성과 시민의 안전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②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사의 기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출정해 재판을 받는 정식재판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출정하지 않고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수사서류를 심사하는 것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약식재판 두 종류의 방법이 있다. 약식재판은 통상 검사가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약식재판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가 법원의 벌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된다. 검사는 공소제기의 주체로서 공소를 유지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검사는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고 법관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소송활동을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106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에 소개된 내용을 재편집.

유리한 양형자료도 현출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

한편,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통상 불기소라고 지칭한다. 불기소는 피의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충분한 합법적 증거로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무혐의로 결정하고, 그 밖에 피의자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증지가 된 것 등을 포함해 몇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 및 범죄의 성질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이른바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충분히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19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소유예 방법은 비행소년을 선도하는 데 대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어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③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검사는 법원에 대해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법령의 해석·적용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제도(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그 제도적 표현이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또는 심판의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소제도(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호, 제383조 제1호)도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④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검사는 법원에 의한 판결의 집행을 지휘·감독할 책무와 권한이 있다. 검사는 판결의 집행을 해당 사건의 수사관에게 지휘하며 금고, 벌금의 징수 혹은 그 대신으로 행하는 강제노역장 유치 등의 집행을 감독한다.

⑤ 수사과정의 인권 옹호

검사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포함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불공평한 혹은 과잉처벌을 받

지 않도록 법관에 대해 공평하면서 편견이 없도록 법률을 적용할 것은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 옹호의 의무는 검사 역할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의 유치장을 방문해 누군가가 비합법적 수단으로 체포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를 조사함으로써 억울하게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없도록 감시한다.

⑥ 국가·행정소송의 수행·감독 등 정부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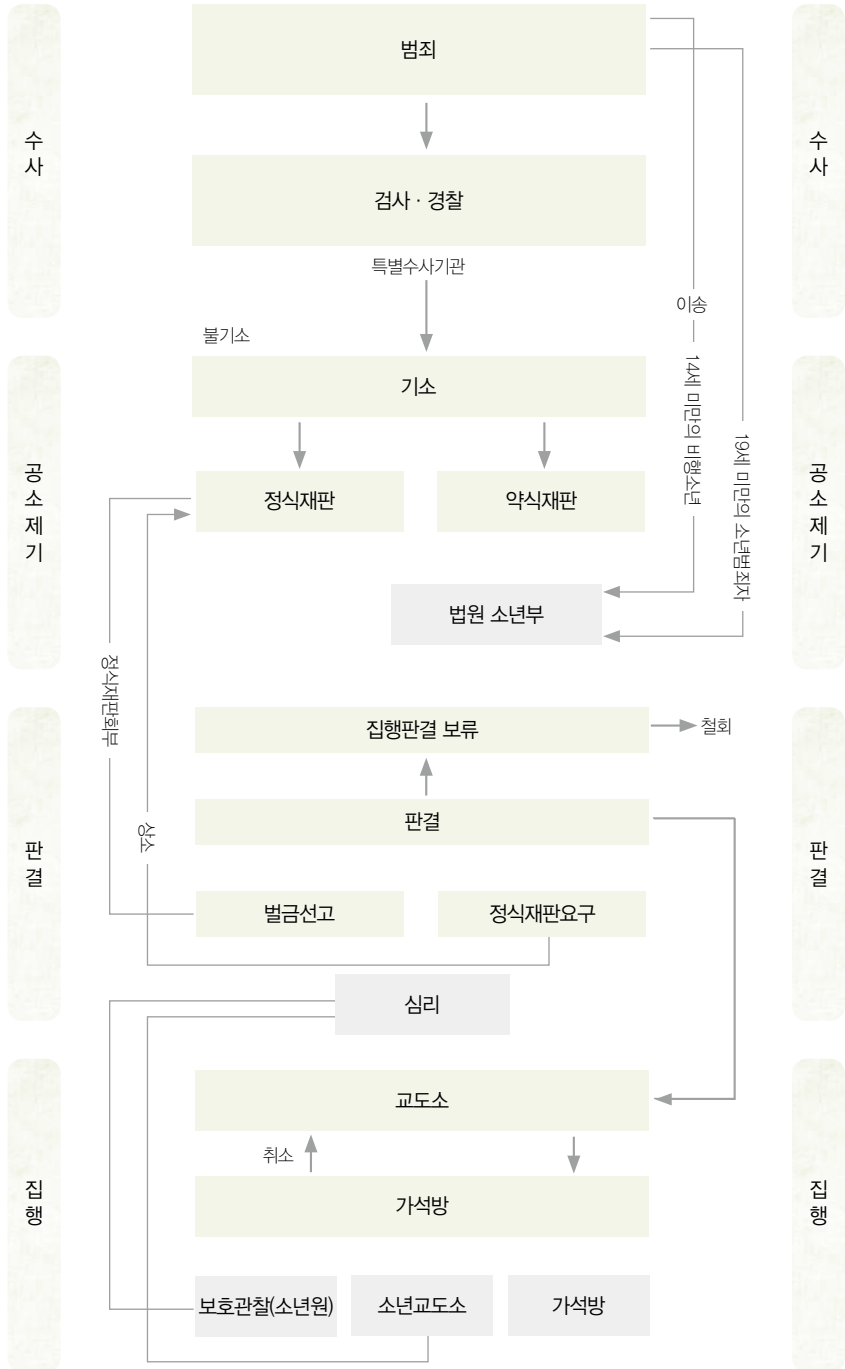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그 수행을 지휘·감독한다.

⑦ 기타

검사는 시민이 충분한 진술을 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의 조언을 제공한다. 무료로 법률상의 조언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극빈자 등을 법률구조공단에 소개할 수도 있다. 또한 검사는 해외의 한국대사관이나 외국의 국제기관 등을 포함한 여러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 수사에서부터 재판 및 집행까지의 과정 〉



3) 소송

(1) 형사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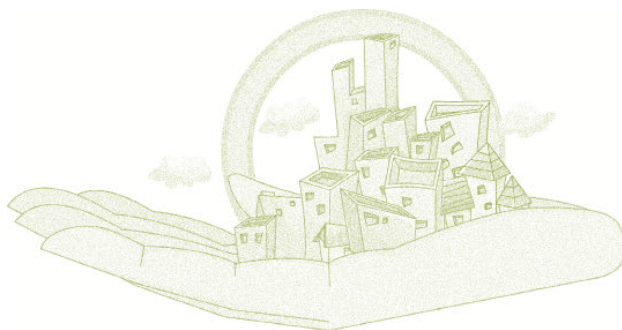
폭행, 절도, 사기, 살인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나라에서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복과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용의자를 기소하면 기소 후 유·무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재판이 열리게 된다.

(2) 민사소송

채권채무, 임금체불, 위자료 등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에 대한 내용과 요구하는 보상의 범위를 서술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에 대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의 내용을 송달해 그에 대해 상대방의 반박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기일을 통보해 양쪽이 준비서면을 통해 서로의 주장에 대한 공방을 진행한다. 이후 조정절차를 통해 내용을 검토해 법원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변론을 재기한다.

(3) 항소

하급법원에서 받은 1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할 때 법원의 판단에 대한 파기, 또는 변경을 위해 상급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하는 과정



4) 형사사법절차상에서의 권리

(1) 수사이의신청제도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 대상사건 : 모든 이의사건
- 신청권자 : 피해자(진정인·고소인), 피의자(피고소인·피진정인·피내사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
- 신청 방법 : 지방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사이버경찰청 수사이의제기 코너
- 문의 : 국번 없이 182, 각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이의조사팀

(2)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담당 수사관의 편파수사, 가혹행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대상 사건 :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
- 교체요청권자 : 대상 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
- 요청 방법 : 서면요청서 제출
- 문의 : 국번 없이 182,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3)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 신문 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우 신뢰관계자가 반드시 동석해야 한다. 심야조사(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체포 시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후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변호인이나 가족에게는 체포 사실을 통지한다.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면 담당경찰관이 변호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한다.

(4) 피해자의 권리

피해 진술 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

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권리와 지원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5) 참고인의 권리

참고인 진술 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한 경우 소정의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신고자는 보복범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지구대, 파출소, 수사부서로 신청).

(6) 변호인 조력을 위한 기관 및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www.klac.or.kr
- 국선변호인제도 : 재판 또는 심문이 진행 중인 법원을 통해 신청(피의자만 해당)

(7) 배상명령제도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 대상 사건 : 상해, 폭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
- 신청 방법 : 대상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신청, 재판 진행 중인 법원에 2심 변론이 종료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 형사재판 증인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 신청 범위 :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

(8) 소액심판제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 등)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안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 간편,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 대상 : 소송 목적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
- 준비 서류 : 소장(법원비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 증빙서류
인지대 · 송달료

5)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관련 법률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사법행정 절차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조력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

민사소송법 제143조에는 통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로 인해 통역이 필요할 경우, 또는 문자 수신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및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 및 의사소통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경찰관직무규칙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다. 또한 장애에 따라 조사 방법을 달리하고, 정신적장애인이거나 언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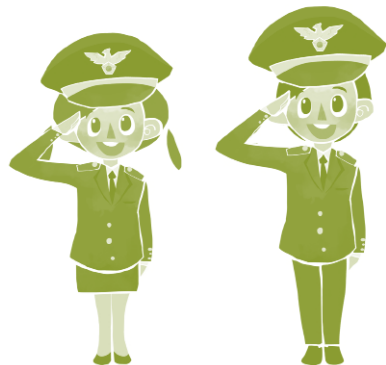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0조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5조

- ①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 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性) 통역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 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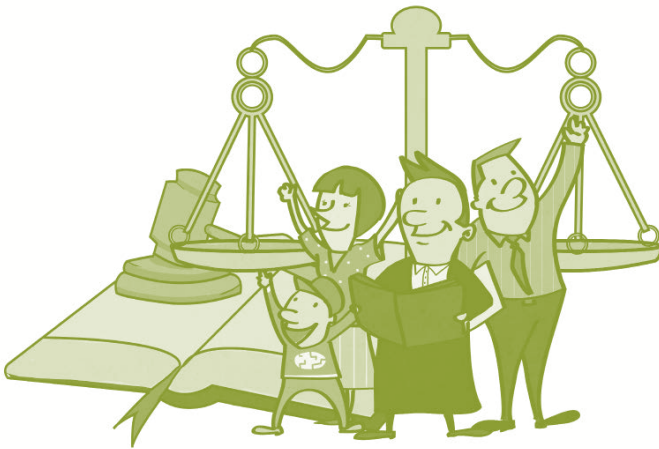
(5) 법무부훈령

법무부훈령에도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있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 안내를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훈령 제556호

「인권보호수사준칙」제55조

- ① 농아자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준다.



V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 방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 방안

인권교육 촉진자들을 위한 Tip

- 01 인권교육 촉진자들은 인권교육 시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궁극적 대안이 아닌 과도
기적 대안임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시설 내 인권보장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궁극적 대안이 아니며 탈시설화를 위한 시설 구조 및 운영 체제, 서비스
개편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02 또한 참여자들이 이 장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토의를 통해 이 책의 내용을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촉진
해야 한다.
- 03 이 장에 제시된 사례에 대해 '일부 문제 시설에서만 발생하는 사례' 라거나 '과거의
일이며 이미 시설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시된 사례들은 최근까지 이용인들이 호소하는 피해 사례임을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촉진자는 '이러한 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는 이유와 대안에
대한 토의'를 제안하거나, 참여자들에게 '토의하고 싶은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종사자들과 이용인들간의 문제 사례에 대한 인식 차이 발생 이유' 등에 대해 토론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⁷⁾

04 일례로 ‘시설 내 인권 현실을 이용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이용인과의 평등한 대화를 통해 함께 인권보장 방안 구성하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와 종사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종사자 대부분은 실태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용인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인권보장 방안을 다룰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삶을 보장하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 강화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규모와 제약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안전하며 사생활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시설 차원에서도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설 구조 및 운영 체계, 서비스 개혁, 나아가 시설 해체와 대안 서비스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인권보장 방안 마련과 교육은 필요하다. 탈시설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사이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요양시설에서 머물며 상시적 의료 지원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시설 내 인권보장 방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설 서비스 개선을 통해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이 장애인 거주 지원 정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이 장에서 다루는 인권보장 방안은 입소, 시설 생활, 퇴소 3단계에 걸쳐 30개의 권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구분 체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107 실천가들 상당수는 자신이 당위적으로 강조되는 이상적 실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박숙경 (2010), 《사회복지실천가의 지적장애이용인과의 관계 인식》,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인권보호 권장기준¹⁰⁸⁾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 차원에서 제시된 거주시설 인권 기준으로 시설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시설 종사자들이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의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이 다루지 못한 내용을 함께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그러나 ‘의복선택권 또는 이·미용권’ 등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삶의 방식조차 ‘00권’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그 자체가 시설의 반인권적인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거나 유사한 권리를 하나로 통합했다. 아래 표는 본 교재에서 다루는 ‘시설이용인 인권보장 권리항목’의 구분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시설이용인 인권보장 권리 항목 〉

| 단계 | 권리 항목 내용 |
|--------------------|---|
| 시설 선택 및 입소 단계 (3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결정권, 서비스 정보접근권, 계약체결권 |
| 시설 거주 단계 (25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7개) 다양한 식생활을 위한 권리, 자유로운 의복 선택을 위한 권리, 이·미용 등을 통해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적절한 주거 환경에 대한 권리 •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3개) 위생적인 생활과 환경을 누릴 권리,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학대·방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4개) 하대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성적 존재로 인정받으며 성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연애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을 존중받을 권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 • 사상·양심·종교·정치의 자유(2개) 정치권, 종교의 자유 |

108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은 보건복지부가 2010년 발표한 권장 기준으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부록으로 시설에 제공되고 있다. 1. 총칙 2. 시설이용인의 권리 3. 시설이용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원칙 4.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 안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단계 | 권리 항목 내용 |
|-------------------|--|
| 시설 거주 단계 (25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노동·경제·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9개) 교육권, 시설 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사회보장수급권, 지역사회 접근 및 외부와 소통할 권리, 강제노동 금지 및 직업 선택권,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 시설 퇴소 단계 (2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을 지원받을 권리, 퇴소결정권 |

각 항목은 해당 권리 항목의 개념, 사례, 관련 법규,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토론거리를 제시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내용을 포함하되, 시설 구조와 현실에 대한 좀 더 예민하고 진전된 주제를 다루며,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모든 단계에서 탈시설화 관점을 담아 기술했다.

제시된 사례는 사회복지 실천가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 우선 제시된 사례가 일부 문제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현재 상황의 문제의식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제시된 사례는 최근까지 여전히 시설 이용인들이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제시된 사례가 여전히 시설에서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 해결 방안 토의를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또한 참여자들은 각 권리 항목별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개선하려 해도 궁극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갑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갑갑함을 느끼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 것은 사회구조와 환경의 중요성과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실천의 관계성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각적 해답을 구하려는 조급한 자세, 미시적 실천에만 관심을 갖는 협소한 관점으로는 인권 기반 실천을 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은 이미 인권 기반 실천이 시작되었다는 징후다. 현실의 한계를 바라보고 이용인과 종사자 모두가 구조의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파트너임을 인식하는 것은 인권 기반 실천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마지막으로 거주시설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을 통해 이용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종사자 입장에서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호소도 제기될 것이다. 구체적 대안을 실용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용적 대안만을 중시하다 보면 인권 존중의 가치와 철학을 간과한 채 영혼 없는 기능적 실천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부디 이 장에서 다른 내용을 기계적으로 습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이 책 전반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인권보장 방안에 대해 대화적 프랙시스(참여자들 간의 상호 대화를 통해 이론과 실천을 연계해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구성해나가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데 참고하길 바란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은 ‘시설 이용인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모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시설 이용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권리 내용으로 23개의 권리¹⁰⁹⁾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내재한 시설 이용인의 기본 권리를 ‘평등권,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문화권, 법절차적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

본 교재 II 장, ‘인권에 대한 이해’에서 다뤘듯이 현대 인권의 내용에 대한 분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연대권’ 이상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이 보편적 분류 방식이 아닌 7개의 기본 권리로 분류한 이유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인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데 있을 것이다.

본 교재에서 제시한 30개의 권리 항목 기준에 내재한 기본 권리는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발달과 성숙을 이룰 권리, 자기결정권, 참여권’의 5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09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정기적 건강검진과 필요한 의료 처치를 즉각적으로 받을 권리, 화재나 재해·재정적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와 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족 등 외부 방문자와 자유롭게 만날 권리, 자신의 입·퇴소에 대해 결정과 결정 결과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강요·제한·분리·거부 등 불이익을 입지 않을 권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정규교육 및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노동에 따른 수입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위탁할 권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자신의 인격과 재산 보호를 위해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시설 생활 및 운영, 제공되는 서비스 과정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아동 장애

아래 5가지 권리는 이 장에서 제시한 30개 권리 항목에 내재된 권리일 뿐 아니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 일상의 삶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이다. 만약 일상에서 아래 다섯 가지 기본 권리가 보장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권이 보장될 것이다.

|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

보편적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 어린이가 취급을 받거나 하대 받지 않고 불쌍한 사람으로 동정을 받거나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다양한 감정과 능력, 다른 특성을 가진 인간으로 여겨질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와 함께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욕구를 보장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연령이나 성별, 종교와 성적체성 등에 따라 차별 없이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 비장애인이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대우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

|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발달과 성숙을 이룰 권리 |

가능한 한 다양한 자극과 사회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발달과 성숙을 이룰 권리.

| 자기결정권 |

자신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 지적장애 등으로 이해·의사 표현 및 행위 능력에 제약이 있을 경우 결정권을 위임 또는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

| 참여권 |

자신과 관련된 결정과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시설 이용인들이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개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훈련 서비스, 건강보호 서비스, 재활 서비스, 취업 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권리, 정신장애인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자기 결정과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1. 시설 선택 및 입소 과정에서 권리

시설 선택 및 입소 과정에서 권리



입소결정권

시설 입소는 입소자의 자발적 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1) 개념

입소결정권은 말 그대로 자신이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설거주인 자립육구조사(조한진 외, 2012)에서 현재 거주하는 시설의 입소를 본인 스스로 결정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본인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로 결정했다'는 13.90%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본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시설에 입소했다'는 21.03%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입소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권유로 들어오게 되었다'가 35.29%, '내가 결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설득과 권유로 들어오게 되었다'가 26.56%로 조사돼, 결국 시설 입소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은 13.90%에 불과하고,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의 설득 또는 강요로 비자발적인 입소를 한 경우가 82.88%나 됨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시설에 입소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논하기 전에 '나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싶은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례



사례 1 - 가족에게 부담되기 싫어서 시설 선택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는 K씨는 70대의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동안 어머니가 K씨에게 밥을 먹여주고 똥오줌을 가려주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더 이상 K씨를 돌보기 어렵다. 남동생은 가장으로 돈을 버느라 바쁘다. K씨는 집 밖에 나가본 지도 몇 년이나 되었는지 모르겠다. 유일한 즐거움은 교회 신도들이 일요일에 찾아와주는 것이다. 그러다가 함께 살고 있던 남동생이 결혼해 올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신혼인데 노모와 장애인 시누이를 모시게 된 올케. 괜히 눈치 보이고 뭐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어머니는 올케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기력이 다해서 그런지 전혀 돌봐주지 않으신다.

그러다가 올케 입에서 “어머니도 늙으셔서 아가씨를 더 이상 돌봐드리기 어려운데, 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좋은 시설 알아볼게요”라는 말이 나왔다. 가족들의 부담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올케가 들어온 이후로 다툼이 잦아진 상황에서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시설을 알아보겠다고 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어 K씨는 시설로 입소하게 되었다.



사례 2 - 놀러가는 줄 알았는데 시설 입소

경기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아버지가 좋은 데 놀러가자고 해서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자동차를 탔다. 아버지와 놀이동산에 놀러가는 줄 기대했으나 도착한 곳은 전남 OO 시설. 아버지와 미리 이야기가 되었는지 시설 측에서는 A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생활할 방으로 안내하였다.



사례 3 - 내가 죽기 전에 장애인인 내 딸을 시설에 보내야 하나?

자궁경부암 말기인 40대 후반 K씨는 자신이 죽은 후 뇌병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하는 작은딸 P씨의 미래가 걱정된다. 집 근처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에서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어찌어찌 살고 있었지만, 자신이 죽은 후에는 대학생인 큰딸이 돌봐야 할 형편이다. 집도 걱정이고, 수급자이지만 둘만 남게 될 딸들의 생계도 걱정이고, 여자에 둘만 있으니 안전도 걱정이다. 지역의 몇 군데 시설을 방문해 상담도 해보았지만 시설에 작은딸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나을지, 큰딸의 부담이 얼마나 클지 잘 알고 있는 K씨는 결정하기 어렵다. 주변에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지만 자신의 사후에도 지속될지 확신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K씨는 자신의 건강보다 남은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앞선다.

시설을 선택한 이유로 24시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가족의 노령화 등으로 더 이상 자신을 돌봐줄 수 없어서,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등을 많이 꼽고 있다. 사례1)과 같이 장애인 당사자는 가족과 지인들과 어울려 살고 싶으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시설을 선택한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입소 결정이 진짜 장애인 당사자의 ‘속마음’인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 사례2)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시설 입소 상담을 할 때,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 의견으로만 입소가 결정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다는 것은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위험이 있다. 본인이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입소를 의뢰한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관할 지자체와 상의하면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입소해 24시간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복지법에서 ‘거주 공간을 활용해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과 ‘일정 기간’이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다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시설을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기에 국가와 지자체는 개인이 시설을 선택하기 이전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화된 상황을 최소화하고 원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차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먼저 해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은 시설 입소 전에 지자체나 시설, 아니면 아는 지인에게 시설을 알아보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우선적으로 시설을 안내받는 것이 아니라, 왜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지역에서 살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례3)은 지역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2013년 12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라며 한 아버지가 자폐아인 아들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면, 또한 다른 대안 없이 시설만 선택하도록 강요된다면 ‘입소 결정권’이라는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시설은 영원히 머물기보다는 ‘일정 기간’ 머물면서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곳이므로 입소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염두에 두고 시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관련 법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특정 주거지를 강요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입소 시 본인의 자발적 결정을 강조하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인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에 따른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해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를 기초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

제13조 1항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함과 지역사회에 통합)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 기회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을 보장함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a)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거주지 및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되지 않음.
- (b)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이나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광범위한 재가·주거 서비스와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들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음.
- (c)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시설이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함.

| 사회복지사업법 |

제33조의2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

-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 금지)

-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복지법 |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입소 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 입소 의뢰자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 입소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호자와 별도로 상담을 추진한다.
- 입소 의뢰 당사자가 예비 이용을 통해 시설 생활을 경험해본 후 시설 입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입소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단체 등과 논의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한다.

토론거리

- 사례2)와 같이 당사자와 가족이 시설 입소에 대한 입장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례3)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인프라가 없어서 시설을 선택하게 되는 장애인 또는 가족이 있다. 가족이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워진 상황, 건강이 너무 악화된 경우, 지역사회에서 주거가 취약한 경우 등. 당사자는 지역에서 원래 그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어서 시설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최선의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서비스 정보접근권

시설 선택 시 필요한 정보 및 시설 생활에 관련한 정보를 시설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 개념

우리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때도 숙박할 곳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본다.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지, 차를 타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주변에 이용할 만한 편의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등등.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어 집을 알아볼 때도 여러 군데 집을 돌아보면서 직접 들어가 보고 이것저것 알아본다. 이렇듯 이사, 하물며 며칠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꼼꼼히 알아보는데, 거주지로서 일상생활을 하며 보낼 공간으로 시설을 선택할 경우,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시설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살고 있었던 곳 및 생활환경에서 그리고 함께 생활하던 가족과 지인들과 멀리 떨어져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이자 개인에 따라서는 충격일 수도 있다. 자신이 살 곳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이런 변화와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영역이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사회복지사업법 제1조2 ②항), 시설 예비 이용자에게 자신이 살 곳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리 방문해 둘러볼 수 있게 하는 등 정보 접근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공공 확보에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2) 사례



사례 1 -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한 경우

J씨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부터 생활하게 될 시설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몇 번 전화 연락을 한 것 같은데 J씨는 오늘 처음 방문한 날이다. 그동안 어머니가 시설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고 있었으나 무슨 설명을 들은 적은 없다. 어떤 시설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 곳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형이 공부해야 하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하니까, 너는 시설에 가야 한다”는 가족들 말에 가야 하는 줄은 알고 있었다.



사례 2 - 장애인 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설명

P씨가 어머니와 함께 처음 시설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에서 직원이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시설을 구경시켜주면서 화장실, 강당, 프로그램실, 그리고 사용할 방까지 돌아보기도 했다. 함께 생활할 사람들도 소개해주었다. 그런데 설명을 대부분 P씨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했다. 어머니가 좋다고 하면 다 좋은 건가? ‘이곳에서 생활할 사람은 나인데...’ P씨는 답답함을 느꼈다.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자립욕구조사(조한진 외, 2012)에서 현재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정보의 취득 경로를 알아보았다. 1위는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를 받아서’가 44.38%, ‘정보가 전혀 없었다’가 17.42%, ‘친구나 이웃 등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가 11.80% 순으로 나타났다. 2위로는 ‘친구나 이웃 등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가 26.71%, ‘정보가 전혀 없었다’가 19.1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고, 정보가 없었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 사적인 통로를 시설 선택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에서는 입소 의뢰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입소 전 당사자와 소통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17.42%나 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1)과 같이 정보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의사 결정에서 배제

되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인 통로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 기관인 시설이나 관리감독 관할 기관인 지자체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를 안내하는 문서 및 상징물을 제작하는 것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시설 입소 전에 제공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 제공이 절차상의 요식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내내, 시설 입소 시 제공되었던 정보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2)와 같이 시설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누구를 중심으로 설명했는지도 중요하다. 특히 입소 과정에서 가족이 동행하는 경우, 장애인보다 가족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가족이 이해를 하면 설명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좋다고 하니까 더 이상 설명이 없었어요.” “나를 보고는 말하지 않아요. 생활할 사람은 난데...” 시설에서 생활할 사람이 장애인 당사자임을 볼 때, 우선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할 사람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에서는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당사자나 가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동등하게 진행되려면,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 이용비용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시설 이용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것이고, 유료로 이용한다면 가족 등 누군가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시설 운영자가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시설 이용에 대한 당당함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1단계이다.

3) 관련 법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 |

- (v)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함에 있어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보건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입소 의뢰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입소하기 전 입소 당사자와 연락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한다. 즉 입소 당일해야 당사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 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설에서 적극적인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시설 입소 초기 상담에서 입소자가 갖는 권리에 대해 안내한다. 이에는 진정절차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고충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시설 내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에 시설 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시설 이용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시설 입소 당사자를 중심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설 선택 전 시설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시설 선택 전 먼저 시설에 살고 있는 이용인에게 시설 생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시설 이용에 있어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구조가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토론거리 토론

- 현재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시설 생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 장애인 당사자, 가족, 종사자가 모두 동등하게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와 시설 이용에 고려해야 할 점 등을 나누었는가? 장애인이 배제된 형태로 논의하지는 않았는가?
-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언어, 그림 등을 제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시설 선택 및 입소 과정에서 권리



계약체결권

시설 입소자는 시설과 서비스 제공 조건이 담긴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1) 개념

은행에 계좌를 만들 때,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 집을 임대차할 때, 수영을 배우려고 문화센터에 등록할 때 등 보통 일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을 때는 쌍방 간에 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작성한다. 계약서가 아니라면 적어도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증’이라도 주고받는다. 물건 사고 영수증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도 ‘시설 입소를 결정한 예비 이용자는 본인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시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치료, 거주 공간 등에 대한 권리와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준수해야 할 책임이 담긴 문서화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장받을 수 있다’며 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계약체결권은 시설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 사례



사례 1 - 일방적으로 이용인의 책임만 강조한 서약서

K씨는 시설 입소 시, 시설 측으로부터 서약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서약서에는 '000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동안, 평소 지닌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나 사망 시 000시설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000시설 운영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과 000시설이 종교시설이었던지라, '장애인 선교에 적극 동참해 매월 스스로 정한 헌금과 선교 봉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000시설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K씨는, 헌금과 선교 봉사를 하고, 000시설 측에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시설입소계약서인지 궁금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체계적인 입소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으며, 입소 서류 자체가 없기도 한 형편이다. 특히나 입소 계약 시 '입소자 권리와 운영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보다는 생활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서 시설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수급권 통장 등 개인 재산을 양도할 것, 개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 등의 내용만 언급되어 있는 불법 각서 형태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입소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만 입소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이용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등 일방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소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입소계약서에 시설 이용인이 지켜야 하는 내용만 강제하는 등 시설 운영자 쪽의 입장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설 내 이용인의 지위가 어떠한지, 이용인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받는지 파악할 수 있다. 즉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입소 계약이 아니라 쌍방의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고 시설 생활에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의미에서 최근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는 서비스 제공 조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이용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복지부는 지침으로 내렸고, 많은 시설이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입소 계약은 시설 이용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쌍방의 동등한 권리 행사라는 측면에서 입소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입소계약서 체결이 형식적

인 절차가 되지 않으려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성한 입소계약서는 시설과 당사자 쌍방이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고가 있다면 연고자와도 공유해야 할 것이다.

3) 관련 법규

| 장애인복지법 |

제60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 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 ⑦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평상시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등을 통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면서 시설은 계약과 함께 점검의 책임도 져야 한다.
- 계약서의 내용에 입소자 의무 사항 중심의 일방적인 동의서 양식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수준, 이용자와 시설 측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인권 확보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상호 계약서 형식을 취한다.
- 시설의 물리적인 상황과 규칙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거주할 방에 대한 선택, 함

계 방을 써야 하는 이용인, 개인의 취향 등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서 내용에 시설 이용인이 시설 생활 시 지켜야 할 내용이 과도하게 들어간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집단적인 규율이나 제재, 처벌 관련 조항은 최소화한다.
- 계약 체결 시 입소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 계약 체결 시 입소 당사자 및 가족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토론거리

- 시설 입소자의 권리, 개인에 대한 존중 등이 기본이 되는 시설 이용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 구조와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원하는 시간에 식사,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외출하는 등 시설 이용인의 개별 서비스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충돌 지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2.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다양한 식생활을 위한 권리

누구나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 등 음식의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인권적인 분위기 속에서 식사할 수 있어야 한다.

1) 개념

식생활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생존의 기본이라는 단순한 식생활의 의미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한 방법으로 점점 다양하게 그 범위와 의미를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생존권으로서의 식생활과 확대되어가는 식생활의 의미까지를 담아 현재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먹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단체 급식은 시설뿐 아니라 학교, 직장 등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형태이다. 하지만 학교와 직장의 단체 급식은 가정이라는 기본 식생활 단위와 병행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선택에 대한 권리와 다양성을 갖고 있는 반면, 시설에서 제공되는 단체 급식은 이용인의 전체 식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의 식생활보다 이용인의 영양과 선택권 등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더 다양한 이용인의 영양과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일부 시설에서 급식의 편리함을 이유로 큰 그릇에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담아 제공하는 한 그릇 식단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경우 식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식사 제공자의 편의만을 고려해 이루어지는 식사 형태로 이용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한 그릇 식단을 제공하는 시설 관계자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이용인의 편리함을 위해 제공되는 방식임을 강조하며 개선을 거부하곤 한다.

이 밖에도 시설 내 식사 제공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내용 중에는 필수적인 사

항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영양가 있는 다양한 식단 제공과 이용인의 식사 유형에 따른 식재료 손질이 그것이다. 이 문제 역시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원이 처음부터 이용인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크기와 조리법으로 음식을 준비한다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조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식사시간마다 생활교사가 가위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피하고 이용인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식사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는 쾌적한 식사 환경, 자신이 원하는 식재료와 요리법을 제안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선택권, 시설 밖의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이용인이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권리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

이처럼 식생활과 관련한 권리는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선택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식생활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적인 고민 역시 이용인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그 해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권, 즉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식생활에 대한 권리에서는 다른 선택의 문제와 달리 단순히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용인의 건강이다. 이용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음식에 대한 선택권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겨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식생활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종사자와 이용인이 선택권과 건강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2) 사례



사례 1 - 한 그릇 식단 제공과 식사 시 무분별한 가위 사용

A시설에서는 식판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커다란 냉면 그릇에 밥과 반찬을 담아 비빔밥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교사가 큰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냉면그릇 안에 있는 음식을 종류에 상관없이 잘라준다.

많은 시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식사시간에 생활교사가 가위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다. 물론 음식의 크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용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미 그릇에 담긴 음식을 자르기보다는 조리 과정에서 개인의 선호나 치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리법과 재료의 크기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사례 2 - 지적발달장애 이용인의 선택권 보장

B시설에서는 지적발달장애 이용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식단을 짜보도록 하여 실제 식단에 적용한다. 또한, 이용인들이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면 자신이 먹고 싶었던 음식을 잡지의 그림이나 텔레비전 광고 등을 보면서 직접 선택해 제안하도록 한다.

이용인의 선택권을 위해 그림이나 잡지, 텔레비전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용인의 선택이 식단에 반영되는 경험을 통해 식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에는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라 할지라도 이용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례 3 - 장애아동에 대한 비인권적 간식 제공

장애아동시설인 C시설에서는 간식 접시에 간식을 주면 설거지가 많아지고 서로 설거지를 미루게 된다는 이유로, 식사 혹은 간식을 제공할 때 정해진 식판이나 접시를 사용하지 않고 벽 쪽으로 전체 원생들을 불러 앉게 한 후 음식을 던져주듯 지급한다.



사례 4 - 소란을 이유로 벽 쪽으로 식탁 배치

지적장애인시설에서 이용인들이 식사시간에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식탁을 벽 쪽으로 배치해 이용인들이 모두 벽을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사례 5 - 개인의 식사량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인 식사 강요

F시설에서는 편식을 지도한다며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 국에 말아 잘게 자른 뒤 먹게 한다. 밥이 많다며 덜어달라는 A원생에게 생활교사는 “오늘은 반찬이 맛이 없구나? 그렇게 배가 부르면 간식 먹지 마.”라고 말해 A원생은 간식을 먹기 위해 밥을 억지로 먹었다.

사례3), 사례4), 사례5)는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최근 벌어진 일이다. 음식의 질과 영양도 중요하지만 음식은 편안하고 존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먹어야 한다. 즐거워야 할 식사시간이 누군가에게 제재를 받고 감시를 받으면서 억지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례 6 - 간식 선택권의 제한적인 적용

E시설은 성인 지적장애인이시설이다. 이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시설 내에서 1일 장터를 열어 미리 이용인들이 요청한 용돈을 찾아주고 장터에서 떡볶이 등 간식과 간단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장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용인들에게 간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위 사례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이 시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간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역시 시설에서 정한 간식의 종류 안에서 제한적으로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이용인의 직접 선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야 차별 없이 진정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기본적으로 이용인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
- 이용인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한 영양가 있고 다양한 식단을 제공한다.
- 식사와 간식 의 제공 형태는 이용인의 건강, 치아 상태, 나이를 고려해 제공되어야 하며, 식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 이용인은 식사시간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하고 싶은 공간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식재료와 요리 방법 등과 관련해 이용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이용인은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간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일반 식당을 방문해 다양한 식단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간식은 이용인이 자신의 용돈을 가지고 시설 밖의 외부 점포 등을 방문해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 거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을 조절하고 식사량을 제한해야 할 경우 이용인의 선택권과 건강을 모두 고려하기 위한 종사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유로운 의복 선택을 위한 권리

누구나 자신의 의복과 관련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착용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다.

1) 개념

현대사회에서 의복은 기후의 변화와 주변 상황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기능과 함께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의복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남과 다른 나의 특별함을 찾아가고 즐기며 그 속에서 자존감을 높여간다.

하지만 시설 이용인에게 의복은 시설이라는 집단적 생활공간에 맞추어 타의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용인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 선택의 권리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의 종사자가 다수의 이용인을 지원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종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용인의 의복을 선택하거나 또는 동일한 단체복을 착용케 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소속감을 부각하고 이용인을 용이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 비해 여러 시설에서 이용인들의 단체복 착용을 지양하고, 이용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후원받은 물품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선택권을 부여할 뿐, 직접 지역사회 의류 매장 등을 방문해 다양한 종류의 의복을 직접 고르고, 착용해본 후에 구입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실현하는 곳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용인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와 시설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매장의 접근성 문제, 이용인이 돈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옷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 의복을 직접 선택하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의복 선택권의 범위는 의복의 취득 이후 개별적인 보관함을 이용해

관리되는지, 자신의 의복 중에서 착용할 의복을 자신의 결정으로 선택하는지, 그리고 양말이나 속옷 등의 개인용 피복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속옷 등 개인위생과 관련된 의복을 공동으로 착용하지는 않는지 등을 포함한다.

2) 사례



사례 1 - 종사자의 취향에 따른 의복 구입

중증장애인시설인 A시설에서 근무하는 B종사자는 의사소통과 이동이 어려운 이용인들을 대신해 옷을 구입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인의 취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을 고려해 거의 B씨의 취향에 따라 이용인의 옷을 구입하게 된다.



사례 2 -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

B씨는 30대 남성이다. 어느 날 여고생들이 자원 활동을 왔다. 그러나 B씨는 평소와 다르게 자원활동가들에게 나서서 인사하고 안내하기를 꺼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B씨는 그날 아동용 분홍색 양말을 신고 있었고, 자꾸 발을 가리려고 했다. 이를 본 직원이 B씨에게 양말을 갈아 신을 것을 권했고, B씨는 그제야 평소처럼 활발하게 자원활동가들을 만났다.

중증장애인시설이나 장애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용인의 경우 개인의 취향이 나 개성을 고려해 의복을 직접 선택하는 기회는 배제된 채 생활을 지원해주는 종사자들의 취향과 편리성에 따라 구입하는 의복을 입게 된다.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인의 성별, 나이, 계절, 유행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의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사자가 일괄 구입하는 것은 편리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례 3 - 후원 들어온 단체복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 사례

C시설에서는 단체복이나 모자 등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온다.

후원 들어오는 단체복의 질은 좋지만, 이를 이용인 모두가 입자니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용인 중에 희망하는 사람은 고르게 한 후 나머지 것들은 동네 주민들과 주변의 복지기관에 나눠 주고 있다. 후원 들어온 물품이라고 해서, 이용인 모두에게 착용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설에는 다량의 의복 후원이 들어오는 일이 잦다. 이럴 경우, 이용인 개인의 의복 선택권을 고려하기보다는 비용 절감과 후원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 후원받은 의복, 모자, 소품 등을 단체복처럼 착용하게 한다. 어떤 경우에는 옷에 시설명과 전화번호를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적어놓거나, 개인사물함이나 개인 의복 없이 모든 이용인이 공동으로 보관하고 돌려 입기도 한다. 의복은 개개인의 청결과 개성을 표현하는 데 기본적인 수단이다.

3) 관련 법

| 세계인권선언 |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의복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용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이용인이 지역사회 의류 매장을 방문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옷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종사자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류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옷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 후원받은 옷을 이용인에게 나누어 줄 때에 직접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속옷과 양말 등 개인용 피복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속옷과 양말 등 개인의 위생과 직접 관련된 개인용 피복은 세탁 및 보관할 때 개인별로 구분해 각자 자신의 것만을 착용하도록 한다.
- 개인별로 의복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 개인별 보관함의 사용 방법에 대해 이용인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보관함의 정리 방법에 대해 이용인과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 이용인이 착용할 의복은 모자 등의 소품을 포함해 자신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
- 이용인이 의복을 갈아입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한다.

토론 거리

- 이용인이 계절이나 장소에 맞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타인의 눈총을 받을 염려도 되고, 건강상 관찰을지 걱정도 된다. 이런 경우 본인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존중하면서 이용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용 등을 통해 개성을 표현할 권리

누구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용 및 액세서리 등 모든 방법 및 도구에 대해 그 선택을 존중받고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1) 개념

시설 내에서의 이·미용권과 관련해 우리는 이·미용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군인이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범죄자의 경우 머리 모양을 짧게 통일해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집단 속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머리 모양을 통일시킴으로 해서 집단의 통일성을 외부에 과시하고 개개인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처럼 이·미용과 관련해 머리 모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두발 자유를 인정하고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개성과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머리 모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시설에서는 군인이나 범죄자도 아닌 개인들에게 청결과 규율을 이유로 통일된 머리 모양을 강조하며 단정해 보이지 않는 화려한 화장은 제재하는 등 이·미용권을 제한하고 있다. 시설은 종사자들에게는 직장이지만, 이용인에게는 집과 같은 의미의 공간이다. 가장 자유롭게 개성이 존중되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이·미용에 대한 선택권은 아주 당연한 기본 사항이다.

이러한 선택권과 관련해 미용 자원봉사는 여러 면에서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진행되는 미용 자원봉사는 봉사자들의 좋은 뜻과는 달리 이용인의 이·미용 선택권을 제한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용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이 이용인 개개인의 의사를 묻기보다는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획일적으로 미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상 이용인 스스로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용 자원봉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한 지적장애인 시설은 매우 바람직한 대안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설의 경우 미용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용 말고 다른 활동을 부탁하고, 이용인들의 미용은 시설에서 30분 정도 거리의 중심가에서 각자 원하는 미용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용권은 의식주와 달리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래서 지극히 사적 영역인 이·미용권의 권리 보장 정도에 따라 그 시설이 현재 개인의 선택권이나 결정권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개성의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이·미용권은 단순히 머리 모양이나 화장법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손톱 정리나 액세서리 선택과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공동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매개체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례



사례 1 - 선택권을 주지 않는 미용 봉사

A시설에서는 미용 봉사를 오는 자원활동자들이 이용인에게 어떤 스타일로 머리 모양을 바꾸고 싶은지 전혀 묻지 않고 알아서 미용을 진행한다. 이용인이 미용 봉사를 받은 후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2 - 잡지와 그림을 통한 선택권 보장

B시설에서는 미용봉사가 있기 전에 미리 이용인들에게 미용과 관련한 잡지와 그림 등을 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미용 봉사에서 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경우 이용인과 충분히 소통해 다른 스타일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사례1)과 사례2)는 매우 상반되는 예이다. 미용 봉사자들이 이용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는 노력해야 한다.



사례 3 - 시설장의 미용 선택권 침해

A시설의 경우 미용 봉사오기 전날 시설장이 미리 이용인 중에 이발할 사람과 스타일을 정해주고 미용 봉사자들에게 그대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용인이 머리를 기르려면 시설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싶어도 아예 요구하지 않는 이용인이 대부분이다.



사례 4 - 미용 봉사를 지양하고 외부 미용실 이용

경기도의 지적장애인 시설인 B시설에서는 미용 봉사를 신청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다른 활동을 부탁하고, 이용인의 미용은 시설에서 30분 정도 거리의 중심가에서 각자 원하는 미용실을 이용하도록 한다.

3) 관련 법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모든 이용인에게 청결과 관리를 이유로 머리 모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이용인이 직접 지역사회의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이·미용에 대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미용 봉사활동이 진행될 때 사전에 봉사자들에게 스타일과 관련한 적당한 디자인을 사진 자료 등으로 이용인에게 제안하고 취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용인의 취향을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 충분한 봉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이·미용 관련 물품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장품이나 개인 미용 도구의 구입과 사용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용인은 자신이 원하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액세서리의 선택과 구입 및 착용과 관련해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아야 한다.
- 헤어드라이어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 보조 도구가 비치되어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용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이용 가능해야 한다.

토론 거리

-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활동을 할 때 이용인이 언어장애나 장애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종사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개인적 생활이나 비밀과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간섭받거나 침해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1) 개념

사생활(privacy, 私生活)권의 본래 뜻은 개인적 생활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지 않고 이러한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권은 비교적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1890년 미국의 젊은 변호사 새뮤얼 워런(Samuel Warren)과 루이스 브란데이스(Louis D. Brandeis)가 처음 주장했고, 1903년 뉴욕 주에서 이의 보호를 위한 법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 뒤 미국의 다른 주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에서 사생활권이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생활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매스컴대사전, 한국언론진흥재단, 1993)

개인적 생활이라는 의미의 사생활은 공동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근본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갖고 있다. 개인만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 패턴 역시 정해진 일과표에 의해서 규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용인이 ‘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찾고 자신의 자존감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설 종사자들이 더욱 더 세심하게 사생활권의 보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화장실 등 시설물 구조 자체가 사적인 공간을 보장하지 않게 되어 있어 사생활이 침해받는 경우이다. 나란히 위치한 3칸의 화장실이 남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교대로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에 위치한 화장실을 양쪽 방에서 함께 이

용하도록 하고 있어 환기용 문틈으로 화장실 안이 들여다보이는 등 화장실의 위치를 선정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치해 편안한 이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다.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다 풀어버리는 등 화장실 이용 후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게 한다거나, 안전을 이유로 목욕할 때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보안을 이유로 거실과 복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출입구와 창문의 외부에 잠금장치나 쇠창살을 설치하는 경우, 개개인의 사생활 공간인 침실의 문을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 경우(갑정기·송정문·최복천, 2012) 등 시설들은 이것이 이용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인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시설 내부로 제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둘째로 시설의 종사자와 거주자 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곁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쉽게 노출된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이용인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인 사례 회의 등 절차를 거쳐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적 대화를 통해 이용인의 일상이 말로 전해지면서 이용인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셋째는 단체생활이라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다. 적은 곳은 2~3명, 많은 곳은 10여 명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속옷을 갈아입는 것도, 신변 처리하는 것도, 전화 통화를 하는 일도 모두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모든 생활이 노출되는 것이다. 시설 내에서 연애를 할 경우 서로 다른 층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식사 시간과 외출 시간에만 잠깐씩 만날 수 있거나, 일부 종사자의 경우 보이는 곳에서만 연애를 하라고 이용자에게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종사자와 이용인의 성 비율이 안 맞는 현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이다. 그로 인해 이성 종사자가 목욕 지원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불편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종사자 역시 마찬가지임에도 시설 운영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넷째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2조에서는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의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 금지에서는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금과 홍보를 위해서 시설의 리플릿이나 홈페이지 등에 이용인의 생활 모습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시설과 이용인이라는 관계의 특성상 이용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는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가질 권리에 관한 것이다. 사생활권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활동, 나만의 물건 등 나만이 갖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에 대한 권리이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했듯 시설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 같은 일정표를 따라 함께 쓰는 시간, 함께하는 활동, 함께 쓰는 물건 등 모든 상황과 시간이 함께하도록 짜여 있다. 시설 이용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카드’를 선택하는데 이는 단체생활이라는 환경 속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혼자 있고 싶은데 어디서 혼자 있어요’, ‘늦잠 자고 싶을 때는 그냥 자고 싶은데’, ‘혼자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조용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고독을 즐기고 싶어요’라고 많은 이용인이 이야기하고 있다.

시설이라는 공간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지켜지기 어려운 권리가 사생활권임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사생활권은 다른 권리 항목과는 달리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 안에서 만들어가야 할 권리 항목인지도 모른다. 시설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 작은 개인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권리로 좀 더 많은 이용인이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례



사례 1 - 안전을 이유로 하는 사생활 침해

A시설에서는 이용인의 안전을 이유로 침실의 문을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투명한 유리로 설치했다. 또한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욕실문의 잠금장치를 없애고, 화장실의 문도 아래쪽이 다보이게 설치되어 있다.



사례 2 - 이성 종사자에 의한 목욕 지원

B씨가 근무하는 C시설은 남성 종사자가 남성 이용인의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여성 종사자가 남성 이용인을 목욕시켜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얼마 전 B씨도 남성 이용인의 목욕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목욕시키는 중에 이용인이 발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수치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다른 방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원장은 바꾸어줄 인력이 없다고 거부하면서 인권에 대해 종사자가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사례 3 -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

A시설 홈페이지에는 이용인들의 얼굴과 성별, 개인적인 사연 등을 올려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후원해주는 기업과 함께한 활동사진 등은 후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외부에 공개되었다. B시설은 시설 현관 앞 복도 게시판에 이용인들의 사진을 장에 유형별로 장난스럽게 표현한 그림과 함께 게시하고 그 밑에 설명에 '명량하나 거짓말을 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용인을 묘사하고 있다.



사례 4 - 정신병원의 CCTV설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

000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 씨는 정신병원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병원 측에서는 CCTV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에 초점을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병원에

서는 환자들의 자살 예방, 타해 방지, 총동성, 공격성을 사전에 알고 대처하기에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병원 전체에 CCTV를 설치하게 됐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화장실의 경우 머리만 비칠 뿐이고 전체가 촬영되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의 환자가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 운영할 것,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해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의 설치 운영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촬영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것과 유사 사례가 정신보건시설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라고 결정했다. (사건번호 11진정0716600)

CCTV 설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특히 돌봄의 현장에서는 더 논란이 되고 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논란이 되다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후, 안전행정부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¹¹⁰⁾ 돌봄노동의 현장, 즉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면 돌봄을 이유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교통 단속 등을 이유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만을 이유로 모든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한다. 공개된 공간의 경우 예를 들어 출입문, 복도 등에 설치할 경우는 이용자와 종사자 등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화장실, 개인 공간, 방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사고 위험성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침해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생각하면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

110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 지침자료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 거주지나 거주 시설에 상관없이, 어떠한 장애인도 임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왕래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 소통 수단을 간섭받아서는 안 되며, 명예나 명성에 부당한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사생활, 건강과 재활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헌법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

거하여 사람을 구급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 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⑥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

-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 서의 차별 금지)

- ②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종사자는 이용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이용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이용인의 개인정보 파일 등은 잠금장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 이용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으며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목욕 지원이나 개인위생과 관련한 지원은 반드시 동성의 종사자가 해야 한다.
- 욕실과 화장실은 이용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개개인의 사생활 공간인 침실이나 화장실 욕실 등의 문은 밖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설치하며 항상 잠금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종사자와 다른 거주인들 모두 어떤 이용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한다.
- 외부 방문 시 이용인의 사적 공간에 대한 공개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이용인이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주시설 내의 공간이나 시간이 있어야 한다.
- 시설 내 CCTV의 설치는 안전과 화재의 위험 등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이용인의 생활공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위험 예방 차원의 설치일 경우에도 이용인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반드시 설치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토론 거리

-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 개인의 사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의 권리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 안에서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시설물을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개념

장애인의 생활에서 시설물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의 확보는 교육이나 직업생활, 문화생활과 같이 사람답게 살아가길 모든 권리를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첫째 필수 조건이다.

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해, 이용인들이 시설 내외의 활동에서 접근과 이동에 대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편의의 범위 안에는 물리적 환경 제공과 함께 장애 유형과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조인력의 지원과 보조기구의 지원까지를 포함한다.

우선 시설 내 화장실의 경우,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이 이용인의 수에 비해 화장실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 종사자 화장실과 이용인 화장실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으며, 분리해서 사용하는 곳 중에는 번호키를 달아놓고 이용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그램실을 열쇠로 잠가놓아 이용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시설 건물 출입구를 밖에서만 열 수 있고 안에서는 열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엘리베이터로만 이동이 가능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작동을 꺼두어 층간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의 권리는 물리적 접근성만이 아닌 거주환경 전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용인의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지가 좌우되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사례



사례 1 - 이용인의 시설 내 이용 제한

B시설에서 1층은 직원용 화장실, 2층은 이용인용 화장실로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직원용 화장실에는 번호키를 달아 이용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용인은 1층에서 활동을 하다가도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으면 2층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직원들은 이용인이 휴지를 변기에 가득 넣어서 변기를 자꾸 막히게 하기 때문에 문을 잠그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사례 2 - 다층시설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제한

3층 건물로 운영되는 시설을 방문한 조사원이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성함을 물어보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겨우 진정하게 한 후 휠체어를 타게 하고 어렵게 2층에 있는 야외정원으로 가서 왜 눈물을 흘리셨냐고 물었더니 “누가 나를 찾아와줄 줄 몰랐다”고 하면서 1년 동안 한 번도 1층으로 내려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시설은 1층은 중증, 2층은 경증, 3층은 최중증으로 구분해 이용인을 머물게 하고 있는데, 최중증 이용인의 경우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있어도 직원이 지원하지 않으면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이용인이 자기 방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를 희망할 때, 그 이동에 대해서 보조 기구 또는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동 지원이 필요한 이용인의 욕구는 무시되기가 쉽다.

3) 관련 법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9조 접근성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대중에게 개방되고 제공되는 시설이나 서비스에 타인과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①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 (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시설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편의시설의 종류와 접근과 이동하는 데 불편 한 점은 없는지, 이용인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이용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건물 내외부의 출입구에는 이동을 방해하는 턱이 없어야 한다.
- 경사로와 계단에는 손잡이가 잡기 편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점자 유도 블록이나 건물에 대한 점자 지도가 있어야 한다.
- 시설 내의 각종 안내 표지판이 지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나 쉬운 글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 외부와 연결된 출입문은 안과 밖 양쪽에서 모두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며 이용인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시설 내의 모든 공간은 이용인과 종사자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위험 물품이 들어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시설 안의 모든 장소는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이용인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화장실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 다층 건물의 경우 상층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용인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운행되어야 한다.

토론 거리

-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이용인의 이동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 안전을 위해 일부 설치물의 접근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여야 하며 구성원 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과 구성원 간의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참여의 권리

이용인은 시설 운영 및 자신의 생활에 관련된 모든 논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를 통한 의사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개념

시설 운영에서는 시설 운영자, 직원, 이용인이 가장 중요한 3주체이다. 이 외에 후원자와 이용인의 가족이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 운영자, 직원, 이용인이며, 이 3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원탁에 둘러앉아 평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야 비로써 시설 운영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갖게 된다. 또한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절차적 권리뿐 아니라,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한다.

시설에서는 각종 회의가 진행된다. 먼저 시설운영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이용인들 간의 자치회의, 직원회의, 또는 평직원회의, 또는 노동조합 회의 등이 내부에 있음직한 회의 구조다. 규모가 큰 시설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층별 모임이나 법인 산하 시설별 회의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회의에서 민주적 운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으며, 토론으로 결론을 합의해가는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각자의 의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설운영위원회에도 이용인 대표가 2인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려고 했을 때 민주주의와 소통의 문화는 그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시설 내의 각종 회의 말고도 꼭 보장해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이의 제기 절차이다.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또한 부당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방법은 거주 공간 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다. 모든 시설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진정함에 대한 설치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모두가 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거나, 사무실 옆에 있거나, CCTV 앞에 있거나 하여 진정한 사람에 대한 비밀 보장이 안 된다면 진정함의 의미가 없다. 또한 진정함은 있지만 필기구가 없거나, 진정함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인 셈이다.

또 다른 방법은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에 해당 사건을 진정하거나 시설 자체에서 만든 건의함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 등이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시설 내부의 인권지킴이단이 상급자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거나, 직원 간의 관계에 눈치가 보여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형식적인 활동에 그칠 확률이 높다. 자유로운 진정함 이용과 활발한 지킴이단 활동을 위해서는 그만큼 시설 내의 민주적 조직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누가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적절한 ‘고발을 남발하는 문화’도 평등하고 풍요로운 의사소통 문화로 바꾸는 가운데 해소해야 될 과제이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나 민주적 절차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논의된 의견들이 실제 반영됐는지의 여부이다. 의견은 충분히 들었지만, 논의가 논의에서 끝난다면 여러 회의는 그 존재의 의미가 무색해질 것이다. 말해봤자 바뀌는 거 하나 없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논의 과정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논의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더 나은 방향으로 현장을 바꾸는 실천에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용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과 표현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지적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정보 전달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이용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여 의사 표현을 지원해야 한다.



2) 사례



사례 1 - 원장을 채용할 때 직원과 이용인이 함께 참여

나는 시설 이용인 대표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설원장을 공채로 뽑았는데, 원장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할 때 법인 대표, 직원 대표, 시설이용인 대표가 참석했다. 사전에 논의한 내용으로 점수표를 만들어 각자 점수를 매기고 종합해 원장을 뽑았다.



사례 2 - 이용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회의 참여란?

이용인 K씨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진 중증의 이용인으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데, 요즘은 본인의 활동만이 아닌 프로그램 평가회, 사업계획 설명회 등에 참여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꼭 참여해야 한다고 하니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과연 이런 참여가 의미 있는 일인지, 더구나 이용인을 1:1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직원 한 명이 4~5명 되는 중증이용인들을 자리에 앉아 있도록 지원하는 일만도 만만치 않아요. 또 장애 정도나 개별 특성도 달라서 한자리에 참석은 하지만 이해도나 의미 있는 참여는 경중의 이용인 중심에서만 의사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앞에 높은 다과에만 관심이 있거나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이용인도 있는데, 과연 의미 있는 참여가 무엇일까요?

-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딜레마 사례연구, 201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3) 관련 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

제36조 (운영위원회)

-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

제4조 (장애인의 권리)

-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하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함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용인들만이 참여하는 자치회가 있어야 한다. 자치회는 최대한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용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동규칙 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설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용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 이용인이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인권지킴이단 또는 그 밖의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및 고충,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의제기 절차는 내규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이용인들이 자유롭게 솔직하게 개진한 의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 이용인들에게 각종 회의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한다.
- 자유롭게 개진한 의사는 시설 운영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토론 거리

- 각 장애의 특성에 따라 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이 인력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적절한 주거 환경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

1) 개념

주거권은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나이, 가족 형태, 국적,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만한 집에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 해비타드 의제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해 규정하였다. 적절한 주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적절한 사생활 보호, 적절한 공간, 물리적 접근성, 적절한 안정성, 점유의 안정성,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 적절한 조명, 난방, 환기, 물 공급과 위생 및 쓰레기 처리 시설과 같은 적절한 기반시설, 바람직한 환경의 질과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 일자리와 기본적인 편의시설에서 인접한 적절한 입지 등을 의미함과 아울러, 이 모든 것이 부담할 만한 적절한 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외, 2010).

인간의 주거 형태는 이러한 많은 요소를 안고 매우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시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주거 형태 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시 주거 공간에서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등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는 형태다. 주거권은 그러한 시설의 취약점을 최대한 보완해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누려야 할 권리 확보에 그 초점이 있다.

시설의 주거 환경과 관련해 종사자와 이용인 모두 1인 1실 사용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은 생활공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그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다. 한 방을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이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규모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설계가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고려보다는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어서,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의 공간을 가질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추위와 더위 등 적절한 기후 환경에 따라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치된 냉난방 시설을 이용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채광, 조명, 환기와 통풍, 온도와 습도, 진동과 소음, 청결과 정리정돈, 쾌적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냄새, 청소 상태 등은 항상 점검되어야 하며, 벽지와 바닥의 상태, 창문이나 문의 설치 상태 등 기본적인 환경도 상시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벽지나 조명은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좋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게,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변기나 욕조에 손잡이 설치, 높이가 일정하고 발밑을 밝게 하며 손잡이를 설치한 계단, 난간 높이는 110cm 이상, 화재 등 안전 사고에 대비한 소방시설의 설치는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¹¹¹⁾ 중 거주 환경과 관련한 지침들을 살펴보면 ‘방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물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의 변기에 이용인 4명의 비율이어야 한다’ 등의 물리적인 환경 지침부터 ‘이용인은 방문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원한다면 방문에 편지함과 자물쇠를 달 수 있게 한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기준을 매우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설은 획일화되지 않은 방식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영국의 규정은 우리에게 매우 유의미하다.

〈 비시설적인 디자인과 시설적인 디자인의 특징 비교 〉

| 특징 | 비시설 | 시설 |
|----|--|---|
| 통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 짧음, 밝음, 넓음 앉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 자연광과 창문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가 김, 자연광이 없음, 어두컴컴함 막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유사한 문의 나열 |

111 김정기·송정문·최복천, 2012, 「경상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삶과 욕구」, 재인용.

| 특징 | 비시설 | 시설 |
|---------|--|--|
| 개인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사용 • 다양한 형태 • 개인별로 다른 장식,(이용자가 선택한) 다양한 스타일의 가구 배치 • 개별화된 문과 입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사용 • 획일적인 규모와 형태 • 단순하고 실용적인 장식 • 구분 없이 모두 같이 사용하는 문 |
| 방 안의 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구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일괄 구입 • 모든 방에 동일함 |
| 전체적인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들의 다양함 • 흥미로운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 배열 • 각 층과 영역이 동일함 |
| 화장실과 욕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방에 딸림 • 가정적이고 아늑함 • 무늬와 색상이 있는 타일 • 위생적인 • 가정적인 스타일의 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강한 조명 • 병원 외관과 같음 • 큰 공간에 (칸막이)좁은 공간 |
| 공용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높이의 다양한 가구 • 작은 테이블 옆에 배치된 의자 • 소파들, 카펫 깔린 바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커버의 동일한 의자들 • 벽에 배치 • 칙칙한 외관 |
| 거실 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음에도 불구하고)흥미로운 세팅 • 카펫 깔린 바닥, 가정적인 스타일의 테이블과 의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음, 구내식당 스타일, 상판이 플라스틱인 테이블, 단단한 바닥 |

출처 : Center for Policy on Ageing, 1996

2) 사례



사례 1 - 연료비 절감을 이유로 이용인의 주거 환경 침해

A시설은 겨울이면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방에만 난방을 한 후, 이용인을 모두 모아 한방에서 자고 한방에서 생활하게 한다. B시설에서는 한방에 11명의 이용인이 생활한다. 침대를 이용하는 이용인은 2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불을 펴고 자면 방 안이 짙 찬다.



사례 2 - 비시설적 환경으로의 구조 변경

C시설에서는 시설적 구조를 비시설적 구조로 변경하기 위해 내부 환경을 리모델링했다. 기존의 복도식 구조에서 1인실, 2인실, 3인실 구조로 바꾸고 3개의 방과 1개의 거실, 화장실 겸 욕실, 주방을 기본 구조로 하는 가정식 구조로 변경했다.

이러한 구조 변경은 최대한 비시설적 거주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3) 관련 법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28조 적절한 삶의 조건과 사회보장

당사국은 적절한 의식주 그리고 지속적인 삶의 조건 개선을 포함한 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삶의 수준과 지속적인 삶의 조건 개선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헌법 |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18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

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기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모든 이용인은 쾌적하고 안락하며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
- 시설은 획일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생활하고 있는 방의 크기와 이용자 수가 적절해야 한다.
- 이용인이 자신이 원하는 숙소 공간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에서 자신이 선택한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방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야 한다.
- 에어컨이나 난방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용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절에 맞게 상시 사용해야 한다.
- 채광, 조명, 환기와 통풍, 온도와 습도, 진동과 소음, 청결(냄새, 청소 상태, 정리 정돈) 등은 항상 점검되어야 하며, 숙소 실내의 벽지와 장판의 상태도 수시로 살펴야 한다.
-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소방시설은 규정을 맞게 설치해야 하며, 이외에도 장애 특성을 고려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토론 거리

- 비시설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공간을 재구성한다면 변화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3. 건강하고 안전한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권리



위생적인 생활과 환경을 누릴 권리

누구나 건강을 위해 개인의 위생 상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1) 개념

개인위생은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목욕, 면도, 양치, 체취,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겉옷, 내의), 침구, 기저귀, 이·미용, 등의 관리를 위한 모든 도구를 제공받고 적절하게 활용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의 경우 공동생활 공간임을 감안할 때 종사자와 이용인 모두를 위해서 개인의 위생에 대해 종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 물론 개인 위생 관리는 이용인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종사자의 무관심은 이용인의 건강과 청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체에서 나는 체취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혹은 시설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사회적 낙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타인의 손에 의해 자신의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청결하지 못한 상태임을 인식할 때 자존감이 떨어지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이용인의 경우, 기저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저귀를 자주 교체해 불편한 기분을 느끼지 않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면 및 목욕 시간을 일정한 시간에만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속옷이나 겉옷을 정해진 일정에만 갈아입게 하는 것도 개인위생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 개인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인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해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 사례



사례 1 - 이용인에게 기저귀 착용 강요 1

C시설에서 충분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1급 뇌병변장애인 D씨에게 화장실 사용을 보조하는 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차게 했다.

또한 종사자는 기저귀 착용을 거부하는 D씨에게 기저귀를 차지 않으면 식사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억지로 착용하게 하였다.



사례 2 - 이용인에게 기저귀 착용 강요 2

장애아동시설에서 근무하는 A종사자는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평상시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았던 아동에게 기저귀 착용을 권했다. 아동이 심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비행기에서 기저귀를 착용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동은 기저귀에 소변을 보지 않았다.

종사자는 긴 시간 참을 수 있었던 아동을 믿지 못하고 기저귀를 억지로 착용하게 했던 점이 후회된다고 이야기했다.



사례 3 - 이용인의 욕창 관리 소홀

A씨는 와상 장애인으로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한다.

욕창 방지를 위해 종사자가 수시로 자세를 바꿔 눕혀주어야 하지만, 종사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해 A씨는 욕창으로 고생했다.



사례 4 - 비자율적인 목욕과 옷 갈아입기

B시설은 평상시에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을 수가 없다.

옷은 일주일에 한번 하는 목욕 시간에만 갈아입을 수 있고, 정해진 날짜 이외에는 아무리 지저분해도 목욕을 할 수가 없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헌법 |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개인위생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이용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개인위생과 관련해 이용인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이용인은 개인위생과 관련해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이용인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용인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한다.
- 욕창 가능성이 있는 이용인의 경우 수시로 자세를 변경해주는 등 욕창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기저귀 없이 생활이 가능한지 이용인과의 논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적용한다.

토론 거리

- 목욕하기, 이 닦기, 손톱 관리 등 개인위생 관리를 거부하는 이용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점과 이용인의 건강, 주변 사람들의 불편감 등을 고려할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죽음에 이르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삶을 마감해야 한다.

1) 개념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최고로 도달 가능한 수준의 건강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에도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장애’와 연결되어 더욱 절실한 문제이므로 장애인에게 건강권은 생존 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다.

건강권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를 통해서도 그 중요성이 서술되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에서 장애인의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의료행위를 시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 이용인의 건강권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나 환자 발생 시 신속하지 못한 대응, 촉탁 의사가 방문하지만 이용인이 많아서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간질약 등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오래 기간 점검 없이 복용되는 경우 등이다.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가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때도 있다. 2012년 <경상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의 삶과 요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5%가 ‘시설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병원 진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23.4%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이용인의 진료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오랫동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용인의 정신과 약물의 복용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이용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동 제재를 목적으로 정신과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약물 과다 복용, 약으로 인한 무기력, 건강 악화 등이 계속되어 이용인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한다. 의료진의 판단 하에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인을 진정시키거나 제재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에게나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한 상태로 삶을 유지하고, 생을 마감할 때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평생 소망한다. 이용인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마감하고 적절한 장례 절차를 통해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정리할 권리는 탄생의 존엄과 함께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다.

2) 사례



사례 1 - 이용인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병세 악화

A시설의 1급 뇌병변장애인이 배가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어장애가 너무 심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종사자에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종사자는 이용인의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용인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어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이용인은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이용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소통 방법을 찾아 정확한 병의 증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인의 사소한 통증 호소에 대해서도 종사자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례 2 - 이용인의 장기 투약에 대한 어려움 호소

A시설의 B씨는 간질약을 먹고 복용하고 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효과를 느낄 수도 없으며 오히려 약을 먹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시설 종사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더 독한 약을 줄까봐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약은 장기적인 투약에 따른 부작용과 내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경우라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증상과 약의 복용에 대해 이용인에게 설명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투약으로 병명을 확인한 상태라 할지라도 약을 처방받을 경우 종사자가 대신하지 않고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의사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오래전에 받은 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장기 투약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사례 3 -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A시설 원장은 과거에 이용인 중 한 명이 질병으로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무연고자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의 영안실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웠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인이기 때문인지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화장한 후 바로 재를 뿌리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많이 아팠다.

원장과 직원들은 시설 이용인도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A시설에서는 시설 이용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내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장례 절차를 가족들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임종을 앞둔 이가 편안하게 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2012년 세상에 알려진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은 장애인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쉽게 침해받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원장 장 씨는 장애인 21명을 친자 등록하고 30년간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이 중 2명의 장애인이 2000년과 2002년에 사망했지만 원장 장 씨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병원 냉동고에 시신을 방치해왔다. 사건이 알려진 후 뒤늦게 친 어머니가 나타나 한 명은 장례를 치렀고, 다른 한 명은 원장 장 씨가 친권을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냉동고에 있는 상황이다. 오랜 시간 따뜻한 흠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냉동고 속에 버려지는 장애인의 삶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하며,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생명권을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인간 고결성의 보호

모든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육체적 정신적 고결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1조

-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 이용인의 병의 증상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치료와 처방전에 대해 이용인에게 알 아듣기 쉬운 말로 반드시 설명한다.
- 이용인이 시설에서 지정한 병원 이외에 증상에 맞는 다양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인이 복용하는 약이 있을 경우 병종과 약의 효능이나 용량 등에 대해서 자세 히 설명한다.
- 이용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인식한다면, 정기적인 보호나 장례 또는 화장에 대 한 그의 바람을 의뢰할 수 있다(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
- 이용인의 임종 시, 가족, 인척, 직원, 다른 이용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
- 이용인이 임종 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장례 비용과 관련해 함께 의논한다.
-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기저귀 없이 생활이 가능한지 이용인과의 논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적용한다.

토론 거리

- 목욕하기, 이 닦기, 손톱 관리 등 개인위생 관리를 거부하는 이용인의 경우 자 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점과 이용인의 건강, 주변 사람들의 불쾌감 등을 고 려할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학대·방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사람은 모든 인적,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학대받지 않으며 방임·방치 부작위 등의 부당한 상황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1) 개념

| 학대의 정의 |

학대(abuse)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 등을 뜻하며,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 비의도적과는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생명과학대사전, 2008). 현재 국내에서는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등에서 학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라는 피해 대상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와 방임'이라는 주요 내용을 담아 정의하고 있다.

| 학대의 유형 ¹¹²⁾ |

학대의 유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신체적 학대, 심리적, 정서적 학대, 금전적 학대, 방임, 방치, 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최근에는 아동이나 노인 여성의 학대를 중심으로 학대의 유형이나 범위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가는 국내 상황에 견주어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 영국의 내용을 통해 세부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물리적 학대** : 때리는 것, 찔락 때리는 것, 밀치는 것, 발로 차는 것, 악물의 오용, 구속, 또는 부적절한 처벌 등
- **성적 학대** : 강간, 성폭행, 취약한 성인(정신 또는 다른 장애, 연령, 질병의 이유로 보

112 영국 학대 위험에 놓인 성인의 보호: 종사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Michael Mandelstam, No secrets guidance)

호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거나 받고 있는 자)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 또는 동의할 수 없거나 동의가 강요된 행위 등

- **정신적 학대** : 정서적 학대, 위하나 유기에 대한 협박, 창피, 나무람, 억제, 협박, 강압, 괴롭힘, 언어적 폭력, 격리, 서비스나 지원 체계의 철회 등
- **재정적, 물질적 학대** : 절도, 사기, 착취, 유언이나 재산상속, 금융 거래에 대한 압력, 재산권·소유권·이익의 오용이나 남용 등
- **방임, 방치 부작위** : 의료 또는 물리적 치료에 대한 필요를 무시하는 행위, 적절한 보건·사회·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불이행, 약물, 적절한 영양과 난방처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
- **차별적 학대** :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다른 형태의 괴롭힘, 비방 또는 유사한 취급 등

학대 행위는 규정된 범위 안에서 모두 다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또는 가볍게 취급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학대와 방임의 차이 〉

| 특성 | 학대 | 방임 |
|------|-------------------------------|--------------------------------|
| 행위 | 가해, 위해, 위협 | 태만, 방치 |
| 유형 |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 |
| 특성 | 적대적, 계획적, 공격적 | 소극적, 무관심 |
| 표적대상 | 있음 | 대체적으로 없음 |
| 피해자수 | 한 대상에게 집중될 수 있음 대부분 소수의 대상 | 여러 명 혹은 전체가 될 수 있음 |
| 기간 | 사건적, 시간제한 있음 | 지속적, 만성적 |

영국 당신의 인권 :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 (THE BRITISH INSTITUTE OF HUMAN RIGHTS) 중

- 당신을 오랫동안 당신의 오물에 방지하는 것
- 당신을 적절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 앞에 노출시켜서 씻기는 일
- 당신이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음식만 주고 먹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일
- 욕창이 생기게끔 방지하는 것
- 당신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당신을 씻기거나 옷을 입히는 일
-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약을 투입해 진정(sedated) 시키는 것
-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별생각 없이) 당신을 상한 침구 위에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
- 당신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도한 힘
-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
- 당신의 도움 요청을 통상적으로 무시하는 일
- 초과 수용한 것(overcrowding), 환기시설의 부재, 사생활을 주지 않는 것, 불충분한 위생시설
- 권리의 제한은 반드시 정당해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하며, 필요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상응해야 함(proportionate)에도 비례 원칙을 위반한 때, 예를 들어 콩에 금을 내기 위해서 큰 쇠파치를 사용해서는 안 됨
- 당신을 바쁜 병동에 옷을 벗긴 상태로 놔두는 일, 당신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다른 성(sex)의 사람이 당신의 옷을 입히거나 씻기는 일
- 시설에서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포괄적인 규정(blanket policy)을 가지고 있는 것

| 시설에서 학대 |

학대의 주요 피해자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으로 질병이나 연령, 성별이나 장애를 이유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이는 사람이 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시설은 집단생활, 외부와의 소통 제한, 비민주적 운영, 관리감독의 허술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학대 가능성이 높은 공간으로 지적되어왔다. 2012년 장애인복지법에 신설된 학대 관련 조항들이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부분에 개정된 것은 내재적인 학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제한적인 공간 속에서 이용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의 논리가 관리와 통제 중심의 서비스로 관성화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잠이 들 때면 미안한 마음이 혼자 미안하다고 중얼거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은 사라지고 버릇처럼 원생들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러한 행동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000의 집 생활재활교사의 증언 중)라고 고백한 어떤 종사자의 말처럼 통제와 보호를 위해 또는 종사자의 무관심 속에 발생한 학대는 관성화되어 거부감 없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시설 안에서의 학대는 보호와 통제를 위한 이용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서부터 종사자가 이용인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지원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방임, 방치 그리고 처벌을 위해 가해지는 직접 폭력의 문제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일어나게 된다. 특히 피해 양상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물리적 학대와 달리 방임·방치 유형의 학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되다가 이용인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제·보호보다는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여 의도하지 않은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자기를 늘 점검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2) 사례



사례 1 - 물리적 학대 감금

건물의 주출입구나 방의 창문에 외부 잠금장치, 쇠창살 등이 설치되는 것은 이용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에 손실을 끼칠 목적으로 외부인이 침입할 우려가 사실상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용인의 무단이탈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례 2 - 물리적 학대 감금

000원에서는 도망을 못 가요, 철조망이 되어 있고,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어서 못 나가요.



사례 3 - 물리적 학대 폭력

A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지적장애인인 B씨에게 생활재활교사 C가 운동 명목으로 점심 식사 전 엎드려뱀처를 30분 동안 시키면서 무릎이 땅에 닿으면 무릎과 등을 때리다, B씨가 너무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주변 다른 교사가 C를 말리고 난 후에야 폭력을 멈추었다.



사례 4 - 물리적 학대 강제 투약

A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재활교사 B가 이용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뒤로 젖혀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제로 약을 투약했다. 또한 이용인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치면 손발을 묶고 마취도 없이 직접 봉합 시술을 하기도 했다.



사례 5 - 성적 학대

이용인 A씨에게 종사자 B씨가 00원 내에서 안마를 가르치고 수차례에 걸쳐 안마를 강요했다. B씨가 누운 상태에서 어깨, 허리, 다리, 손가락 등을 지압하고 안마를 시키고 매일 저녁 방으로 불러서 안마를 시켰다. B씨가 직접 안마를 해주기도 하였다.

성적 학대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구체적인 성적 행동뿐 아니라 단순 접촉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사례 6 - 정신적 학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A시설에서 생활교사 B씨가 36세의 지적장애3급 C씨에게 “네가 그러니까 장애인이지~”, “저 아인 정말 미친애 같아~”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또한 B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통제가 어려운 이용인에게 “찌질이들~”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사례 7 - 금전적 학대

A씨는 이용인들의 통장을 모두 관리하면서 이용인에게 매월 용돈 8만 원씩을 준 후, 쓰고 남은 돈도 저축을 해주겠다고면서 다시 받아갔다. 또한 생활을 잘하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용돈을 주고 6점 만점에 싸우거나 하면 감점이 되고 점수가 없으면 용돈을 주지 않았다.

경제적인 문제를 매개로 해 이용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전적 학대로 볼 수 있다.



사례 8 - 물리적 학대 감금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A시설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착용하는 이용인 B씨에게 대·소변 양이 많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B씨가 조금만 거부하면 밥을 바로 잔반통에 버렸다. 또한 야뇨증이 있는 C씨에게는 소변 실수가 잦고 양이 많다는 이유로 국물을 주지 않고 복용하는 가루약이 녹을 정도의 물만 섞어서 주었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성별에 기초한 요소를 포함하여, 가정 내외에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개호인을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방지, 인식 그리고 사례 보고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그리고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그리고 사회 재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인간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별한 욕구를 고려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의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기소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 및 정책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 장애인권리선언(국제연합, 1975) |

제10조 모든 장애인은 모든 형태의 착취, 모든 형태의 규제, 차별적이고 모욕적이고

천박한 성격을 띠는 모든 처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형법 |

제273조 학대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 체포, 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재산권행사의 권리

-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 장애인등에 대한 차별금지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복지법 |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9조의4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5 (응급조치 의무 등)

- ① 제59조의 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학대 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6 (보조인의 선임 등)

- ①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9조의7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3.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4.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에 대한 착취, 폭력, 모욕,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 인권침해임을 인식한다.
- 시설은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발생 시 개입 절차를 구비하고 숙지하며, 도움을 요청할 기관·단체·사람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 종사자는 이용인과 종사자 간 또는 이용인과 이용인 간에 학대 상황이 발생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 특정 이용인을 유난히 미워하거나 문제로 인식하는지를 점검하고 이 경우 학대 발생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 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한다.
- 이용인의 욕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태만하게 방임·방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용인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학대 상황을 목격하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개입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 상황은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학대 상황을 인지하고도 은폐할 경우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한다.)
- 학대 상황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옹호와 적절한 지원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전문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 학대 전과가 있는 종사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토론 거리

- 자해 행동이 잦은 이용인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용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의 기준은 무엇일까?



4.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하대 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모든 사람은 장애·나이·직위·경력 등에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진다.

1) 개념

누군가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사회에서는 그 차별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구성원 사이에 위계를 만들고 그 위계는 다시 차별을 합리화하는 제도를 만들고, 약자에게는 '정당한' 폭력이 가해진다. 따라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논리와 제도, 규범에 맞서는 것은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구성원은 관리자와 직원, 종사자와 이용인, 상사와 직원 등 서로 다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가 얼마나 평등한지 살펴보는 것은, 그 공간이 얼마나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정의되어 있는 '호칭권'은 단순히 '~씨'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시설 내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으며, 서로가 권력을 내려놓고 나눠 갖는 평등한 문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례



사례 1 - 이용인에게 하대

J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첫 직장으로 A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사했다. A시설에는 중복·중도장애인이 많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시설의 직원들이 일부 이용인에게 나이가 적건 많건 일상적으로 이름만 부르고 반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용인들은 말로 하는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중증장애인들이고, 시설에 들어온 지 오래된 분이 많았다.

J씨의 상사는 이 시설이 서로 워낙 가족 같은 분위기이니 J씨도 이용인을 가족같이 대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머리가 하얀 이용인에게 아기를 대하듯 하는 것을 보는 게 J씨는 매우 불편했다.



사례 2 - 종사자에 대한 부모(엄마·아빠) 호칭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30세의 G씨는 무연고로 B시설에서 15년간 살았다. 최근 B시설이 있는 지자체에서 시설과 지역 장애인 단체를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해 G씨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G씨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알게 된 지역 장애인 단체의 H씨는 2주 전 G씨에게 단체에서 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줬다. 설명을 들은 G씨는 매우 좋아했고, 꼭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 H씨가 G씨를 다시 만났을 때 G씨는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G씨에게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H씨가 엄마가 누구를 말하는지 물었더니 시설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었다. H씨는 그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니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고 했지만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며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거주시설에서 흔히 시설 구성원을 ‘가족’으로 비유하거나,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이용인이 그 외 구성원에게 “아빠, 엄마” 등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이용인이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설에 빨리 적응함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을 가족이라는 관계로 묶었을 때 각각의 구성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의 상에 역할을 대입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가족은 서로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쏟고 희생하는 관계다. 이런 구성원의 관계 설정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갖게 한다. 시설의 구성원이 정당한 요구와 문제 제기를 할 경우 “한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꼭 해야겠나?”라는 비난과 가족의 관계를 해치려는 사람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구성원의 역할 역시 유사한 문제를 갖는다.

이용인과 시설관리자·종사자 사이에 아빠·엄마-자식이라는 관계를 설정하고, 역할 역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설들이 있다. 실제로 이용인이 종사자

와 시설의 관리자를 엄마, 아빠로 부르는 사례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역시 ‘엄마·아빠’가 ‘자녀’에게 하는 행위는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감안할 때 자녀의 위치에 있는 이용인이 거주시설 내에서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것이 제한당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위의 문제의식에 동의한 많은 시설에서 이용인이 종사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선생님’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생님 역시 이용인과 종사자 간 관계의 위계를 설정한다. 잠시 만나는 사이가 아닌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한쪽에서만 사용하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지도와 관리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설 내에서 호칭 및 존비어로 드러나는 위계는 이용인만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 간의 질서를 보여준다. 즉 나이, 성별, 직위, 경력 등에 따라 촘촘히 짜여 있는 위계는 나이주의, 권위주의, 보호주의, 경험주의, 가족주의, 능력주의 등으로 작동해 차별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쓰이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늘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당하고 늘 ‘아이’ 취급을 받아왔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훈육과 보호를 이유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제한, 결정권의 제한, 끊임없는 순종의 요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경험과 욕구를 늘 제한당해 온 장애인이 미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깨지 않는 한 단순히 이름 부르기과 존댓말 사용만으로 장애인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전문 발췌]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제15조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시설 이용인에게 일방적인 반말과 원하지 않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 시설 이용인에게 지시·명령 등의 말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시설 이용인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의사 표현을 어려워하더라도 본인의 일상생활 및 시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시설 내 모든 구성원 사이에 나이 또는 직책에 따른 권력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토론 거리

- 거주시설의 이용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서로 보다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호칭과 존비어 사용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성적 존재로 인정받으며 성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율성 있고 책임성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개념¹¹³⁾

장애인에게 성은 단순히 성적 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문제 영역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무성 또는 중성적 존재로 대하며 장애인의 성을 억압하는 것은 다양한 차별로 이어졌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1998년 폐지)이나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없는 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전히 발달장애인 중 특히 가족이나 주변인에 의한 장애여성들의 몸에 대한 권리 침해는 자주 발생한다. 장애인이 임신하는 것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자궁 적출, 루프 시술 등을 장애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제대로 된 동의 없이 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와 성차별적인 문화는 여성의 몸을 쉽게 성적으로 대상화해왔고 이는 성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과 폭력의 형태로 이어져왔다. 이는 장애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적장애여성이 성폭력의 피해자로 지목된 경우 성폭력은 장기적이고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평등한 관계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장애인이 성적으로 주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 유형에 맞는 성교육과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선택한 성적인 행동(예를 들어 자위, 연인과의 데이

113 나아 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인권교육 매뉴얼>(2012년)

트, 섹스 등)을 위한 사생활 보호 및 존중 방안이 제공되어야 하며, 성폭력을 당할 경우 권리 옹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와 이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2) 사례



사례 1 - 가족에 의한 피임 시술 주장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여성 A씨는 H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얼마 전 A씨의 부모가 A씨의 자궁적출 수술에 대해 시설 측과 상담을 했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하게 되는 것도 A씨에게 힘든 일이고,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시설 종사자들이 이런 사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은 가족이 원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종사자와 시설은 이용인에게 해당 시술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술을 강요하는 가족에게는 장애인의 의견을 함께 전달하고, 해당 수술이 이용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이후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용인에게 수술을 권하는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 역시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가족이 강요할 경우 장애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례 2 - 이용인의 신체 공개 또는 성적 표현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남성 B씨는 종종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를 하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해 시설 종사자들이 고민하고 있다. 성교육을 진행했지만 B씨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거주시설의 이용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공개, 자위 등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이 큰 문제로 제기돼 왔다.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당연히 문제다. 하지만 이를 욕구와 인지 능력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타인과의 관계망이 협소하고,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적은 장애인의 삶과 환경의 문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거주공간에서 단체로 목욕을 하거나, 같은 생활방에 다른 사람이 보는 상황에서 옷을 갈아 입히는 등의 문화가 일상적일 경우, 이용인의 입장에서 목욕탕이 아닌 장소에서 옷을 벗는 등의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인의 삶의 경험을 고려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전문 발췌]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

을 또한 인정하며,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제6조 여성장애인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 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장애인 가족 등에 의해 피임 시술이 요구될 경우, 이용인에게 관련 시술이 몸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 이용인이 피임 시술 설명을 들은 후 시술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 이용인의 의사를 지지하기 위한 권리 옹호 과정을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시설에서 단체 목욕, 봉사자 등 낯선 사람과 이성에 의한 목욕 지원, 공개된 장소에서 신변 처리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이용인들이 일상적으로 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인 사이에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경우 문제의 해결 과정을 시설의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토론 거리

- 종사자의 성별 비율과 이용인의 성별 비율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연애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을 존중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장애, 성 등에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가족을 구성할 경우 그들만의 별도의 생활공간과 기타 물리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이용인이 임신, 출산 및 양육을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녀를 분리할 수 없으며,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1) 개념

한국 사회에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족’, 즉 결혼과 출산, 양육을 전제로 한 이성애 중심의 이른바 정상 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발생하며 변화하고 있다.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닌 서로의 돌봄 및 애정 또는 경제적 필요 등에 의한 또 다른 가족 형태의 출현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기준과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이 겪는 상황에서 ‘가족’은 또 다른 고민을 내포한다. 장애인을 무성 또는 중성의 존재로 간주하며 미성숙하고 결핍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에서 장애인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임신·출산·양육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거주시설의 경우 개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매우 협소해 ‘연애’ 자체의 기회가 차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을 둔 시설 내 연애 및 가족 구성을 존중받을 권리는 지역 사회접근권과 연동되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 자유로운 파트너 선택과 결혼 여부 선택, 출산 및 가족계획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혼인, 혈연이 아닌 가족 구성에 대한 지원 역시 포함되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사례



사례 1 - 이용인의 연애와 결혼

C시설의 이용인인 S씨와 얼마 전 C시설에서 나와 체험홈에서 살고 있는 T씨는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런데 데이트를 하는 것이 어렵다.

T씨가 시설로 방문하더라도 시설에서는 데이트를 할 만한 장소가 없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S씨가 혼자 시설 밖으로 나가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는 어렵겠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T씨의 가족이 반대하고, 시설에서도 두 사람의 결혼을 찬성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고민이다.

연애라는 방식을 통한 관계 맺음은 사람이 가지는 주요한 욕구이며, 거주시설의 장애인 역시 관계 맺음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거주시설은 공간적 제약과 단체생활 방식을 이유로 관계 맺음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용인들이 연애와 결혼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길 원할 경우 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제1항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 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제3항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전문 발췌]

-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 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 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애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움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 헌법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6조

-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에게 연애·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용인이 필요할 경우 관련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해야 한다.
- 이용인이 연애를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시설 내부에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이용인의 연애에 대한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 이용인이 동거, 결혼 등 가족 구성을 원할 경우 이를 적극 지지하고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이용인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한다.

토론 거리

-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연애와 나아가 동거를 원하는 이용인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
- 이용인의 부모가 이용인의 연애·결혼 등을 반대할 경우 이용인에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나?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의 변화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 개념

| 성별 정체성 |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신체의 외형적 특징과 무관하게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 또 다른 어떤 성/성별/젠더로 인식하고 정체화 하는 과정

| 성적 지향 |

여성, 남성, 양성과 같은 어떤 성별의 상대에게 애정적, 정서적, 성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방향성

| 성정체성 |

자신이 어떤 성적 지향을 지니고 있고 어떤 성별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주체적으로 확신하고 결정하는 것(동성애자인권연대, 2013)

우리 사회는 남성에게는 남성다움을, 여성에게는 여성다움을 요구하며 누군가 이런 '규범'에 맞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성이 동성을 좋아하거나, 여·남성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다른 성정체성을 갖게 될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을 '성소수자'라고 한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다름은 병리적인 문제, 즉 잘못되어 치료를 통한 회복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향과 정체성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

는 우리 사회 내에서 집단 린치와 같은 직접적 차별에 더해 심리적, 정서적 차별을 받아왔다. 이런 차별에 주목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 정부 역시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시설 내의 이용인 중에서도 성소수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시설의 이념이나 종사자 개인의 종교관 또는 윤리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한 이용인의 행동이나 말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 역시 차별의 또 다른 형태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 사회에 관용 문구처럼 쓰이지만 여전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시설 내 이용인의 경우, 자신의 행동과 마음이 늘 부정당하고 이상한 것으로 취급받는 차별에 더욱 노출되고 상처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는 노력해야 한다.

2) 사례



사례 1 - 동성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이용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P씨는 최근 동성의 이용인과 볼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종사자들에게 자주 확인되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주변 이용인들이 P씨를 놀리기도 하고, 외부 봉사자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시설은 P씨와 다른 이용인을 분리하도록 했다.



사례 2 - 여성(남성)의 옷과 옷차림을 좋아하는 남성(여성)이용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성 S씨는 여성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여성 이용인의 치마나 원피스를 가져다 입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동성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거나 이성의 옷차림 등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성소수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이용인이 성소수자인 것으로 예상되고 이용인이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어려움이 확인될 경우, 시설은 이용인이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이용인이 겪는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이용인의 입장과 욕구를 고려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 지역, 비자치 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2013) |

“당사국들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 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차별 금지 사유에는 청소년의 성적 지향과 건강 상태 역시 포함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4 (2000) |

“이 규약은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요인을 보장받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과 자격을 갖는데 (중략)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8 (2005)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채용이나 고용 상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 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0 (2009)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들은 개인이 성적 지향 때문에 이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략) 또, 성별 정체성은 차별 금지 사유의 하나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인터섹스는 학교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등 종종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다.”

| X대 콜롬비아 건에 대한 유엔인권(자유권)위원회 결정문 (2007) |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에서 규정한 차별 금지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역시 포함한다.”

| 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2 (2008) |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들은 협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들에 관하여, 해당 법들이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중략) 이는 성적 지향(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28 (2010) |

“성과 성별에 근거한 여성 차별은, 인종, 민족, 종교나 신념, 건강, 상태, 나이, 계층, 계급,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같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

|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과 관련 상담 시 상담가 이외의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이용인의 상담 내용, 기록 등을 비밀로 보장해야 한다.
- 이용인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
- 이용인에게 강제 채혈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 이용인과의 상담 이후 이용인과 그 가족에게 성적체성을 이유로 강제 퇴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인과 관련 상담 시 이용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이용인이 느끼는 감정과 고민에 대해서 이용인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과 이야기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적 지향과 성적체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이용인의 동의 과정을 거쳐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¹⁰⁴⁾

토론 거리 ⁰⁹⁴⁶

- 시설 내 구성원 중 성소수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시설 내 고정된 성역할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5. 사상·양심·종교·정치적 자유

사상·양심·종교·정치적 자유



정치적 권리

누구든지 정치적 행위, 결사의 자유가 있다.

1) 개념

정치적 권리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뉘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모든 정치적 행위, 결사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참정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참정권은 군주주의 아래에서 군주 중심의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국민주권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박스). 시설 안에서의 정치적 권리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참정권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 정당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체도 정치권으로 봐야 한다.

시설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투표인데, 과거에 대리투표가 문제된 적이 있다.¹¹⁴⁾ 또한 규모가 큰 시설에 특정 후보가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특정 후보를 찍도록 교육을 받거나 비밀 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된 적도 있다. 2005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61.2%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40.8%는 선거에 관한 아무 정보를 듣지 못했으며 40.7%는 시설에서 추천한 사람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남구현 외, 2005). 결국 선거와 후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찍으라고 한 사람을 찍었다는 것인데,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114 이는 2000년 7월 대전의 모 요양원에서 시설 생활인들을 대리해 투표한 혐의로 시설장 및 시설 종사자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2000 형 제47736]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투표 행위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전후 과정을 잘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선거 절차를 잘 이해하고 방법을 습득해야 선거 과정에 잘 참여할 수 있는데, 선거 절차를 알려주는 과정 또한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글을 모르는 장애인의 경우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점자 공보물,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기구, 수화 통역 등)과 같은 맥락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 홍보물이나 투표용지 등)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근식·권민숙, 2008. 정신적장애인의 선거권에 관한 연구).¹¹⁵⁾

2) 사례



사례 1 - 시설 내 부정 거소 투표의 문제

지난 4·11 총선 당시 투표 강압과 무더기 대리 투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주당합당은 9일 시설을 공식선거법상의 허위등재·허위날인죄와 투표간섭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위원회의 직무상 공정성 조항 위반과 형법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시설의 투표 강압과 무더기 대리 투표 의혹은 지난 5일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자신의 블로그에 거주인 증언 동영상 올리면서 제기됐다. 이 동영상에는 지난 4·11총선 당시 시설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애인 거주 유권자 2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한 뒤 그중 7명만 본인이 투표했으며 나머지 17명은 인지, 의사표현 능력 부족으로 선거 사실을 아예 알지도 못했다는 증언이 담겼다.

또한 본인이 투표한 경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엄마(시설 직원)가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폐쇄적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성과 내부의 권력관계를 볼 때 투표 강압과 대리 투표의 가능성이 자명한데도, 선관위는 거소투표 일괄 대리 신청을 실질적으로 방조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유기했다"라면서 "문제가 된 시설 외에도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비마이너 2012년 10월 9일 기사 "대리투표 의혹 시설과 선관위, 고발당해" -

115 한국자치행정학보 [KO 등재] 제22권 제2호, 2008년 12월, pp.403~424 한국자치행정학회

3) 관련 법규

| 헌법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공직선거법 |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교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7조 (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

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 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은 시설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용인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의한 정치 활동 및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정보와 각 정당, 각 후보의 공약 내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전달해야 하며, 접근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거소투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이 원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비밀 투표, 직접 투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토론 거리

- 중증의 지적발달장애인에게 각 정당의 후보와 공약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종교의 자유

이웃인은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공영역에서의 모든 개종 권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선택한 종교의 활동을 위해 시설로부터 물리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개념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도 있으며, ‘공공영역에서의 모든 개종 권유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류은숙, 2008). 서구 사회가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이유 중 일부는 국가가 종교를 선택하고 국가권력과 함께 ‘신의 이름’으로 행한 인간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었으며,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은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 종교에 의해 설립된 학교와 복지시설 등에서 특정 종교인만 종사자로 채용하거나, 시설 내 구성원에게 일방적인 예배와 헌금, 종교 수업을 강요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그것이다. 학교와 복지시설은 그 설립의 주체가 누구이든 그곳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듯이, 누구도 개인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그 공간 내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사례



사례 1 - 예배, 헌금 강요

장애인 F씨는 얼마 전 K시설에 입소하면서 매주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아무런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K시설이 특정 종교 단체에서 만든 시설이어서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몸이 좋지 않아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설에서 “간식 안 먹을 거냐, 예배를 드려야 아픈 게 낫는다.” 등의 말로 계속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헌금이라도 내라는 말을 들었다.



사례 2 - 외부 종교 활동 지원 거부

P시설의 이용인 Q씨는 불교인이다. Q씨는 법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P시설에 이동 지원을 부탁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함께 사용하는 차량을 개인적인 활동에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P시설 내부에는 다른 종교와 관련된 글귀나 그림이 많다.

Q씨는 P시설과 다른 종교라서 지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설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특정 종교 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복지시설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서 특정 종교만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직접적인 예배 강요 등이 아니라도 시설 내 특정 종교 물품들을 배치하는 것 역시 간접적인 강요로 볼 수 있다. 또한 종교 활동을 위해 시설 외부로 나가는 것은 지역사회접근권과 연동되어 당연히 시설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기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기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전문 발췌]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헌법 |

제20조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시설은 이용인에게 종교에 대한 정보와 헌금 및 헌금의 자율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시설 내부에 특정 종교 관련 물품 또는 상징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 시설 내 정규 프로그램에 특정 종교 행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 시설의 이용인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이용인이 종교 생활을 위해 시설 외부로 나가길 원할 경우 이를 위한 차량 등의 물리적 지원을 해야 한다.

토론 거리 💬

-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강요와 선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 특정 종교적 신념을 일상생활에서 마치 일반적인 사회규범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않은가? 예를 들어, '동성애는 죄악이다. 술과 담배는 범죄다.'



6. 교육·노동·경제·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

교육·노동·경제·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



교육권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의 계획 수립과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은 교육을 받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1) 개념¹¹⁶⁾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인권에 기반을 둔 교육권이란, 교육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 중 약자의 처지에 있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다.

한편 교육에 대한 권리란 수동적으로 특정된 내용을 주입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한 강화이며 창조의 과정이다. 학습자가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육 목표에 대한 권리를 지니며, 학교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인권으로서의 장애인 교육이란, 첫째,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모든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장애 유형 및 정도의 특성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식을 조정해 제공되어야 하며 셋째, 장애 특성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116 나이 장애인교육센터, <장애인교육 매뉴얼>(2012년)



사례 1 - 교육 지원 미비 - 검정고시 미지원

A거주시설의 39세 F씨는 시설 내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한 뒤 검정고시응시를 신청하고,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시설 측에 차량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설 측은 100명이 넘는 이용인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매번 차량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병원 이용에 한해서 차량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주시설 내 성인 장애인의 경우 시설 외부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참여의 제한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시설이 이용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여부를 권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이다.



사례 2 - 시설에서의 순회교육

B거주시설에 13세 G씨와 17세 H씨는 시설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시설에서 순회교육을 받는다. 일주일에 2회 특수교사가 방문해 1시간 30분 정도의 수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해당 수업시간에 생활교사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실제로 이용인에게 맞는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몇 차례 확인되었다.

거주시설 내 학령기 장애학생의 경우 다수의 학생이 순회교육¹¹⁷⁾을 받거나 또는 거주시설의 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순회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통학을 위한 이동 지원의 어려움 또는 일반·특수학교 내 괴롭힘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순회교육은 교육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무조건 제공하는 교육 형태가 아니다. 특수교육은 각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통해 필요한 교육 지원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환경과 상황이 외부의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무리가

117 순회교육 목적 :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서 일반적인 교육 방법만으로는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져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치료 지원 및 기본교육과정교과학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기능회복 및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자활 능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순회교육 방식 : 주 1~2회, 회당 2시간씩 특수교사가 방문해 학습 지도

없다면 당연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반·특수학교 내 괴롭힘 역시 괴롭힘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과의 관계마저 차단하는 방식을 넘어 장애학생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특수교사와 학급 구성원, 시설의 종사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모색되어야 한다.



사례 3 - 동일 법인 내 장애인 거주시설과 특수학교

C거주시설에서 12년간 살았던 23세 R씨는 한 달 전 시설에서 나와 체험홈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돈과 숫자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아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씨는 시설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졸업했지만 시설과 학교만 오가 실제 생활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장애학생들이 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함보다는, 학교를 오가고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와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힘을 기르는 데 있다. 거주하는 시설과 한 울타리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는 외부 경험 자체가 차단될 우려가 있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26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제2항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다. 장애인의 자유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

- 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 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 헌법 |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2절(교육) 전문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문 |

| 장애인복지법 |

제8조 (차별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학령기 및 성인 이용인에게 각 개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다.
- 교육에 대한 욕구를 수렴해 이용인의 교육 방식을 정할 경우 이용인에게 다양한 교육 방식과 교육기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이용인이 시설 외부 학교를 선택할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시설 자체적으로 통학을 위한 이동 지원 등이 어려울 경우 통학 지원 책임이 있는 학교 또는 지자체와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일반·특수학교를 다니는 이용인이 학교 내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 학교에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절차적 지원을 해야 하며, 시설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관련 기관의 자문을 요청하도록 한다.¹¹⁸⁾

토론 거리

- 시설 내에서 공부하길 원하는 이용인이 있을 때, 개인 학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18 장애인교육권연대(02-739-4804),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 장애인인권침해방센터(1577-5364)



시설 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

이용인은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실행 및 서비스 평가 시에 참여해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시설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 및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개념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인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천의 과정이다. 이 실천에는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하는 과정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에는 ‘장애인은 당사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19조에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 경험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흥미를 찾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사례



사례 1 -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이용인의 일과

시설 이용인인 T씨는 아침에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야 한다. 씻고 방청소하고
순번을 기다렸다가 7시 40분쯤 식사를 한 후에는 방에서 TV를 본다.

가끔 재활치료를 받고 방 안에 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돌봐주기도 한다. 12시에
점심식사를 하고 직업재활훈련이라며 시설 청소 등을 한다. 5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TV를
보다가 9시에 자야 한다.

다수의 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용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역시 시설의 한정된 인력과 구조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이용인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거주시설 내 이용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 정해진 일과표 안에서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제공되는 서비스는 오히려 이용인의 삶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해진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하는 양자 선택만이 주어졌을 때의 선택은 선택이 아닌 강요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이용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출발이며,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종사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의 시설 내 구조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전문 발췌]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여.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 접근의 자유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다. 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 지원 및 일시적

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사회복지사업법 |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 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이 본인의 서비스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설은 이용인의 장애 유형이 고려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이용인에게 다양한 서비스의 종류와 방식이 정보와 경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이용인의 일상생활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장구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 거리

- 이용인의 개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이용인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상시적으로 쉽게 접근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시설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

1) 개념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 같은 권리는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 성격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기본 이념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만난 사람들이 국가와 지자체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신청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누구보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욕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이 관련 정보 접근 및 신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공공 전달 체계가 제대로 구축·작동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시설 이용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을 지원할 수 있는 일차적인 체계는 시설과 그 종사자들이다. 그러므로 시설과 종사자들은 이용인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상시적으로 쉽게 접근·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현실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숙

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시설 종사자들은 다음 세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비스 신청에 관한 권리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보편적 권리의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개인과 민간시설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에 두고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의 범규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 7월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다.¹¹⁹⁾ 이른바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 사회보험제도(사회보험) 완비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완함으로써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려는 중요한 변화였다. 당시 관련 전문가들은 비로소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 책임이 실현되어 보편적 복지국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은 ‘주민이 시·군·구청장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이를 조사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 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규 참조).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적극 활용해 공공복지 전달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의미를 갖고 도입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조항은 이후 이를 뒷받침할 공공 전달 체계 구축이 미뤄지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잊혀왔다. 그러던 것이 2009년 12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던 세 명의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내면서 오랜 잠에서 깨어났다.¹²⁰⁾ 이 소송은 미국에서의 탈시설화의 역사적 계기가

119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라는 장이 신설되었다(제2장의 2). 여기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뒤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절차를 정하고 있다(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6개 조문).

120 이 소송은 탈시설정책위원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조항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였다.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 실천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가, 학자들이 모여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자발적인 연구 모임으로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 시설 인권 확보 및 시설 비리 척결과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탈시설 정책을 생산해왔다.

되었던 옴스테스(Olmstead v. L.C) 판결을 참조한 것이었다.¹²¹⁾ 법과 제도, 현실이 따로 노는 상황은 국가가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결과다. 최근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별화된 복지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공공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시설과 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이용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을 이 조항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이용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사례



사례 1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활용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사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인 H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설에서 나갈 경우 일정한 금액의 수급비를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자립을 준비하면서 자립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관할 구청에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H씨는 인권 단체와 함께 구청을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했으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례 1)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소송 내용이다. 위 사례를 활용해 시설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인이 관할 시·군·구청장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용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권리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책임과 자원 배분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본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과 종사자에게 과다하게 주어진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책임

121 지난 199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두 정신장애인 여성이 '주치의가 자신을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하이오주(州)는 지역사회가 아닌 정신병원에 격리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미국 장애인법(ADA)을 근거로 '국가는 장애인을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오하이오주 정부는 장애인 '가능한 한 통합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설 중심의 복지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준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되는 '옴스테드 판결'이다(임성택, 2011).

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민간에게 과도한 책임을 이양하고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사례 2 - 직권신청제도를 활용한 시설 퇴소 및 전원 등 지원 사례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원 이용인들은 오랫동안 폐쇄적인 시설에서 학대를 당하고 방치된 상태로 지내온 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도가니 열풍으로 인화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가 이뤄졌고,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와 광산구청은 이용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했다.

이를 위해 광산구청은 이용인과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장애 인권 단체들의 민간위원 참여를 요청했고, 민간위원들은 이용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사진과 그림 자료 등이 포함됨)를 제작하고,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광산구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용인 개인의 욕구를 파악해, 서비스 변경을 직권 처리했다. 그 결과 이용인들은 인화원을 퇴소해 지역 내 다른 그룹홈 또는 소규모 시설로 전원했다.

사례 2)는 직권신청제도를 활용한 사례다. 직권신청제도는 지적장애인 등 정보 접근과 의사 표명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인, 학대 상황 등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스스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거나 분리 조치 등 위기 개입이 필요한 이용인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직권신청제도는 거주 지원,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고 신청하지 못하는 이용인을 대신해 관할 시·군·구청에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년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다. 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해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 헌법 |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보장기본법 |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3조 (정의)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 사회복지사업법 |

제1조의2 (기본이념)

- ① 사회복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복지 요구의 조사)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4 (서비스 제공의 결정)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의 사회복지사업·보건의료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의5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의6 (서비스 제공의 실시)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 대한 설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게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이용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1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조항에 근거해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이용인이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렵지만,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직권신청제도를 통해 서비스 신청 및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해당 시·군·구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한다.

토론 거리

- 우리 시설과 나는 이용인의 시설 내 제공 서비스 이외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어떻게 확인하고, 지원했는가?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기관인 시·군·구청장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상부 기관이다. 이용인의 서비스 신청에 충분히 응대하지 않거나 부당한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보장수급권

모든 사람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개념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도이며, 구성원에게는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장애인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구성원에게 보다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본 교재의 지역사회 접근 및 외부와 소통할 권리, 자립을 지원받을 권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설의 구조상 장애인이 이러한 보장 제도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관련 정보와 제도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권이다. 기초생활수급권은 시설 운영의 형태에 따라 이용인이 보장 시설수급자이거나 일반수급자로 구분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입소된 이용인은 보장시설수급자가 되어 본인의 생계비와 주거비 등이 시설 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입소한 이용인이 수급대상자이면 이는 일반수급자로 본인이 직접 수급비를 받아 시설에 이용비를 내는 형태이다. 이때에는 시설과 본인 또는 가족이 이용료 계약을 맺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게 기본적인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문제, 부양의무제의 독소 조항으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 낮은 수준의 의료보호의 문제점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본인의 기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장애인의 사회보험제도로는 장애연금이 있다. 이 장애연금은 기여에 상관없이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장애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다. 장애연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다르게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18세 이상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든지 자기 집에서 살든지 상관없이 본인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다만 금액의 차이가 있다.¹²²⁾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장애수당을 주는 곳도 있다.

이용인은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용인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사례



사례 1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 미제공

A시설의 J씨는 한 달에 9만8000원의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자다. 수급비 통장은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설에서는 J씨에게 이 통장에서 일주일에 1만원씩 간식비를 주고 있다. J씨는 이 돈이 국가에서 받는 수급비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으며, 시설에서 주는 용돈이라고 여기고 있다.

시설 실태조사를 나온 위원에게 수급자일 경우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들은 J씨는 그런 정보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¹²² 장애연금액은 1인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18~64세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초급여 6만 8,000원 부가급여 8만 원이며, 개인의 소득액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장애연금은 연령, 소득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월 9만 7000원 ~ 17만 4000원까지 지급된다(2013년 기준).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9만 8,000원까지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수당은 3만원이다. 장애아동양육수당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면 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이용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용인에게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설의 당연한 의무이다. 가장 공적이며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이용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년 및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다. 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 헌법 |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보장기본법 |

제2조 (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에게 이용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게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이용인에게 지역사회 자립 시 사회보장제도의 효용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게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토론 거리

-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없음에도 부양의무제로 인해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410만 명에 달한다. 오랫동안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양의무제가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교육·노동·경제·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



지역사회 접근 및 외부와 소통할 권리

모든 사람은 시설의 외부 방문자와 자유롭게 시설 내에서 만날 수 있고, 시설 외부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의 물리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정보통신 도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개념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이동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모든 정보를 한곳을 통해 얻고 경험할 수 없으며, 한곳에서만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또한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관계의 갈등을 겪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하고 배우며 성장한다. 이것이 사람의 삶 자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접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비장애인은 이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제도와 정책 중심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장애인에게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물리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내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접근권은 시설의 단체생활만이 아닌 다양한 지역의 자원과 사람의 관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이후 삶의 형태를 고민하고 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생활과 통합을 지원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또는 격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다양한 공간에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동과 접근을 위한 물리적 지원이 포함된다.

2) 사례



사례 1 - 이용인의 스마트폰 이용 금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H씨는 얼마 전 외출을 나갔을 때 스마트폰을 개설했다. 그러나 며칠 뒤 생활재활교사가 H씨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휴대전화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통신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말했다.

그리고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잘 모르는 장애인이 개설한 것이니 해지할 것을 요구해 H씨는 스마트폰을 해지하고 반납해야 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현대사회에서 통화만을 위한 수단을 넘어 수많은 외부의 정보를 접하고 수집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매개체이다. 이런 점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지역사회 접근의 기본일 수 있으며, 휴대전화 등의 통신수단은 이용인의 외부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도구이다. ‘과다한 통신비, 불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의 획득 방법과 긴급한 상황에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이용인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례 2 - 지역사회 활동 제한

A거주시설의 D씨는 시설조사를 나왔을 때 알게 된 활동가로부터 1박2일간 진행되는 외부 행사를 소개받아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설에 기차역까지 이동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설에서는 어느 행사에 가는 것인지 묻고는 그 자리에서 D씨의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 시설은 부모님께 D씨가 시설에서 나가자고 권유하는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했고, D씨의 부모는 D씨에게 그 행사에 절대 가지 말라며, 행사에 갈 경우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행사의 활동가가 D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으나 시설에서 가족이 아니어서 안 된다며 면담을 허락해주지 않아 만날 수 없었다.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접근을 위한 물리적 지원의 기본 중 하나는 외출 지원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차량 지원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지역사회 내 행사 등에 참여하려 할 때 이용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거나, 외부인과의 만남을 제한하는 경우들이다. 다양한 관계와 경험이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자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발판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이다.

한편 차량 이용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시설이 갖고 있는 것이 정당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에 자리 잡은 거주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시설의 차량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시설 차량의 이용 방식 등에 대한 약속을 이용인을 포함한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결정된 약속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방식의 변화 등이 구성원에 의해 제기되었을 때 언제나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문화와 구조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부여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시설 내의 안전한 거주를 넘어 시설 외부의 다양한 정보와 경험 제공은 배려가 아닌 의무적 차원에서 고민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사례 3 - 행정 편의를 위한 일괄적 프로그램 운영

모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복지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이용인의 지역사회 참여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하지만 다수의 시설에서 이용인 여러 명이 시설의 승합차에 한꺼번에 타고 복지관에 도착해, 단체로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한 뒤 다시 승합차를 타고 시설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이용인의 지역사회 교류라는 사업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거주시설에서 단체로 여행을 가거나,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반복된다. 거주시설이라는 구조의 한계상 모든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없더라도 일괄적인 제공과 개별적인 제공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각 서비스의 취지와 상관없는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서비

스 종류와 방식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용인에 의한 선택, 선택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때 제공되는 것은 참여를 강제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항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전문 발췌]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

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에게 휴대전화·인터넷의 사용 방법과 이를 통한 정보 접근, 소통의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정보로 제공하고 이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이용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무선인터넷 설비를 확충하도록 한다.
- 이용인에게 다양한 유형의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의 종류와 방식을 정보와 경험으로 제공해야 한다.
- 정보 및 경험 제공 이후 이용인의 지역사회 접근 및 이용의 욕구를 개별적,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욕구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 외부의 단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 중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 시설의 차량 이용 방식과 규칙을 정할 때 이용인을 포함한 구성원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 장애인 이동 지원 제도인 장애인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등에 대해 이용인에게 이용 경험과 이용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토론 거리

- 대중교통 또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시설에서 이용인의 외부와의 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강제노동 금지 및 직업선택권

누구든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받지 않으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직업교육, 직업 연계를 받을 수 있다.

1) 개념

사람이 일(=노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의 역사는 노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노동의 결실을 함께 사는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영위해왔는지에 따라 공동체의 질서와 생존 방식도 달라져왔다. 또한 노동의 의미는 경제적 부를 대가로 한 노동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 전반에 상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일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은 ‘불인정 노동자(不認定 勞働者, Unacknowledged worker)’로서 취급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주의 형성기에 토지에서 쫓겨나고 임노동의 관계에 편입되지 못했던 소위 ‘부랑자’들은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karl Marx 「자본」)” 그렇게 부랑자가 되었는데, 느리고 자율적이며 유연한 형태의 노동에 익숙해 있던 많은 사람을 임노동의 관계로 포섭하기 위해 국가는 강제 수용과 훈육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정책의 산물이 우리가 잘 아는 ‘구빈원(workhouse)’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몸(the able-bodied)’과 ‘일을 할 수 없는 몸(the disable-bodied)’으로 구분하게 되며, 이로부터 ‘장애인(disabled people)’이라는 범주가 생겨났다고 한다. 장애인 노동자는 즉, ‘불인정 노동자’였던 셈이다(김도현, 2012). 이는 지금 한국의 장애인이 처한 노동 현실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으며, 특히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용률은 더 낮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일 확률, 학력이 낮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원

하는 곳에 취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과 놀이’를 함께 해온 인류의 역사가 장애인에게만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간혹 ‘본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억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노동’을 강제노동(forced labor, 強制勞動)이라고 하는데(두산백과), 거주시설의 특성상 함께 사는 사람을 ‘돕는’ 일은 일상다반사이다. 그러나 강요된 돌봄 노동도 때로는 본인에게는 ‘원치 않는 노동’이 될 수 있다. 시설 안에서 비교적 경증의 장애인에게 돌봄, 식당일, 청소, 세탁일 등이 ‘공동체’라는 이름의 무임노동으로 강요돼온 사례가 많았다. 본인에게 책임감을 과도하게 부과함으로써 이 일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이나 재활을 이유로도 그러하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도 다 다르다. 한명 한명 본인에게 맞는 직업능력평가를 한다는 것도, 그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나 직업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취업으로 연계시키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본인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정보 전달 방법은 현장 직업체험이다.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글이나 말로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의견을 듣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본인이 직업교육을 받는 데 동기부여 과정이 되기도 한다.

2) 사례



사례 1 - 교육과정이라는 이유로 보수 없이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3세의 J씨는 강원도에 있는 A시설에 살고 있다. J씨는 그곳에서 자신의 업무는 형광등을 갈아 끼우는 일, 문짝이나 창문이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일,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는 일,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나르는 일, 식자재나 물품 운반 등의 일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일들은 본인이 맡은 일이기 때문에 꼭 본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일했고 이에 대한 보수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일들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직원들이 알려줬다고 했다. 덧붙여 시설에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사례 2 - 돌봄을 이유로 보수 없이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45세의 S씨에게 '자립을 희망하는지' 물었다. B시설에 살고 있는 S씨는 나가서 옷도 사보고, 시장에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인은 자기 방에 같이 살고 있는 G씨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했다. G씨를 돌보는 일은 자신이 맡은 일이며, 직원들이 S씨에게는 S씨밖에 없으니 늘 옆에서 봐줘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고 했다.



사례 3 - 주변 조건 때문에 적극적인 직업 연계 지원을 못하는 사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C씨는 시설 안에서 박스를 접는 일만 10년을 했다. 이 일을 해서 받는 돈은 한 달에 3만~4만 원. 이 일이 너무 지겹고, 자신은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좀 품 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직원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시설의 위치가 도시에서 먼 외곽 지역이어서 음식점과 같은 곳에서 일하려면 시내로 나가야 하는데 대중교통편도 별로 없어서 출퇴근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C씨가 시설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동네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동네 캠페들에게 다 뺏기고 맞고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담당한 아버지가 시설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돈 벌러 나간다고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누군가 직업을 갖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일 수 있다.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어야 무슨 일에도 도전이 가능하다. 그 용기를 주는 사람은 본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 직원 등이 아닐까? 시설 안의 문화가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한다’는 명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인은 용기를 갖기가 힘들다.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장애를 가진 몸으로 무슨 취업이냐?’ ‘장애인은 일할 곳이 없다’는 이야길 들었다면 그 사람은 내면에 자신의 무능력함, 무기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주는 희망도 문제일 수 있지만, 장애인은 일할 수 없다는 ‘장애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그 부정적 인식이 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시설 운영자에게 있다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실현되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례 4 - 바리스타로 취업한 이용인

D씨는 처음으로 ‘월급’이란 것을 받았다. 지난 2년 동안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매장 내 청소와 설거지 등이 D씨가 주로 하는 일이다.

시설 안에서 동생들은 D씨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30여만 원 밖에 안 되는 월급이지만, 생전 처음 받은 월급에 D씨는 너무 기뻐했다.

3) 관련 법규

한국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란, 원하는 직업을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32조 1항)고 천명했고, 이 권리의 보장이 현실적 의미를 가지도록 고용 증진 · 적정 임금 보장 · 해고 자유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32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과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직업을 갖기 위해 개인은 취업에 관한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직업교육이 가능해야 하며, 구체적 취업 활동이 횡수에 제한 없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취업을

위한 상담, 지원 및 연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실업률을 낮추고 자 노력하며, 그를 위해 공공기관의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각종 법규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노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27조

2. 당사자국은 장애인이 노예 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 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헌법 |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 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 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 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
-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유, 직업교육이라는 이유로 무임으로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시설 내부의 돌봄노동,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노동행위에 대한 정당한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지적장애인에게 자신의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함을 교육해야 한다.
-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주기적으로 개별적인 직업 상담을 진행한다.
-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주기적으로 직업능력 평가를 진행한다.
- 직업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한다.
- 장애의 특성에 따라 직업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교육을 직접 지원 또는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한다.

토론 거리

- 시설 내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경증장애를 가진 이용인이 중증장애를 가진 이용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에게 배려와 지원 하는 정도와 강요된 돌봄의 경계는 어디일까?
- 부족한 인력 조건 속에서 개개인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교육 · 노동 · 경제 · 문화 · 복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누구든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받지 않으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직업교육, 직업 연계를 받을 수 있다.

1) 개념

임금은 노동을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불받은 보수이다. 이를 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받게 된다. 사람들은 지불되는 임금에 따라서 그 노동의 가치를 따지기도 한다. 그만큼 임금은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의미이다. 임금에 관련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이 있다. 정부는 대개 그 이하의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오히려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인데 오히려 그 기준이 적정기준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 또는 '생활임금'을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150%를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노동의 현실은 어떠한가? 먼저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가 받은 평균 임금은 142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260만원의 54.6%에 불과하다. 그러나 발표된 평균임금은 장애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자 34.9%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금이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 인 전체 인구 12만 2862명중 경제활동 참가 인구는 3만 991명으로 25%에 불과하며, 이 중 취업자 비율은 22.63%이므로 80%에 가까운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인 셈이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이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는 수치이다. 결국, 장애인근로자가 받는 평균임금 142만 원조차 일부 취업된 장애인에게만 있는 행운인 셈이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장애인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설령 제7조의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내용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노동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부당한 임금 책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차별 요소를 없애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적절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외부업체에 취업했을 경우와 내부에서 업무를 맡을 경우를 나누어볼 수 있다. 외부업체에 취업할 경우는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 내용에 근속기관과 업무, 임금과 휴가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조건에는 임금뿐 아니라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휴가 등의 근로조건도 포함되어야 한다. 내부에서 업무를 맡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 훈육을 이유로, 공동체의 기여를 이유로, 특정 업무를 무임으로 강요할 때 그것은 부당한 강제노동이 될 수 있다. 파트타임제 등 다양한 근로조건을 만들어 이용인들이 일할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노동자의 권리를 설명해줘야 한다. 또한 본인이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리함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금전 관리가 매우 어려울 경우, 본인과 은행에 동행해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출금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통장 잔액에 대해서 확인해줘야 한다.

또한 통장 관리를 위임받은 직원의 경우,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이 통장, 신분증, 도장을 한꺼번에 관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장 관리는 통장 그 자체를 관리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용인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시설 운영 내부 지침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이용인의 임금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십일조 등의 현금과 후원금을 내게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및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 2012.2.13.자 11-진정 0306100 결정 참조).

2) 사례



사례 1 - 시설 내 노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가 지급의 사례 1

지적장애를 가진 E씨는 시설 안에서 식자재 다듬기, 밥 차리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혼자 씻을 수 없는 이용인을 도와 샤워해주기, 빨래하기 등을 맡고 있다. 방장인 E씨는 이러한 많은 일을 하는 대가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마음대로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직원들이 야식을 시킬 때 같이 가서 먹기도 한다. 다른 이용인을 관리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가끔 다른 이용인을 혼내는 권한을 인정받기도 했다.



사례 2 - 시설 내 노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가 지급의 사례 2

정신장애를 가진 F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주방 일을 했고, 최근에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와 식사 후 정리를 마치면 10시, 그 이후에는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

저녁 식사까지 끝내고 다음 날 먹을 식단의 식자재를 다듬고 나면 저녁 7시가 된다. 식사 시간을 빼면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일은 하루라도 거를 수가 없는 것이 문제다. 몸이 아파도 식사 준비에 차질이 있을까봐 안 할 수가 없다.

F씨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쉬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사례 3 - 직업생활이 이용인의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지적장애인 J씨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면서 옆 동네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다닌다. 그곳에서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데, 주말이면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그룹홈 친구들과 시장을 봐 맛있는 것도 해 먹는다.

일주일에 5일 동안 출근하고, 오전 10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5시에 일을 마친다. 그러면 그룹홈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해 먹는다.



사례 4 – 월급 관리가 어려운 이용인의 지원 사례

H씨는 한 달 월급으로 40여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본인은 이 월급을 관리하는 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 직원에게 통장을 맡기고 싶다고 했다.

시설에서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본인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으며, 그 돈은 본인의 돈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매주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 본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통장의 잔액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통장을 돌려받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자유롭게 출금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본인에게 매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돈을 출금해야 할 경우, 되도록 직원과 동행해 은행 이용의 경험을 늘려주고 있다.

3) 관련 법규

| 최저임금법 |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외부업체에 취업을 한 경우나 예정자인 경우, 근로계약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 외부업체에 취업을 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 및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내부에서 특정한 일을 맡아 하고 있는 경우 합당한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조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내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 휴식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임금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선해야 하며,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각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임금관리를 본인에게 위임받아 대리 관리할 경우,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토론 거리

- 최저임금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많은 장애인 사업장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와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이므로 국가가 이를 보전해주더라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차별 조항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 최저임금법의 차별적 조항 |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

장애 · 나이 등의 이유로 자신의 물품과 재산에 대한 소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 및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개념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르면 ‘금융처분 및 신분증 소지권이라 함은 시설 이용인이 자신이 소유한 물품이나 돈을 시설장 또는 직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의미한다. (중략) 또한 본인의 신분증을 시설장 또는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 경제적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흔히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를 제한하는 논리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 및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들의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라는 당연한 전제 아래, 장애인이 권리(법적능력)를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능력과 권리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될 때에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권리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기에 다양한 활동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도로 능력의 차이를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능력의 부족 때문에 권리의 실현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고 더욱 많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김도현, 2012)’.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와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사례



사례 1 - 이용인의 돈을 관리하는 시설

지적장애를 가진 C씨는 얼마 전 외부에서 시설 인권 현황 조사를 나온 조사관으로부터 본인이 국가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과 본인이 시설에서 받는 용돈이 자신의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사 후 C씨는 시설의 직원에게 자신이 받은 돈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직원은 C씨가 돈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며, 나중에 큰돈이 필요할 때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능력 부족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시설이 하는 이용인의 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사회에서 돈의 의미와 사용 방법, 저축 등 계획적인 돈의 사용 등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금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용인이 본인의 금융자산 출처와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돈을 사용하는 의미와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삶의 계획 중 저축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정보와 선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 2 - 물품 구매 강요 또는 일괄적 물품 구매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D씨는 얼마 전 시설에서 욕창 방지 휠체어 방석을 사라고 권유받았다. 이 방석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4배 정도 비쌌으며, D씨만이 아니라 시설의 모든 이용인 역시 이 방석을 살 것을 권유받았다.

D씨는 당장 방석을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겠다고 시설의 종사자에게 말했다. 그런데 종사자는 다른 사람은 다 구입하는데 왜 혼자만 사지 않느냐며 나중에 욕창에 걸려도 알아서 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 D씨는 방석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종사자와 어색해지고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됐다.

일부 시설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없이 이용인의 자비로 단체여행을 가거나, 의료보장구 구입, 냉난방기 구입 또는 단체 간식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단체생활에서 다수가 원하기 때문이라거나, 단체 일정이므로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가, 개인별로 간식을 구입하게 할 경우 개인별 차등이 생겨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는 이용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종사자들 역시 시설의 관리자나 관리자의 친척 경조사가 있을 경우 일괄적으로 부조(扶助)를 걷거나, 시설 후원 행사라는 이유로 티켓 구매를 강요받거나,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위 두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 시설 내에서 시설-이용인, 시설-종사자 사이에 위계의 문제이며 갈취로도 해석될 수 있다.

3) 관련 법규

| 세계인권선언 |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 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 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헌법 |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복지법 |

제8조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에게 신분증 용도와 사용처 또는 자신의 금융 정보와 금전의 사용처 등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지역사회 및 실생활과 연계된 경험을 제공한다.
- 이용인에게 인터넷 뱅킹 또는 인터넷 쇼핑 등 현재 주로 사용하는 경제활동 방식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인이 습득하기 어려워할 경우, 특수교육·재활치료 등 타 분야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사용한다.
- 여행 또는 물품 구입 등 계획 수립 시 자조모임 대표 등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덜한 이용인만이 아닌 다양한 이용인이 참여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 이용인이 물품 구입, 여행 등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토론 거리

- 부모의 유산 등 이용인의 재산을 형제들이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가족이 이용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용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을까?



교육 · 노동 · 경제 · 문화 · 복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모든 이용인은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문화, 예술, 체육, 각종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개념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간다.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은, 문화, 예술, 체육, 각종 여가 생활 등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문화권’은 문화향유권이라 하여 비장애인이 누리는 문화 활동 및 예술 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시설물 접근의 권리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장애인이 문화의 수동적 주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문화 창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운동은, 각종 장애문화예술집단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각종 문화콘텐츠 속에도 장애인의 삶이 녹아들어갔다. 그 결과 지금의 문화권은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거주시설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장해야 할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참조하면,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데 차별적인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다양한 문화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프로그램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기반으로 외부 연계를 통한 다양한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설 후원 행사의 공연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요하거나 개별 외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문화적 욕구를 무시하는 것은 문화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례



사례 1 -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생활 지원이 어려운 현실

개별 이용인에게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 지원하면 실제로 많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알지만, 개인별로 지원하기에는 인력의 문제, 시간의 문제, 예산의 문제 등 현실에서 부딪히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인력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직원 1인이 작게는 4~5명을 많게는 1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용자의 표현되는 욕구 모두를 그때그때 지원해주기란 사실 무리가 있죠. 중증이 경증보다 2배 이상의 인력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통 가정에서는 자녀 1명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누구를' 또는 '어떤 것'을 먼저 지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원자로서 느끼는 한계성은 더 커지고 소진되기도 해요. 이 한계성이 과연 시설이나 직원만 감당해야 할 몫인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딜레마 사례연구, 201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사례 2 - 동네 에어로빅장을 이용하는 사례

지적장애인 L씨는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룹홈에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저녁에 하는 에어로빅 교실에 다닌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같이 배우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잘 대해준다고 한다. 직장에 다녀와서 저녁을 먹고 나면 매일 에어로빅을 배우러 간다.

그 시간이 가장 신난다고 한다.



사례 3 - 주변 여건으로 개별적 지원이 어려운 사례

뇌병변장애를 가진 P씨는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20대 중반에 시설에 들어가게 됐는데,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은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했고, 글쓰기를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한 컴퓨터 지원은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시설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글쓰기를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3) 관련 법규

장애인의 문화권의 중요성은 국제규약과 선언,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정신의료 개혁론자들은 “자유는 의사가 주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이용인 개인의 권리 또한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섭섭한 선물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활재활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세계인권선언 |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기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의 문화적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문화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장벽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화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에 대한 인지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레크리에이션, 여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이 주류 스포츠 활동의 전 영역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증진한다.
 - (b) 장애인이 장애 특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하고 개발하며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적절한 지침, 훈련 및 자원의 공급을 장려한다.
 - (c) 장애인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 및 여행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의 구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헌법 |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

제4조 (장애인의 권리)

-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의 개별적 문화적 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이용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각자가 접근하기 쉬운 자료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 문화 활동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시설 내부의 프로그램,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
- 외부에서 진행되는 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 지원, 보조 인력과 기구 등을 지원해야 한다.

토론 거리

- 중증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권하고, 당사자가 참여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본인의 욕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자로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 거주시설의 위치가 작은 지방도시여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없고 지역사회 내에도 문화적 욕구를 연결시킬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7. 시설 퇴소 과정에서 권리

시설 퇴소 과정에서 권리



자립을 지원받을 권리

이용인은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한 절차와 관련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사회로 자립을 준비할 때 시설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개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용인이 자립생활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시설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었는지에 대해, ‘반대하였다’가 33.1%, ‘지원 없었다’가 26.5%로 나타난 반면, 시설에서 자립생활에 대해 상담해주고 지지해주는 경우는 20.1%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퇴소나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시설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하다. 자립생활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의 경우 아무 지원이 없었다는 응답이 26.4%, 시설에서 반대했다는 응답이 33.0%이었으며, 시설의 주된 반대 이유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조한진 외, 2012). 하지만 이 조사에서 이용인의 자립욕구는 5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걸맞은 지원이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법적 정의는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즉 현재 거주시설에 요구되는 역할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평생 살아갈 공간이 아닌, 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살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기술,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 체계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적인 삶을 기본 이념으로 변화하고 설계되고 있다. 따라서 중증의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물리적·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거주시설과 지

역사회 사이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지속적으로 이용인의 자립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용인에게는 다양한 자립생활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교류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례



사례 1 - 자립에 대한 정보 미제공

L시설의 이용인 Y씨에게 '자립을 희망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Y씨는 시설에서 나가면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어 굶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다.



사례 2 - 탈시설 장애인 지원 업무 불인정

H시설의 종사자 B씨는 3주 전 시설을 나가 지역사회 체험홈에 살고 있는 D씨를 매주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

D씨는 5살 때부터 시설에서 살아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B씨가 D씨를 지원하는 것은 B씨의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B씨는 따로 연차를 내거나 업무가 끝난 뒤 D씨를 방문하고 있다.

대다수 시설의 이용인에게 외부로부터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는 시설이다. 최근 시설로부터 자립하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다. 시설은 이용인에게 이러한 정보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인이 자립을 원할 경우 자립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관련 법규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전문 발췌]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이용인에게 시설에서 자립할 경우 지원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용인에게 시설에서 자립한 장애인들과의 동료 상담, 자립생활 가정 방문 등 다양한 자립생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에게 비용, 물품,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토론 거리

- 시설에서부터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는 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시설 퇴소 과정에서 권리



퇴소결정권

시설 이용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1) 개념

퇴소결정권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퇴소할 경우, 시설이나 가족보다 본인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주 오랫동안 시설에 한번 입소하면 나가지 못하고 평생을 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퇴소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여겨졌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한다거나 퇴소에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확대는 더 이상 시설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자립해 살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퇴소가 꼭 조건을 다 갖춘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립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시설 퇴소 자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이제는 너무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되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개념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 이용인이 일정 기간 머무는 곳이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례



사례 1 - 시설 퇴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례

00재활원에서 16년간 생활한 A씨는 시설에서 나가기를 강하게 원했다. 시설을 먼저 나간 B씨와 연락하여, 장애인 단체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설은 부모 동의 없이 외출이나 외부인 면회도 안 된다며,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장애인인 네가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고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성인이지만 본인의 의사대로 퇴소하지 못하고 유일한 소통 도구인 휴대전화를 시설 측에 빼기는 상황이 생기면서 급기야 야밤에 시설에서 1KM 정도를 기어 나와 탈출하게 되었다. 그나마 겨우 외부와 연락할 수 있었던 휴대전화를 빼겨버리자 이젠 죽었다 싶어서 모두 잠 들었을 때 탈출을 감행한 것이다. 무작정 B씨가 있는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A씨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겨우 4만 원이었다.



사례 2 - 시설 측의 협조 속에 자립을 지원받은 사례

장애인 단체의 자립생활 교육을 통해서 만나게 된 L씨에게 자립에 대한 의사를 밝힌 S씨는 평소에는 자립할 생각을 해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L씨를 통해 자립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시설에 자립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반대하지 않았다. L씨는 6개월 정도 시설 측과 함께 장애인 단체 S씨와 연락하면서 자립 상담을 했고 시설에서 활동보조 신청을 해주고, 장애인 단체에서 체험홈을 알아봐주어 현재는 자립생활 중이다.

서울시(2009), 부산시(2009), 광주시(2010), 대구시(2012), 인천시(2012)¹²³⁾에서는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는 서울시의 경우 57%로 나타났으며, 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70.3%가 자립을 희망했다, 광주시는 41.3%, 주거 및 서비스

123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확충연구(서울시정개발원, 2009), 부산생활시설거주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부산복지개발원, 2009),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및 자립생활욕구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지소, 2010), 충청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방안(대구경북연구원, 2012), 장애인 생활시설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인천발전연구원, 2012)

지원 시 42.2% 자립 희망, 부산시 57.6% 자립 희망, 대구시 58.6% 주거 지원 시 70.5%, 인천시 30.0%로 약 50% 이상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시설이용인 자립욕구 조사(조한진 외, 2012) 결과에 따르면, 57.5% 자립 희망, 주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시 62.1% 자립 희망, 자립생활의 어려움을 설명한 후에도 53.4%가 자립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립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집, 생활비, 일자리, 활동보조를 꼽아 앞선 지자체 조사에서 나타난 필요한 지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소결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설 이용인이 자립 의사를 밝혔을 때, 반대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담하며 자립 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시설에서 퇴소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 마련까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야 한다.

3) 관련 법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특정 주거지를 강요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 것을 강요받을 수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삶이 영위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퇴소 시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 결정을 강조하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

제13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함과 지역사회에 통합)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 기회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을 보장함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a)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거주지 및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되지 않음
- (b)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이나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광범위한 재가·주거 서비스와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들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음
- (c)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시설이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함

| 헌법 |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사회복지사업법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권 존중 실천 가이드라인

- 평상시, 시설 이용인에게 시설퇴소결정권이 있음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자립생활 교육 등을 제공한다.
-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퇴소 지원을 해야 한다.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와 가족과 시설 측이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고 일반적으로 가족 의견만을 고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집, 주거, 활동보조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평소에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사회 자립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토론 거리

- 이용인은 지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에 이용인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 본인은 퇴소해 자립생활하기를 원하지만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VI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1. 장애인거주시설 참여형 인권교육 소개 ¹²⁴⁾

가. 거주시설 종사자와 함께 할 장애인 인권교육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에 대한 존중을 다룬다. 나와 우리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동등한 관계로 권력의 차이를 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기존 질서유지에 기여해 온 침묵과 체념, 굴종의 문화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도전과 함께 발생하는 불편함과 갈등, 혼란을 기꺼이 끌어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와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실천을 북돋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억압을 건드리는 교육, 인권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변화의 힘과 열망을 일깨우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권교육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시설 종사자 장애인 인권교육’은 장애인만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124 나이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인인권교육 매뉴얼>(2012)에서 일부 발췌함.

것을 넘어, 거주시설 내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내고, 침묵해야만 했던 구성원의 목소리와 언어를 되살리며, 거주시설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와 문화를 지향한다.

나. 참여형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것

인권교육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진 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깔려 있다. 이것이 곧 인권교육이 가진 힘과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인권교육 과정에서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발현된다. 인권교육의 과정이 위계나 명령, 지시, 강요, 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소통하는 과정일 때, 인권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참여형 인권교육은 참여자의 삶의 경험과 고민을 교육 안에 녹여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누구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 서로의 입장을 동등하게 만드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모든 인권교육이 참여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늘 듣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비 가해자’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거주시설 내 인권을 협소하게 만들며, 장애인을 더욱 대상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인권이 책 속의 문자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가 스스로를 인권의 당사자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종사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스스로 이야기하며 그 과정에서 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연대와 실천의 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여자들을 ‘교육을 받는 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이유이다.

다. 기획 단계에서 살필 것들

1) 목표 정하기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구성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외부 요청에 의한 교육일 경우 요청자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에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2) 참여자에 대한 이해

참여자들을 교육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과 상황에 대해 인권교육가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 유사한 교육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참여자들의 최근 주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교육 기획자와 함께 충분한 사전 기획이 필요하다.

3) 교육 시간 및 참여 인원 수

참여형 인권교육은 참여자들이 서로의 고민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참여 인원을 필요로 한다. 한 주제를 위한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 30명 이하의 인원이 적절하다.

4) 더불어 확인해야 할 꼭지들

- 참여자의 인권교육 경험과 동기
- 참여 인원과 이들의 성별 비율 및 연령대
- 참여자의 장애 유무와 정도
 - :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 장애에 맞는 교육 도구인지 등 확인
- 교육 장소와 그 외 시설
 - : 참여형 교육이 가능한 장소, 교육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5) 교육 구성 예시

| | |
|-------------------------------------|---|
| <p>몸 풀기</p> | <p>교육 참여자들이 낯선 인권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놀이 프로그램으로 흥미와 집중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인권감수성을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다룰 수 있다.</p> |
| <p>마음열기</p> | <p>이 과정 역시 인권교육의 한 부분이므로 놀이의 과정과 내용이 누군가를 희화화하거나 배제·차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
| <p>다양한 기법을 통한 참여 프로그램 진행</p> | <p>인권교육의 기법은 브레인스토밍, 연극, 놀이, 체험, 음악, 미술 등 매우 다양하다. 이때 참여자들을 교육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에게 맞는 적절한 기법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p> <p>이러한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시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이 과정 역시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p> |
| <p>프로그램 내용 정리</p> | <p>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참여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인권의 언어로 해석하고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내놓게만 하고 해석하거나 정리하지 않는 것은 참여자들을 형식적 참여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p> |
| <p>전체 교육 정리 및 평가</p> | <p>전체 교육을 살피고 교육가가 교육 목표에 따라 참여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간단한 PPT 등을 사용할 경우 이야기 맥락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p> <p>인권교육은 평가 역시 일반적으로 하기보다 참여자와 교육가가 함께 하는 것을 지향한다. 간단한 평가도구를 활용해 참여자가 평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p> |

2.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예시

가. 몸풀기·마음열기 프로그램 예시

1) 몸풀기·마음열기 프로그램의 의미

참여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도입프로그램은 중요하다. 특히 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와 연관성을 가진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몸풀기·마음열기 프로그램의 예시



1. 눈으로 말해요

진행방법

01. 좌우의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눈다.(“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요” 등)
02. 양옆 짝을 맞춰서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만큼은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등을 토닥토닥하며 “답답한 마음도 털어버리세요”, 등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고속도로처럼 뺨 뚫려 막히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며 말한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기, 다른 인사말을 건네도 됨)
03. 손을 까마귀 발가락처럼 만들어서 머리를 톡톡 3번씩 쳐주고, 귀밑과 눈썹 주위 입 주위도 두드려 준다.
04. 짝공과 손을 잡고 10초 정도 눈을 감는다.
05. 눈을 뜬 후 짝공끼리 말없이 서로의 행동을 따라한다.(짝공끼리 번갈아 가면서 하기).
예) 한쪽 입을 올리기도 하고, 코를 벌렁거리기도 하고, 눈을 찡긍거리고 하는 등의 행동과 기쁜 표정, 슬픈 표정, 놀란 표정 등 눈동자를 쳐다보며 서로 따라 하기
06. 잡은 손을 놓고 서로 마주 보며 통했다고 느꼈을 때 손뼉을 친다.

마무리

- ○처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등 인사를 나눈 후 말없이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소리를 느낀다. 느끼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 ○조금의 관심과 애정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소통은 가능하다.
- ○스킨십의 중요함과 따뜻한 눈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마무리한다.



2. 내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진행방법

- 01 _ 참가자 모두 명찰을 단다.
- 02 _ 명찰을 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상대방 이름도 소개받는다. (자신의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름 앞에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거나 별칭을 붙여도 된다)
- 03 _ 소개가 거의 다 끝나면 자리에 앉는다.
- 04 _ 진행자가 명찰을 걷는다.
- 05 _ 용지에 기억나는 이름(또는 별칭, 특별한 수식어 등)을 적는다.
- 06 _ 가장 많이 적은 사람에게 상품을 준다.

준비물

명찰, 잔잔한 음악, A4용지, 펜

마무리

- ○참가자들의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을 소개하는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갖는다.



3. 뭘까? 뭐게?

진행방법

- 01 - 명찰손가락 4개를 가지고 개, 고양이, 까마귀, 쥐의 이름을 붙여준다. 그리고 한 손가락씩 개, 고양이, 쥐, 까마귀를 지정해주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
- 02 - 그런 후 물어본다. 예) 이게 뭐게?(개) 이게 뭘까~(까마귀), 이게 뭐지~(쥐), 이게 뭐야~(야옹 이_고양이)
- 03 -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과의 몸 풀기에 잠깐씩 추가로 할 수 있다.
- 04 - 전체가 게임을 이해하기 전에 끝내는 것이 효과적이다.(절반 정도 이해했을 때)



4. 봉황 탄생

진행방법

- 01 - 처음에는 참가자들 모두 알이다. 알 모양으로 쭈그려 앉는다. 옆에 있는 사람과 가위 바위 보를 해 한 단계씩 올라간다. (알→병아리→닭→봉황)
- 02 - 알은 알끼리, 병아리는 병아리끼리,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한다.
- 03 - 이긴 사람은 위 단계로, 진 사람은 아래 단계로 옮겨간다. 단, 알 상태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해 져도, 알로 시작하며, 봉황이 되면 무대 밖으로 나가 나머지 참가자들을 보도록 한다.



5. 꼬인 손풀기

진행방법

- 01 _ 둥글게 원 모양으로 서서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 02 _ 진행자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원하는 자리로 이동한다.
- 03 _ 이동한 곳에서 원을 좁혀서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을 기억해서 손을 잡는다.
- 04 _ 원이 꼬이면 서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꼬인 원을 풀어간다.



6. 나에게 소중한 5가지

진행방법

- 01 _ 동각자 꽃 모양의 종이를 받아 '나에게 소중한 5가지'를 작성해본다.
- 02 _ 가운데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닉네임이나 별명 등을 적고, 꽃잎 다섯 장에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5가지를 작성한다.
- 03 _ 모듈별로 작성한 내용을 공유하고, 다 끝난 모듈은 화이트보드에 작성한 꽃을 맘에 드는 위치에 붙여본다.
- 04 _ 화이트보드에 다양한 색깔과 내용으로 붙어있는 꽃들에 대한 소감을 공유해보고, 자신이 소중한 것을 잘 유지하는 사회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를 이야기해보고, 또한 꽃을 훼손해보고, 자신이 소중한 것을 뺏기는 것, 인권이 훼손되는 상

황에 대한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준비물

꽃 모양 종이, 화이트보드, 유리테이프



7. 새 날아, 둥지 날아

진행방법

- 01 - 세 명씩 한 모둠을 만든다. 세 명 중 두 명이 마주 보고 양손을 잡으면 그 사이로 나머지 한 명이 들어간다.
- 02 - 양손을 잡은 사람들은 '둥지'가 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새'가 된다. 새가 된 사람은 양팔을 날개처럼 펼쳐 새를 표시한다.
- 03 - 모듬에 끼지 않은 한 명이 솔래가 된다. 솔래는 '새날아', '둥지 날아', '모두 날아'를 외칠 수 있다. 솔래가 '새날아'라고 외치면 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둥지를 빠져나와 다른 둥지로 이동해야 한다. '둥지 날아'도 마찬가지다. 단, 둥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맞잡은 손을 풀고 따로 움직여 새로운 짝과 둥지를 만들어야 한다. 솔래가 '모두 날아'를 외치면 새와 둥지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 이때 '새'는 '둥지'로 바꿀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8. 인간 사슬 만들기

진행방법

- 01 _ 7명씩 집단을 나누고 집단원들은 각각 0에서 9번까지 숫자를 적은 종이를 가슴에 붙인다.
- 02 _ 사람에게 비해 종이 가 남으면 그 수만큼 등에도 한 장을 더 붙인다.
- 03 _ 예를 들어 진행자가 “3에 6을 곱한 숫자에 6을 빼고 다시 이 숫자를 4로 나눈 숫자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 정답은 30이니까 각 집단에서는 계산을 빨리 해 숫자가 3번인 사람들이 진행자 앞으로 빨리 달려온다.
- 04 _ 똑같은 숫자를 두 번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 - 카드를 활용해서 만든다.

준비물

0~9번까지 적힌 숫자 카드, 양면테이프, +, - 가 적힌 숫자 카드



9. 나의 이름표

진행방법

- 01 _ A4용지 반 정도 크기의 카드 중앙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적는다.
- 02 _ 카드 상단 왼쪽 구석에는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과 가보고 싶은 곳을 적는다.
- 03 _ 상단 오른쪽 구석에 자신의 취미와 장기를 한 가지씩 적는다.
- 04 _ 하단 왼쪽 구석에는 자신을 잘 설명하는 형용사를 세 가지 적는다.
예) 행복한, 엉뚱한, 둥글둥글한
- 05 _ 하단 오른쪽 구석에는 올해나 가까운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이나 꿈을 한 가지씩 적는다.
- 06 _ 카드에 실을 매달아 목에 건다.

- 10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목례도 하고 윙크도 하고 어깨도 두드리면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카드를 읽는다.

준비물

A4용지 반 정도 크기의 카드, 매직, 실



1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진행방법

- 01 - 진행자는 “이 놀이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선 약간 변형된 ‘쌍둥이 꽃이 피었습니다’로 하겠습니다”라고 소개한다.
- 02 - 술래가 “쌍둥이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다가온다.
- 03 - 다음에 외치며 술래가 뒤돌아볼 때에는 좀 전에 짝을 이룬 사람과 다시 짝이 되면 안 된다.(새로운 사람과 짝을 찾으면서 조금씩 인사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11. 상상변형놀이

진행방법

- 01 - 모든 참여자 한 사람씩에게 사회자가 막대기처럼 말은 신문지로 상상한 것을 표현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맞혀보도록 한다(공간이 좁은 곳에서도 가능하다).
예) 신문지 막대를 코에 대면 ‘피노키오의 코’를 상상할 수 있다.



12. 한글자 신체

진행방법

- 01 _ 각 모둠에게 3분 정도 몸에서 한 글자 이름을 가지며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을 생각해보고 발표하게 한다(예를 들면 위, 암, 장, 혈 등).
- 02 _ 마지막까지 경쟁하면서 모둠끼리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13. 공통점 찾기

진행방법

- 01 _ 모둠별 공통점을 찾아서 행동으로 표현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알아맞힌다.
 예) 안경을 모두 썼다. 청바지에 티 입었다.

나. 인권의 원칙을 짚어보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1) 인권감수성 키우기

❖활동 목표 | 나의 주변 상황을 인권에 대한 눈을 가지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힘을 기른다.

❖활동 개요 | 참여 인원 : 30명 내외

소요 시간 : 3시간

참여 구성 : 5개 모둠

준 비 물 : A4용지 30매, 개인 필기도구, 매직펜 5세트, 전지 5장,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트, 노트북, 세계인권선언문 프린트물, 그림카드

❖ 활동 과정 개요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 교육 소개 몸 풀기 마음열기 | 15분 |
| 전개 | <p>활동 1. 다시 쓰는 세계인권선언문</p> <p>세계인권선언문 3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지켜지고 있는 내용과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함께 정리해 새로운 인권선언문을 만들어본다.</p> | 40분 |
| | 휴식 | 10분 |
| | <p>활동 2. 차이? 차별?</p> <p>사람의 외형적인 특성과 성격적인 특성을 구분하는 단어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 고민해본다.</p> | 80분 |
| | 정리 강연 | 20분 |
| |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15분 |

❖ 세부활동 내용

활동 1. 다시 쓰는 세계인권선언문

진행 방법

- 01 _ 세계인권선언문을 PPT 자료나 전지에 미리 써서 준비한다.
- 02 _ 미리 준비해온 세계인권선언문 프린트물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준다.
- 03 _ A4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 04 _ 세계인권선언문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함께 읽어본다.
- 05 _ 각자 나누어 준 종이에 '나에게 지켜지고 있는 권리 조항'과 '지켜지고 있지 않은 권리 조항'을 표시해 본다. 지켜지고 있지 않은 권리 조항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써본다.
- 06 _ 내가 추가로 넣고 싶은 권리 조항을 써본다.
- 07 _ 지켜지지 않은 권리 조항을 쓴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 08 _ 각자가 넣고 싶은 권리 조항을 합쳐서 새로운 인권선언문을 완성해본다.

정리 내용

새로운 인권선언문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본다.

활동 2. 차이? 차별?

진행 방법

- 01 _ 짝짓기 표의 왼편에는 사람의 외형적인 특성을 오른쪽에는 성격적인 특성을 함께 찾아 써본다(짝짓기 표를 구성할 내용을 미리 전지나 PPT자료로 준비해도 된다).

예) 차이와 차별 짝짓기 표

| | |
|------------------|-------------|
| 동뚱한 사람 ● | ● 살이 찌지 않는다 |
| 머리카락이 굵고 짙은 사람 ● | ● 게으르다 |
| 목소리가 작은 사람 ● | ● 불량하다 |
| 문신한 사람 ● | ● 자유분방하다 |
| 마른 사람 ● | ● 신경질적이다 |

진행 방법

- 02 - 일상생활에서 흔히 짝을 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표를 만들고 양쪽을 짝짓기 해본다.
- 03 - 짝짓기 한 것들 사이의 관계가 타당성이 있는지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본다.
- 04 - 왜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정리 내용

흔히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인식하고 차이와 차별에 대해 좀 더 인권감수성을 갖고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교재 내 함께 볼 부분

- II. 장애인과 인권 1.이론적 근거

❖참고 자료

- (영상) 지식채널e, <모든 사람 1부 - 최소한의 목록>
- (영상) 지식채널e, <모든 사람 2부 - 차별의 발견>
- (영상) 국가인권위원회, <여섯 개의 시선>
- (영상) 국가인권위원회, <별별 이야기>
- (도서) 최규석, <불행한 소년>

2) 장애인 인권 현황 짚어보기

❖활동 목표 | 장애인이기 때문에 침해받고 있는 인권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상황을 짚어본다.

❖활동 개요 | 참여 인원 : 30명 내외

소요 시간 : 3시간

참여 구성 : 5개 모듈

준 비 물 : 포스트잇, 화이트보드, 개인 필기도구, 매직펜 5세트, 전지 5장,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트, 노트북, 별표 스티커

❖ 활동 과정 개요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 교육 소개 몸 풀기 마음열기 | 15분 |
| 전개 | 활동 1. 나에게 장애(장애인)이란? 문장 완성하기 활동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장애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짚어본다. | 30분 |
| | 휴식 | 10분 |
| | 활동 2. 장애인인권대회 개최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대회가 열린다면 어떤 피켓을 만들어 참여할지를 써보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본다. | 80분 |
| | 정리 강연 | 20분 |
| |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15분 |

❖ 세부 활동 내용

활동 1. 나에게 장애(장애인)이란?

진행 방법

- 01 _ 참가자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누어주고, 각자 제시된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예) 나에게 장애인은 불편한 친구다. 나에게 장애는 많이 낯선 것이다. 등
- 02 _ 문장을 완성할 때 문장 형식이나 말투에 너무 규정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설명한다.
- 03 _ 자신이 완성한 문장을 화이트보드에 붙인다.
- 04 _ 진행자는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문장을 중심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다.

정리 내용

문장 완성하기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장애(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을 생각해 보고,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느낌을 찾아보고, 그 공통점 안에 사회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하면서 현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짚어본다.

활동 2. 장애인인권대회 개최

진행 방법

- 01 _ 모둠별로 전지와 매직펜을 나누어준다.
- 02 _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열쇳말(키워드)을 제시해준다(열쇳말은 참가자들과 의논해 결정할 수도 있다. 참가자들의 장애감수성에 따라 너무 어렵지 않은 주제로 선정한다).
예) 장애등급제, 장애인과 안전·보호, 장애인과 자립, 장애인과 소득 등
- 03 _ 주제별로 장애인인권대회가 열린다면 어떤 피켓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할 것인지 참가자들에게 묻고, 모둠별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 04 _ 모둠별로 피켓에 들어갈 내용을 전지에 정리한다.
- 05 _ 모둠별로 전지를 돌려보면서 다른 모둠의 피켓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다면

채워준다.

06. 피켓의 내용 중 각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별표 스티커를 붙여보게 한다.

07. 모둠별로 전지에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함께 나눈다.

정리 내용

장애인의 권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피켓 내용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본다. 제시된 키워드 이외에 어떤 권리 쟁점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참가자들이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교재 내 함께 볼 부분

- II. 장애인과 인권 2.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이해
- IV.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참고 자료

- (영상) 지식채널e, <미국의 이상 - 헬렌켈러>

3)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 해결의 고리 찾기

❖활동 목표 |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차별의 유형을 찾아내고 각 자원을 활용해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활동 개요 | 참여 인원 : 30명 내외

소요 시간 : 3시간

참여 구성 : 5개 모둠

준비물 : 포스트잇(두 가지 색깔로 준비), 개인 필기도구, 화이트보드, 매직펜 5세트, 전지 5장, 빔프로젝트, 노트북, 차별사례활동 프린트물, 장애인 차별 금지법 프린트물

❖ 활동 과정 개요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 교육 소개 몸 풀기 마음열기 | 15분 |
| 전개 | <p>활동 1. 나에게 장애(장애인)이란?</p> <p>내가 차별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을 가했을 때 두 가지 경우의 차별이야기를 통해 차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본다.</p> | 30분 |
| | 휴식 | 10분 |
| | <p>활동 2. 차별에 대응하자, 해결의 고리를 찾자</p> <p>주어진 장애인 차별 사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유형에 적용해 보고 법적 해결 이외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p> | 80분 |
| | 정리 강연 | 20분 |
| |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15분 |

❖ 세부 활동 내용

활동 1. 나를 둘러싼 차별이야기

진행 방법

01. 참가자들에게 각각 두 가지 색깔의 포스트잇을 나눠준다.
02. 한 가지 색 포스트잇에는 내가 차별을 받았을 때, 또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에는 내가 차별을 했을 때의 상황을 적어본다.
03. 각각 자신의 포스트잇을 화이트보드에 붙인다.
04.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공통된 내용과 특이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본다.
05. 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을 가했을 때 두 가지 상황에서의 느낌을 참가자들에게 묻고, 차별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었던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본다.
06.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그런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활동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정리 내용

나를 중심으로 한 차별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차별이란 무엇인지, 차별을 받았을 때의 느낌과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가해자가 되었는지를 고민해보고,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이 사회구조적 배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차별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짚어본다.

활동 2. 차별에 대응하자, 해결의 고리를 찾자

진행 방법

01. 모둠별로 전지와 매직펜을 나누어준다.
02. 모둠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문이 담긴 프린트물을 나누어준다.
0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전달한다.
04. 모둠별로 피켓에 들어갈 내용을 전지에 정리한다.
05. 모둠별로 장애인 차별 사례가 담긴 프린트물이나 신문기사 등 관련 내용을 나

누어준다(장애인 차별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의 유형별 고용, 교육, 금융, 시설물 접근, 정보접근, 편의시설, 참정권 등으로 고루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06 _ 모둠별로 나누어준 사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고, 사례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자원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 07 _ 장애인 차별 사례 제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하기 ▶ 사례 대응을 위해 주변 자원 찾아보기 ▶ 사례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찾아보기 ▶ 사례 대응과 관련해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의 순서로 토론한다.
- 08 _ 모둠별로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의견도 함께 들어본다.

정리 내용

장애인 인권을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장애인 차별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참가자들이 실제 사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적용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수준이 어디쯤 있으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재 내 함께 볼 부분

- II. 장애인과 인권 1.이론적 근거 2.장애인인권에 관한 이해
- IV.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참고 자료

- (영상) 다큐인, 〈버스를 타자〉
- (영상)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이동할 권리〉
- (영상) 장애여성공감 · 여성영상집단 움, 〈거북이 시스템즈〉

다. 이용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1) 이용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권리 ; 나는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다

❖ **활동 목표** | 이용인들의 일상생활 권리를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
 펴본다.

❖ **활동 개요** | 참여 인원 : 30명 내외

소요 시간 : 2시간

참여 구성 : 5개 모둠

준 비 물 : 전지 5장, 매직 10개, 크레파스 5세트, 화이트보드, 스키타이프,
 빔프로젝트, 노트북

❖ **활동 과정 개요**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 도입 | 교육 소개 몸 풀기 마음열기 | 15분 | |
| 전개 | <p>활동 1. 나에게 장애(장애인)이란?</p> 각 모둠마다 “핸드폰, 외출, 인터넷, 연애, 신용카드” 등의 단어를 한 개씩 나눠준다. 전지를 반으로 접어 한쪽 면에 “나에게 000(각 모둠이 받은 단어)이란?”을 쓰게 한다. 각 모둠이 토론을 통해 나에게 000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적게 한다. 모둠이 모두 적으면, 그 내용을 옆 모둠에 전달하고 다른 모둠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게 한다. 모둠의 종이 돌아오면 각 조에서 한명씩 그 내용을 읽어준다. | 30분 | 120분 |

| | | | |
|----|--|-----|------|
| 전개 | <p>활동 2. 시설 이용인에게 000 이란?</p> <p>각 모둠에 나눠준 전지의 사용하지 않은 다른 한쪽 면에 “시설 이용인에게 000(각 모둠이 받은 단어)이란?”을 쓰게 한다. 각 모둠이 토론해 자신이 속한 거주시설에서 이용인들이 000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 본다. 모둠이 모두 적으면, 그 내용을 옆 모둠에 전달하고 다른 모둠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게 한다. 모둠의 종이 가 돌아오면 각 조에서 한 명씩 그 내용을 읽어준다.</p> | 30분 | 120분 |
| | 정리 강연 | 30분 | |
| |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15분 | |

❖세부 활동 내용

활동 1. 나에게 000 이란?

진행 방법

- 01 _ 참여자들을 5개의 모둠으로 구성한다.
- 02 _ A4지에 “핸드폰, 외출, 인터넷, 연애, 신용카드” 의 각 단어를 써서 말아놓은 것을 각 모둠에서 준비받기 한다.
- 03 _ 각 모둠에 나눠준 전지1장을 반으로 접는다. 반으로 접은 한쪽 면에는 “나에게 000 이란?”이라는 제목을 쓰게 한다. 여기서 000은 각 모둠이 뽑은 단어이다.
 예) 나에게 핸드폰이란?
 나에게 외출이란?
- 04 _ 각 모둠에서는 나에게 000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고 적는다.
 예) 나에게 핸드폰이란 24시간 붙어있는 제일 필요한 물건이다.

나에게 핸드폰이란 정보제공의 원천이다.
 나에게 핸드폰이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다.
 나에게 핸드폰이란 재미있다.
 나에게 핸드폰이란 비용이 많이 든다.

05 _ 각 모둠에서 적은 내용을 옆 모둠으로 전달한다. 옆 모둠에서는 다른 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덧붙여 달기를 한다.

예) 나에게 핸드폰이란 24시간 붙어있는 제일 필요한 물건이다.
 ↳ 그래서 귀찮아 죽겠다.
 ↳ 때로는 집에 일부러 두고 오고 싶다.

06 _ 자신의 모둠의 내용이 돌아오면 각 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히 발표한다.

정리 내용

나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 도구, 시스템, 관계 등을 둘러 본다.

활동 2. 시설 이용인에게 000이란?

진행 방법

01 _ 각 모둠에 나눠준 전지의 다른 반장에 “시설 이용인에게 000 이란?”이라는 제목을 쓰게 한다. 여기서 000은 각 모둠이 뽑은 단어이다.

예) 시설 이용인에게 핸드폰이란?
 시설 이용인에게 외출이란?

02 _ 각 모둠에서는 시설 이용인에게 000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고 적는다.

예) 시설 이용인에게 핸드폰이란 똑똑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다.
 시설 이용인에게 핸드폰이란 쓸 일이 별로 없다.
 시설 이용인에게 핸드폰이란 갖고 싶으나 돈이 감당이 안 된다.
 시설 이용인에게 핸드폰이란 꼭 필요한 물건이다.

03 _ 각 모둠에서 적은 내용을 옆 모둠으로 전달한다. 옆 모둠에서는 다른 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덧붙여 달기를 한다.

예) 시설 이용인에게 핸드폰이란 쓸 일이 별로 없다.

↳ 연락할 사람이 없다.

↳ 휴대폰이 없어서 연락할 사람을 만들지 못한 건 아닐까?

04 - 자신의 모둠의 내용이 돌아오면 각 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히 발표한다.

정리 내용

나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했던 것들이 시설 이용인에게도 동등한 권리로 보장되는지 살펴본다. 만약 시설 안에서 일상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물건, 도구, 시스템, 관계 등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토론해본다. 그리고 각 모둠이 작성한 단어들 외에도 이용인들에게 보장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지 토론해본다.

❖교재 내 함께 볼 부분

- II. 장애인과 인권 1.이론적 근거 2.장애인인권에 관한 이해
- IV.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2.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참고 자료

- (영상) 지식채널e, <산 좋고 물 좋은 곳>
- (영상) 장애인소리, <지렁이 꿈틀(선철규의자립이야기)>

2) 인권친화적 환경 구성하기

❖활동 목표 | 시설 안의 단체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각종 규칙들을 인권친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살펴본다.

❖활동 개요 | 참여 인원 : 20명 내외

소요 시간 : 2시간 30분

참여 구성 : 3개 모둠

준 비 물 : A4용지 각 1장씩, 매직 10개, 크레파스 6세트, 화이트보드, 스카치테이프, 빔프로젝트, 노트북

❖ 활동 과정 개요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 도입 | 교육 소개 몸 풀기 마음열기 | 20분 | |
| 전개 | <p>활동 1.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p> <p>참가자들은 A4용지에 자신이 일하는 시설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을 한 가지씩 적고, 그 종이를 앞에 붙인다. 한 모듬씩 나와 전체 참가자들이 적은 규칙을 “꼭 있어야 할 규칙/토론이 필요한 규칙/불필요한 규칙” 세 가지로 구분해 다시 붙여본다. 왜 그렇게 나눴는지를 발표한다. 이후 다른 모듬이 나가서 앞 모듬이 구분해 놓은 것을 다시 구분해 본다. 바뀐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러한지 설명한다. 또 다른 모듬 구성원들이 나가서 재구성한다. 바뀐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러한지 설명한다.</p> | 50분 | |
| | 휴식 | 10분 | 150분 |
| | <p>활동 2. 차별에 대응하자, 해결의 고리를 찾자</p> <p>앞서 활동1에서 붙인 규칙종이를 하나씩 나눠준다. 이때 자기가 쓴 것 말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가진다. 강의 실의 중앙에 인권 포인트를 세워둔다. 각자가 든 규칙이 인권친화적이면 인권포인트에 가까이 서고, 인권친화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거리만큼 떨어져 선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들고 있는 규칙과 인권의 상관성에 대해서 발표한다.</p> | 50분 | |
| | 정리 강연 | 25분 | |
| |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15분 | |

❖ 세부 활동 내용

활동 1.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진행 방법

- 01 _ 전체 참여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시설 내 다양한 규칙 중 한 가지씩을 A4 한 장에 적도록 한다.
 - 예) 아침 7시에 예배/미사를 드려야 한다.
 - 외출을 하려면 사무실에 외출증을 쓰고 동의하에 나가야 한다.
 -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 식사 시간 외에 식사를 할 수 없다.
- 02 _ 각자가 쓴 내용을 앞 화이트보드에 붙인다.
- 03 _ 진행자는 나온 내용 몇 가지를 뽑아서 읽어준 후에, “꼭 있어야 할 규칙 / 토론이 필요한 규칙 / 불필요한 규칙”이라고 쓴 종이를 칠판의 맨 위에 나란히 붙인다.
- 04 _ 한 모둠의 구성원들이 나와서 어지럽게 붙여있는 각각의 규칙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붙인다. 그리고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한다.

| 꼭 있어야 할 규칙 | 토론이 필요한 규칙 | 불필요한 규칙 |
|--------------------------------|-------------------------------|-------------------------|
| “이용인끼리, 혹은 직원과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외출을 하려면 외출증을 쓰고 동의하에 나가야 한다” |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
|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 | “식사 시간외에 식사를 할 수 없다” | “아침 7시에 예배/미사를 드려야 한다” |

- 05 _ 후에 다른 모둠이 나가서 다시 구분해 정리한다. 앞 모둠과 바뀐 부분이 있다면 왜 자리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발표한다.
- 06 _ 후에 또 다른 모둠이 나가서 다시 구분해 정리한다. 앞 모둠들과 바뀐 부분이 있다면 왜 자리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발표한다.

정리 내용

단체생활을 이유로 한 많은 규칙은 이용인이 입소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용인들에게 그 규칙들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동의되지 않는 규칙들은 이용인 간의 토론을 통해 바뀌어가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규칙들이 거주 공간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짚어본다. 많은 규칙들이 누구를 위해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짚어본다.

활동 2. 규칙과 인권과의 거리는?

진행 방법

- 01 _ 참여자들이 앞에 나와 화이트보드에 붙여진 규칙들을 하나씩 갖는다. 이때 들고 있는 규칙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닌 다른 참가자 작성한 것으로 고른다.
- 02 _ 강의실의 정중앙에 '인권포인트'를 세워둔다. 강의실 의자 등을 활용한다.
- 03 _ 참가자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규칙이 인권과 친화적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고, 인권친화적이라면 인권포인트에 가까이 서고, 인권친화적이지 않다면 멀리 서는 방식으로 각자 위치를 잡아 선다.
- 04 _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인권의 거리가 왜 그러한지 발표한다.

정리 내용

시설 내 여러 가지 규칙이 인권친화적인지에 대해서 짚어본다. 공동생활에서 정해진 규칙들은 어떠한 민주적 논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정해진 규칙들은 인권의 기준으로 점검되고 있는지,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짚어본다. 인권친화적 거주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각종 규칙이며, 이 규칙들이 이용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본다.

❖교재 내 함께 볼 부분

- II. 장애인과 인권 3. 인권 기반 장애인복지 실천
- IV.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2.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3) 존엄할 권리 구성하기

❖ **활동 목표** |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용인에게 필요한 존엄할 권리가 무엇인지 작성한다.

❖ **활동 개요** | 참여 인원 : 30 내외

소요 시간 : 2시간 20분

참여 구성 : 5개 모둠

준 비 물 : A4종이 참가자 각1장씩, 전지 각 모듬에 1장씩, 매직 10개,

크레파스 6세트, 화이트보드, 스키타이프, 빔프로젝트, 노트북

❖ 활동 과정 개요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 교육 소개 몸 풀기 마음열기 | 20분 |
| 전개 | <p>활동 1. 나는 존엄한가?</p> <p>참가자들이 자신의 존재가 존엄하다는 것을 느낀 경험을 각자 A4지에 적어 화이트보드에 붙인다. 진행자는 붙인 내용을 읽으면서 유사한 내용끼리 묶는다. 유사한 내용 몇 가지로 구분한 후,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때가 언제인지 정리한다.</p> | 30분 |
| | 휴식 | 10분 |
| | <p>활동 2. 이용인의 존엄할 권리 구성하기</p> <p>모듬별로 예시로 제시한 '영국의 장애인 인권보장 가이드(본 보고서의 부록1, 참조)' 내용을 읽고, 여기에 시설 이용인이 존엄함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이 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각 토론된 내용을 추가해 '한국 장애인시설 이용인의 존엄할 권리'를 구성해 본다. 각 모듬이 나와서 자기 모듬에서 작성한 내용을 발표한다.</p> | 40분 |

| | |
|-------------|-----|
| 정리 강연 | 25분 |
|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15분 |

❖ 세부 활동 내용

활동 2. 나는 존엄하냐?

진행 방법

- 01 - 전체 참여자들이 자신이 존엄하다고 느낀 경험 한 가지씩을 A4 한 장에 적도록 한다.
 예) 내 의견을 잘 경청해주었을 때
 나를 무시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지지받았을 때
- 02 - 각자가 쓴 내용을 앞 화이트보드에 붙인다.
- 03 - 진행자는 나온 내용을 읽으면서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본다.
 예) 남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 나를 소중하게 여겨줬을 때 /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 가족들의 사랑을 느낄 때 등
- 04 - 유사한 내용 중에 하나씩을 뽑아 적은 사람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듣는다.
- 05 -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존엄함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를 짚어본다.

정리 내용

누구든지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존재 그 자체로도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며, 각자의 존엄함을 서로가 인정하는 문화가 인권의 바탕이 됨을 확인한다.

활동 2. 이용인의 존엄할 권리 구성하기

진행 방법

- 01 _ 각 모둠에게 '영국의 장애인 인권보장 가이드'를 나눠주고 모둠별로 읽는다.
- 02 _ 영국의 가이드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면 각 시설의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충한다.
- 03 _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존엄함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토론한다.
- 04 _ 토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존엄할 권리 목록'을 작성해 본다.
- 05 _ 모둠별로 영국 가이드에 빠진 부분과 존엄할 권리 목록을 발표한다.

정리 내용

직원과 이용인 모두에게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존엄할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변화하거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4) 우리 안의 의사소통 문화는?

❖ **활동 목표** | 이용인과 이용인, 이용인과 종사자간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한 동등한 관계 나눔을 살펴본다.

❖ **활동 개요** | 참여 인원 : 30명 내외

소요 시간 : 2시간 20분

참여 구성 : 5개 모둠

준비물 : 골뱅이 그림 30매, 사인펜 30개, 화이트보드, 노트북

❖ 활동 과정 개요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 교육 소개 몸 풀기 마음열기 | 15분 |
| 전개 | 활동 1. 길 따라 삼천리 참여자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골뱅이 그림을 따라 A에서 B까지 길을 만들어 간다. 이때 참여자는 한 번은 안내자 역할을 한 번은 여행자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 답답하고 어떤 경우 수월했는지 그 느낌을 나눈다. | 40분 |
| | 휴식 | 10분 |
| | 활동 2. 우리 안의 평등한 의사소통 모둠별로 '종사자' 또는 '이용인'을 고른다. 종사자나 이용인을 고른 모둠은 각각의 입장에서 힘나는 말과 행동 / 힘 빠지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토론한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 40분 |
| | 정리 강연 | 20분 |
| |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15분 |

❖ 세부 활동 내용

활동 1. 길 따라 삼천리

진행 방법

- 01 _ 참여자들은 1인 1조로 짝을 구성해 앉는다.
- 02 _ 참여자 각각 한 장씩 골뱅이 그림을 받고 여행자와 안내자를 정한다.
- 03 _ 여행자는 눈을 감고, 안내자의 길 안내를 받아 골뱅이 그림 속 A에서 B까지 길을 만들어 간다.
- 04 _ 여행자와 안내자를 바꿔서 한 번 더 진행한다.
- 05 _ 교육 진행자는 안내자와 여행자 모두를 경험한 참여자에게 소감을 물어본다.
- 06 _ 여행자에게는 어떤 경우에 길을 가기 쉬웠는지 혹은 답답했는지를, 안내자에게는 어떤 때 상대방이 길을 잘 갔는지 어떤 경우 답답했는지를 물어보고 몇 명 그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그림 5〉 길 따라 삼천리 프로그램을 위한 골뱅이 그림

- 예) 안내자가 어떤 기준으로 방향을 설명하는지 잘 몰랐을 때 답답했다.
안내자가 내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고 화를 내고 큰 소리쳤을 때 불안했다.
안내자가 길을 잘 가고 있다고 계속 칭찬해주었을 때 믿음이 갔다.
여행자가 내 말과 다르게 맘대로 길을 갈 때 답답했다.
여행자가 내 말을 믿고 길을 갈 때 힘이 났다.

정리 내용

맞은편에 앉은 여행자와 안내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행자의 왼쪽과 안내자의 왼쪽은 서로 반대편이다. 서로 사전에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을 논의하지 않으면 길을 찾는 동안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오해와 갈등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상기하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서로 칭찬하고 믿고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중요한 요소임을 살펴본다.

활동 2. 평등한 의사소통 문화 만들기

진행 방법

01. 모둠별로 '종사자'와 '이용인' 중 어떤 입장에서 작성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02. 종사자로 결정한 모둠은 종사자의 입장에서 시설 이용인, 종사자, 원장(또는 운영책임자)에게 들은 힘나는 말과 행동, 힘 빠지는 말과 행동을 적어본다.
03. 이용인으로 결정한 모둠도 마찬가지로 이용인의 입장에서 시설 이용인, 종사자, 원장(또는 운영책임자)에게 들은 힘나는 말과 행동 · 힘 빠지는 말과 행동을 적어본다.

예) 이용인 입장

| | 힘나는 말과 행동 | 힘 빠지는 말과 행동 |
|--------------|----------------------|--------------------------------|
| 시설이용인 | 함께 있어서 참 좋다 | 너나 잘해 |
| 종사자 | 잘했어요 토닥토닥 해주기 |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하지 마, 나가지 마 |
| 원장(또는 운영책임자) |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 너 자꾸 그러면 쫓아낸다 |

04. 각 모둠이 작성한 내용을 모둠별로 나와서 작성한다.

정리 내용

종사자의 입장에서, 또는 이용인의 입장에서 각각의 관계에 따라 어떠한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지지가 되는지, 또는 힘을 빠지게 하는지 짚어본다. 각 조직이 가진 언어 습관과 문화가 서로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본다.

❖교재 내 함께 볼 부분

- II. 장애인과 인권 3.인권기반 장애인복지 실천
- IV.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5) 인생곡선 그리기

❖ **활동 목표** |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시설 이용인의 거리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보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짚어본다.

❖ **활동 개요** | 참여 인원 : 30명 내외

소요 시간 : 2시간 30분

참여 구성 : 5개 모둠

준비물 : 전지 5장, 매직 10개, 크레파스 5세트, 화이트보드, 스키타이프, 빔프로젝트, 노트북

❖ 활동 과정 개요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 교육 소개 몸 풀기 마음열기 | 15분 |
| 전개 | <p>활동 1. 대한민국 표준?</p> <p>현재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의 기준을 골라낸다. 참여자 각자 5, 6개 정도의 기준을 적어낸다. 적어낸 기준을 짚막하게 소개하고 칠판에 붙이면서 범주화한다.</p> | 20분 |
| | <p>활동 2. 대한민국 표준 인생곡선 VS 시설 이용인 인생곡선</p> <p>활동 1에서 골라낸 대한민국 표준에 근거한 가상의 인물 '가'씨를 두고 인생 곡선을 그린다. 생애주기별로 주요하게 경험했을 것들과 주요 활동 공간 등을 짚어가면서 인생곡선을 그린다. 그리고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실존 인물인 '나'씨의 인생곡선을 그린다. '가'씨와 '나'씨의 인생곡선을 비교해보면서 삶의 차이와 그 이유를 살펴본다.</p> | 80분 |
| | 정리 강연 | 30분 |
| |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15분 |

❖ 세부 활동 내용

활동 1. 대한민국 표준?

진행 방법

- 01 - 참여자마다 A4용지 반 장짜리 10장씩을 나눠주고 대한민국 표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준을 찾아 쓰게 한다. (5, 6개 정도)
 예) 한국 국적, 대학교 졸업, 직장,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결혼, 이성애자 등
- 02 - 참여자들이 적은 기준을 모아서 칠판에 붙이면서 범주화한다.

정리 내용

범주화할 때 각 기준에 대한 속성을 설명한다. 이 기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 차별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특히 장애는 이 기준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살펴본다.

활동 2. 인생곡선 그려보기

진행 방법

- 01 - 모둠별로 활동 1에서 골라낸 대한민국 표준을 근거로 가상의 인물 '가'씨를 설정한다.
 예) **전자에서 일하는 40대 남성 '가'씨
- 02 - 모둠별로 전지에 '가'씨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삶을 주요한 사건과 활동 공간을 적은 인생 곡선을 만들어본다.
- 03 -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실존 인물 '나'씨의 인생곡선을 그린다.
- 04 - 모둠별로 나와서 '가'씨와 '나'씨의 인생 곡선의 차이점을 발표하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본다.

정리 내용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시설 이용인 간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런 삶의 형태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설에서의 삶이 그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한다. 제한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이 아닌 대한민국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자립'이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본다.

❖교재 내 함께 볼 부분

- II.장애인과 인권 1.이론적 근거
- IV.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2.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3]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 IV.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라. 종사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1)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권

❖활동 목표 |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기대되는 역할 중 종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역할을 찾아보고, 그 의미와 이유를 살펴본다.

: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신의 노동권에 대해서 알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찾아본다.

❖활동 개요 | 참여 인원 : 30명 내외

소요 시간 : 3시간

참여 구성 : 5개 모둠

준비물 : 두 가지 색 포스트잇, 전지 5장, 매직 10개, 크레파스 5세트,
화이트보드, 스키타이프, 빔프로젝트, 노트북

❖ 활동 과정 개요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 교육 소개 몸 풀기 마음열기 | 15분 |
| 전개 | <p>활동 1. 남이 아는 사회복지사, 내가 아는 사회복지사</p> <p>일하는 곳, 주변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와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비교해보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함께 정리해본다.</p> | 30분 |
| | 휴식 | 10분 |
| | <p>활동 2. 노동할만한 직장 인권 지도 그리기</p> <p>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기 위해 시설의 곳곳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바뀌면 좋을지 찾아본다.</p> | 80분 |
| | 정리 강연 | 30분 |
| |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15분 |

활동 1. 남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

진행 방법

- 01 _ 참여자들에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포스트잇을 2장씩 나눠준다.
- 02 _ 한 종류의 포스트잇에는 “남이 아는 사회복지사는 000이다”, 또 다른 포스트잇에는 “내가 아는 사회복지사는 000이다”에 000을 써본다.
예) 남이 아는 사회복지사는 착한 사람이다
내가 아는 사회복지사는 만능인이 되어야 한다
- 03 _ 참여자들이 적은 종이를 화이트보드 등에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붙인 후 ‘사회복지사다움’이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를 나눠본다.

정리 내용

‘여/남성, 교사, 학생·청소년’ 등 ‘~~다움’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사람들의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 예를 들어 ‘여성다움’은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여성에게 강하게 요구되나? ‘여성답지’ 않은 여성이 받는 비난은 무엇일까? 여성이 ‘여성답지’ 않을 경우 ‘여성다움’을 요구하는 개인, 집단, 사회가 받는 도전은 무엇일까? ‘여성다움’이라는 기준은 당연한 것일까? 등의 질문과 함께 각자의 삶에서 요구되었던 ‘~~다움’을 살펴본다.

‘~~다움’이라는 조건 아래 검열과 통제를 받거나, ‘닥치고 00하기’를 요구받아도 되는 당연한 존재가 있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프로그램에서 정리된 ‘사회복지사다움’을 살펴봄여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각자의 경험들을 나눠본다.

활동 2. 노동할만한 직장 인권지도 그리기

진행 방법

- 01 _ 전체가 함께 시설 내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예) 임신을 한 생활재활교사, 입사 1년차 직원 등
- 02 _ 모둠별로 시설 안의 다양한 공간을 전지에 그려본다.
- 03 _ 각각의 공간에서 시설 내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기 위해 보장되면 좋을 것들과 달라지면 좋을 것들을 적거나 그려본다.
- 04 _ 모둠별로 발표를 해보고 인권의 가치에 비춰 함께 논의해본다.

정리 내용

노동권의 기본적인 구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노동자들의 사례를 확인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노동할 수 있기 위해 시설 내에서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내는 것은 권리이며 동시에 인권 실천의 한 부분임을 확인한다.

더불어 발표된 내용 속에 성별, 학력, 고용 형태 등으로 나타나는 소수성을 짚고, 이로 인한 차별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를 멈추기 위해 시설 내 어떤 부분을 채우고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본다.

❖교재 내 함께 볼 부분

- II. 장애인과 인권 1.이론적 근거
- IV.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참고 자료

- (영상) 지식채널e, <단 하루>

2) 일하는 사람에게도 민주적 시설을 위해

❖활동 목표 | 조직 내 평등한 관계와 민주적인 소통을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

❖활동 개요 | 참여 인원 : 30명 내외

소요 시간 : 3시간

참여 구성 : 5개 모둠

준비물 : 두 가지 색 포스트잇, 전지 8장, 매직 10개, 크레파스 5세트,

화이트보드, 스티커테이프, 빔프로젝트, 노트북



❖ 활동 과정 개요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 <p>교육 소개</p> <p>몸 풀기 마음열기 - 내가 불리고 싶은 별칭으로 소개하기</p> <p>시작 전에 이름표에 자신이 불리고 싶은 별칭을 쓴 후, “△△△을 최고로 잘하는 □□□입니다”라고 서로 소개한 후 ‘직급’을 빼고 별칭으로 부르자고 제안한다.</p> | 20분 |
| 전개 | <p>활동 1. 우리 시설 안에 피라미드가 있다!</p> <p>시설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부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순간을 확인해보고 이를 바꿔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찾아본다.</p> | 50분 |
| | 휴식 | 10분 |
| | <p>활동 2. 민주적인 관계를 위한 고민보따리 풀어내기</p> <p>활동 1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시설 내 관계와 조직 운영을 위한 실천에 대해 논의해본다.</p> | 60분 |
| | 정리 강연 | 25분 |
| |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15분 |

❖ 세부 활동 내용

활동 1. 우리 시설 안에 피라미드가 있다!

진행 방법

- 01 - 전체 참여자들과 시설 내 다양한 구성원을 칠판 등에 적어본다.
예) 종사자, 원장, 장애인 등
- 02 - 앞서 정리된 구성원을 세분화해 정리한다.
예) 학생 = 여/남학생, 성소수자학생, 이주가정학생, 장애여학생 등
- 03 - 정리된 구성원들을 시설 안에서의 권력 크기를 고려해 순서대로 나열해보고 권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을 피라미드의 맨 위에 놓는 방식으로 전지에 도식화해본다.
- 04 - 도식화할 때 위의 구성원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장면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등의 꼭지로 간단한 이유를 피라미드 옆에 적으며 정리한다.
- 05 - 모둠별로 발표해보고 정리한다.

정리 내용

각자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가능해보며, '나이가 어리니까, 경력이 적으니까, 학력이 낮으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여자니까' 등의 이유로 조직의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와 일상에서의 차별이 합리화되는 장면을 함께 확인한다.

그리고 그 기준이 인권의 가치에 비추어 정당한지, 오히려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은 아닌지 이야기를 나눠본다.

피라미드의 각 구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조직과 개인들이 바꾸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활동 2. 민주적인 관계를 위한 고민보따리 풀기!

진행 방법

- 01 - 참여자들에게 서로 다른 포스트 잇 2장씩 나눠준다.
- 02 - 앞서 활동 1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시설 내 관계와 조직 운영'을 위해

서 한 종류의 포스트잇에는 우리 시설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적고, 또 다른 포스트잇에는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적어본다.

03 _ 참여자들이 적은 종이를 종류별로 비슷한 것끼리 묶고 인권의 가치에 비추어 각 항목이 적절한지 함께 확인한다.

04 _ 이후 모둠별로 전지 반장에 정리된 것들 중 시설과 내가 실천할 것들을 3가지씩 뽑아보고, 동의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모둠 내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항목과 그 이유를 함께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민주적인 시설 내 관계와 조직 운영을 위해

| 〈시설에 꼭 있어야 할 것 3가지〉 |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 3가지〉 |
|---------------------|---------------------|
| 1. | 1. |
| 2. | 2. |
| 3. | 3. |

그러나 '이 항목은 이해가 안 돼 저게 왜 필요해?' 인 항목과 이유
〈시설에 꼭 있어야 할 것〉의 □ □ □

05 _ 모둠이 정리한 내용을 벽면에 모두 붙이고 모둠 간 서로 부딪히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전체 토론을 통해 정리한다.

06 _ 모둠에서 뽑은 시설과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많이 나온 쪽지를 우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모아본다.

07 _ 〈시설에 꼭 있어야 할 것〉 리스트를 시설의 어떤 자리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합의할지 함께 정하고, 참여자 자신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스스로 다짐해 보도록 한다.

정리 내용

결과를 통해 시설 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비어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진행자는 발표 자료를 통해 참여자들이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해 바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짚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발표 후 조직 내 평등한 권력관계를 위해 각 개인의 용기와 실천의 중요성과 함께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다는 지지와 격려의 시간을 갖는다. 내용 중 '소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올 경우, 조직 내 관계의 문제를 '소통'의 부재로 모든 원인을 삼는 것의 위험과 진정한 '소통'은 평등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성에 대한 지점을 살핀다.

❖교재 내 함께 볼 부분

- II. 장애인과 인권 1.이론적 근거
- IV.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2.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라.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 IV.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참고문헌 · 부록

참고문헌

- 김정기·송정문·최복천. 2012. 『경상남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삶과 욕구』
- 곽병은. 2006.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생활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2005.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 국가인권위원회. 2005. 『법령자료질의회신집』.
- 국가인권위원회. 2013. 『2013년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3. 『2013년 노인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 권영성. 2008. 헌법학원론. 법문사.
- 거다 러너(Gerda Lerner). 2006. 『왜 여성사인가?』 강정하 옮김. 푸른역사.
- 계획열. 2004. 『헌법학(중)』. 박영사.
- 김경혜 외. 2009.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지원 학술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근식, 권민숙. 2008. 『정신적장애인의 선거권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 김도현. 2012.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과제와 방향”. 『진보평론』.
- 김동기. 2009.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효과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제21호: 59-92.
- 김도균. 2008. 『권리의 문법』. 박영사.
-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 김명연. 2006.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에 대한 성과와 과제”. 『공법연구』 35(2-2): 109-134.
- 김명연. 2011.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45: 149-178.
- 김문근 등. 2011. 『통합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발연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미옥 외. 2013.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딜레마(문제점) 사례연구』.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민아·이익섭. 2007. “지체장애인의 신체기능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지각된 자립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김용득. 2008. “2007 성공회대학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성과 발표회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용득 · 김진우 · 유동철. 2007.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복지.
- 김용득 등. 2009.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정열. 2003. “편견의 법제와 장애인 수용시설의 현실”.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
- 김주현. 1996. “자기결정권과 제한”. 『헌법논총』 제7집, 헌법재판소.
- 김종해 외. 2013.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자료집』
- 김진우. 2008. “지적장애인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제35호.
- 김진우. 2010.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이론적 비교 연구”. 『사회복지연구』 41(1): 39-63.
- 나아장애인권교육센터. 2012. “장애인권교육 매뉴얼”
- 남구현 · 박숙경 · 김명연 · 임성만 · 박경석 · 박래군 외. 2005.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양성화된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남찬섭 · 김동기 · 남병준 · 박숙경 · 이도엽 · 임성택. 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노금호. 2011.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과제: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95: 41-64.
- 노연희 · 이용표 · 박경수. 2006. 『사회복지시설 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대구경북연구원. 2012.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연구』, 대구광역시.
- 동성애자인권연대. 2013.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 류은숙. 2008. 『인권오름 제125호』
- 류은숙. 2012.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인권오름』 2012.9.12.
- 린헌트. 2009. 『인권의 발명』, 전진성 옮김, 돌베개.
- 린링거, G.V. 1991.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옮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울아카데미.
- 민병로. 2012.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
- 박경석. 2013.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 ‘시혜’에서 ‘권리’의 시대로 변화”. 『장애인권리보

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 박경수 외. 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박경수 외. 2012. 『인권지킴이단 운영방안 및 이용자 인권보장 상황점검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박병식 등. 2008.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정책평가원.
- 박상진. 2012. 『사회복지시설의 노무관리』
- 박숙경 · 류은숙 · 이형남. 2011. 『장애인인권향상가이드북』, 서울복지재단.
- 박숙경. 2005. “장애와인권”, 『인권법』, 인권법편집위원회.
- 박숙경. 2009.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인권리보장 방안” 『인권법평론』 창간호, 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
- 박숙경. 2013. “장애인복지법제 개선방안”, 『맞춤형 복지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유럽헌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박태영. 2000.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 박형진. 2012. “배제와 포함의 복지정치: 장애인 생활시설과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글로벌사회복지연구』 제2권 제1호.
- 배용호. 20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법률, 그 비판과 전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변용찬. 2005. “한국의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및 발전방안”, 『장봉혜림재활원 개원 20주년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 변용찬 · 이성영 · 이상현. 1996.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6.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보건복지부. 2007. 2011.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보건복지부. 2013. 『제Ⅲ 권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부산복지개발원. 2009. 『부산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부산광역시.
-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2013. 『나, 여기 있어!』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3.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기본) 제1워크숍 자료집』.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3. 『201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강사 양성 심화과정 교육자료집』.

- 사회복지법인오순절평화의마을인권침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13. 『오순절 평화의 마을 증언대회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 본질을 말한다”』
- 서미경 · 김재훈 · 이진향. 2008.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29: 330-367.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08.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 성낙인. 2012. 『헌법학』. 법문사.
- 안경환. 2004.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 양난주. 2011. “사회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정부-민간기관-이용자 관계의 전근대적 측면과 대안적 서비스 체계의 모색: 권리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기초를 중심으로”. 2011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양옥경. 2004.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나눔의집.
- 오혜경. 2006.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의 제한”. 『인간연구』 제11호.
- 우주형. 2011.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법제연구』 제41호.
- 유동철. 2003. “탈시설화를 위한 변명”. 『장애와 사회』창간호: 34-50.
- 유동철. 2011. “장애인 생활시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 『상황과 복지』31: 47-83.
- 유동철. 2013.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학지사.
- 이상영 · 김도균. 2011.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승기 등. 2012.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지원시스템 해외사례 및 시사점 연구』. 보건복지부보고서.
- 이정환 · 변보기 · 노병일. 2002. 『장애인복지론』
- 이준일. 2007.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준일. 2010.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 이태수. 2003. “한국의 아동복지와 탈시설화”. 『장애와 사회』창간호: 81-99.
- 이효선. 2010.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 인권교육센터 들. 2008. 『인권교육 고개넘기』
- 故 임성만. 2013. 『한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미래』
- 임성택. 201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송경과와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 ‘복지서비스 신청권을 7년간의 잠에서 깨우는’ 국민청구권으로서의 복지서비스 신청권

실질화를 위한 대토론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탈시설정책위원회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0. 『장애인 법률, 그 비판과 전망』.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소, 2010.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 광주광역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8. 『인권이 꽃피는 사회복지 현장 만들기』.
- 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외, 2010. 『장애인인권교육매뉴얼』
- 전광석, 2005.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 전광석, 2013. “사회적 기본권의 논의구조”, 『맞춤형 복지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유럽헌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전광석 외, 2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연구』, 보건복지부.
- 정원오 외, 2012.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기본 교재』
- 제라드 쿤, 테레지아 데게너 외, 2005. 『인권과 장애』, UN인권고등판무국 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옮김 및 발간.
- 조순경 외, 2002. “차이의 신화와 차별의 현실”, 『차별과 인권』, 한국인권재단.
- 조한진 외, 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조형석,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 집아이프, 2001.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김형식 · 여지영 옮김, 인간과복지.
- 차선자, 2005. “장애여성의 차별과 인권보호: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민사법연구』 제13집 제2호.
- 최정기, 2005. 『감금의 정치』, 책세상.
- 통계청, “2013년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3. 12. 4. <http://kostat.go.kr>. 검색일: 2013. 12. 15.
- 홍완식, 2005.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9집.

-
- Braddock, D.L. & S.L. Parish. 2001. "An Institutional History of Disability". in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edited by G.L. Albrecht. Sage Publication.
 - Dolgoff, R., Lowenberg, F. M., & Harrington, D. 2005. *Ethical Decis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7th eds.) Thomson & Brooks/ Cole.
 - Felix, R.H. 1957. "Evolution of Community Mental Health Concep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13.
 - Flix Welti. 2005. *Behinderung und Rehabilitation im sozialen Rechtsstaat*. Mohr Siebeck.
 - Green Wood. E. 1957.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3): 45-55.
 - Held, V. 2006.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New York: Routledge.
 - Kittay, E.F.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 Reamer, F. G. 1995. *Social work Values & Eth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obert Alexy. 2008. 이준일 옮김, 『기본권이론』, 한길사.
 - Scull, A. 1991. "Psychiatry and Social Control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History of Psychiatry*.
 - <http://www.hr-oreum.net/article.php?id=995>

-
- 田中成明. 1994. 『法理學講義』, 有斐閣.
 - 清正寛 · 良永彌太郎. 2003. 『社會保障法』, 中央經濟史.
 - 平田厚. 2003. 『知的障害者の自己決定權』, エソバウメト研究所.

참고 자료

도서

- 위선주 외. 2011.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 운영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 고기복 외. 2011.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 구정화 외. 2012.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 김양현 외. 2005.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초등학교인권교육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 이해주 외. 2007.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중학교인권교육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 이인규 외. 2007. 『사람이 곧 하늘이다(고등학교인권교육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영상

- 국가인권위원회, 『여섯 개의 시선』
- 국가인권위원회, 『별별 이야기』
- 다큐인, 『버스를 타자』
- 장애여성공감·여성영상집단 움, 『거북이 시스터즈』
- 장애인소리, 『지렁이 꿈틀(선철규의자립이야기)』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이동할 권리』
- 지식채널e, 『단 하루』
- 지식채널e, 『모든 사람 1부 - 최소한의 목록』
- 지식채널e, 『모든 사람 2부 - 차별의 발견』
- 지식채널e, 『미국의 이상 - 헬렌켈러』
- 지식채널e, 『산 좋고 물 좋은 곳』

부록 1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급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1. 형사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

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록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2006. 12. 13/발효일 2008. 5. 3/당사국 수 95/대한민국 적용일 2009. 1. 10¹²⁵⁾

이 협약의 당사국은,

-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125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동 협약을 검토한 후 동 협약 제25조미호의 생명보호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동 협약을 비준한다.

-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민족·토착지역·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 대하여 우려하며,
-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 쳐.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담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나. 비차별
-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 마. 기회의 균등
- 바. 접근성
-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권리에 대한 존중

제4조 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행하는 것을 삼가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비용만을 요하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의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 사. 적절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주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 통신기술, 이동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고, 그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 아.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가능한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

- 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인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인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인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인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로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검토를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할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 라. 특히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 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26조 가할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할·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강화 및 확대한다.
 -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강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자할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자할과 재활에 관련되고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 가능성, 숙지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 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조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지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1.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년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 1)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 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

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 라. 적절한 경우,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과,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

- 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이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규 선거시에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와 함

- 께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한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게 전달한다.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각 기구들의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40조 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41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42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3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4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46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7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 중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이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부터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48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50조 정보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보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부록 3

당신의 인권: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 (THE BRITISH INSTITUTE OF HUMAN RIGHTS)

Section 2 인권과 장애인: pp13-32¹²⁶
경미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 보고서(영국 사례)

어떤 인권이 장애인에게 중요한가?

European convention에 보호된 모든 인권 조항이 장애인에게 중요하지만 이 가이드는 가장 사용 빈도수가 높은 4가지 인권 조항에 집중한다.

1.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비인간적으로 대우 받지 않을 권리, 하대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가정생활, 집과 서신내용 (correspondence)을 존중 받을 권리
3. 삶의 권리 (right to life)
4. European Convention에 나와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이 권리들은 장애인에게 중요한 여러 이슈를 부각시킨다. 그 이슈들은 밑에 서술되어 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중요함은 이 이슈들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The Human Rights Act는 아직 상대적으로 새로운 법이며, 여러 삶의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힘을 실어줄(empower) 큰 잠재력이 있다.

1. 비인간적이게 대우 받지 않을 권리, 하대 받지 않을 권리 (Degrading Treatment)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제 3 조항은 그 누구도 고문 받거나, 비인간적으로 대우 받거나, 하대 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권리는 절대적인 권

126 이 내용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인턴 한예슬님께서 번역해 준 것임.

리이다. 그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고문 받거나, 비인간적으로 대우 받거나, 하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권리는 위배되거나, 제한되거나, 제지될 수 없다. (limited or restricted)

제3 항은 단순히 고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비인간적으로 대우 받거나 하대 받지 않을 권리는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 비인간적인 대우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대우를 뜻한다.
- 하대는 심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대우를 뜻한다.

장애인이 비인간적인 대우나 하대를 받는 상황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매우 심각한 학대(ill treatment)의 경우에만 이 권리에 포함된다. 어떠한 대우의 심각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상황의 특수한 요건들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의 나이, 성별, 건강의 상태, 그리고 그 대우에 처해졌던 기간 등의 요소들이 고려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들겠다. 연약하고 늙은 사람이 24시간 동안 먹거나 마시는 것을 금지 당한 상황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은 것과 다르다. 물론, 두 가지 상황 모두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늙고 연약한 사람이 이 처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권리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이다. (right to human dignity) 장애인에게 이 권리는 많은 상황에서 중요하다.

학대와 방관

요양시설, 병원, 방문 돌봄 서비스 등에서의 학대와 방관은 어떤 경우에는 비인간적으로 대우 받지 않을 권리, 하대 받지 않을 권리들을 위배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행위

당신을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오물에 방치하는 것, 당신을 적절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 앞에 노출시켜서 씻기는 일, 당신이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음식만 주고 먹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일 등은 비인간적인 대우나 하대로 해석될 만큼 심각할 수 있다. 이런 개개의 상황은, 당신의 특수한 상황과 요건들에 대해 좌우된다. 여기에는 이 처우나 대우가 당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포함된다. 만약 당신이 비인간적으로 대우 받았는지, 혹은 하대 받았는지에 대해 분명치 않다면, 경험이 많은 상담사와 이

야기 할 수 있다. (상담소의 연락처는 가이드 끝에 나온다.)

비인간적인 대우나 하대로 판명될 수 있는 사례들은 다음의 상황들을 포함한다.

- 침구 (혹은 침대 시트)를 바꾸지 않는 것
- 욕창이 생기게끔 방치하는 것
- 당신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도한 힘
- 당신의 도움요청을 통상적으로 무시하는 일
- 당신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당신을 씻기거나 옷을 입히는 일
- 이동식 번기에 묶어놓고 식사를 시키는 일
- 학대적인 대우 (욕도 포함 하는 듯 abusive treatment)
- 다른 종류의 나쁜 대우들

사례 휠체어를 타는 장애 여성이 채권 회수 절차 중 7일 동안 구속되었다.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추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올라갈 수도 없었고, 스스로 씻거나 용변을 볼 수도 없었다. 법원은 이런 상황들을 하대 받은 대우라고 해석했다.

비인간적인 대우나 하대는 부적절한·충분하지 않은 보살핌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용변을 보거나 씻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담당자들이 이러한 도움을 당신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오물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면,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받거나 불편한 상황에 처했던 것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는 비인간적인 대우나 하대로 해석될 수 있다.

사례 움직이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자매가 부모와 함께 특수하게 개조 (ADAPT)된 집에 살고 있었다. 관할 구역의 정책은 손으로 사람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이 금지는 법원에 제소(CHALLENGE)되었다. 법원은 손으로 사람을 들어 올리는 모든 행위를 금지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기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왜냐하면, 완전한 금지는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두 여인이 스스로의 오물에 방치되거나, 화장실에서 장시간 동안 꼼짝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비인간적이거나 하대 받는 대우일 수 있다. 판사는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육체적인, 혹은 다른 종류의 제압(restraint)은, 경우에 따라서, 비인간적이거나 하대 받는 대우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을 의자에 묶어 놓고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것 이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약을 투입해 진정(sedated)시키는 것 이 포함된다. 하지만 제압은 그 자체만으로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대우가 비인간적인 대우나 하대로 해석될 만큼 심각한지의 여부는 당신의 특수한 상황적 요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돌봄 · 서비스(CARE) 중의 상태

요양시설, 병원, 그리고 다른 시설 등의 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 예를 들어, 환자를 초과 수용한 것 (overcrowding), 환기시설의 부재, 사생활을 주지 않는 것, 불충분한 위생 시설 등이 비인간적이거나 하대 받는 대우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 담당자가 행동하지 않았을 때

정부 담당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아닌 개인이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이라도, 경우에 따라 당신을 비인간적인 대우나 하대에서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공공기관이 당신의 친지나 친구가 당신을 학대(abuse)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들은 Human Rights Act에 의해 당신을 위해 개입하거나 사건을 수사할 의무가 있다. 만약 당신이 비인간적인 대우나 하대에 노출된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당신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못한 행위가 당신이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일 수도 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의 장소에서 학대나 방관의 증거가 있을 때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당신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거나 하대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당신을 그런 대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지가 당신을 방문하면서 그런 일을 저지를 때에도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이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당신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거나 하대 받은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2. 사생활과 가정생활, 집과 서신을 존중 받을 권리

European Convention의 8항은 사생활과 가정생활, 집과 서신, 등을 존중 받을 권리를 보호

한다. 그리고 이 조항은, 어떤 경우에,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 권리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한적인 권리(qualified right)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혹은 더 큰 사회의 권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생활, 가정생활, 집과 서신을 존중 받을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반드시 정당해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하며, 필요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상응해야 한다(proportionate). 비례의 원칙(proportionate)에 대해서 생각하는 간단한 방법은 작은 콩에 금을 내기 위해서 큰 쇠망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비례의 원칙에 맞게 어떤 권리를 제한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 그 제한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간주한다.

비례의 원칙

어떤 일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 다른 덜 극단적인 대안적인 방법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가능했는지의 여부다.

예를 들어, 관할 관청이 어머니가 아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아들을 어머니로부터 분리한 경우, 그리고 또 어머니가 아들과 아무런 소통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담당자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가족을 도와주는 일이나 감독하기 위한 방문과 같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정당하고 비례에 맞게 당신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을 학대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 아들과 어머니를 분리시키는 일은 정당하다. 이것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적당한 반응이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 외에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신의 권리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추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혹은 당신의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가정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정생활은 대략적으로 가깝고 사적인 관계의 가족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단순히 혈족만을 뜻하지 않는다. 가정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에는 가족과 함께 살 권리, 그리고 그것 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과 정기적인 접촉을 가질 권리가 포함된다.

당신이 당신의 파트너, 아이,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과 분리 될 위험에 처했을 때나 그들과 제한된 연락만을 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의 가정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는 중요해진다. 정부는 당신의 가정생활에 개입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 행동 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 - 이를테면 당신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최대한의 접촉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안 - 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 담당자는 그들의 행동이 합법이며, 필수이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사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 여성이 EXTENSIVE CARE PACKAGE를 통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돌봄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지역에 있는 PRIMARY CARE TRUST 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설이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녀를 시설에 배치하기를 원했다. 법원은 PCT의 결정이 장애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PCT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PTC는 장애여성이 가정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나 그녀가 가족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향상될 삶의 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원은 PTC에게 장애여성의 가정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를 고려하여 다시 결정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때로 정부 담당자들은 일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당신의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것은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장애인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이거나 금전적인 자원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또 장애인이 시설에서가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적당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례 독일에 사는 한 커플은 각각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두 아이가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몇 년이 지나서 법원이 부모가 아이를 기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켰다. 하지만 아이들이 방관되거나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아이들은 결국 분리되고 위탁(FOSTER) 되었고, 부모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 사례에서 장애인이 가정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가족의 분리는 비례의 원칙에 상응하지 않았으며, 관계자들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교육적 금전적 보조를 할 수 있었다.

사적인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PRIVATE LIFE)

포괄적으로 사적인 생활(private life)은 단순한 사생활(privacy) 넘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당신의 개인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당신이 원하는 데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권리
- 사회나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당신의 사적인 생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당신의 사적 생활의 일부인 개인적인 정보를 비밀로 할 수 있는 권리

사적인 생활: 개인적인 선택과 존엄

당신의 사적인 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는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포함한다.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당신의 사생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문화, 언어생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권리는 당신이 삶에 대한 선택을 내릴 때와 당신이 받는 대우와 관련이 있다. 특별히 관련이 있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 **당신의 몸과 관련한 사생활:** 누가 당신의 몸을 보거나 만지는 것은 당신의 사적인 상황과 당신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을 바쁜 병동에 옷을 벗긴 상태로 놔두는 일, 당신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다른 성의 사람이 당신의 옷을 입히거나 씻기는 일 등이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다.
- **개인적, 혹은 성적인 관계:** 당신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는데 있어 이 권리는 중요하다. 여기서 관계는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다. 시설에서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포괄적인 규정(blanket policy)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 **지역사회에 참여:** 만약 당신이 지역 사회의 일에 참여 하지 못하거나, 중요한·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혹은 여가 유흥의 활동에 접근할 수 없다면 당신의 권리가 침해 받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day care center에서 당신의 이동이나 다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신을 소풍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은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예로는, 지역정부 담당자가

학교 버스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아서 장애 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권리를 침해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사례 지역 정부 담당자가 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을 도와 장애인들이 주점이나 클럽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계획을 세웠다. 게이 남성이 보조인에게 게이 주점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활동계획의 매니저는 자신의 직원들이 게이를 위한 장소(GAY VENUE)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이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은 그 남성의 사적인 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 수 있다.

- **낙태:** 당신은 당신이 아이를 가질지 말지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임신했다면, 당신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의료진은 당신에게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낙태를 강요할 수 없다.
- **치료에 관한 결정:**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당신은 치료 받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는 어떤 치료를 받을지를 선택할 권리는 없을 수도 있다.) 이는 Mental Health Act에 의해 의무적으로 · 강제적으로 (compulsorily) 치료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담당자는 당신의 욕구와 필요를 가장 중심으로 고려하여 당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보조는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정부 담당자가 당신의 사적인 생활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개입한다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제적 자원에 대해서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진행 할 수 없다. 모든 행동은 합법이고, 필요하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사례 앞서 441페이지에 언급된 자매의 사건에서 손으로 들어 올리는 행동에 대한 완전한 금지는 사적인 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금지령은 그녀들이 쇼핑이나 수영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생활을 할 권리는 사적인 생활을 할 권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개인적인 생활: 독립적인 생활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큰 의미에서 사적인 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는 장애인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적인 생활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촉진해야 하는 것에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만약, 지역정부 담당자가 당신이 집에 살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대신 당신을 시설로 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바람을 완전히 반영해서 고려해야 한다. 목적은 당신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을 시설에 요양시키는 결정은 반드시 합법이어야 하고, 꼭 필요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상응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활: 당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당신과 당신의 삶에 관한 정보는 당신의 사적인 생활의 일부이다. 이것은 당신의 의료 기록과 경제적 정보를 포함하며, 당신이 받은 의료 서비스나 치료, 혹은 care서비스의 기록을 포함한다. 당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보를 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는 범죄 예방이나 당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혹은 다른 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도 포함된다. 이 이유는 합법이어야 하며, 필수여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당신은 정부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당신에 관한 정보를 접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그 정보가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리도 포함한다. 당신이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막으려면 정보는 그 일이 당신이나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는 반드시 합법해야 하고, 필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사례 열여덟 살이 된 젊은 남자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관한 파일을 열람하고 싶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살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정부 담당자는 이것을 거부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것이 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정보의 열람을 막을만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적인 생활: 치료와 자원

의료적인 치료나 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휠체어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해서)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당신의 사적인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권리가 자동적으로 당신이 어떠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매우 분명하게 판단했다. 특정 치료나 서비스는 상당한 자원을 요구하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혹은 당신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법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담을 정부 담당자들에게 주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정부 담당자들이 당신에게 서비스나 치료를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때로 이 경우에는 정부 담당자들이 의무적으로 당신에게 의료 서비스나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그런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제공하는데 지연된 시간은 당신의 권리에 위배된다. 특히 그 지연이 당신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또한, 법원은 치료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당신의 사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정부 담당자는 아무 이유 없이 치료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들은 각각의 경우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의 여부를 고려할 수는 있어도 자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당신에게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크면 클수록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하는 일의 필요성이 커진다.

당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차별적인 대우이며, 이것은 당신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정 · 집에 대해 존중 받을 권리는 무엇인가?

당신의 집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는 주거권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집을 존중 받을 권리이다. 당신의 집은 만약 당신이 그곳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면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환경일 수도 있다. 만약 정부 관계자가 당신을 당신의 필요에 상관없이 당신의 집으로부터 이동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당신의 권리에 위배될 수 있다. 당신을 당신의 집에서 움직이려는 모든 행동은 반드시 합법이어야 하고, 필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사례 보건의 관계자가 장애인 여성을 그녀가 6년 동안 살았던 특수 NHS 유닛에서 움직이려고 했다.

그 담당자는 그 여자에게 그녀가 거기서 평생 동안 살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었다. 그 유닛은 예산적인 이유로 문을 닫았다. 그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른 대안적인 주거환경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그 유닛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 삶에 대한 권리 (RIGHT TO LIF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제2 조항은 당신이 삶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다. 이 권리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

- 아주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삶을 끝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때 제한된 상황은 정당방위, 체포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구속된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폭동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런 행동은 반드시 필요한 무력 이상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당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밟을 권리**. 예를 들어,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누군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충분한 법이 있어야 한다.

이 권리는 정부 담당자가 언제나 반드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정부 담당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않으며 단순히 연명을 위해서 고통스럽거나 침입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는 치료 받는 와중에 받는 고통이 당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생거부 (DNRS)

때때로 의사는 매우 아픈 환자가 재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불가능하며, 그 환자를 살려두는 것이 더 많은 고통을 안기지만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환자의 파일에 소생거부를 적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의료진은, 예를 들어 환자의 심장이 멈출 경우에, 환자를 살리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소생거부가 환자의 동의 없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당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소생거부 명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당신과 관련된 상황의 현황을 심사숙고 한 후에만 결정해야 한다. 의사는 당신

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소생거부가 명시된 이후에도, 당신의 상황이 변하면 소생거부를 없앨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사례 가슴부위가 감염된 장애여성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녀는 의료진이 그녀가 삶을 연장할 필요가 없는 낮은 삶의 질을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소생거부 명령을 자신의 파일에 적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

이런 상황은 그녀의 삶에 대한 권리를 위배한 것으로 소송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만약 당신이 성인이고 자기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당신 스스로 소생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

자기의사결정 능력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의 특정한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면, 당신이 그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인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은 당신이 당신의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또 믿을 수 있는지, 그 선택지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지, 또 그것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치료를 거부하는 것

만약 당신이 자기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당신의 치료를 받을지 말지에 관해 내린 결정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당신의 죽음을 초래할지라도,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어떤 치료를 받을지에 관해 주장할 수는 없다.

당신의 사적인 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에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Mental Health Act에 영향 받는 자만 유일하게 제외된다. MHA에 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자는 People with Mental Health를 위한 인권 가이드를 참고하라.

만약 당신의 치료를 그만두고 싶을 때,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죽음을 야기할 때, 이것은 수동적 안락사라고 불린다. 수동적 안락사는 영국에서 합법이며, 당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으로 시한부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현재 이것은 영국에서 불법이다.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 그 자체만으로 삶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으며, 미래에 이것은 영국에서 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적극적인 안락사에 관한 논쟁이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도 이 문제에 대해 특히 고민한다. 어떤 장애인들은 본인의 삶을 본인이 원하는 순간에 끝낼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른 장애인들은,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의 삶을 가치를 경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안락사가 장애인의 삶을 너무 일찍 끝내는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Diane Pretty는 법원에서 주장했다. 삶에 대한 권리는 죽음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는 그녀의 상황에서는 수용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European Courts of Human Rights는 삶에 대한 권리가 죽음에 대한 권리를 준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건 Dinae Pretty는 개선 가능성이 없는 운동 뉴런 장애 (Motor neuron diseases)를 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의 때와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목 밀기로 마비가 되어 자살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상실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자살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영국법에 의하면 그 행위는 자살을 돕는 행위로 고발당한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계속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European Courts of Human Rights는 그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삶에 대한 권리는 죽음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지 않는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

만약 당신이 치료에 관해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당신이 삶을 연장하기 위해 고통스럽고 괴로운(intrusive)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의 피해와 혜택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굉장히 큰 고통, 불편, 그리고 모욕이 느껴져야지만 당신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반복될 수 있다. 당신의 삶에 질에 대한 가정이 임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개인의 상황이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한다.

사례 다운 신드롬이 있는 아이가 생의 처음 며칠을 살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죽는 것이 아이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녀가 수술 받는 것을 거부했다. 법원은 아이 부모의 뜻을 번복하고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BEST INTERESTS) 가장 중요했다. 법원이나 부모는 그 아이의 삶의 질에 대해 임의로 가정할 자격이 없다.

만약 당신이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라면, 심사숙고 후에 당신의 치료는 중단 되어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이것이 당신의 삶의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치료가 무의미하다면 삶을 구하는 치료를 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는 없다.

생전 유언장 ADVANCE DIRECTIVES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지 미리 쓰는 유서)

생전 유언장은 당신이 자기 의사 결정권을 잃었을 경우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문이다. 의사는 대부분의 경우 유언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전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상담사와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연락처 목록을 참고해라.

치료와 자원

삶에 대한 권리는 언제나 삶을 유지하는 치료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대한 권리는 당신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지 말지에 대해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Human Rights Act의 효력이 생긴 이후 치료를 제공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더 면밀하게 살피게 되었다. 공적인 담당자들은 자원을 합당하게 나누는 합리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치료에 대한 결정은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이 정당하지 않을 때 인권에 관한 주장은 중요하다. 당신을 치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당신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정부 담당자들이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해야 하는 필요가 커진다.

치료에 관한 결정은 당신의 사적인 생활을 존중 받아야 하는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차별 받지 않을 권리

The European Convention의 article 1.4는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그 조항은 다른 인권에 관한 조항들과 관련된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모든 차별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장애는 차별 금지 목록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50년 전 European Convention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는 장애인 차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European Convention은 “기타 외의 요인”(other status)들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왔다.

Article 1.4의 차별에 관한 조항은 당신이 당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과 다른 대우를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비장애인의 삶을 구하는데 필요한 치료를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부당했다면, 이것은 당신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당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일수 있다.

이런 식의 다른 대우나 치료는 만약 객관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고 또 비례의 원칙에 따른다면 차별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대우나 긍정적 행동은 만약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으면 차별이 아니다.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는 당신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포괄적으로 이 법은 장애인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호한다.

- 구직과 직업선택
- 물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에서 (공적인 일이나 행사도 포함)
- 땅이나 소유물을 관리, 매입, 임대하는 것
- 교육
- 사적인 클럽 (Private Clubs)

인권법과 장애인 차별 법이 함께 장애인을 차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부록 4

입소자를 위한 기관안내지 ¹²⁷⁾

저희 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일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기관 운영 목적

저희 집은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집은 거주인들의 평안한 생활과 건강 지원,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2. 제공되는 서비스

1) 거주(생활)서비스

저희 집은 가정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는 방이 3개, 주방, 거실과 욕실이 있습니다.

잠자고 생활하는 방



다른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거실



식사를 준비하고 드시는 주방



세수하고 샤워하는 욕실



127 본 안내지는 사회복지법인 법인 '가온'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생활시설인 가온들친빛의 기관 안내지입니다.

2) 식사 서비스

저희 집에서는 하루 세 번(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식사 서비스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아침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식사 중



영양사



조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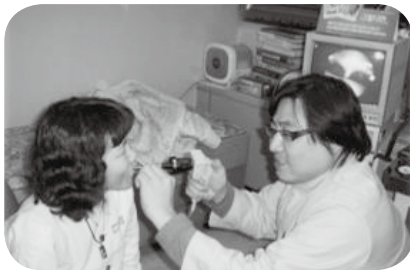
식사

3) 건강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저희 집에서는 하루 세 번(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식사 서비스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아침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료모습

의무실



물리치료 받는 모습

병원진료 / 건강검진



4) 교육 서비스

저희 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거주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 배우기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한글 배우기를 합니다.



컴퓨터 배우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하기, 게임하기 등 컴퓨터를 배웁니다.



대중시설 이용 - 목욕탕

몸을 깨끗이 하는 목욕탕 이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폐(금전)사용하기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고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버스 타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공공기관 이용 - 동사무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나라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는 동사무소 이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공공기관 이용 - 은행

돈을 맡기고 찾는 은행 이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5) 활동 서비스

저희 집에서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운동이나 좋아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동 - 자전거

다른 거주인들과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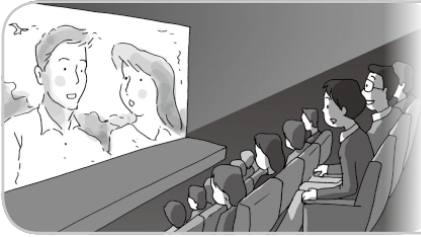
운동 - 축구

다른 거주인들과 함께 축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가활동 - 노래하기

다른 거주인들과 함께 노래방을 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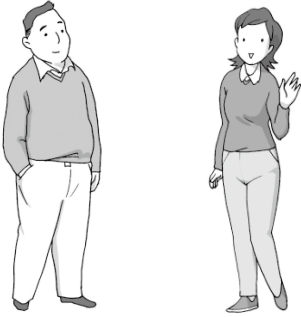


여가활동 - 영화보기

다른 거주인들과 함께 영화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자격

저희 집은 나이 18세가 넘는 지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용비용

수급권자 ▶ 돈을 내지 않습니다.

설명) ○○○씨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대한민국(나라)에서 ○○○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 돈을 내야 합니다.

설명) ○○○씨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면 한 달에 340,000원을 저희 집에 내야 해요.

5. 이용(입소 및 퇴소) 절차

○○○씨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입소 절차입니다.



상담(예약)

전화를 해서 알고 싶은 것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을 방문하고 싶을 때는 전화를 해서 약속해야 합니다.



방문 및 면접

저희 집에 와서 알고 싶은 것을 직원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을 둘러 볼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

○○○씨의 집에 직원이 방문하여 부모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입소결정 회의

○○○씨, 부모님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입주체험

○○○씨는 저희 집에서 살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만듭니다.



입소

○○○씨가 저희 집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씨가 저희 집에서 나가는 퇴소절차입니다.



퇴소상담

○○○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다 집에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다른 시설로 가게 되는 경우, ○○○씨나 부모님은 담당 직원과 이야기(상담)해야 합니다.



퇴소 의사 확인

○○○씨가 저희 집에서 나가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직원이 물어보게 됩니다.



잔금확인

퇴소하기 전에 ○○○씨의 돈과 물품(옷 등)을 드립니다.



퇴소결정 회의

저희 집에서 퇴소하기 전에 ○○○씨, 부모님, 직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회의)합니다.



퇴소

다른 거주인, 직원과 인사하고 저희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6. 이용기간

저희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입소계약을 한 후 퇴소하는 날까지이며 작성한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7.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oo의 집에 전화 걸기



전화번호
055-365-2818

홈페이지 보기



홈페이지 주소
www.gaon.or.kr

서비스 계약서 및 안내지¹²⁸⁾

1. 입소 계약서

입소 통원 계약서

- 입소(통원)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장애유형 및 등급 :

위 사람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가온들찬빛(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면서 가온들찬빛 시설의 장을 '갑', 입소자 및 보호자를 '을'이라 하여 입소계약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입소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

1. 입소자는 상기의 내용에 의한 입소계약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소할 수 있다.

- 1)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직계존·비속)이 희망하는 경우
- 2) 입소자가 상위기관(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근로시설 등)으로 전원되는 경우
- 3) 입소자가 실비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기타 '갑'이 본 시설 내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입퇴소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퇴소를 명하는 경우

2. '을'이 실비 입소인 경우 일정 금액을 '갑'에게 지불한다.

- 1) 실비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인생활시설 실비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2) '을'은 위 비용을 매월 1일 '갑'이 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 3) 실비금액은 해당 장애인이 본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본 경비를 의미하며, 장애인에게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¹²⁸ 본 안내지는 사회복지법인 법인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생활시설인 가온들찬빛의 계약서 및 안내지입니다.

2. 입소 계약 안내서

[입 소 계 약 안 내 서]

본 계약 안내서는 ○○○씨와 저희 집의 약속으로, ○○○씨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 이의제기 절차, 이용계약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누릴 수 있는 것

○○○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거주인으로써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비스 선택과 참여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소유

○○○씨는 돈(통장)을 가질 수 있고, 돈 관리를 직원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퇴소 권리

○○○씨가 원하는 경우, ○○의 집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

○○○씨가 여자(남자)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씨는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만남

○○○씨가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

○○○씨는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절에 가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 지원

○○○씨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2) 의무 - 지켜야 할 일

○○○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씨가 저희 집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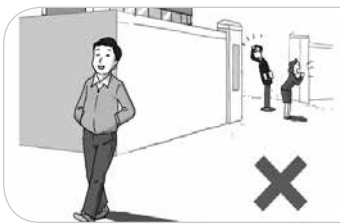
교육·행사에 참석하기

저희 집에서 거주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치료(병원진료, 약복용)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해야 할 때 직원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약은 꼭 먹어야 합니다.



무단외출 안하기

직원에게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 행위

다른 거주인이나 직원을 때리면 안됩니다.



공공질서 지키기

큰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창문을 깨뜨리면 안됩니다.



피해보상

동료나 직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용료 납부

○○○씨는 매월 이용료를 매월 30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이용료는 _____ 원입니다.

2.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1) 거주(생활)서비스

저희 집에서 ○○○씨는 △명이 생활하는 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거실과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씨가 희망할 경우 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찬빛



생활하는 방



거실



욕실



2) 식사 서비스

○○○씨는 영양사와 조리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식사는 하루 세 번(아침, 점심, 저녁)식사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집에 주방이 있는 경우, ○○○씨는 직원과 다른 거주인과 함께 직접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 장소



식사 장소



3) 건강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저희 집에는 촉탁의사, 간호사가 있고, 의무실, 치과진료실이 있습니다. ○○
○씨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씨는 건강검진과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료모습



의무실



물리치료실



병원진료 / 건강검진



4) 교육 서비스

○○○씨는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 배우기



화폐(돈)사용하기



컴퓨터 배우기



대중교통(버스) 이용하기



은행 이용하기



동사무소 이용하기



5) 활동 서비스

○○○씨는 저희 집에서 다음과 같은 운동과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수영



달리기(조깅)



배드민턴



런닝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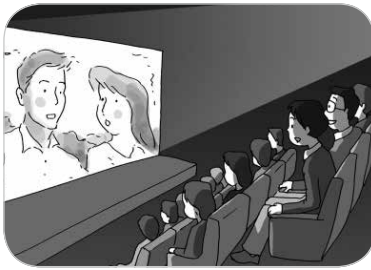


여가활동

노래하기



영화보기



텔레비전 보기



등산



6) 기타 서비스

저희 집은 ○○○씨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언제나 방문할 수 있으며, 외출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씨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은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외출, 외박



금전소유에 대한 권리, 비밀보장



3. 이의 제기 절차 및 방법

○○○씨는 저희 집을 이용하는 동안 불편한 점,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폭력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맞았을 때)을 당했을 때, 욕설을 받았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금품요구

원장이나 직원이 돈을 달라고 하거나, 가져갔을 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불 이행

저희 집에 들어올 때 만든 계약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2)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씨가 저희 집을 이용하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씨가 이야기 한 것은 원장님께서 ○○○씨에게 직접 이야기 해 주십니다.



인권보장회의에 이야기한다

저희 집에 있는 인권행복위원회와 인권누리단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장에게 이야기 한다

저희 집 원장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구청 복지과
☎ 2264-2015

관할 행정기관에 이야기 한다

부산시 연제구청에 전화(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133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의 제기 내용 듣는 방법



처리 결과를 통보 받는다

○○○씨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원장님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4. 이용(계약)기간

저희 집을 이용하실 수 있는 기간은 입소계약을 한 후 퇴소까지의 기간이며 작성한 계약서에 따릅니다.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약속된 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씨나 부모님, 저희 집은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의 집에 전화 걸기



전화번호

055-365-2818

홈페이지 보기



홈페이지 주소
www.gaon.or.kr



ISBN 978-89-6114-368-4 93330